

연구보고서 2005-13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1970년의 경우 조이혼율은 0.4건에 불과하였는데, 2000년에는 2.5건으로 증가하여 지난 30년간 이혼은 무려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혼의 가파른 증가추세는 2003년 조이혼율 3.5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2004년에는 2.9건으로 전년에 비해 21%나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이혼율('00년: 2.5건)은 2000년도 주요 OECD 국가인 독일 2.4건, 네덜란드 2.4건, 핀란드 2.7건, 영국 2.6건에 비해 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화 후발국인 동양권의 우리나라 이혼율 추이는 산업화를 먼저 겪은 서구 선진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혼은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자녀의 역할 혼란 및 부적응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심하여 이혼가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더구나 이혼이 증가하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해체로 인해 사회의 유지 및 존속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혼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문제, 재산분할 문제, 자녀양육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혼의 원인과 이혼가족의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 및 사회의 안녕과 유지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혼율 변화추이, 이혼가족의 삶의 실태와 이혼 후 삶의 변화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였고, 이혼가족을 위한 국내의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외국제도로부터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다각적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이혼가족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혼가족의 사회적 적응력이 제고됨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김미숙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한국성서대학교 원영희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현송 교수,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연구위원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서론 (김미숙)
- 제2장 한국의 이혼추이 (김미숙)
- 제3장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현송·원영희·김미숙)
- 제4장 국내외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장혜경·김미숙)
- 제5장 재가이혼가족 실태 (김미숙·이현송)
- 제6장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와 지원 프로그램 (김미숙)
- 제7장 이혼가족 지원정책 (원영희·김미숙)
- 제8장 결론 (김미숙·원영희)

본 연구가 진행되고, 보고서가 작성 및 출판되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에 참여해 주신 응답자 분들과 이혼 상담 담당자들,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연구의 내용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전문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바쁜 일정 가운데도 본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익한 도움을 주신 여성가족부 류양지 과장, 우석대학교 이승미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양심영 교수, 본 연구원의 김유경 책임연구원과 이태진 책임연구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5
제1장 서론	6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5
제3절 분석대상 및 연구의 한계	70
제2장 한국의 이혼추이	72
제1절 혼인율 및 이혼율 변화	72
제2절 이혼의 사유 및 유형 변화	8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88
제3장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	89
제1절 이혼의 개념과 이혼제도의 변화	89
제2절 이혼의 원인	91
제3절 이혼의 영향	105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5
제4장 국내외 이혼가족 지원정책	118
제1절 우리나라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118
제2절 외국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146
제3절 요약 및 논의	158
제5장 재가이혼가족 실태	160
제1절 재가이혼가족의 이혼 전후 경제생활 변화	160
제2절 재가이혼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171

제3절 사례조사 결과	20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18
제6장 시설거주 이혼가족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221
제1절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	221
제2절 지원 프로그램	24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49
제7장 이혼가족 지원정책	253
제1절 경제적 지원 방안	255
제2절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방안	263
제3절 법제도 개선 방안	270
제4절 주거서비스 지원 방안	279
제5절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283
제6절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방안	289
제7절 이혼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	291
제8절 기타: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295
제8장 결론	297
참고문헌	299
부 록	317

표 목 차

〈표 2- 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73
〈표 2- 2〉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증감	75
〈표 2- 3〉 유배우 이혼율	76
〈표 2- 4〉 OECD 국가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2000)	77
〈표 2- 5〉 평균초혼 연령	78
〈표 2- 6〉 평균이혼 연령	79
〈표 2- 7〉 성별 초혼 및 재혼건수와 비율	80
〈표 2- 8〉 연령별 남녀 일반이혼율	81
〈표 2- 9〉 동거기간별 이혼율	82
〈표 2-10〉 지역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83
〈표 2-11〉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84
〈표 2-12〉 이혼사유별 이혼정도	85
〈표 2-13〉 부부불화의 세부항목 구성비율	86
〈표 2-14〉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87
〈표 4- 1〉 200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120
〈표 4- 2〉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1999년)	121
〈표 4- 3〉 2005년 모·부자가정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123
〈표 4- 4〉 대상별 자활급여의 종류와 실시기관	124
〈표 4- 5〉 자활후견기관 심리·정서적 프로그램 현황	126
〈표 4- 6〉 2005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130
〈표 4- 7〉 모자복지 시설현황 (2004. 12. 31 현재)	131
〈표 4- 8〉 모자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 (2004. 12. 31 현재)	132
〈표 4- 9〉 호주제와 새 신분기록부의 비교	138

〈표 4-10〉	영락모자원의 「부모역할 교실」 프로그램	140
〈표 4-11〉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141
〈표 4-12〉	종합사회복지관의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142
〈표 4-13〉	등촌9동종합사회복지관: 여성한부모가정 프로그램	144
〈표 4-14〉	온라인 공동체	145
〈표 4-15〉	종교단체 및 연구소의 관련 프로그램	146
〈표 4-16〉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151
〈표 4-17〉	미국의 이혼 후 부모역할 관련 프로그램	157
〈표 5- 1〉	이혼 전후의 소득 평균 비교	166
〈표 5- 2〉	표본가족 전체의 소득 평균	167
〈표 5- 3〉	이혼 전후의 소득차 비교	169
〈표 5- 4〉	이혼 가족의 소득 구성요소별 이혼에 따른 소득 변화	171
〈표 5- 5〉	이혼자 연령	173
〈표 5- 6〉	이혼연령대 별 이혼기간	173
〈표 5- 7〉	동거기간	174
〈표 5- 8〉	이혼 사유	175
〈표 5- 9〉	이혼을 제의한 사람	176
〈표 5-10〉	소득수 및 경제수준 비교	177
〈표 5-11〉	이혼기간별 소득수 및 경제수준 비교	178
〈표 5-12〉	연령대별 소득수 및 경제수준 비교	179
〈표 5-13〉	부채의 주된 원인	180
〈표 5-14〉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181
〈표 5-15〉	이혼기간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182
〈표 5-16〉	가구주의 연령대별 이혼가족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183
〈표 5-17〉	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	184
〈표 5-18〉	가구주 연령대별 이혼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	184
〈표 5-19〉	경제적 자립정도	185
〈표 5-20〉	이혼기간별 이혼가족의 경제적 자립정도	185
〈표 5-21〉	가구주 연령대별 이혼가족 경제적 자립정도	186

〈표 5-22〉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다회귀분석 모델	187
〈표 5-23〉	총가구소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188
〈표 5-24〉	이혼자 성별 가구소득총액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188
〈표 5-25〉	연령별 가구소득총액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189
〈표 5-26〉	현 취업 여부	190
〈표 5-27〉	종사상의 지위	191
〈표 5-28〉	일하는 이유	192
〈표 5-29〉	직업만족도	193
〈표 5-30〉	직업상의 애로사항	193
〈표 5-31〉	이혼여성가구의 연령별 직업상의 애로사항	194
〈표 5-32〉	향후취업 희망 여부	195
〈표 5-33〉	연령대별 여성이혼자 향후 취업희망 여부	195
〈표 5-34〉	향후 취업희망 이유	195
〈표 5-35〉	주택 소유 형태	196
〈표 5-36〉	가구주 연령대별 이혼가족의 주택 소유 형태	197
〈표 5-37〉	가구주 이혼기간별 이혼가족의 주택 소유 형태	197
〈표 5-38〉	이혼시 18세 미만 자녀수	198
〈표 5-39〉	현재 18세 미만 자녀수	198
〈표 5-40〉	자녀와의 동거자	199
〈표 5-41〉	자녀의 양육비 제공자 수	199
〈표 5-42〉	자녀의 양육비 주제공자	200
〈표 5-43〉	자녀와의 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200
〈표 5-44〉	1년 전에 비한 가족생활 변화	201
〈표 5-45〉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이유	202
〈표 5-46〉	전반적 가족생활만족도	202
〈표 5-47〉	가구주 연령대별 이혼가족의 전반적 가족생활만족도	203
〈표 5-48〉	가족 행복의 1순위	204
〈표 5-49〉	재혼의 필요성	205
〈표 5-50〉	이혼자 가구주 연령대별 재혼의 필요성	205

〈표 5-51〉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	206
〈표 5-52〉 가구주 이혼기간별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	207
〈표 5-53〉 가구주 연령대별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	207
〈표 5-54〉 이혼 사례조사 질문 항목	208
〈표 5-55〉 이혼 사례 소개	209
〈표 6- 1〉 설문지 회수율	222
〈표 6- 2〉 시설거주 이혼가족 대상 설문조사 항목	222
〈표 6- 3〉 응답자 특성	223
〈표 6- 4〉 월평균수입	224
〈표 6- 5〉 이혼유형 및 이혼기간	225
〈표 6- 6〉 이혼의 원인(중복응답)	225
〈표 6- 7〉 전 배우자 학력 및 만나는 빈도	226
〈표 6- 8〉 이혼 후 경제생활 변화	227
〈표 6- 9〉 이혼 후 경제생활이 나빠진 이유	227
〈표 6-10〉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월평균생활비	228
〈표 6-11〉 생활비 중 부담되는 항목	228
〈표 6-12〉 경제적 자립정도	229
〈표 6-13〉 경제활동 여부	229
〈표 6-14〉 이혼기간별 경제활동 여부	229
〈표 6-15〉 무직 이유	230
〈표 6-16〉 일한 기간	230
〈표 6-17〉 직업 형태	231
〈표 6-18〉 향후 경제활동 희망여부(무직자의 경우)	231
〈표 6-19〉 직업생활 상의 어려움	232
〈표 6-20〉 직업 및 훈련교육 이수 여부	232
〈표 6-21〉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불만족 이유	233
〈표 6-22〉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233
〈표 6-23〉 자녀수	234

〈표 6-24〉 자녀양육여부	234
〈표 6-25〉 자녀와의 접촉빈도(비양육시)	234
〈표 6-26〉 자녀와의 관계	235
〈표 6-27〉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	235
〈표 6-28〉 이혼 후 어려운 점	236
〈표 6-29〉 이혼 후 긍정적 변화	236
〈표 6-30〉 이혼 후회 여부	237
〈표 6-31〉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정도	237
〈표 6-32〉 이혼 관련 상담참여 여부	238
〈표 6-33〉 이혼관련 상담프로그램 참여 의향	238
〈표 6-34〉 이혼 예방 프로그램 필요여부	239
〈표 6-35〉 재혼의향	240
〈표 6-36〉 재혼 안한 이유	241
〈표 6-37〉 재혼 기피 이유(재혼 희망자)	241
〈표 6-38〉 원하는 지원	242
〈표 6-39〉 주요 진행 프로그램	245
〈표 6-40〉 프로그램의 성과	246
〈표 6-41〉 프로그램 진행시 애로사항	247
〈표 6-42〉 연계기관	248
〈표 6-43〉 이혼가족 정책 개선방안	249
〈표 7- 1〉 경제적 지원방안	257
〈표 7-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방안	264
〈표 7- 3〉 법제도 개선방안	271
〈표 7- 4〉 주거서비스 지원방안	279
〈표 7- 5〉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283
〈표 7- 6〉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방안	290
〈표 7- 7〉 이혼 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	291
〈표 7- 8〉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29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9
[그림 2-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74
[그림 2-2]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75
[그림 2-3]	유배우 이혼율 추이	76
[그림 2-4]	이혼사유별 이혼 구성비	85
[그림 2-5]	이혼종류별 이혼 구성비	87
[그림 7-1]	이혼가족 지원정책	254

Abstract

Recent Divorce Trend in Korea and Policy Measures for the Divorced Families

The Korean society experiences rapid economic growth, widespread individualism, and an increase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which many aspects of society, including family life, have been changed. Family ties have been weakened, and the suppressed conflict among family members has been overtly revealed, that many families ended up with dissolution.

Even though the growth rate of divorce in Korea is abnormally high, proper and sufficient policy measures for the divorced families have not been provided and prejudice against them is rather strong.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divorce trend in Korea and the life situations of the divorced families, and devises various policy measures for them.

It is found out that divorce in general affects the divorced families members negatively. In particular, the household income of female divorcees is drastically decreased than that of male divorces. In addition, divorced families face unfavorable life situations in terms of economy, housing, social status, child rearing, social relations, and physical as well as mental health.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measures for the divorced families including economic support, support for children, aid for housing, psycho-social support, the amendment of several family or divorce related laws, weakening of social prejudice against them, the prevention of divorce, and support for male divorced familie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까지 가족주의 가치관의 팽배로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 핵가족의 증가,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등으로 가족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 변화가 초래됨.
 - 특히,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은 약화되었고, 내재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외연적으로 표출되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이혼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의 증가율이 비정상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없으면 사회의 혼란과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고통이 더 심해 질 수 있음.
 - 사회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고,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의 역할 혼란 및 적응문제, 아동 및 노인부양 방치 등 다양한 가족 위기를 발생시킴.
 - 개인적으로는 이혼자들은 공적 및 사적 지원망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이혼자는 이혼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로 인해 이혼은 사회의 유지 및 존속에 위협적인 요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고, 이혼자나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지금까지의 이혼가족 지원정책은 주로 극빈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통한 지원이거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심이었고, 이혼 후 가족원들의 경제적 하락, 사회심리적 갈등, 자녀양육 상의 문제, 주거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상태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의 삶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혼가족의 사회적 적응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이혼가족의 가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이혼가족이 위기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한국의 이혼추이 및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혼인율과 이혼율 추이, 이혼사유 및 이혼 유형
 - 이혼의 개념, 이혼의 원인, 이혼의 영향
- 국내외 이혼가족 지원 현황
 - 국내의 이혼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녀지원 주거지원, 법제도, 사회심리적 지원 프로그램과 외국(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의 경제적 지원, 법제도, 사회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등
- 재가이혼가족 실태

- 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주거생활,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 가족생활변화, 복지욕구
- 시설이혼가족 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 시설이혼가족 특성, 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 가족생활 변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복지욕구
 - 이혼 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이용 이혼가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상의 애로사항, 연계기관, 이혼가족 정책 개선방안 등
- 이혼가족 지원정책
 -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지원, 법제도 지원, 주거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사회적 편견개선, 이혼 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 기타(남성이혼가족 지원) 지원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이혼 실태 관련 통계자료 및 정부자료 재분석
 - 이혼의 원인, 결과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이혼정책 관련 문헌 및 인터넷자료 정리
- 기존 데이터 2차분석
 - 이혼가족 다각적인 삶의 실태파악을 위한 「한국노동패널데이터」와 「2003년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차 통계 분석
- 이혼가족 사례조사
 - 남녀 이혼가족 삶의 현황 파악을 위한 일대일 심층 면접조사
-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 시설거주 이혼가족 생활실태 점검을 위한 우편설문조사 및 이혼관련 전문가에 대한 이혼가족 지원프로그램 현황 관련 델파이 설문조사

- 정책자문회의 및 workshop 개최
 - 정책도출을 위한 이혼 전문가와의 2차의 정책자문회의 개최.
 - 원내/외부 전문가와의 연구 착수, 중간점검, 최종 보고서 마무리를 위한 3단계에 걸친 workshop 개최.

□ 연구의 한계

-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와 관련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음.
 - 대상자의 비포괄성, 기존 데이터 상의 설문항목의 누락 등의 문제가 있었음.

제2장 한국의 이혼추이

1. 혼인율 및 이혼율 변화

□ 혼인율과 이혼율

- 조혼인율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1970년에는 9.2건에서 1975년 8.0건으로 감소하다 1980년에는 10.6건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1985년에는 9.2건, 1990년 9.3건, 2000년 2.5건, 2004년 6.4건으로 감소하였음.
- 조이혼율은 200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가, 2004년에는 감소하였음.
 - 특히 조이혼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970년 조이혼율은 0.4건이었는데, 1980년에는 0.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1990년 1.1건, 1995년 1.5건, 2000년 2.5건, 2003년 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2004년에는 조이혼율이 2.9건으로 감소한 추세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초혼 및 이혼연령

-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평균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라 평균 이혼 연령도 1990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성별 초혼 및 재혼율

- 성별 초혼의 비율과 건수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반면 재혼의 경우는 남녀 모두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여성의 증가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음.

□ 연령별 이혼율

- 1990년에서 2004년에 이르기까지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자 및 여자의 경우 모두 30~34세와 35~39세로 나타났음.
 - 아울러 40~44세의 이혼율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45~49세의 이혼율은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에는 60세 이상의 노년이혼(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이혼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동거기간별 이혼율

- 동거기간별 이혼정도에 있어서는 1990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동거기간 0~4년의 경우가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혼이 결혼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추이에서 벗어나서 모든 동거기간대에서 골고루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 이혼율

- 지역별 조이혼율에 있어서는 2004년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2.9건이고, 인천이 가장 높은 3.7건이고, 제주도 3.2건임.
- 경북은 이혼율이 가장 낮은 2.4건을 보이고 있음.

□ 이혼시 미성년자녀 유무

-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의 이혼율은 지난 14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1990년의 비율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음.

2. 이혼의 사유 및 유형 변화

□ 이혼사유

- 이혼사유별 이혼에 있어서는 ‘부부불화’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불화는 1990년 84.9%에서, 2000년 74.4%로 감소하였고, 이는 다시 2004년 70.6%로 감소하였음.
- 반면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증가하다는 추세에 있음(1990년 2.0%, 2000년 10.7%, 2004년 14.7%).
- 부부불화를 세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이유는 ‘성격차이’로 2000년부터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음.

□ 이혼유형

- 이혼종류별 이혼 건수에 있어서는 1993년에서 2004년에 이르기까지 협의이혼이 대부분인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재판이혼은 20% 미만을 보이고 있음.

제3장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이혼의 개념과 이혼제도의 변화

□ 이혼의 개념

-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임.
-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음.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질 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임.
 -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이혼이 되는 것임.

□ 이혼제도의 변화

- 이혼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혼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부터 확립되기 시작했음.
 - 이혼법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유책주의란 누가 결혼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파탄주의란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파탄에 이른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혼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세계적인 이혼관련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이혼제도는 여러 변화 과정을 거쳐 왔음.
 - 이혼과 관련된 법은 일제치하에 일본 민법의 도입으로 최초로 시행되었음. 그러던 것이 1960년부터 시행된 가족법에 의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되었고, 1963년에는 호적법이 개정되어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하여, 이혼신고서의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리하도록 하였음.
 - 1977년에는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가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 1990년 가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혼 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권, 이혼 후의 모의 친권 인정 등이 새로 신설되었음.
 - 최근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내려짐.

2. 이혼의 원인

이혼의 원인

- 첫째, 거시적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이혼 증가 현상을 설명함.
- 둘째, 어떤 사람이 왜 이혼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함.
- 셋째, 이혼 당사자의 관점에서 결혼이 파탄난 이유를 이해함.

이혼의 사회구조적 변화 요인

- 산업화, 도시화, 및 개인주의의 확대.
- 여성 교육수준의 상승 및 여권주의(feminism)가치관의 확산.

이혼의 인구 사회경제적 요인

- 초혼 연령, 혼전 임신 및 출산 여부, 결혼 기간, 출생 자녀 유무, 재혼 여부, 배우자 선택과정의 차이, 거주 지역, 등의 요인이 이혼 확률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침.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짐.
- 부인의 경제활동참여는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나, 여성 취업의 소득효과와 독립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상황에 따라 상이함.
-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자체보다는 결혼 생활의 질 및 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실제적인 도움이 결혼 안정성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혼의 주관적 사유

- 혼외 성관계, 부부간 의사소통의 양과 질, 부부간 결혼의 만족도, 부부간 성격 및 가치관의 불일치 정도,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와의 관계 문제 등이 주요 이혼 사유로 이혼 당사자들에 의해 지적됨.
- 이혼의 주관적 사유는 시대에 따라 변하며,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제시하는 이혼의 사유는 서로 간에 상당히 다르며, 이혼 당사자가 이해하는 이혼의 사유는 매우 복잡적이며, 가족의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에 따라 이혼의 주요 사유가 다름.

3. 이혼의 영향

역할수행 문제

- 이혼가족 자녀들은 그들 부모의 생활적응의 어려움, 가사일을 비롯 감정적, 실제적 지지에 대한 증가된 욕구 등으로 인해 ‘역할혼란’(role disturbance)을 느끼며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줌.

심리·정서적 문제

- 이혼 당사자들의 대부분 이혼이후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함.
- 이혼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다른 가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부분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우울, 낮은 자아개념 내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됨.

□ 경제적 문제

- 일반적으로 이혼 이후 소득이 줄고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녀간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주거 및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남성의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감소 문제 혹은 위자료 또는 양육비 지불,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반되는 지출 과다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쉬움.
 - 이혼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대인관계 문제

- 이혼의 결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 온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함.
- 이혼가족은 경제적 활동, 대인관계, 그리고 독립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게 됨.
 - 특히 이혼 모자가족의 여성가장은 실제 그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낙인을 경험함.

□ 행동·사회적 문제

-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혼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낮은 자존감, 과잉행동,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 및 불안, 우울함을 보이게 됨.
 - 이혼가족내 부모역할 모델 및 동일시 대상의 부재는 자녀의 성격 발달,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 부모의 이혼은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을 낳게 하고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모델의 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오는 거리감 등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남자들에게 있어 자녀양육의 양상은 여성과 다소 차이가 있음.
 - 특히 우리 사회는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건이 여의치 않으므로 생활상 여러 어려움에 직면함.
- 이혼은 아동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학업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이혼 후 나타나는 아동의 공격성, 의존성의 특성으로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심신 건강 문제

- 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킴.
 - 대체로 이혼자들은 정서불안증, 심장병이나 폐렴, 암, 고혈압, 간경화 등이 정상 결혼 생활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이혼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확률이 결혼관계를 유지하거나 사별한 사람에 비해 높은 편임.

4. 요약 및 시사점

- 이혼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혼의 영향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 그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이혼 후 지원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가족에 대한 낙인과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한부모로서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제4장 국내외 이혼가족 지원정책

1.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정책

□ 경제적 지원

1) 생계지원

- 이혼가족을 포함한 극빈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 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나, 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급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02년 12월에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한 유일한 명시적 지원책임.
 - 생계급여는 「모·부자복지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그 외의 모·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서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2) 자활 및 고용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자활 및 고용관련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과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꼽을 수 있음.
-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음.
-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생업자금 및 복지자금융자 프로그램이 있음.

□ 자녀지원

1) 자녀 양육비 및 학비지원

- 이혼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여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자녀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양육비 지원(6세미만 아동, 월 5만원)이 있음.

2) 자녀 보육 및 학습지원

- 모·부자가정 중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 기거하는 학동기 전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고, 학동기 자녀들에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주거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시설보호가 있음.

□ 법제도적 지원

— 이혼의 절차

- 우리나라의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성립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임.
- 우리나라의 이혼은 아직까지는 유책원인과 파탄원인이 공존하는 형태이며, 판례상 유책주의가 강하므로 파탄주의가 도입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협의이혼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에 비해 이혼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님.

— 재산분할청구권

-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됨.
-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노동의 평가절하, 부양능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미약성, 재산분할의 비율 규정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음.

— 자녀양육권

- 양육의 개념은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로 한정됨.
-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지급을 강제할 필요성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면접교섭권

-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접·접촉하는 권리를 말함.
- 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는 자녀의 복지를 생각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 호주제

- 호주제는 남성가장을 가족의 중심으로 하면서 가족원의 출생, 입양, 혼인, 이(재)혼, 사망에 이르는 생애사적 신분 변동이 기록·축적되는 제도임. 호주의 승계는 남계중심 원칙에 입각하여 아들-손자-딸-손녀(단, 혼인한 딸·손녀는 제외됨)-처-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음.
- 2005년의 호주제 폐지는 이혼 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심리적 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자립시설

과 민간단체,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한 이혼전 상담 등 이혼 조정을 내실하고, 이혼이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모자자립시설에서는 심리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자립의지향상교육, 자조모임, 가족 사회복지자원 연결, 모자가정 자립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함
-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부산여성회 등이 이혼여성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집단, 법률상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여곳의 지역사회복지관은 한부모 자녀교육(방과후 아동교실, 저소득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아동상담,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및 여성가구주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2. 외국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 외국의 경우 과거에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사별보다는 이혼이나 미혼모로 인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이 특징임.
- 외국의 정책들은 각 국가의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각국 정부와 노동시장이 이들 가족을 어떻게 취급하고 지원하는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제적 지원

- 미국은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공부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공공부조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층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근로를 통한 자활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

율이 높고, 과거 급여수급 중심에서 근로를 통한 자활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임.

- 스웨덴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대부분이 사회보험 급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포괄적으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자복지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원체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바뀌어 가고,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여 공공부조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음.

□ 자녀 지원

- 공공부조 및 사후적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스웨덴,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아동수당(급여)을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일본은 일반아동에 대한 건전 육성 및 모자보건 등에 걸쳐 아동전반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어 아동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법제도적 지원

1) 아동양육비 관련법

- 미국에서는 자녀부양 강제제도(Child Support Enforcement)를 실시하고 있음.
 -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임금원천징수 방법이고, 나머지는 정기적인 청구, 체불통보, 재산압류, 실업수당으로 충당, 자산압류 및 매각, 신용기관에 체불사실 통보, 임금압류, 주

- 및 연방 세금 환급분 압류,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운전면허, 사업 면허, 직업 면허 등) 취소, 연방 구속, 벌금 등임.
- 영국은 법적으로 전배우자의 부양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아동보조청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등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양육비 집행은 급여공제명령이 통상적으로 양육비 강제이행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자녀양육비는 부모간의 협의나 법원의 권고 중 한 방법으로 정해짐.
 - 일본은 기준양육비 사용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자금, 수업자금 및 취학지도자금을 통한 대학등록금까지 지원을 하는 등 한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배우자 부양관련법

- 미국에서는 이혼가정의 빈곤화 현상을 방지하고 비행청소년의 배출을 방지하고자 이혼피해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자의 부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부양강제법」과 「국제부양강제징수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형법상, 민법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영국은 부부간의 협력원칙(**Partnership Principle**)이 도입되어 이를 맹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부양의무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이혼시 각 배우자는 각자가 스스로 부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에게 부양을 청

구할 수 있으며 부양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였음.

□ 심리·정서적 지원

- 미국은 민간의 지역사회기관에서 이혼가족에 대한 개인상담뿐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 가족치료 등이 포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결혼제도의 약화로 인해 잠재적인 복지수혜층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은 노동을 위한 복지가 강조되면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노동과 연계하여 보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스웨덴은 한부모가족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한부모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고 양육서비스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절실하지 않음.
- 일본에서는 심리상담, 각종 자활지원정책을 통해서 한부모가 각종 사회 복지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3. 시사점

-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양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이혼 후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2005년 2월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왜곡시켜왔던 호주제의 부성 강제조항이 (부분적으로나마) 약화되고 2005년 6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이것은 이혼가족 자녀의 낙인을 방지하고, 이혼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제5장 재가이혼가족 실태

1. 재가이혼가족의 이혼 전후 경제생활 변화

□ 경제적 어려움

- 미국의 경우 남성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이 거의 없으나, 여성은 30%이상 실질 생활수준 감소를 경험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득 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첩되면서 이혼 가족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은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가구 소득 감소

- 남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앙값으로 계산하여 연소득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하강하며, 여성의 경우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하강함.
- 이혼 가족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배우자 가족의 소득 분포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여성 이혼 가족간의 불평등 정도가 두드러짐.

□ 여성의 절대적인 소득의 손실이 엄청남

- 남성의 이혼전후의 소득 변화율은 0.0%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여성의 경우 이혼전후의 소득 변화율은 -18.3%로 큰 감소를 보임.

□ 가구소득의 격차는 주로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발생

- 남성의 경우 이혼전과 후의 가구근로소득의 점유율은 크게 변화하지 아니하나, 여성의 경우 가구근로소득은 84.2%에서 66.2%로 감소하는 반면, 위자료 혹은 친척의 도움과 같은 이전소득의 비중은 높아짐.

- 비이혼 가족의 여성과 비교할 때, 이혼가족 여성의 근로소득의 절대 규모 및 점유율이 훨씬 높음.

□ 우리나라 여성이혼가족의 특성

- 우리나라 여성과 미국의 여성을 비교했을 때 이혼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정도는 우리나라 여성쪽이 낮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추어진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이혼 후 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독립생활을 할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때문임.

2. 재가이혼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이혼 관련

— 이혼연령 및 이혼기간

- 이혼 연령은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은 19.7%이고, 그 다음은 20~30대로 28.3%임. 이혼남성도 40대가 가장 많은 53.1%이고, 그 다음은 50대로 30.4%, 20~30대 16.4%의 분포임. 이혼여성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83세로 이혼남성 46.06세보다 약간 더 적었음.

— 동거기간

- 결혼 후 동거기간은 이혼여성가구주는 13.64년, 이혼남성가구주는 11.94년으로 여성이 약간 더 길었음.

— 이혼사유 및 이혼제외자

- 이혼의 이유를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성격차이’로 32.6%가 지적하였음. 그 다음은 ‘남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18.5%, ‘남편의 외도’ 13.1%의 순이고, ‘부인의 외도’는 8.0%를 차지하고 있음.
- 이혼을 제외한 사람은 부인이 가장 많은 68.2%로 나왔고, 그 다음이 남편으로 29.2%이었음.

□ 경제생활

— 소득관련

- 근로소득은 유배우가족은 월 269만원으로 이혼가족 123만원의 2배를 넘는 상황임.
- 반면 비동거 자녀, 부모, 기타 친척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과 사회 보장수혜액은 이혼가족이 더 많았음.
- 총 가구소득액은 유배우가족이 273.76만원으로 이혼가족 137.45만원 보다 약 136만원 가량이나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혼기간별로는 이혼기간이 짧을수록 수입도 많은 반면 지출도 많고 아울러 사적인 지원도 많음. 이혼자 성별 차이는 없었음.

— 부채의 원인

- 유배우가족은 주거비 및 사업자금으로 인한 빚이 많음에 비해, 이혼 가족은 사업자금이나 생계비 등 생활수단의 마련을 위한 빚이 많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 유배우가족의 경우는 자녀의 사교육비(23.6%)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혼가족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23.5%), 주거비(18.3%), 공과금(15.8%)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함.
- 이혼기간별로는 이혼의 기간에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혼가족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녀양육비, 주거비, 공과금임.

— 주관적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자립정도

- 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이 이혼가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 경제적 자립정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으나, 이혼가족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8.1%로 과반수를 넘고 있음.

—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모델은 모든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과, 이혼자 성별 분석 모델, 이혼자 연령대별 분석 모델 등으로 나누었음.
- 전체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 18세 미만 자녀수,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 등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남성이혼가족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적을수록,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취업한 경우,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소득총액이 많았음.
- 성별로 구분한 모델에서는 이혼남성의 경우는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혼여성가구의 경우도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이 유의하였음. 두 모델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우가,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소득총액이 더 많았음.
- 연령별 모델에서는 20~30대는 취업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취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구소득총액이 더 많았음. 40대의 경우는 모든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남성이혼가족이, 18세 미만 자녀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취업은 한 경우가,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 총소득이 많았음. 50대의 경우는 교육정도와 취업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한 50대 이혼가족은 그렇지 않은 이혼가족보다 가구소득총액이 더 많았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은 성, 이혼가족 거주주의 연령, 18세 미만 자녀수, 취업여부, 이혼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즉, 남성이혼가족보다는 여성이혼가족이, 18세 미만 자녀가 많고, 취업을 하지 않은 이혼가족이면서 이혼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이혼가족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4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 18세미만 자녀로 인해서 가구소득

총액이 적어진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40대를 위한 취업기회 제공과 자녀학비 지원 등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한편, 이혼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지원이 더 시급함.

□ 취업관련

—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 현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유배우자의 반인 54.7%가 취업하고 있는 반면, 이혼자의 4분의 3 이상인 78.3%가 취업하고 있었음.
- 취업시 종사상의 지위는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유배우 여성과 이혼여성가구주 모두 상용고가 가장 많은 68.5%와 58.0%이었으나, 임시고 일용고에 있어서는 유배우 여성(20.7%)보다 이혼여성가구주(31.9%)가 많았음.
- 두 집단에 있어서 일하는 이유를 파악하였더니, 두 집단 모두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이혼자의 경우는 절대 다수(94.8%)가 생활유지를 위해 취업함.

— 직업만족도 및 애로사항

-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의 비율이 유배우가족이 38% 이상으로 이혼가족 23%보다 더 높았음.
- 직업상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은 가사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하였는데 반해(49.2%), 이혼가족은 가사(30.5%) 뿐 아니라 자녀양육(33.3%)도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녀양육비 조달 및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혼자 연령대별 직업상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20~30대는 자녀양육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는 가사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취업의향 및 이유

- 향후 취업희망 여부에 있어서는 취업을 원한다는 응답이 이혼자가

63.8%로 유배우자 53.4%보다 더 많았음.

- 연령대별로는 20~40대는 4분의 3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50대는 반수 정도만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음.
- 향후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유배우여성과 이혼여성가구주 모두 ‘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라고 지적함.

□ 주거생활

- 주택소유 형태에 있어서 유배우가족의 경우는 ‘자가’가 가장 많은 64.1%인데 반해서, 이혼가족의 경우는 자가가 30.3%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월세도 이혼가족이 10.0%로 유배우가족 1.9%에 비해 훨씬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이혼가족은 전월세가 가장 많은(33.9%)데 비해 남성이혼가족은 자가(39.6%)가 가장 많아 여성이혼가족의 주거가 더 불안정함을 알 수 있음.
 -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전월세가 많은 반면, 40대는 자가, 전세, 전월세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50대는 자가가 월등히 많았음.
 - 이혼기간별로는 주택소유형태 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자녀양육 관련

- 자녀수 및 양육자
 - 이혼시 18세 미만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5.4%이었고, 1명은 29.6%이었음. 즉 이혼자의 85% 정도는 이혼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이혼 후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줌.
 -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41.3%이고, 1명 28.5%, 2명 27.6%의 순이었음. 이혼 후에도 이혼자의 60%는 미성년 자녀가 있음.
 - 자녀와의 동거자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모와 부의 비율이 거의 비슷

한 49.0%와 42.6%이었는데, 둘째 자녀의 경우는 자녀의 부가 53.1%로 자녀의 모 38.3%보다 훨씬 많음.

— 자녀양육비 관련

- 자녀 양육비 제공자 수는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를 막론하고 1인이 가장 많았음.
- 양육비 주 제공자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부와 모가 비슷한 수치로 각 49.0%와 45.0%를 보이고 있는데, 둘째 자녀는 국가가 49.2%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둘째자녀가 있다는 응답 중 모·부자 가정의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 줌.

— 자녀관계 만족도

-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의 만족도가 이혼가족보다 약간 더 높았음.
- 이혼여성가구주와 이혼남성가구주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혼여성가구주가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고 있었음.

□ 전반적인 가족생활 변화

- 1년 전에 비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은 동일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9.1%이었는데 반해, 이혼가족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음.
 -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80% 이상).
 - 전반적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의 만족하다는 응답은 42.8%이었는데 반해, 이혼가족은 19.4%로 나타나 이혼가족의 만족도가 훨씬 더 낮았음.

□ 복지욕구

- 가족 행복의 1순위로 지적된 것은 두 집단 모두 가족의 건강, 가정 안

정의 순이었음.

- 재혼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가장 많은 응답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약 반을 차지하고 있고(46%~47% 내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음.
 - 이혼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는 재혼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혼남성이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었음.
-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으로 두 집단 모두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것은 유배우가족과 이혼자 모두 노인복지정책임.
- 세 번째는 유배우가족의 경우는 영유아 보육정책인데 반해서, 이혼가족은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이혼 여성가구주는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혼남성가구주는 노인복지정책, 중년기 남성을 위한 정책,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을 비슷한 비율로 지적하여 이혼가족들이 생활고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혼기간별로는 이혼한지 19년 이하인 경우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의 필요성을 많이 지적하였고, 이혼한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노인복지정책을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지적하였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40대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과 노인복지정책,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비슷한 비율로 원하고 있었고, 50대는 노인복지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었음.

3. 사례조사 결과

- 사례조사를 통해서 앞의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거나 설명이 구체화되지 못한 이혼과정, 사회심리적 및 건강문제,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희망지원사항을 파악하였음.

□ 이혼과정 상의 어려움

- 이혼과정에 있어서는 겪는 어려움은 별거 중의 자녀양육 문제(특히 남성의 경우),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 이혼절차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음, 생활고(자녀양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심리적인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음.
-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특히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 경험과 지식이 없고,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여성보다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사회심리 및 건강문제

- 사회심리적으로 이혼가족 사례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남성이혼자의 경우는 외로움, 동거하지 않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 전 배우자에 대한 상처와 그리움 등을 지적하였음.
- 이혼 후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사례도 있었음.
 - 이혼 후 남편의 구타와 정서적인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임.
- 건강면에 있어서는 남성이혼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건강하다고 한 반면, 여성이혼자들은 이혼 전부터 지병을 갖고 있거나 이혼 후 건강이 더 악화된 경우를 볼 수 있음.
 - 반면, 이혼 직후에는 건강의 문제가 있다가 오히려 이혼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건강도 회복되는 사례도 볼 수 있었음.

□ 사회적인 편견

-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취업이나 자녀의 결혼시 이혼가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아울러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는 부조 신청시 담당 직원의 편견이나 불신으로 인한 어려움도 지적함.

□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 전체 10사례 중 7사례는 이혼숙려제도에 대해 찬성하였고, 한 사례는 중재 기간이 너무 늦다는 지적을 하였음. 두 사례만이 이 제도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어 이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이혼 중재 및 이혼예방이 필요함.

□ 원하는 지원사항

- 남성이혼가족들은 법률적인 지식이나 상담, 가사지원서비스, 재혼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나 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희망하는 사례가 없음.
 - 대부분의 사례대상 이혼여성들은 이미 공공이나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함.
 - 다만 남성이혼가족들은 이혼 후의 심리상담이나 자조집단 모임의 활성화와 가사지원 서비스, 재혼주선 등을 희망하고 있었음.
- 반면 여성이혼가족들은 사회나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음.
 -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보육서비스,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전남편으로부터의 자녀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의 강제성,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을 원하고 있었음.

□ 요약 및 시사점

- 한국노동패널데이터 재분석을 통하여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 여성의 이혼 후 경제적 충격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소득 감소율 면에서 상대적으로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미국과 달리 이혼 후 부모나 친척에 얹혀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 실제 이들이 독립해 생활해야 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됨.

-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이혼가족의 상황을 유배우 가족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이혼가족은 주거 및 경제생활에 있어서 유배우가족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었음.
 - 한편, 이혼가족의 이혼기간별 및 연령대별로도 경제상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혼의 결과이자 원인이기도 함. 따라서 이혼의 예방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혼한 가족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때 이혼기간과 이혼자의 성 및 연령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이혼숙려제도의 의무화를 통해서 이혼전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혼결정 혹은 이혼 예방이 되어야 할 것임.

제6장 시설거주 이혼가족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1.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

□ 조사개요

- 본 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시설 거주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함.
 - 대상 시설은 무주택 이혼여성 및 그 자녀를 일정기간(3년간, 연장 2년 가능, 최대 5년 보호) 보호하는 모자원(모자보호시설)임.
 - 총 배포 부수는 305(18개소)개 이었는데 회수된 설문지는 126개(11개소)로 회수율은 41.31%에 이룸.

□ 응답자 특성

-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가장 많은 61.1%이고, 군지역 23.0%, 중소도시 15.9%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학력은 고졸 및 중퇴가 가장 많은 63.2%이고, 종졸 및 중퇴는 16.8%, 전문대졸 13.6%의 순임.
 - 연령은 평균 38.11세이고, 30대가 가장 많은 60.5%이고, 그 다음은 40대로 33.9%를 차지하고 있음. 20대와 50대는 각 4.0%와 1.6%로 소수임.
 - 종교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61.6%로 과반수를 넘고, 무교 20.8%임.
 - 건강상태는 보통이 가장 많은 39.7%이고 아픈 편 및 매우 아프다가 합쳐서 40.4%나 되고 있어 이혼여성가구주들이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월평균 수입은 65.26만원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혼관련

- 이혼유형은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71.8%로 대부분이고, 재판이혼은 25.0%를 차지하고 있음.
- 이혼기간은 3년 이하가 가장 많은 64.7%를 차지하고 있고 3-5년 32.8%, 5년 이상 2.5%의 분포임. 평균 이혼기간은 3.52년임.
-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이혼의 원인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58.7%가 지적하였음.
 - 그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성격차이’로 34.9%이었음.
- 전 배우자의 학력은 고졸 및 중퇴가 가장 많은 54.0%이었고, 그 다음이 대졸 및 중퇴로 26.2%를 차지함.
 - 전 남편과의 만나는 빈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78.9%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경제생활

- 이혼 후 경제생활 변화에 있어서는 매우 나빠졌다는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을 합하면 58%가 되어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22.4%에 달하고 있음.
-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월평균 생활비는 81.31만원으로 파악되었음.
 - 이는 이들의 월평균 수입인 65.26만원보다 16만원 가량 많음. 그러나 지원되는 생계비 약 20~40만원을 합하면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임.
 - 생활비 중 부담되는 항목은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로 55.3%가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은 부채 30.1%로 나타났음.
- 경제적 자립 정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60%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립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한 상태임.

□ 취업관련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79.8%로 대부분은 취업하고 있었음.
 - 이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각 33.3%이었음.
- 취업자의 일한 기간은 1~5년 미만이 가장 많은 49.5%이고, 5~10년 미만 25.3%, 10년 이상도 22.2%나 되었음.
 - 직업의 형태는 월급직이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용직 35.1%, 기타 16.5%의 순임. 즉 과반수 이상이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냄.
-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원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전원이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었음.
- 직업생활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저임금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54.6%), 자녀양육문제가 27.8%로 그 다음을 차지함.
- 직업훈련 이수 여부에 있어서는 이수했다는 46.3%, 아니오는 53.7%로

반반을 차지하고 있음.

- 직업 훈련 및 기술교육의 참여자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66.7%이었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과 시간대가 좋지 않음이 각 12.5%로 나타남.
- 원하는 직업훈련의 유형은 컴퓨터 관련이 가장 많았고, 요리 및 제과 제빵 관련, 디자인, 운전, 자동차 정비, 봉제 등 다양한 직종을 원하고 있었음.

□ 자녀양육관련

-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은 55.6%이고 1명은 27.8%이었음. 자녀는 모두 혹은 일부 응답자가 직접 양육하고 있었음(100.0%).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접촉 빈도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60.0%를 차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남 30.0%, 특별한 날에만 만남 10.0%의 순이었음.
-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운 편이거나 매우 가깝다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은 ‘교육비 부족’이 가장 많은 62.3%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습지도로 14.8%이었음.

□ 전반적인 가족생활 변화

- 이혼 후의 어려운 점을 순위대로 두 가지 조사하였는데, 1순위는 ‘경제문제’(80.0%), 2순위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58.2%) 이었음.
 - 2순위로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58.2%)와 주거문제(18.0%)가 지적되었음.
- 이혼 후에 긍정적인 변화로는 가장 많은 응답은 심리적 안정(81.5%)으로 나타나, 이혼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이혼에 대한 후회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91.1%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소수인 8.9%만이 후회한다고 하였음.

□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정도에 있어서는 편견이 많다는 응답이 71.8%를 차지하고 있고, 편견이 적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하여 대부분은 사회가 이혼가족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복지욕구

- 응답자들의 현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비참여가 대부분으로 97.5%를 차지하고 있음.
 - 참여자 중 프로그램의 도움여부는 3분의 1정도 만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인 52.7%가 찬성하고 있어 상담프로그램의 확대 및 홍보가 필요함.
- 이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67.0%로 반대 33.0%보다 더 많았음.
- 재혼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반대하고 있었음.
- 시설 이혼가족의 복지 욕구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 58.4%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자녀양육비 지원’ 31.2%, ‘교육비 지원’ 30.4%의 순이었음.
 - 아울러 자녀의 생활지도,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도 높은 필요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규모 다양화, 이혼가족을 위한 영구 주택 마련, 주거(전세)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였음.
 - 자립토대 마련을 위해서 모자원에서의 거주기간을 더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아울러 모자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었음.

□ 기타

- 시설과 관련하여 전화인터뷰를 통해 만족도,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였음.
 - 시설 거주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 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가 지원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학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와 방과후 교실, 의료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건강문제가 많은데 모자원에서 나오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도 없어져서 퇴소후 병원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음.
 -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미취학자녀 이혼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구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여성과 자녀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모원은 이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보임.

2. 지원 프로그램

- 이혼여성을 위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서 현행 진행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필요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혼가족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상담가 및 이혼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델파이 설문조사와 정책 간담회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음.
 - 조사표는 모자원, 사회복지관, 여성가장희망센터 등의 13개소에 배부하였는데, 수거된 조사표는 5부임.
 -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및 전문가는 사회복지관 이혼여성 담당자, 여성가장희망센터 소장, 이혼관련 변호사 등임.

□ 프로그램 관련

— 주요 프로그램

- 이혼가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여성가구주를 위한 취업지원, 상담, 자조모임 운영, 사례관리, 자녀들을 위한 상담, 학원지원 및 장학금 연계사업, 집단상담, 음악치료, 원예치료, 공부방 운영, 수영강습, 체험학습 등 다양함.
- 한 곳에서는 시범적으로 이혼여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함.

—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여성이혼가족이 삶의 의욕(자존감, 자아 효능감)이 강화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혼가족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되는 것을 지적하였음.

— 프로그램 진행시 애로사항

- 대상자가 스스로 권한을 부여해서 의지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혼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결이 어려운 점,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 이혼가족을 위한 충분한 정책의 부재, 여성을 위한 일자리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연계기관

- 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연계되어 있는 기관은 여성관련기관, 상담소, 동사무소, 여성회, 법률기관,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의료기관, 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의 기관과 관련되어 있음.
- 연계기관간의 협조는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혼가족 정책 개선방안

- 프로그램 상의 개선점은 저소득층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이혼가

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원할 경우 전업주부로도 머물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이혼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낙인감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어 이혼가족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의 한 유형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지적하고 있음.

—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기존의 이혼가족을 위한 법제도 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 아울러 중장년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이혼여성가구주를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3. 요약 및 시사점

— 시설거주 여성이혼가족

-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을 안고 있었음.
- 저소득 시설거주 이혼가족과 전국으로부터 추출한 이혼가족의 삶의 실태는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시설거주 이혼가족은 재가 이혼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고, 주거와 관련하여 시설에의 의존도가 높았음.
- 재가 이혼가족들도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과반수임을 놓고 보았을 때, 이혼가족의 문제는 재가이혼가족이나 시설이혼가족을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음.

— 지원 프로그램

-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이혼가족을 위한 자활, 심리상담, 자녀

교육 및 심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혼가족들이 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및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첫째, 각 이혼관련 기관에서는 이혼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그램이 행사성 위주이고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 둘째,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임.
- 셋째, 이혼가족 대상 기관 간의 조정과 연계가 필요함.
- 넷째, 전반적으로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함.
- 다섯째, 이혼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이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성과 이혼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혼남성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7장 이혼가족 지원정책

1. 경제적 지원 방안

□ 자립, 자활 및 고용지원

- 직업교육 및 훈련 등 자립프로그램 실시
 -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함.
 - 이 기간 중 실제 생계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훈련수당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교육내용의 다양화, 훈련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함.
- 실업가장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실시 확대
 - 취업알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직업훈련과 알선이 유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직업 훈련기관과 기업을 연계한 조직적인 취업알선 네트워크를 구축, 취업 후 사후관리도 시행되어야 함.

— 복지자금 한도 증액 및 대상의 확대

- 용자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 이혼여성가구주 또는 이혼남성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양육비 및 학비 보조의 확대

—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학비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양육비가 실제 아동양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함.

□ 공공부조의 확대 실시

— 차상위계층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시 긴급 생계급여의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

— 향후 이혼 등으로 인한 저소득 편부모가족에게 생계비 및 자립금 지원 수준을 개선하여야 하며,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 이혼가족에 대한 건강서비스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시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노후생활보장

- 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 실시, 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음.
- 여성들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기간 등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장기적인 과제로서 완전히 소득 비례형 연금제도로의 전환 또는 현행의 급여구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편적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 등이 제안될 수 있음.
 - 특히, 이혼여성가구주들은 노후생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생활보장대책 등을 확충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함.

2. 자녀양육 지원 방안

□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및 제도화

- 자녀부양의무·책임 강화에 대한 법규정 마련
 -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명시가 마련되어야 함.
 -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또는 부양 책임에 관한 법적 내용을 아동의 권리로서 아동복지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아동부양법」을 별도로 만들어 부양의무에 관한 양육비 지급, 부양의무 수행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하여야 함.
- 양육비 산정기준의 법제화
 -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함.
 - 재판관의 재량이 아닌 행정적 절차로 양육비 지침에 근거하여 양육비 지급액이 결정되어야 함.
- 양육비 지급이행 방안 모색

- 사전 처분제도의 개선
- 양육비 국가선급제의 도입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제도의 강화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국가의 조력 및 전담기구 설치

□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보육관련 서비스의 제공
 - 보육시설 특히 야간서비스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확충이 요구됨.
 - 어린이집 운영시간대의 연장, 야간탁아소 운영, 그룹홈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
 -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부모대상 양육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의 확대

- 자녀양육 관련 전문상담이 필요하고 부모자녀 간 보다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부모-자녀 상호간 지지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
 - 이혼과정에 있는 자녀양육 관련 갈등중재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3. 법제도 개선 방안

□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 부양적 재산분할의 인정
 - 이혼한 배우자 중 한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이혼 후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경제적

으로 능력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당 기간 부양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부부공동재산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 인정

- 부부별산제의 대안으로 ‘부부공동재산제’의 도입이 고려됨.
- 이혼 시 재산에서 혼인 시 재산을 감한 후 차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반을 나누는 제도인 ‘부가이익공동제’내지 독일의 잉여청산제 적용이 고려될 수 있음.
-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급부제도의 도입

- 현재 형성된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급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향후 보상급부제도를 법제화하여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 연금, 수당을 받을 경우,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기여한 재산에 대해 배분하도록 하여야 함.
- 보상급부 개념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 의미의 새로운 재산권(new property)제도의 도입이 주장됨.
- 이혼시 재산으로서 평가는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연금수혜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혜 등을 현재 획득한 자산들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제도임.

□ 자녀의 권리 보장 측면

— 친권 및 자녀양육권의 지정

- 이혼 시 자녀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 부모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대변자로서 아동발달 및 아동복지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특별대리인’ 선임제도의 마련이 고려됨.

— 면접교섭권 강화

-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전부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음.
-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이나 조항 등이 신설되는 등 법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 불이행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숙려기간 및 상담의 의무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숙려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 중에 있음(2005년 11월 16일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제출됨).
 - 부부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후 문제를 합의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급하게 이혼을 하거나 감정적 판단 하에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이혼숙려기간에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등 이혼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혼의무 상담 제도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함.

4. 주거서비스 지원 방안

□ 주거사용권 인정

-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심리적, 물질적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택의 소유권이나 거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함.

□ 매입임대를 통한 주택서비스 지원

- 최근 들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중단되었고 대신 매입임대제도가 도입됨.
-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시 대기시간, 공간의 협소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함.
-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는 영구임대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함.

□ 한부모 관련 시설 확충 및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 이혼가족의 일시 거주처로서 모자관련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거주기간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함.
- 모자가정이 되기 직전 단계에 있는 예비 모자가정(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남편의 부재로 주거가 불안정한 한 부모)에게도 주거시설이 필요함.
- 부자 이혼가정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가정 보호시설도 확충해야 함.

□ 이혼가족 그룹홈 마련

- 서로 마음이 맞는 소수의 이혼가족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 식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주거안정 지원비, 전세자금 대여

- 주거안정 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등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임.
- 저소득층 이혼가족의 주거 어려움을 실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비, 저리의 전세자금 대여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5.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이혼부모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상담서비스: 이혼가족에게 법적인 내용,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계획, 경제의 관리,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 혹은 양육방법 등과 같은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얻도록 원조하는 데 초점을 둠.

- 이혼 후 적응 교육 프로그램: 이혼 전 1년간 경험한 생활사건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과정을 기본으로 함.
 - 이혼여성 대상 프로그램: 이혼 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권 같은 구체적 법률 정보 및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함.
 - 이혼부모 대상 프로그램: 이혼관련 주제들, 자녀행동 변화 및 적응, 미래문제, 심리적 혼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혼가정의 아동을 위한 심리적인 개입방법
- 이혼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감정을 표출해 낼 수 있고 이의 감정들을 공감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 요인인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아동이 자기 효능감에 대해 인식하고 미래 목표에 대한 의식을 뚜렷하게 해줌으로써 부모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도움.
 - 부재한 부모의 심리적인 지지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멘토 프로그램이나 **big brother**나 **big sister**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함.
- 부모-자녀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가족프로그램
- 가족상담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토록 하고 부모의 적응을 돕고, 양육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 양육태도를 형성하도록 함.

□ 학교를 매개로 한 교육적인 접근

- 이혼가정 환경조사서 등 학교서류양식에 있어 이혼가정에 대한 배려, 학교 내 학교사회사업가를 이용하는 방안 등 이혼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상담전문 인력의 확충 및 상담기구의 활성화

- 이혼 등 위기에 있는 가족 내지 이혼부부와 자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 상담의 접근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혼관련 상담 기구가 마련되어 이혼으로 인한 개인, 이혼자녀 자신의 특수한 문제의 상담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지원의 연계체계 구축

- 이혼가족들을 위한 정보공유 및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들 간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함.

□ 자조집단의 활성화

- 이혼가족에게 있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자조집단의 형성이 필요함.
- 이혼가정 자녀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이혼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자조그룹 운영도 고려할 수 있음.

□ 이혼가족 생활관련 정보지침 매뉴얼 개발 및 제공

- 이혼가족 생활에 필요한 정보지침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이혼가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담기관, 복지관, 모자시설, 구청 등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이들 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방안

- 이혼자 및 이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직 부정적인 편으로 이혼가족이 비정상적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의 하나로 나름

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요구됨.

- 사회, 가족 변화에 맞게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교사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과과정 개발 및 이수가 필요함.

7. 이혼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 방안

이혼예방 프로그램 확충

— 인생설계교육

- 이혼예방을 위해서는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에서 부부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부부간 갈등 처리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성인기 이전 청소년기에 제도권에서 인생설계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학교교육에 편입시키도록 해야 함.

— 결혼준비교육

- 결혼관련 느낌, 가치, 태도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솔직하게 논의하도록 함.

— 가족생활교육

-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이혼과정 지원방안

— 이혼중재 서비스 실시

- 이혼 전 조정제도를 강화하여 회복가능성이 남아있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방지해야 하며,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를 설득하여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이혼 결과에 대한 협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 위기상태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예방을 위한 부부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 지원
 - 이혼과정 속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함.
- 이혼과정 중 주거지원 서비스
 - 이혼소송 등 이혼과정 중에 있는 가족을 위한 소규모의 실제 가정집과 같은 주거지원 서비스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8. 기타: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 남성이혼가족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와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재혼에 대해서 여성보다 더 높은 욕구를 가짐.
-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필요함.
- 이혼남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확충되어야 함.
- 다양한 기관들이 이혼남성의 재혼을 활성화해야 함.

제8장 결론

- 이혼은 이혼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여성의 경우 이혼 후의 소득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혼가족들은 유배우가족들에 비해 주거생활, 직업생활, 자녀관련 등의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있었음.
-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혼가족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 본 고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이혼가족의 가족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막을 수 있는 이혼은 예방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이혼, 그리고 후회 없는 이혼을 하도록 현명한 결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이혼의 결과에 대한 원만한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가족의 복리를 기하여야 할 것임.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어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가족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와 의사보다는 가족 전체의 유지와 결속을 중시하여, 이혼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다.

최근까지 이러한 유교주의적 가족규범은 우리 사회에 잔존하여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어 왔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1.0건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통계청, 2005).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로 보다 진전되면서 핵가족의 증가,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등으로 전통적 가족 중심 가치관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은 서서히 약화되었고, 내재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외연적으로 표출되어, 이는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혼가족의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70년만 해도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0.4건에 불과하였고, 1990년에는 1.1건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혼율 상승은 가속화되어 1997년을 기점으로 조이혼율은 2.0건을 넘게 되었다(통계청, 2005). 지난 27년간 이혼은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혼율은 더욱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2.5건, 2001년 2.9건, 2002년 3.0건, 2003년 3.5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4년에는 조이혼율이 감소하여 2.9건으로 한 해 사이에 21%나 떨어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

다 심층적인 자료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것이나, 일부에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이혼 전에 이혼결정에 대해 재고할 시간을 갖는 이혼숙려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이혼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자수는 14만명(결혼자: 30만명)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혼율('00년: 2.5)은 여전히 2000년도 주요 OECD 국가의 이혼율인 독일 2.4건, 네덜란드 2.4건, 영국 2.6건, 핀란드 2.7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이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이혼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외 이혼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고,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의 역할 혼란 및 적응 문제, 아동 및 노인부양 방치 등 다양한 가족 위기를 발생시킨다. 개인적으로는 이혼자들은 공적 및 사적 지원망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이혼자는 이혼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 이혼은 사회의 유지 및 존속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한편, 이혼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이혼가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 이혼을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의 이혼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며(한경혜 외, 2003), 이혼은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가 합리적인 삶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변화순, 1996). 다만, 이혼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해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된다(변화순, 1997).

이러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고,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극빈층이나 저소득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혼 후 가족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심리적 부적응, 자녀양육

문제, 주거문제 등을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의 삶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혼가족의 사회적 적응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혼가족의 가족기능이 강화되도록 사회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이혼가족이 위기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8장은 서론과 결론이고 제2장에서 제7장까지가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이 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이혼추이로써 혼인율과 이혼율 추이, 이혼사유 및 이혼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이혼율의 증가 현황과 이혼의 유형 등을 파악하였다.

제3장은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혼의 개념과 이혼제도의 변화를 살펴본 후, 이혼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혼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지원, 주거지원, 법제도, 사회·심리적 지원 등으로 나누어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에 대한 법제도, 사회·심리적 지원 방안을 비교적으로 고찰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재가이혼가족의 실태를 제시하였다. 이혼전후의 경제생활 변화

와 유배우가족에 비교한 이혼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였다. 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주거생활,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 가족생활변화, 복지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시설이혼가족의 실태와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시설이혼가족의 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 가족생활변화, 사회적 편견 인식정도, 복지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설이혼가족 실태의 차별화된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혼 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이용 이혼가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연계기관, 이혼가족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문헌고찰과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차원으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지원, 주거지원, 법제도 개선, 심리·사회적 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 이혼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 방안, 기타(남성이혼가족 지원)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이혼의 개념, 원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혼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이혼에 대한 추이변화와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나. 기존데이터 2차 분석

이혼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데이터인 「한국노동패널데이터」(1998~2003)와 「2003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03)를 2차 분석하였다. 두 원자료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서 재가 이혼가족의

경제생활 변화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데이터」^{주1)}를 이용하여서는 남성과 여성 이혼가족의 이혼이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주2)}를 통해서도 재가이혼가족과 유배우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비교하였다. 이혼가족의 일반적 특성, 이혼 후의 경제적 지위변화, 주거생활, 가치관, 경제활동, 복지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두 데이터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기술분석(빈도 및 평균 등), 교차분석, t test, ANOVA,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다. 사례조사

실태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파악하였다. 이혼과정상의 어려움, 사회·심리적 및 건강 문제, 사회적 편견,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지원을 원하는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이혼자 10사례를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뷰와 전화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주1)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의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회씩 조사를 실시하며, 2005년 현재 2003년 6차 조사 자료까지 사용가능하다. 조사의 주요 항목은 가구특성, 가계경제, 보육현황, 경제활동상태, 고용관련사항 등이다(자세한 사항은 방하남 외, 2002 참조).

주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관련조사는 1960년대부터 2003년까지 총 17회가 이루어졌다. 1964년에 최초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 3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의 성격은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 함께 그 특징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출산력, 가족계획관련 보상 및 홍보 등 인구억제정책 중심이었는데, 1990년 이후에는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오히려 출산력 저하가 우려되어 조사의 방향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3년도 조사의 경우 임신 및 출산 행태, 피임행태, 인공임신중절, 가족 및 자녀가치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가족보건 및 복지영역에서 주요한 모자보건실태와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김승권 외, 2003 참조).

라. 실태조사 및 델파이조사

시설거주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 가족생활변화, 사회적 편견 정도, 희망 지원사항 등이다.

또한 이혼 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하여 이혼가족의 지원 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 연계기관, 이혼가족 정책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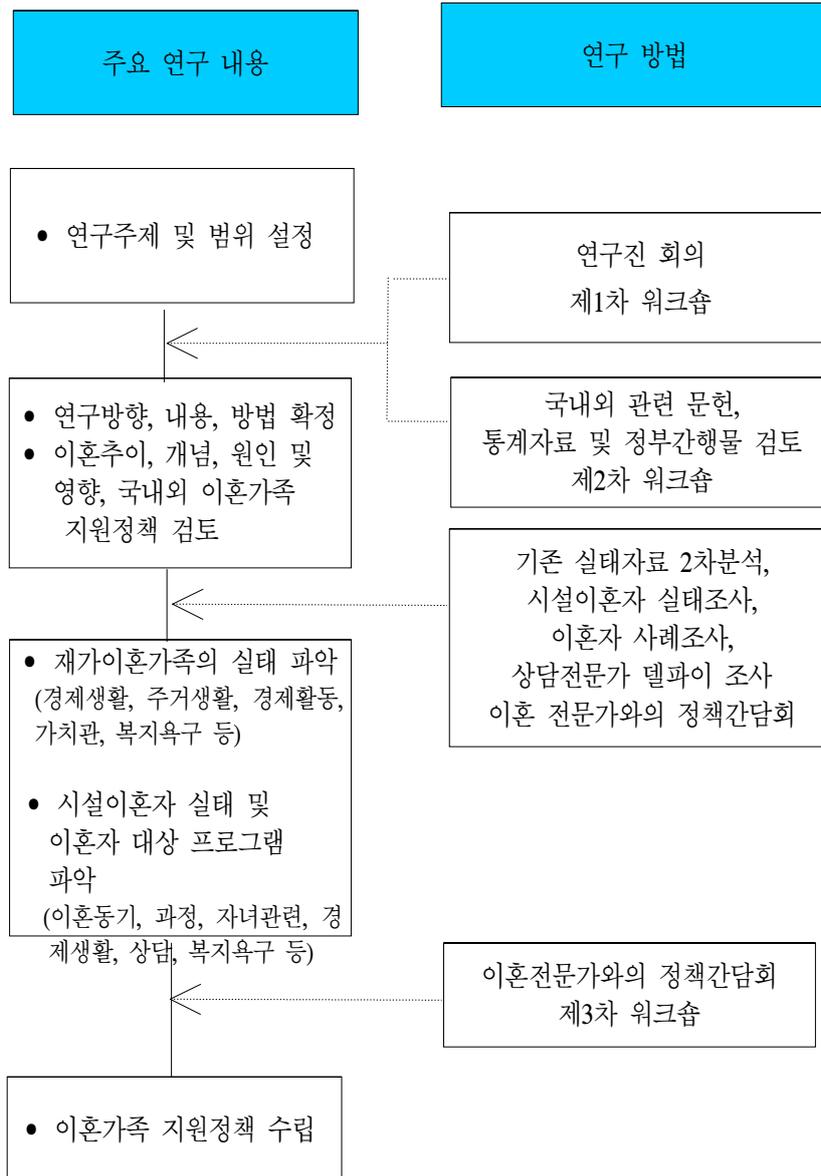
마.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 2차례에 걸친 정책자문회의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는 이혼상담전문가, 변호사, 이혼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이혼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현 지원정책실태 및 문제점, 향후 지원개선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서 원외 및 원내 전문가와의 총 3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차 워크숍은 연구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고, 2차 워크숍은 연구내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연구를 위한 개선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마지막 3차 워크숍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보완점과 보고서 전체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 3절 분석대상 및 연구의 한계

그동안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연구는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과 전국적인 조사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한계가 많았다. 이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혼의 원인(권귀숙 1998; 이현송 1997), 이혼 후 적응문제나 자녀양육 및 부모의 역할(장혜경 외, 2002), 이혼에 대한 태도(한경혜 외, 2003),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두어왔다(성정현, 1999; 이여봉, 2003; 장혜경 외, 2002).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조사나 유의적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이혼가족의 실태를 고찰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이혼가족을 전반적인 정책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실태조사 재분석, 사례조사, 실태조사, 델파이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와 관련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노동패널데이터」는 경제생활에 대한 이혼가족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익하였으나, 이혼가족의 경제생활 이외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2003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이혼가족의 전반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여성의 출산율 파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혼의 원인과 과정, 이혼 후 삶의 변화 및 문제점 등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이 15세에서 59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가족인 60세 이상 이혼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일부 항목에서는 남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시설거주 이혼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대상의 폭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저소득 여성이혼가족에 국한되어 일반여성이혼가족이나 남성이혼가족의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성 이혼가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례수가 적어서 연구 결과를 전체 이혼남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이혼가족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국 데이터에 대한 2차자료 분석외에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조사, 남성을 포함한 이혼가족 사례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우리사회 이혼가족의 삶을 보다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제 2 장 한국의 이혼추이

제 1 절 혼인율 및 이혼율 변화

1. 혼인율과 이혼율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약화를 혼인율의 감소추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1>에 제시하였듯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70년에는 9.2건에서 1975년 8.0건으로 감소하다 1980년에는 10.6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5년에는 9.2건, 1990년 9.3건, 2000년 2.5건, 2004년 6.4건으로 감소하였다. 2004년 조혼인율(6.4건)은 9년 전인 1995년의 8.7건보다 2.3건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부터 꾸준히 6.4건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³⁾는 한 해 동안 310,944쌍이 혼인하여 2003년에 비해 6,012쌍이 증가하였다. 이는 1일 평균 약 852쌍이 혼인한 셈이 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혼인이 증가한 이유는 재혼이 많이 늘고 외국인과 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통계청, 2005).

혼인율과 달리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00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었다가, 2004년에는 감소하였다. 특히 조이혼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조이혼율은 0.4건이었는데, 1980년에는 0.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1990년 1.1건, 1995년 1.5건,

주3) 주요 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의 읍면사무소 또는 시·구청에 신고한 혼인 및 이혼신고서의 인구동태 항목을 수집하여 기초로 집계한 결과이다(통계청, 2005).

2000년 2.5건, 2003년 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2-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단위: 건, %)

연도	결혼수	이혼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결혼에 대한 이혼율
1970	295,137	11,615	9.2	0.4	3.9
1975	283,226	16,453	8.0	0.5	5.8
1980	403,031	23,662	10.6	0.6	5.8
1985	376,847	38,838	9.2	1.0	10.3
1990	399,312	45,694	9.3	1.1	10.8
1995	398,484	68,279	8.7	1.5	17.1
1996	434,911	79,895	9.4	1.7	18.0
1997	388,591	91,159	8.4	2.0	23.4
1998	375,616	116,727	8.0	2.5	31.1
1999	362,673	118,014	7.7	2.5	32.5
2000	334,030	119,982	7.0	2.5	35.9
2001	320,063	135,000	6.7	2.8	42.2
2002	306,573	135,014	6.4	3.0	44.0
2003	304,932	167,096	6.4	3.5	54.8
2004	310,944	139,365	6.4	2.9	44.8

주: 1)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CMR): 1년간 발생한 총 온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2)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CDR):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3) 결혼에 대한 이혼율 = (이혼건수 ÷ 결혼건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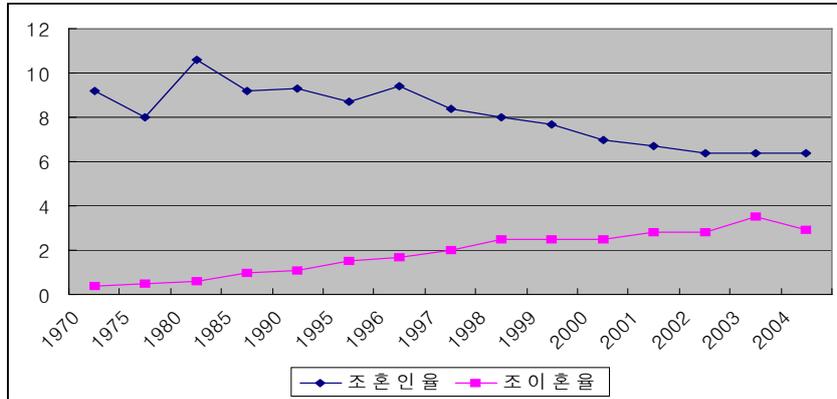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결혼대비 이혼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3.9%에서 2003년에는 54.8%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결혼한 부부의 반이 이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로 이혼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적절한 이혼율 산정방식으로 특정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로 나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

고 있다(법원행정처, 2004).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2002년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9.3%에 불과하여(이혼횟수: 262만3천659건, 혼인횟수: 2천815만6천405건), 부부 11쌍 중 1쌍이 이혼한 셈이 된다(결혼 대비 이혼율: 44.0%). 따라서 이혼율의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2-4 참조).

[그림 2-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단위: %)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한편, 2004년에는 조이혼율이 2.9건으로 떨어져서 전년에 비해 0.6건이나 감소하였다. 이혼건수로는 무려 16.6%나 줄어들었다(표 2-2, 그림 2-2 참조). 2004년도에 이혼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혼숙려제도 같은 새로운 제도가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가 아직 역사적으로 짧아서 그 결과를 검증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면이 있으므로,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2-2>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증감

(단위: 천건,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이혼건수(천건)	65.0	68.3	79.9	91.2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증감(천건)	5.7	3.3	11.6	11.3	25.6	1.3	2.0	15.0	10.3	21.8	-27.7
증감률(%)	9.6	5.1	17.0	14.1	28.0	1.1	1.7	12.5	7.6	15.0	-16.6
조이혼율(건)	1.4	1.5	1.7	2.0	2.5	2.5	2.5	2.8	3.0	3.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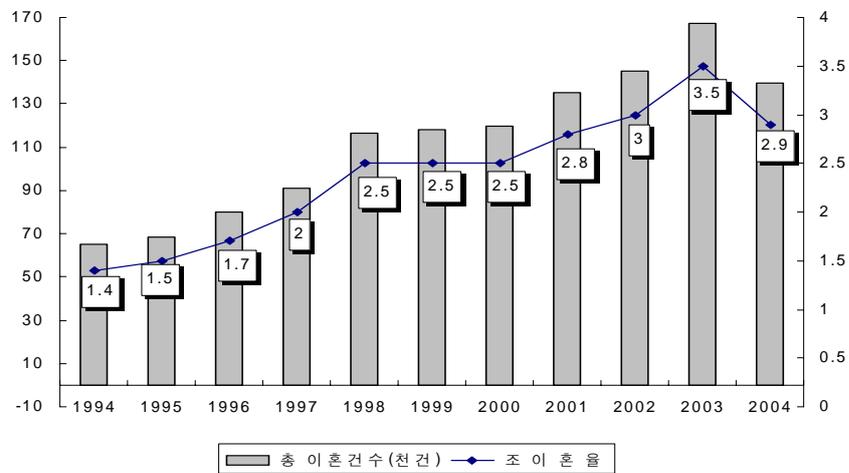
주: 이혼이 감소한 연도 : 71년(-2.2%), 78년(-2.7%), 79년(-13.0%), 88년(-0.6%)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그림 2-2]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천건)

(인구 1천명당 건)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유배우 이혼율(Divorce Rate of Married Couple)은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 유배우 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표 2-3>에 제시되었듯이, 200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유배우 인구와 비교하여 계산한 유배우 이혼율은 5.8건(쌍)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그림 2-3 참조). 즉, 우리나라 전체 부부 중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1.16%가 이혼하였다(유배우자 100명당 0.58쌍 이혼).

<표 2-3> 유배우 이혼율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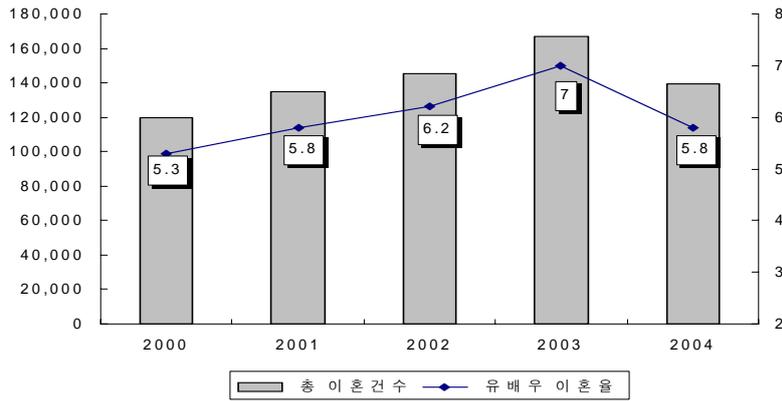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이혼건수	119,982	135,014	145,324	167,096	139,365
유배우 이혼율	5.3	5.8	6.2	7.0	5.8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그림 2-3] 유배우 이혼율 추이

(건)

(유배우 1천명당 건)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2004년도의 이혼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2004년 한해 14만 쌍이 이혼하여, 1일 평균 448쌍이 이혼하는 셈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2-4>에 제시되었듯이 2000년도의 OECD 국가 중 벨기에의 이혼율은 2.6건, 덴마크 2.7건, 독일 2.4건, 프랑스 2.0건(1999년), 네덜란드 2.2건, 영국 2.6건 등으로 우리나라의 2000년도 이혼율 2.5건과 비슷한 수치이다.

<표 2-4> OECD 국가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2000)

(단위: 건)

국가	조혼인율	조이혼율
벨기에	4.4	2.6
덴마크	7.2	2.7
독일	5.1	2.4
그리스	4.3	0.9
스페인	5.3	1.0
프랑스	5.2	2.0(1999)
아일랜드	5.0	0.7
이태리	4.9	0.7
룩셈부르크	4.9	2.3
네덜란드	5.5	2.2
오스트리아	4.8	2.4
포르투갈	6.2	1.9
핀란드	5.1	2.7
스웨덴	4.5	2.4
영국	5.1	2.6
한국	7.0	2.5

자료: Euro Statistics,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장혜경·민가영, 『이혼 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2002, p.25에서 재인용.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 등을 통한 가족 및 개인생활과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후발국인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러한 국가와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사회경제적인

발전 속도에 비해서 빠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혼율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이혼문제는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특이한 다른 점은 조혼인율이 높다는 점이다. 2000년도 덴마크의 7.2건을 제외하고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조혼인율이 4.0건에서 6.0건의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0건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혼인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OECD 국가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여 가족을 이루는 비율이 많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높아서 이혼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혼인율과 이혼율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고, 지면의 한계상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 초혼 및 이혼연령

이혼연령을 살펴보기에 앞서 결혼하는 연령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5 참조). 1995년에는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4세, 여성은 25.4세이었는데 2000년에는 남녀 각 29.3세, 26.5세로 상승하였고, 2004년에는 남성 30.6세와 여성 27.5세로 증가하였다. 즉 결혼 연령이 점차적으로 늦어짐을 알 수 있다.

〈표 2-5〉 평균초혼 연령

(단위: 세)

연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성	28.4	28.9	29.1	29.3	29.6	29.8	30.1	30.6
여성	25.4	26.1	26.3	26.5	26.8	27.0	27.3	27.5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평균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라 평균 이혼연령도 1990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 까지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는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36.8세, 여성 32.7세이었는데, 1998년 남성 39.8세, 여성 36.1세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남성 40.1세, 여성 36.6세, 2004년 남성 41.8세, 여성 38.3세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결혼연령이 늦어짐과 함께 이혼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평균이혼 연령

(단위: 세)

연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성	36.8	38.3	39.8	40.0	40.1	40.2	40.6	41.3	41.8
여성	32.7	34.5	36.1	36.4	36.6	36.7	37.1	37.9	38.3
차이	4.1	3.8	3.7	3.6	3.5	3.5	3.5	3.4	3.5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3. 성별 초혼 및 재혼율

이혼과 관련해서는 재혼율(재혼건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혼에 앞서 초혼을 살펴보면 성별 초혼의 비율과 건수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의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남자의 경우의 1995년 89.3%(356.0천건)에서, 2000년 86.7%(289.5천건), 2004년 81.2%(252.5천건)로 감소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는 1995년 89.3%(355.8천건)에서 2000년 85.2%(284.7천건), 2004년 78.9%(245.2천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2-7 참조).

반면 재혼의 경우는 남녀 모두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여성의 증가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남자의 경우는 재혼비율이 1995년 10.0%(39.8천건)에서 2000년 13.1%(43.6천건)로, 2004년에는 18.2%(56.7천건)로 상승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1995년 10.0%(39.8천건)에서, 2000년 14.5%(48.3천건)로, 2004년 20.4%(63.6천건)로 남성보다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은 초혼에 머무는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여성은 이혼 후 재

혼에 이르는 비율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성별 초혼 및 재혼건수와 비율

(단위: 천건, %)

연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398.5	375.6	362.7	334.0	320.1	306.6	304.9	310.9
남자	초혼	356.0	331.8	315.2	289.5	272.1	258.5	253.3	252.5
	재혼	39.8	43.4	46.5	43.6	46.9	47.2	50.2	56.7
여자	초혼	355.8	328.5	311.0	284.7	266.4	253.0	247.6	245.4
	재혼	39.8	46.8	50.6	48.3	52.5	52.6	55.8	63.6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	초혼	89.3	88.3	86.9	86.7	85.0	84.3	83.1	81.2
	재혼	10.0	11.6	12.8	13.1	14.7	15.4	16.5	18.2
여자	초혼	89.3	87.4	85.8	85.2	83.2	82.5	81.2	78.9
	재혼	10.0	12.5	14.0	14.5	16.4	17.2	18.3	20.4

주: 계에는 미상포함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4. 연령별 이혼율

다음에서는 이혼이 주로 어떠한 연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연령별 남녀 일반이혼율(15세 이상 이혼율, 인구 1,000명당)을 보면 1990년에서 2004년에 이르기까지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년도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남자 및 여자의 경우 모두 30~34세와 35~39세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아울러 40~44세의 이혼율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45~49세의 이혼율은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0년에는 남성의 경우 3.1건이던 것이 1998년에는 10.0건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0.1건, 2004년 11.4건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1990년 1.7건, 1998년, 6.2건, 2000년 6.6건, 2004년 8.6건으로 나타났다.

〈표 2-8〉 연령별 남녀 일반이혼율

(단위: 인구 1000명당 건수)

연령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일반이혼율	-	-	3.9	3.9	6.4	6.3	6.4	6.3	6.4	6.3	7.2	7.0	8.7	8.6	7.2	7.1
15~19세	0.0	0.1	0.0	0.1	0.0	0.2	0.0	0.2	0.0	0.2	0.0	0.3	0.0	0.2	0.0	0.2
20~24세	0.6	2.4	0.6	2.4	1.0	3.4	0.9	3.3	0.9	3.4	1.0	3.6	0.9	3.3	0.8	2.9
25~29세	3.7	6.4	3.6	6.8	4.9	9.5	4.9	9.4	5.0	9.7	5.6	10.8	5.7	11.8	4.5	9.5
30~34세	6.2	6.4	7.1	8.5	10.2	12.7	9.9	12.4	10.0	12.3	11.2	13.8	13.0	16.8	10.4	13.8
35~39세	6.2	4.9	8.1	7.6	12.7	12.9	12.4	12.9	12.2	12.6	13.6	14.1	16.3	16.9	13.4	13.9
40~44세	5.0	3.0	7.5	5.3	12.6	10.2	12.4	10.4	12.2	10.5	13.4	11.7	16.3	14.7	13.2	12.2
45~49세	3.1	1.7	5.6	3.0	10.0	6.2	10.1	6.4	10.1	6.6	11.1	7.3	13.6	10.3	11.4	8.6
50~55세	1.1	0.4	3.4	1.6	6.9	3.6	7.1	3.8	7.0	3.7	7.5	4.1	10.0	6.0	8.4	5.3
55세 이상			0.6	0.2	2.4	0.7	2.5	0.8	2.5	0.8	2.7	0.9	3.8	1.3	3.3	1.2

주: 1) 1990년의 자료는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여성개발원, 2002)」 자료 중 통계청(2002), 「2001년 혼인·이혼통계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자료에서는 50~55세 구분없이 50세 이상으로 분석하였음.

2) 일반이혼율(General Divorce Rate) = (연간 이혼건수 ÷ 15세 이상 인구) × 1,000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최근에는 60세 이상의 노년이혼(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 한국의 이혼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노인이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노년이혼 전체의 주요한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김미숙 외, 2002).

5. 동거기간별 이혼율

동거기간별 이혼정도에 있어서는 1990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동거기간 0~4년의 경우가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동거기간 0~4년의 이혼율은 1990년 39.5%에서 2004년 25.2%로 대폭 감소하였고, 동거기간 5~9년 사이의 이혼율은 1990년 29.1%에서 2004년 22.9%로 약간 감소하여 동거기간 0~4년 부부간의 이혼율에 근접해 있다(표 2-9 참조). 눈에 띄는 것은 동거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율

에 있는데, 1990년 5.0%에서 2000년 14.3%로 대폭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계속 증가하여 18.3%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15~19년간의 동거한 경우의 이혼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7.9%에서 2000년 14.3%, 2004년 18.3%를 보이고 있다.

〈표 2-9〉 동거기간별 이혼율

(단위: %)

동거기간	1990 ¹⁾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4년	39.5	32.6	29.4	29.2	29.3	28.2	26.9	24.6	25.2
5~9년	29.1	25.1	23.3	22.8	22.3	23.0	23.2	23.1	22.9
10~14년	18.2	20.6	19.2	18.9	18.7	19.0	19.4	19.6	18.9
15~19년	7.9	13.1	15.5	15.6	15.3	14.8	14.7	14.9	14.7
20년 이상	5.3	8.2	12.4	13.5	14.3	14.9	15.7	17.8	1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990년 자료: 통계청, 「2002혼인·이혼통계결과」, 2003.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이러한 현상은 이혼이 결혼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추이에서 벗어나서 모든 동거기간에서 골고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만큼 모든 동거기간에서 이혼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나타내준다. 과거에는 자녀가 이혼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최근에 올수록 자녀보다는 부부간의 만족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만족도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해혼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6. 지역별 이혼율

지역별 조이혼율에 있어서는 2004년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2.9건이고, 인천이 가장 높은 3.7건이고, 제주도 3.2건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3.1건, 경기 3.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이혼율이 가장 낮은 2.4를 보이고 있다(표 2-10 참조). 이는 지역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혼율이 낮고, 여성의 수가 많거나 인구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서의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제한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2-10〉 지역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건, 인구 1천명당 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국	119,982	2.5	135,014	2.8	145,324	3.0	167,296	3.5	139,365	2.9
서울	25,477	2.5	28,962	2.8	29,351	2.9	32,499	3.2	26,994	2.7
부산	10,129	2.7	10,489	2.8	12,065	3.2	14,120	3.8	11,334	3.1
대구	5,370	2.1	6,248	2.5	7,329	2.9	8,581	3.4	6,635	2.6
인천	7,905	3.1	9,378	3.7	9,840	3.8	11,512	4.5	9,546	3.7
광주	3,052	2.2	3,534	2.6	3,732	2.7	4,336	3.1	3,558	2.5
대전	3,653	2.7	4,058	2.9	4,336	3.1	4,923	3.5	3,942	2.7
울산	2,620	2.5	2,983	2.8	3,348	3.2	3,942	3.7	3,024	2.8
경기	24,888	2.7	28,823	3.1	31,288	3.2	36,625	3.6	31,608	3.1
강원	3,941	2.5	4,488	2.9	4,632	3.0	5,152	3.4	4,322	2.8
충북	3,348	2.2	3,928	2.6	4,259	2.8	4,632	3.1	3,839	2.6
충남	4,272	2.2	4,65	2.4	5,074	2.7	5,720	3.0	5,148	2.7
전북	4,200	2.1	4,550	2.3	5,179	2.6	6,295	3.2	5,086	2.6
전남	4,467	2.1	4,793	2.3	5,296	2.6	6,078	3.0	4,915	2.5
경북	5,476	2.0	6,248	2.2	6,683	2.4	7,768	2.8	6,376	2.4
경남	7,242	2.3	7,966	2.6	8,737	2.8	10,314	3.3	8,547	2.7
제주	1,763	3.3	1,721	3.2	1,962	3.6	2,177	3.9	1,777	3.2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7. 이혼시 미성년자녀 유무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율은 1990년 65.6%, 1995년 71.4%로 증가하다 2000년 70.4%로 2004년 65.5%로 감소하였다(표 2-11 참조).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의 이혼율은 지난 14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1990년의 비율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는데, 1990년 34.4%에서 1995년 28.6%로 감소하다가, 2000년에는 29.6%로 증가하였고, 2004년 34.5%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관련해서 자녀가 2명인 경우의 이혼율이 1명이나 3명이상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동거기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동거기간이 짧은 경우 이혼을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 올수록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 이혼자가 증가하여 이러한 부부의 경우 자녀 수도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2-11〉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단위: %)

연도	1990 ¹⁾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있음	65.6	71.4	71.8	71.2	70.4	70.3	69.7	68.4	65.5
1명	30.0	32.9	31.7	31.9	31.8	31.2	30.0	28.6	28.1
2명	30.0	32.9	35.5	34.9	34.2	34.6	35.0	34.9	32.7
3명 이상	5.6	5.6	4.6	4.4	4.4	4.5	4.7	4.9	4.7
자녀 없음	34.4	28.6	28.2	28.8	29.6	29.7	30.3	31.6	34.5

주: 1990년 자료 : 통계청, 『2002혼인·이혼통계결과』, 2003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제 2 절 이혼의 사유 및 유형 변화

1. 이혼사유

이혼사유별 이혼에 있어서는 ‘부부불화’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부부불화는 1990년 84.9%에서, 2000년 74.4%로 감소하였고, 2003년 69.9%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2004년 70.6%)이다(표 2-12, 그림 2-4 참조).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1990년 2.0%에서, 1998년 6.6%, 2000년 10.7%, 2003년 16.4%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14.7%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혼의 사유로 다양한 이유인 기타의 경우는^{주4)}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1990년 11.6%, 1998년 11.8%, 2000년 14.0%, 2004년 14.1%의 분포이다.

<표 2-12> 이혼사유별 이혼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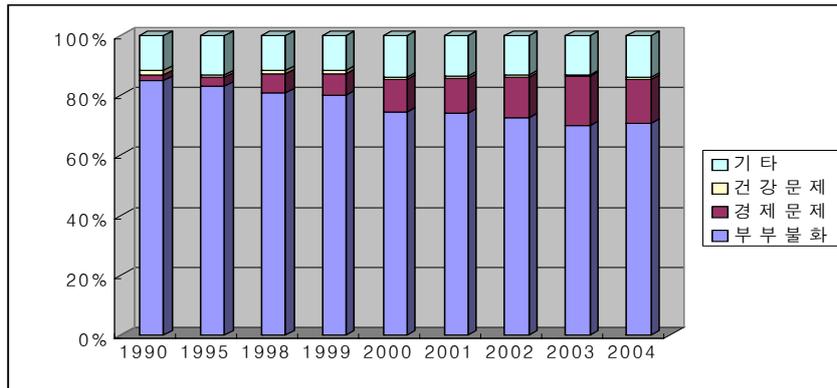
(단위: %)

이혼사유	1990 ¹⁾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부불화 (가족간 불화 포함)	84.9	83.0	80.7	80.2	74.4	74.0	72.5	69.9	70.6
경제문제	2.0	2.9	6.6	7.0	10.7	11.6	13.6	16.4	14.7
건강문제	1.5	1.0	0.9	0.9	0.9	0.7	0.6	0.6	0.6
기타	11.6	13.1	11.8	11.9	14.0	13.7	13.3	13.1	1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990년 자료 - 통계청, 「2001혼인·이혼통계결과」, 2002.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그림 2-4] 이혼사유별 이혼 구성비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부부불화를 세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표 2-13>에 제시되었듯이, 가장 많은 이유는 ‘성격차이’로 2000년부터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2000년 40.1%, 2004년 49.4%). 그 다음이 가족간 불화인데, 이는 2000년 21.9%에서 2004년 10.0%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정자 외(2005)는 서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성격차이에 포함된 공통된 내용들은 부

주4) 기타의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청 자료에 제시되지 않아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부간의 단순한 각자 성격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 가족문화의 차이, 성격특성에 따른 부조화, 성생활 문제, 경제운용방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2-13〉 부부불화의 세부항목 구성비율

(단위: %)

부부불화	2000	2001	2002	2003	2004
배우자 부정	8.1	8.7	8.6	7.3	7.0
정신·육체적 학대	4.3	4.7	4.8	4.3	4.2
가족간 불화	21.9	17.6	14.4	13.0	10.0
성격차이	40.1	43.0	44.7	45.3	49.4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혼이 가족의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주관적 가치’의 차이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김병찬, 1997).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초현대적 이혼현상’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장현섭, 1995). 경제문제에는 경제파탄, 맞벌이 강요, 낭비, 혼수문제들이 연관되고, 건강에는 신체결함, 질병 등이 포함된다.

2. 이혼유형

이혼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안될 경우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결혼을 소멸시키는 재판이혼이 있다(김미숙 외, 2002). 이혼종류별 이혼 건수에 있어서는 1993년에서 2004년에 이르기까지 협의이혼이 대부분인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재판이혼은 20% 미만을 보이고 있다(표 2-14, 그림 2-5 참조).

아울러, 협의이혼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재판이혼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현재 이혼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감정에 휩싸여서 철저한 이혼에 대한 숙고없

이 이혼절차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장혜경·민가영, 2002).

〈표 2-14〉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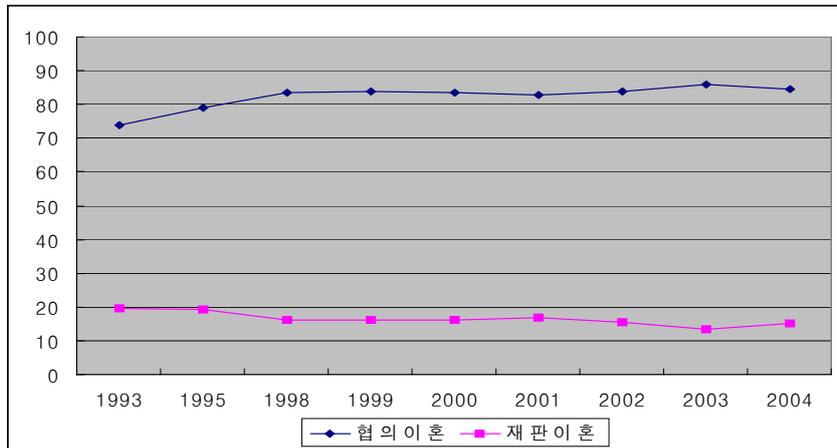
(단위: 천건, %)

연도	1993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59.3	68.3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협의이혼	43.9	54.1	97.6	98.9	100.2	111.7	121.9	143.6	117.6
재판이혼	11.6	13.0	19.1	18.9	19.2	22.6	22.7	22.3	21.0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협의이혼	73.9	79.2	83.6	83.8	83.5	82.7	83.9	85.9	84.4
재판이혼	19.6	19.1	16.3	16.0	16.0	16.8	15.6	13.4	15.1

주: 계에는 미상 포함.
 자료: 1) 1993년: 통계청, 『2002 혼인·이혼통계결과』, 2003.
 2) 1995년 이후: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그림 2-5〕 이혼종류별 이혼 구성비

(단위: %)



자료: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3.

제 3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이혼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4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더욱이 선진국의 경우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는 세계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사회에서의 혼인율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화 후발국인 동양권의 우리나라 이혼율 추이는 산업화를 먼저 겪은 서구 선진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혼인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로 보면 30~40대의 이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거기간별로 보면 신혼기의 이혼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모든 연령대, 특히 15년 이상 동거한 경우의 이혼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자녀 때문에 참고 산다는 관념이 사라지고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등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노년기 이혼도 급증하여 한국의 이혼의 특성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은 인천, 제주 등지에서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적인 가치가 지배적이라고 보여지는 경북의 경우는 이혼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혼의 주요 이유는 부부간의 불화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부부간의 불화 중에서 성격차이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고, 이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부간의 불화 외에도 경제문제도 빠르게 증가하는 이혼사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의 원인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혼 종류에 있어서는 협의이혼은 증가하고 재판이혼은 감소하고 있다. 즉 이혼은 대부분 부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혼의 절차가 너무 간소화되어 이로 인해 이혼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혼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3장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혼의 개념과 이혼제도의 변화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혼인해소의 원인은 부부 한쪽의 사망, 실종, 이혼이 있는데, 앞의 두 가지는 자연적인 혼인의 소멸 원인인데 비해, 이혼은 인위적인 혼인의 법정소멸이다(엄영진, 1998). 법률상 이혼이란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정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질 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합의이혼 또는 협의상 이혼이라고도 한다. 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발생하여 부부 중 한 쪽은 이혼하려고 하고, 나머지 한 쪽은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이종한·이윤희, 2000). 대부분의 이혼은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이혼제도의 변화

이혼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혼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김미숙 외, 2002). 이혼법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유책주의란 누가 결혼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

준 것이고, 파탄주의란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파탄에 이른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혼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유책의 원인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배우자 일방에 의한 혼인생활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범법행위, 즉, 간통, 잔인한 행위, 유기 등이다.

현재 세계적인 이혼관련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수자, 2000).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3)에 의하면 2003년 한 해 동안 이혼관련 상담 건수 3,972건 중 45.8%가 파탄주의의 사유에 해당하고, 유책의 경우는 부당대우 25.5%, 부정행위 17.5%, 악의의 유기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혼제도는 여러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이혼과 관련된 법은 일제 치하에 일본 민법의 도입으로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남녀 불평등한 법으로 남편이 부인을 자유롭게 버리는 협의이혼제도이었다(김만웅, 2004).

그러던 것이 1960년부터 시행된 가족법에 의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되었고, 1963년에는 호적법이 개정되어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하여, 이혼신고서의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리하도록 하였다. 1977년에는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가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김상용, 1996).

1990년 민법 하의 가족법이 개정되어 이혼과 관련하여 대변화가 일어났다. 가족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혼 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권, 이혼 후의 모의 친권 인정 등이 새로 신설되었다.주5) 이와 더불어 최근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새호적법이 제정되면 호주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성도 자녀를 입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혼율이 상승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호주제는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2005년 폐지 공표이후 이혼가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호주제 폐지 이

주5) 자세한 법의 내용은 4장에서 소개하였다.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 될 수 없었다.^{주6)}

따라서 자의 부가입적과 부자동성원칙은 이혼한 여성가정의 호적상 불합리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모자가구의 자녀가 성씨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가져오는 문제를 초래했다. 호주제 폐지안은 이혼 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이혼의 원인

20세기 후반에 들어 서구 산업사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선두에 섰던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이혼 확률이 50%에 다다르게 되면서 증가세를 멈추게 되었으나, 학자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엄청난 풍요의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의 경우 앞으로 3분의 2가량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치를 내놓기까지 하였다(Martin and Bumpass, 1989).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1990년대에 들어 이혼율이 급속히 높아지기 시작해 이혼율로만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라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형편에 달했다.

이렇게 이혼이 일반화되면서 이혼의 원인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게 되어 이러한 연구들을 훑어보면 이제 일부의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요인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듯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이혼의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혼의 원인

주6) 호주제에 관한 사항은 4장을 참고할 것.

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 혹은 기타 서구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금기도 높아서 신뢰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이 이혼에 관한 연구를 더디게 하였다.

이혼의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하나는 거시적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왜 어떤 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는가 하는 질문은 누가 왜 이혼하는가 하는 질문과는 상이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전자 즉 사회적 변화로서 이혼의 증가를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이는 사회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하여 서로 다른 사회 간에 비교하거나 혹은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과거에 비해 현재에 달라진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왜 이혼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혼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결혼관계가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는가 하는 질문은 흔히 이혼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을 밝히는 작업에 속한다. 대부분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이혼의 원인관련 연구는 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셋째는 이혼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이혼의 당사자가 보는 결혼 생활 및 이것이 파탄난 이유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20대 이전에 결혼하게 되면 이혼의 위험성이 많은데 이것은 위의 두 번째의 이혼의 결정요인에 속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한 부부가 서로 자주 다투다 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이혼의 이유는 결혼생활의 갈등과 부정행위가 이혼 당사자가 ‘왜 이혼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이다.

이 세 단계의 이혼의 원인 혹은 이유는 각각 이혼의 발생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혼을 예방 혹은 개입하려고 할 때 서로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한다. 사회구조적 변화로서 이혼은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구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으로서 이혼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이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단기적 개입을 위

하여 필요한 지식이다. 이혼 당사자가 이해하고 있는 이혼의 이유는 사실 이혼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이혼에 대한 주관적 접근으로 사람들에게 결혼생활 및 이것이 파탄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이 파탄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런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지침을 준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 현상의 경우 행위자의 의지와는 별도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의 가능성이 결정되는 부분이 크므로 사회문제를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에서는 서양 및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이러한 세 단계에서 이혼의 원인과 이유를 정리하였다.

1. 사회구조적 변화

서구사회에서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통사회의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흔들려 놓아 이혼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와 이혼 증가간의 정의 관계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산업화되었거나 혹은 전개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 사회의 규범을 무너트리고 사회적인 통제를 약화시켰다. 과거 친족과 이웃의 감시와 감독이 도시사회의 익명성 속에서 사라지면서 사회적인 결속을 약화시키고, 결혼관계가 갈등에 처하는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찾아온 개인주의의 확대는 이혼 증대를 초래한 또 다른 기여 요인이다(Lesthaeghe, 1983). 핵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개인의 이익과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고 결정하는 개인주의는 친족과 지역 사회와의 의존관계를 탈피하여, 핵가족의 일과 결정은 핵가족 구성원들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성을 높인다. 한편 개인주의는 핵가족 단위로부터 한 단계 더 진전하여 이제 구성원들 개개인의 이익과 관심이 결정의 기본축이 되도록 하는 단계로 전개

되었다. 결과 독립된 가족 구성원내의 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부부간에 상존하게 됨으로서, 갈등 발생의 개연성을 높이고 결국 이혼으로 귀결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이현송, 2003).

한편 20세기 후반에 확산된 여권주의(feminism) 가치관은 교육수준의 상승과 함께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독립적인 자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져왔으며 경제활동의 확대를 동반하였다. 이렇게 독립적인 자아와 경제 기반의 확보는 불행한 결혼을 쉽게 종결시키게 하는 촉매제가 되어, 가부장적인(patriarchy)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남성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을 낳았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하여 사회적인 규범과 태도가 변한 것 또한 이혼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당시에는 이혼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했는데 무과실 이혼법(no-fault divorce law)을 도입하여 부부 당사자만 합의하면 언제 어떤 사유로라도 이혼이 가능하게 법제화한 것이라든지, 혹은 이혼에 대하여 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완화된 것이 이혼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과 의식은 행위와 현상이 먼저 일어난 후에 뒤따라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점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게 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Parkman, 1992).

요컨대 이혼의 증가는 산업화, 도시화, 교육 수준의 상승, 개인주의의 확대 등을 동반하는 근대화의 결과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근대화했던 혹은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예외 없이 이혼율이 높아짐이 목도되었다.

2. 인구 사회경제적 요인

서구에서 대부분의 이혼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추구하는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사람이 이혼하게 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교육·직업·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여부, 초혼연령, 혼전 임신 및 출산 여부,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인종, 종교 등이 이러한 연구

들에서 제시되는 이혼의 주요 설명 변수들이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러한 이혼의 결정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는 출산력 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현송(1997)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이연주(Lee, 2005)의 연구 정도이다. 다음에서는 서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된 각각의 요인에 대한 기존의 발견과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가. 인구학적 요인

이혼의 원인과 관련하여 인구학적 요인들은 서구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초혼 연령과 혼전 임신 및 출산 여부가 지적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할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며, 결혼 생활도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혼이 파멸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결혼 적령기를 크게 벗어나 결혼할 경우 이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 나이에 결혼 할 경우 이 위험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이현송, 1997, Lee, 2005). 혼전 임신 혹은 출산의 경우 혼인 연령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즉, 혼전 임신 혹은 출산으로 출발한 결혼 생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결혼과 비교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혼하게 되므로 이러한 결혼은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혼 기간과 출생자녀의 유무 또한 가족의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이 오를수록 부부 및 가족간의 관계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 모두 물질적 및 비물질적으로 투입한 자원의 양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깨뜨리는 데에는 보다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Thornton & Rodgers, 1987). 결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생활의 헌신몰입(commitment) 대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이다. 따라서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존재하고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려 부모의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가족의 안정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ite et al., 1985). 물론 자녀를 가질 것인가 여부 자체가 부부간의 헌신몰입정도에 의하여 영향받는 측면도 있으므로 특히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부부의 경우 자녀 유무와 결혼 안정도 간에는 인과적 영향을 상호 교환하는 측면이 있다(Lillard & Waite, 1993). 특히 자녀의 존재는 우리나라 사례의 경우 이혼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자녀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을 이혼으로 끝낼 확률이 66.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초기이던 혹은 중기이던 간에 자녀의 존재는 결혼 생활의 전 과정에 걸쳐 이혼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단일 요인이다(이현송, 1997).

재혼의 경우 초혼보다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혼을 하는 사람의 특성이 이혼을 한번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보다 결혼 생활을 위험하게 하고 갈등 상황에서 파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혼자의 특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혼후의 생활이 초혼 생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갈등으로 이끌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혼이 이혼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White and Booth, 1985). 양자녀와의 관계나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규범이 거의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히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높인다는 지적이다(Cherlin, 1987).

이현송(1997)은 배우자 선택과정의 차이가 이혼의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 점은 서구의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지적만 되었지 경험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요인이다. 결혼 인연에 있어 부모나 친척이 개입한 경우 결혼 안정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친척의 주선으로 만나 결혼한 경우가 친구·선배의 소개나 혹은 당사자간에 눈이 맞아 만나 결혼한 경우보다 이혼으로 끝날 확률이 28.9%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결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먼저 결정하고 본인이 승낙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이혼할 확률이 낮으며, 다음으로 먼

저 본인이 결정하고 부모가 승낙을 내리는 경우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앞의 경우보다 이혼할 확률을 6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했을 경우 이는 부모가 승낙을 안 내린 결혼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혼으로 끝날 확률은 부모가 결정하고 본인이 승낙했을 경우 보다 무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한 경우 이는 대부분이 본인의 동의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뜻에 못 이겨 결혼해야 했던 경우인데 이는 본인의 동의를 수반된 경우와 비교하여 이혼으로 끝날 확률이 1.5배나 높았다.

연애결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감정적인 연결과 당사자의 선택이 결혼 결정에서 중심이 되며 사회적 조건의 고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한 연애결혼의 규범은 결혼 생활에서도 당사자간의 감정과 선택을 중심으로 하므로 당사자간에 감정적인 만족이 없을 경우 관계를 종료시키기로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확대에 따라 연애결혼의 이념형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혼 생활의 불안정이라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타 인종, 종교, 거주 지역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 또한 이혼의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서구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으나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사회로부터 도시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진지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에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도시에서 사회이동 기회의 확대 및 익명성의 증가와 함께 사회통합의 정도가 농촌보다 낮았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결혼으로 끝날 확률이 126.4%나 높았다(이현송, 1997). 이는 우리나라가 '60년대 산업화 시작 이래 '70~'80년대에 걸쳐 지속적인 도시 집중의 결과 이제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장기를 도시에서 보냈느냐 혹은 농촌에서 보냈느냐 하는 사실이 가족 가치관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도시성이라 지칭되는 태도 및 사고방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사회경제적 요인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가족전체 혹은 주로 남편의 직업, 소득, 교육 수준으로 대표되는 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과 연관된 부인의 독립적 지위가 그녀가 속한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거의 논란이 없이 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놓고 가족 연구자들 사이에 현재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가족 전체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자.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러 기존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Martin & Bumpass, 1989; South & Spitze, 1986).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도 낮을 것이며, 그 결과 가족의 소득수준도 낮을 것이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보다 훨씬 다양하고도 정도가 심할 것이므로 부인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혼의 개연성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 생활의 위험도간에 체계적인 연구는 이연주(2005)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외 사례 조사나 편의적 표본에 의한 단편적인 서술이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에 갈등의 소지가 높으며 이러한 요인이 이혼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Lee, 2005; 권귀숙, 1998).

가족 전체 혹은 남성 가장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생활의 안정성간의 관계가 반비례관계이며 이것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진 반면, 부인의 독립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생활의 안정성 간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부인의 경제생활 참여와 이혼의 가능성 간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놓고 어떤 인과적인 해석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경험적으

로 검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부인의 경제활동참여는 두개의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가족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나는 소위 소득효과(*income effect*)라 하여 부인의 취업으로 벌어오는 수입이 가족의 경제적 생활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혼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다. 반면 소위 독립효과(*independence effect*)라 하여 부인의 취업으로 여성이 독립적인 생계의 수단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여성이 참고 지낼만한 부부 관계의 경우에도 별거 혹은 이혼하여 부인의 취업이 여성의 독립할 개연성을 높여주는 점이다.

우선 부인의 경제활동참여가 이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가족관의 이념형을 배경으로 하여 제기되었다. Becker 등(1977)은 남성과 여성간의 전통적인 역할분업 즉 남편은 돈을 벌어들이고 여성은 가정을 돌볼 경우 가족의 전체적인 효용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반면, 여성의 취업은 결혼시장(*marriage market*)에서 남편 대비 부인의 시장가치를 높여 가족 전체의 안정성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남편이 돈을 벌어들이고 부인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역할 분업의 질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하여 파괴되므로 이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한다.

반면 여성의 취업 자체보다는 결혼 생활의 만족도나, 남편과 대비한 여성 임금소득의 비율이나, 부인의 취업시간 및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와 가사분담 정도나 혹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남편의 가치관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ogers, 2004; Sayer and Bianchi, 2000, South, 2001; Greenstein, 1990). 이는 여성의 취업이 결혼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주장된다(한국가족학연구회편, 1993; Menaghan & Parcel, 1990). 즉 부인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을 경우 부부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인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가족 생활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부부간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며, 부인의 취업에 대하여 남편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가 낮을수록 부인의 취업은 가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혼 여성의 취업이 확대되고 그들이 벌어들여오는 돈은 가정의 경제적 지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되고 있다. 과거 여성의 취업 소득이 없어도 그만이던 시절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남성들의 경우에도 여성이 결혼하여 경제생활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전업 주부의 결혼시장에서의 가치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서 여성의 취업은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긍정적인 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변화가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에서 부인이 경제생활을 통하여 가정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남성 단독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가정에 비해 외부의 환경 변화에 적응이 수월하고 따라서 가족의 안정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Oppenheimer, 199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사태에 직면해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이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으며, 또한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가정의 적응이 수월했다는 보고가 있다(이현송, 1999).

근래로 올수록 남성과 여성 배우자간에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경제활동의 경우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에 비슷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가 혹은 독립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가 결혼의 안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는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혼 생활의 질과, 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실제적인 도움이 보다 더 결혼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Sayer and Bianchi, 2000).

3. 이혼에 이르는 주관적 사유

앞의 이혼의 원인 분석과는 별도로, 많은 사람들은 ‘왜 이혼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지적한다. 이는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는 인과적인 결정요인은 아니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혼의 주관적 사유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혼 경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인 숫자의 심층 면접조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혼 당사자들이 지각하기에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부부간 의사소통의 양과 질, 부부간 결혼의 만족도, 부부간 성격 및 가치관의 불일치 정도,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와의 관계 문제 등 부부 및 이들을 둘러싼 삼자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주요 이혼 사유로서 이혼 경험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다(Bloom et al., 1985; Hayes et al., 1980; Kitson and Sussman, 1982; Ponzetti et al., 1992).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의 주관적 사유에 관한 연구는 앞의 이혼의 객관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최재석(1981)의 가족의 해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개인 혹은 기관의 면접·상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들(김정옥, 1993; 광배희, 1994; 변화순, 1995; 김혜련, 1995)과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자료 및 법원 행정처의 재판이혼에 관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한국가족학회 편, 1995; 한남제, 1997; 안병철, 1997), 이현송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연구(이현송, 1999)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서구에서와 같이 이혼 사유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는 못하나 부분적으로 서구의 경우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들 및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이혼의 주관적 사유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혼의 주관적 사유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제시하는 이혼의 사유는 서로 간에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셋째, 이혼 당사자가 이해하는 이혼의 사유는 매우 복잡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가족의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에 따라 이혼의 주요 사유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이 점 각각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

이혼의 주요 사유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지적한 대표적인 연구로 Kitson과 Sussman(198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948년에 실시한 Goode(1956)의 기념비적인 이혼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와 성격이 매우 유사한

조사 지역을 선정하여 1974~75년에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를 조사하여 구드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구드의 조사에서 제시된 이혼의 주요 주관적 사유들이 Kitson과 Sussman의 '70년대 조사에서 나타난 이혼의 주요 사유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1940년대에 실시된 Goode의 조사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지 않음, 과도한 권위주의, 부정행위, 음주, 도박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 되었는데 반해, Kitson과 Sussman의 '70년대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성격상의 불일치, 성적 문제, 권위주의, 생활양식의 부조화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Kitson과 Sussman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지난 30년간을 비교해 볼 때, 과거에는 현재보다 이혼의 사유가 결혼관계의 근본을 해칠 만큼 더 심각한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또한, 과거에는 집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인 이유(*instrumental reason*)가 주종을 이루었다면, 현재로 올수록 부부간 감정에 대한 표출적 이유(*expressive reason*)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자료 혹은 법원의 재판이혼 신청 통계를 시계열로 비교해 보면, 현재로 올수록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이혼의 비중이 점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타의 이혼사유들 예컨대, 시부모와의 불화, 경제적 문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함 등의 요인들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부부간의 불화를 주요 이혼 사유로 지적한 비율이 1970년에는 전체 이혼 사례의 65%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8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에서와 같이 부부간의 정서적 연대에 근거한 부부간의 결속력이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남제, 1997; 통계청, 1999; 이현송, 1999).

둘째, 남자와 여자 간에 이혼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는 주요 요인에 있어 상호간 차이가 있다는 점은 남자와 여자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이혼의 사유를 조사 비교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Kitson and Sussman, 1982; Bloom et al., 1985). 이는 아마도 남성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평가 및

중요시하는 결혼의 요소와 여성이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결혼생활 및 결혼의 요소가 차이가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 가족을 이루고 살더라도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결혼 생활 양상과 부인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결혼 생활 양상이 서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들에 있어서는 남녀간 공통적이거나, 이러한 주요 요인들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지적된 요인들에서는 남녀간에 크게 상이하다. 우선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이혼의 사유는 ‘상호간 의사소통과 이해의 부족’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두 번째 주요 요인으로 남녀가 공히 지적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상이한 성역할에 있어서의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경우 권위주의, 가정의 책임 분담 등 남편과 부인의 적절한 역할 규정에 관련된 갈등을 문제로 든 반면, 부인의 경우 자신의 역할과 독립성을 찾고자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을 성역할 갈등과 관련된 이혼의 주요 사유로 들고 있다. 세 번째 요인부터는 남녀간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여성의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 음주 등이 5위 이내의 이혼사유로 지적한 반면, 남성의 경우 이러한 사유는 10위권 밖으로 물러나 있다. 반면 남편의 경우, 상이한 성장 배경 혹은 성격상의 불일치를 5위 이내의 사유로 들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이는 5위권 밖으로 물러나 있다. 기타 남성의 경우 가치관의 차이, 친척과의 갈등 등을 10위권 이내의 주요 이혼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혼의 주요 사유에 있어 남녀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김정옥, 1993; 이현송, 1999)에 따르면 남녀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사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두 번째 사유부터는 남녀간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성격차이, 경제 파탄, 신체적 폭력의 순인 반면, 남성의 경우 아내역할의 불충실, 성격차이의 순으로 나타난다. 경제파탄과 아내역할의 불충실은 전통적인 부부간의 성역할 분담, 즉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부인은 집안에서 자녀와 가정

을 돌본다는 성역할 구조의 파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편, 이혼을 신청한 사유에 관한 법원 자료에 따르면, 남녀간에 일관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남녀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요 사유로 들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 및 악의적 유기가 남녀 모두에게 2위 혹은 3위의 이혼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데, 여성과 남성간에 순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한남제, 1997).

세번째, 이혼 사유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Ponzetti와 그의 동료들은(1992) 이혼이 단일 사유에 연유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오랜 세월간 축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상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이혼의 사유들에 대하여 원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원인의 소재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행태 혹은 특질, 부부 상호간의 관계, 부부이외의 제 삼자와의 관계, 가족을 둘러싼 물질적 및 비물질적 환경이 그것이다. 이혼 사유의 소재가 개인에게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음주, 도박, 불성실 등을 들 수 있으며, 부부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 성격차이, 신체적 폭력 등이다. 부부이외의 제 삼자와의 관계에 기인하는 대표적인 것은 부정행위, 친척과의 갈등이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 파탄이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도 뒤에 지적되듯이, 부부간의 갈등이 이혼으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갈등의 원인들이 서로 얽히고 또한 상승작용을 하면서 주관적 사유를 구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론적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 원인들을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이혼의 사유와 관련하여 피상적으로 제기되는 복합적 사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현송(1999)의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사유가 근래로 올수록 다양화되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주기상의 단계에 따라 이혼의 주요 사유에 변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중년기 이혼과 관련하여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다. Hayes와 그의 동료들(1980)에 따르면 중년기 이혼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심각한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데, 이는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 거꾸로 해석하면, 결혼을 계속 유지시키는 사유에 있어 중년기와 그 이전의 결혼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중년기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주요 이혼 사유로 부부 상호간 의사소통 및 관심의 쇠퇴, 함께 공유하는 즐거운 경험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부부간의 결속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부부 상호간의 관계의 질에 전적으로 좌우되게 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년기에는 부부간의 특별한 갈등이 없어도 더 이상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이혼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부부들도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제 3절 이혼의 영향

Price와 Mckinry(1998)는 이혼은 배우자 사망 다음으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인생사건(life event)이라고 보고 있다.주7) 반면, 이혼은 하나의 '사건(event)'이라고 하기보다는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또는 급속히 진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Glick, et al., 1999). 이혼은 이혼에 이르는 과정 및 이혼 이후에도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혼자녀 등 개인적 차원에서 의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혼은 수입 및 생활수준의 저하, 비양육부모와의 접촉 저하 혹은 상실 등에 의해 스트레스 유발상황을 발생시키는 등 여러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지닌다(Amato, 2000; Emery & Forehand, 1994; Lorenz et al., 1997).

이혼이 사건이던 하나의 과정이던 이혼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이 해체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현상의 하나로 인식된다(송태정 외, 2005). 일반적으로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양육과 사회화, 개인의 정서적 안정 등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혼이 이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대치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

주7) 다른 한편에서는 이혼이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우 개인은 물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성정현 외, 1994). 이혼은 개인의 정서적 불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과 사회화, 이혼과 함께 불거지는 법적 갈등,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등과 관련성을 지닌다. 또한 이혼은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족해체 등 사회의 유지 및 존속에 위협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다.

한편, 이혼은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혼은 이혼 후 문제와 적응과정에서 단기적 '위기'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현재의 부정적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다(Demo & Acock, 1991)

다음에서는 이혼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및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역할수행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양육·교육 문제 등으로 대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역할수행 문제

이혼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변하면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와 역할을 변화하게 만든다. 확립된 가족 체계는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역할, 활동을 규정하고 인지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혼으로 인하여 매일 매일의 가족 상호작용과 가족 구성원들의 패턴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 전환 내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혼 이후 가정의 일과 역할이 붕괴되고 일상적으로 두 부모가 해야 하는 과업들을 한 부모가 해야 하므로 부모는 과업의 과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이혼전 부부간 상호보완적 역할에 익숙해 있는 경우 이혼당사자들은 가정관리, 재정관리, 시간관리, 주택관리 및 유지 등 현실적 과제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개인적 어려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다.

여성의 경우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훈육에 대한 단독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역할 과부담과 두려움, 부적절감을 느낀다. 결혼 기간에 경제활동의 경험이 없는 경우 경제활동 책임이라는 새로운 역할의 부여로 직장과 자녀교육

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성의 경우 이혼이후 아내가 주로 담당했던 가사문제 내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및 어려움 등 생활상 불편함을 절실히 느끼며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기 쉽다. 더욱이,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과 결혼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더욱 의존적이므로 이혼 전에는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느끼나 이혼을 하면 더욱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해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사회활동에서의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성정현 외, 2004; 이영숙 외, 1999).

한편, 이혼가족 자녀들은 그들 부모의 생활적응의 어려움, 가사일을 비롯 감정적, 실제적 지지에 대한 증가된 욕구 등으로 인해 ‘역할혼란’(role disturbance)을 느끼며,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Jacobvitz & Bush, 1996). 이혼가족 자녀들의 경우 부모와 가사를 분담하면서 새로운 역할에 낯설게 되며, 특히 딸은 종종 어린 형제를 돌보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무거운 책임 문제는 어머니가 일을 시작해야 하거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업무 부담을 증가해야 할 때 종종 악화되기 쉽다. 한편으로는 이혼자녀는 가사일을 도움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 좀더 동등한 협력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성정현 외, 2004).

2. 심리·정서적 문제

이혼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이후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울과 분노, 가족과 역할의 상실, 자녀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등을 경험하게 된다(Glick et al., 1999). 특히, 이혼여성의 경우 과거 부인과 어머니 역할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남편과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경우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며 이런 실패 의식은 자아상실감으로 이어지기 쉽다. 경우에 따라 이혼여성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사나운 팔자, 남편 복의 부재 등을 이혼 원인으로 여기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편,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 사실이 자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며 죄의식을 갖기 쉽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

머니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앞서며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신이 있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녀가 항상 마음에 걸리고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성정현 외, 2004). 남성 또한 이혼이후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혼에 대한 충격을 표현하지 않을 뿐 심리적 고통은 여성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혼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다른 가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부모의 정서적 적응 등 생활상 측면은 가족 안에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관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혼자녀의 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

대부분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우울(Hetherington et al., 1989; Simons et al., 1999), 낮은 자아개념 내지 자존감(권영미, 1999; 박병금, 1997; 양연순, 1994; 이훈구, 2004)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부모의 이혼 전 불화로 인한 양육태도의 불일치, 이혼으로 인한 주위 사람들의 태도 변화, 부정적 시각과 평가에 영향을 받아 부모의 이혼을 내면화하여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혼이후 부모로부터의 유기에 대한 두려움(Hetherington, 1989; Simons et al., 1999)을 느끼며, 부모에 대한 적개심,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움, 가정에 대한 열등감,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하기 쉽다(박부진, 1999).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입는 영향은 그 기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린 경우 이혼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며 어느 날 한쪽 부모가 자신들과 같이 살지 않거나 아예 사라져 버려 궁금해 하고 혼란에 빠진다. 6세 전후의 아동들은 종종 부모가 화해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두 부모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현실적 공포감까지 느끼며 또래들이 자신의 가정생활을 알까봐 두려워한다. 아동기 이후 아동들은 믿었던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원망이 깊어지면서 부모에 대해 강한 분노감을 느낀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배신감과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성정현 외, 2004).

이혼의 심리적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Amato & Booth, 1991; Cherlin et al., 1998; Ross & Mirowsky, 1999)에서는 이혼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한 후에도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어 영향을 주며, 낮은 자존감과 우울, 대인관계상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이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해 이혼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들은 이혼가정 형성이후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한다. 이러한 결과 대인관계의 부적응 현상 뿐 아니라 심리적 상처가 내면화되어 제대로 극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이정숙, 1994).

3. 경제적 문제

일반적으로 이혼 이후 소득이 줄고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Collins & Coltrane, 1991).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녀 간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주거 및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일부 이혼여자들은 경제적 형편의 악화 내지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Arendell, 1987). 특히, 전업주부가 이혼 이후 경제적 문제에 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녀를 보살피고 살림만 하던 여성이 새로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저임금 및 미숙련된 일에 종사해야 되는 등 취업기회의 제한으로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다(Collins & Coltrane, 1991). 더구나 자녀부양의 의무가 이혼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을 경우 탁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서비스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혼여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크다.

여성이 자녀양육을 맡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자녀 때문에 취업을 제한받기도 한다. 이혼한 남성이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생 무보수로 가사노동을 해왔던 여성이 생활을 꾸려가기에 남편이 지불하는 자녀양육비나 이혼 부양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Mauldin(1990)은 이혼 후 경제적 지위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여성은 6세 이

하의 자녀가 적거나 이혼 전에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혼 전 전배우자의 소득이 높았던 여성들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저임금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 빈약한 공공수혜의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며 빈곤은 결국 아동의 빈곤으로 이어져 아동의 인적 자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감소 문제 혹은 위자료 또는 양육비 지불,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반되는 지출 과다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다. 남성들이 이혼 후 겪는 어려움은 절대적 경제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더욱 크다(변화순, 1996).

이혼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Amato, 1993). 일반적으로 이혼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학업성취, 행동, 심리적 적응과 자아개념, 사회적 관계와 관련성을 지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장시간 노동은 자녀의 식사, 생활의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자녀의 용돈 부족은 도벽이나 폭력과 같은 행동·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범지대 이웃과의 생활은 청소년 비행을 부추길 수 있다.

한편, 이혼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상 심리적 불안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혼 후 수입이 감소되면 특히 이혼모들의 경우, 경제적 압력을 받게 되고 경제적 압력은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게 되어 비정상적 부모역할을 하는 등 결국 자녀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Simons et al., 1993).

4. 대인관계 문제

이혼의 결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 온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와 관련된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우려가 많다. 예를 들어,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맺어 온 법적·인간관계의 결별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손자녀와 조부모의 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나 한쪽 부모가 양육을 받게 되면 다른 한쪽과는 자연히

교류가 적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성정현 외, 2004).

이혼가족은 자녀를 키우는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 대인관계, 그리고 독립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게 된다(김혜련, 1993; 성정현, 1998). 특히, 이혼 모자가족의 여성가장은 실제 그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공선영, 2000).

이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관념은 그들의 친구관계 및 사회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신뢰에 대한 의문을 지니게 되고 자기방어적 성격을 갖는 등(이동원 외, 2001), 많은 이들이 이혼으로 심리적 상처를 갖게 됨으로써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해 달라진 삶의 상황들은 이혼전 기혼 상태에 비해 이해와 공감의 폭을 제한하면서 실질적인 교류를 어렵게 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모임을 회피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기도 한다.

이혼가정의 자녀들 역시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기 쉽고(성정현 외, 2003; Amato, 2000; Stolberg et al., 1987),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혼가정 아동을 일반가정 아동에 비교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며 별로 호의적이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먼저 기억하는 편이다(Amato, 1991).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숨기기를 원하며 자신의 가족상황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드러났을 때의 또래 및 다른 이들의 놀림 또는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박병금, 1997; Kurdek & Berg, 1987). 이혼가정 구성원들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하여 이혼이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나 전문가로부터의 도움받기를 꺼린다.

또한 우리 사회의 관습상 결혼시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이 결혼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 부모이혼이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Wallerstein은 이혼관련 종단연구에서(Wallerstein & Kelly, 1980; Wallerstein, Lewis, & Blakeslee, 2000)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단순한 생활사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곤란에 빠지게 하는 위기임을 밝혔다. 이혼 초기

많은 아동들은 적응상 어려움을 지니는데 5년이 지난 이후 1/3만 적응을 하며 37%는 우울함, 학교생활 및 친구사귀기 어려움을 보였다. 10년 후 자녀의 거의 반수는 잘 적응하나 41%는 불안, 낮은 성취, 자기비하, 분노 등의 부적응 현상을 보였다.

이혼의 영향이 아동보다는 성인이 된 뒤에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Amato & Keith, 1991), 자녀의 성격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 관계에 대한 기대 및 변화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에 대한 불안은 이혼가정에서 자란 성인 자녀들에게 가장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혼가정의 여성자녀는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인 시기가 되자 배반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에 대한 극심한 분노 등 'sleepy effect'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여성이혼자 자녀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또한 결혼 전에 미래의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결혼생활에서도 배우자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동시에 결혼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쉽게 한다. 심한 경우 현재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더라도 갑작스런 상실과 불행의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5. 행동·사회적 문제

대부분의 양육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자녀에게 할애할 시간과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부모의 뒷받침 감소는 자녀의 부진한 학업, 낮은 자존감, 비행행동 등의 문제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평가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무관심, 아동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애정결핍, 부끄러움, 기타 영역에서 가정이야기 회피 등이 지적된다(성정현 외, 2003).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혼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낮은 자존감, 과잉 행동,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Amato & Keith, 1991; Stolberg et al., 1987) 및 불안, 우울함(성정현 외, 2003; 정진영 1992, 1993; Giudubaldi & Perry, 1984, 1985; Isaacs & Leon, 1986)을 보이게 된다. 또한 사회성 저하 내지 친사회성 부족(권영미, 1999; 양연순, 1994; Stolberg et al., 1987), 심리행동 및 생활적응

문제(주소희, 2003; Amato, 1993; Demo & Acock, 1988)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혼가족내 부모역할 모델 및 동일시 대상의 부재는 자녀의 성격 발달,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성정체성 발달이 어렵게 되어 청소년기 성역할에 있어서 문제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Peck, 1988-1989).

이혼가정 남아가 적응과정에서 여아에 비해 분노발작, 다툼, 약한 자를 못살게 굴기, 속이기, 거짓말,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기 등의 반사회적 문제행동과 불순종, 충동적, 공격적 행동 등을 자주 나타내고, 여아는 사춘기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이성관계에서 집중되어 나타나서 남성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경우 그 자녀는 심리적 적응과 사회경제적 달성도가 낮은 편이다(Amato & Keith, 1991). 한편 이혼가족의 자녀는 이혼관련 규범이 그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몰입정도가 낮고 이혼을 보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Amato & DeBoer, 2001).

6.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부모의 이혼은 편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을 낳게 하고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 모델의 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오는 거리감 등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 후 몇 년 동안 자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안정성과 지지가 필요한 때 이혼부모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혼부모는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영향으로 혼란된 양육방식을 하게 되며 이는 자녀문제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Simons et al., 1994).

이혼한 부모는 이혼하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보다 통제적이고, 부정적이며 덜 효과적인 훈육을 사용하는 편이다(Glick et al., 1999). 이러한 훈육방식에 대해 사춘기에 접어든 이혼가정 자녀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쉽다. 이혼부모는 이혼 직후 얼마간은 자녀에게 애정을 덜 보임으로서 이혼은 양육모

로 하여금 유능하게 부모역할 수행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Simons, et al., 1999).

남자들에게 있어 자녀양육의 양상은 여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남성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때 자녀의 애정 문제보다는 양육비, 부모로서의 의무감 등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건이 여의치 않으므로 생활상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싸는 일, 학부모회의 참여시 어색함, 섬세한 자녀교육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안타깝게 여긴다(성정현 외, 2004).

이혼은 아동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학업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이혼 후 나타나는 아동의 공격성, 의존성의 특성으로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Demo & Acock, 1991). 이혼가족 아동들은 소극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학업준비 및 수행에서 저조한 편으로 평가된다(성정현 외, 2003; Amato & Keith, 1991). 이혼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후 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계속되는 갈등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에 빠지고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공부에 전념하기 어렵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기 쉽다(Muholland et al., 1991). 한편, 낙제에 있어서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적 문제행동이 주요인인데 반해,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는 낮은 학업 성취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7. 심신 건강의 문제

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체로 이혼자들은 정서불안증, 심장병이나 폐렴, 암, 고혈압, 간경화증이 정상 결혼 생활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알코올 중독, 교통사고 및 기타 상해, 정신적 문제, 우울, 반사회적 행동 등은 이혼하지 않은 성인들보다 이혼한 성인들에게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혼자의 자살률도 결혼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조기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편이다(Gove, 1973).

또한 이혼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확률이 결혼관계

를 유지하거나 사별한 사람에 비해 높은 편이다(Price & McKenry, 1988). 이혼 후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간 인과관계에 대해 ‘선택성’(selectivity) 논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 문제를 나타내거나 잠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경우 이미 이혼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 ‘결혼 후 부적응’(post-marital disability) 주장은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건강상 문제를 보이는 경우 이혼확률이 높다고 논의한다. 한편 ‘역할이론’(role theory)에서는 결혼 및 가족역할의 상실의 저항력 저하를 가져와 건강상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라 보았고, ‘스트레스 이론’(stress theory)에서는 이혼 후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이 건강상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이나 노동 강도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낮은 노동을 과다하게 함으로써 건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이혼가족내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이후 생활부적응 현상의 하나로 신체적 질병이 나타나기도 한다(Stolberg et al., 1987).

제 4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이혼의 개념, 원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는 거시적 관점에 의한 이혼으로 이혼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이혼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특히 20세 후반 여권주의의 확산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를 동반하여 가부장적인 가치를 갖고 행동하는 남성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이 이혼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초혼연령이 낮고 혼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결혼 기간이 짧고 출생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인연에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과정에서 부모나 친척이 개입한 경우, 도시출신이 이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남편의 직업, 소득, 교육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율이 높고,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이 이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이혼의 가능성도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참여로 가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결혼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다. 최근에 올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결혼생활의 질, 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이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혼의 주관적 사유로는 부부간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혼외 성관계, 부부간 의사소통의 양과 질, 부부간 결혼 만족도, 부부간 성격 및 가치관 불일치 정도,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와의 관계 등 부부와 이들을 둘러싼 삼자들과의 관계가 이혼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산업화로 개인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결혼생활에서의 불만을 참지 않고 이혼으로 끝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만족과 이해부족, 확대가족간의 갈등 등은 과거부터 이혼의 주요 사유로 작용하였는데, 근래에 오면서 자녀수가 줄어들고 부부중심의 결혼생활이 확산됨에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에 의한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혼은 주로 어떠한 원인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나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요인과 함께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 자체가 이혼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사회적인 유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혼의 영향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 그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그들 가족이 반드시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란 가족의 단기적 위기상황이며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나가면 구성원들은 새로운 역할과 생활양

식에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hrons(1994)는 ‘유익한 이혼’(good divorce) 및 ‘기능적 이혼’(functional divor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이혼가정 자녀와 정상가정 자녀 간 적응에 별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자아개념에 있어서 이혼가정 자녀와 정상가정 자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혼이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결정에 대해 다소 고통스러우며 비양육권 부모를 상실함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 부모가 갈등 속에 지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이혼상태가 보다 나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는 편이라 인식하기도 한다.주8)

그럼에도 이혼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여 불안정한 취업과 소득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수반하고 인간관계를 축소시키며 심리적인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울러 다양한 역할을 부혹은 모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역할과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혼으로 인해 득과 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혼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이 치르는 대가가 큰 것은 사실이다. 특히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혼 후 지원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자 및 이혼가족에 대한 낙인과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한부모로서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주8) 즉, 이혼은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지만 동시에 긍정적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Demo & Acock, 1991).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생활상 적응이 어렵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이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한 애정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의 적응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유희정, 2001). 한편, 이혼가족내 자녀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편이며(전숙영·유안진, 1997), 이혼가정의 소년들은 정상가정의 소년들보다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Santrock & Warshak, 1979), 이는 한부모가정내 이혼모가 아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혼가족내 자녀가 정상가정에서 자란 경우에 비해 도덕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Kogos & Snarey, 1995). 이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가 부모 양편을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가운데 역할조망 및 윤리적 민감성, 도덕적 자율성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제 4장 국내외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 1 절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정책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혼가족은 경제적, 정서적, 자녀양육 및 주거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혼가족이 증가하면서 빈곤 유입가능성과 대물림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논의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 교육 및 주거지원에서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부분적으로 접할 수 있다.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민법의 가족법 중 이혼관련조항과 호주제 폐지 등이 있다. 이 밖에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심리·정서적 지원,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공부방), 이혼자의 재혼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정도이다.

본 장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이혼가족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니지만, 이혼가족이 지원대상의 하나로 포함되는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경제적 지원

이혼가족의 경제생활 지원은 공공부조 차원⁹⁾에서의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인 모·부자복지사업이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모지환, 2003).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사업으로부터의 이혼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유형에는 생계지원, 자활지원, 교육지원, 자녀양육비 및 학비지원 등이 있다.

가. 생계지원

이혼가족을 포함한 극빈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자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보건복지부, 2005).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지원, 해산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차액을 보충하여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방식을 띠고 있는데, 이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¹⁰⁾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기준 생계급여액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주9)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모지환 외, 2003).

주10)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을 의미.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05).

〈표 4-1〉 200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타 지원액(B)	57,968	96,526	131,096	164,076	188,129	213,381
현금급여기준 (C=A-B)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액 (E=C-D)	310,498	538,978	734,833	930,256	1,059,789	1,209,419

주: 1)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7인 가구: 1,652,682원)

2)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149,630원씩 증가(7인 가구: 1,414,049원)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 중 이혼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치는 밝혀볼 수는 없다. 다만,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편부·모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를 참조로 살펴본다면 모자가족의 경우 43.7%, 부자가족의 경우 60.9%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전반적으로 이혼가족만을 지원하는 비율은 구분해 볼 수 없지만 비율분포를 유추해 봄으로써 이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주11)}

주11) 공공부조 수급자는 2003년 현재 총 83,794세대인데 한부모가구는 이 중에서 79.5%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계산한 수치임).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은 남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2001년 현재 전체여성취업자 913만명(100%) 가운데 가구주인 여성은 222만명(24.3%)이며, 여성가구주 가운데 항상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은 약 43.7%나 된다(김재호, 2001). 반면 남성가구주 가운데 항상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비중은 13.6%이며 여성가구주의 항상 빈곤(permanent poverty)이 남성가구주의 항상 빈곤보다 약 3배 이상 많다.

〈표 4-2〉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1999년)

(단위: 명, %)

한부모가 된 원인	여성 한부모가족	남성 한부모가족
배우자 사망	43.4	16.1
이혼	43.7	60.9
배우자 가출·유기	5.4	19.7
미혼모	4.7	1.8
기타	2.9	1.5
계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나, 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의료급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혼가족 중 많은 가구가 수급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여전히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1; 한국여성민우회, 2001). 사회적 지원망에 걸리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혼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002년 12월에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한 유일한 ‘명시적인’ 지원책으로 보인다.주12) 구체적으로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05a).주13)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아버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5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주12) 여기서 명시적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데 반해, 「모·부자복지법」은 이혼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13)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모·부자 복지사업은 ‘2005년 6월 23일’에 여성가족부(2005년 3월 24일 여성부에서 개편됨)로 이관되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mogef.go.kr>).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 미만의 자녀 포함

2005년 현재 모·부자가정의 소득기준은 4인가족 월소득 148만원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차등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표 4-3> 참조). 「모·부자복지법」의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비교해서 약간 상회하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사는 모자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은 907,929원(보건복지부, 2005)인 반면 「모·부자복지법」 월소득기준은 1,118,000원 이하이다. 이를 최저생계비에 대비해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30% 미만 수준의 계층에 대한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다.주14)

한편 모·부자 중 저소득 무주택자에 한하여는 모자보호시설(일명 모자원)에서 보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에 한해서 생계급여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한시적이라 함은 모자보호시설에서 3년 동안 기거(2년 연장가능)가 가능하여, 이 기간 동안에만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이다. 시설 거주가족의 생계급여 지급 수준은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한다(여성가족부, 2005).

주14) 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가구를 말하고 차차상위계층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말한다. 따라서 모·부자가정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사이에 있는 가구라고 할 수 있다.

〈표 4-3〉 2005년 모·부자가정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118만원 이하	148만원 이하	169만원 이하	192만원 이하

주: 7인 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3만원씩 증가
 자료: 여성가족부, 『2005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5.

대부분의 모·부자복지사업 대상은 시설거주자가 아니라 재가이혼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즉, 생계급여는 「모·부자복지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그 외의 모·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서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박영미, 2004). 「모·부자복지법」이 부실하여 이들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혼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나. 자활 및 고용지원

이혼가족을 위한 자활 및 고용관련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과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들 수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강화된 자활사업은 IMF이후 대량 양산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주15), 근로 능력정도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대명 외, 2004). 2003년 현황에 따르면 자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수는 모자세대 66,636가구, 부자세대 17,158가구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04).^{주16)}

주15)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한다. 비조건부 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데 일정한 조건이 필요없는 사람들이다(모지환 외, 2003).

조건부 수급자는 다시 자활욕구와 가구여건 등을 고려해서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취업대상자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된다. 비취업대상자에게는 자활을 촉진하고, 비취업대상자에게는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모지환 외, 2003). 대상별 자활급여의 종류와 자활사업 실시 기관은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4> 대상별 자활급여의 종류와 실시기관

대상	자활급여종류	자활사업실시기관	
비취업 대상자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자활 근로	시장진입형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등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등
	지역봉사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대학연구소, 자활후견기관 등	
생업자금융자	시·군·구		
취업 대상자	취업알선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창업훈련)	직업훈련기관	
	직업적응훈련	고용안정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고용안정센터	

자료: 모지환 외, 『사회정책론』, 학지사, 2003, p321.

자활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전신은 자활지원센터로, 자활지원센터는 1996년 5개소로부터 시작하여, 1997년 10개, 1998년 17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던 해인 1999년에는 20개소로 증가하였다. 1999년 20개소였던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0년 70개소, 2001년에는 161개소로 증가시켰으며, 2004년 1월 209개로 증가한 이후 2004년 4월 농어촌·쪽방

주16) 여성 가구주의 수급률이 높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에서 배제된 여성가구의 수를 포함한다면 4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유연정, 2005).

지역 등에 신규 자활후견기관 23개소를 지정함으로써 총 23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 알선,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등이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복지간병인사업단, 집수리 사업단, 청소사업단, 폐자원재활용사업단, 음식물재활용사업단, 영농사업단, 외식사업단 등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자활사업의 표준모델로 권고하고 있으며,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적 일자리형, ③ 인턴형,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주17)}

자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논의들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취업교육이외에도 심리·정서적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시켰다. 실제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활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통해 생활태도를 변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성교육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자활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표 4-5 참조).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주17)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무료간병·집수리사업단, 자활사업도우미, 복지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등

인턴형: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

시장진입형: 투입예산의 1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또한 대부분 외부진의 강사에 의존하게 되며 자체적 모임을 꾸리거나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송다영, 2004).

〈표 4-5〉 자활후견기관 심리·정서적 프로그램 현황

번호	제목	내용	시행연도	출처
1	심성개발프로그램	계획서1부		전주자활
2	2003년 자활근로 맛사랑 김치사업단 미술을 통한 부모 집단상담 교육	미술을 통한 부모집단교육 -기안1부, 계획서1부	2003년3월	전주자활
3	시흥작은자리신규참여자가교육	프로그램교안1부 -마음열기 -자신과 남을 알게 되는 여행 -공동체에서 서로 힘이 되는 나와 너의 여행	2004년 4월	시흥작은자리자활
4	임대아파트여성성장모임	프로그램 교안1부 -만남은 기쁘고 분위기는 좋아요 외 4개		
5	남양주 자활 신규참여자가 교육	-인성오리엔테이션 -마음 다스리기 -별칭 짓기 외 인성 교육안	2004년 3월	남양주자활
6	안산양지자활 봉제사업단 프로그램	프로그램교안1부 -마음열기와 신뢰증진 외	2004년 3월	안산양지자활
7	2002전체소양교육평가설문지(7월)	설문평가	2002년 7월	광진자활
8	7월 전체 월례회 계획서	-인간관계형성프로그램자료 자기탐험, 맹인과 달팽이, 자성예언	2003년 7월	연제자활
9	아름다운 삶과 행복	심성훈련자료	2003년	전주자활

자료: 송다영,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한부모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4.

아울러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자활사업의 성과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자활사업의 침체와 낮은 자활성공률, 보충·통합급여 체계로 인한 약한 근로유인과 참여자의 안주 경향, 자활후견기관 등의 인프라 부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업대상자에 대한 지역내 자치단체 및 고용안정센터 등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연계 체계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자활사업의 다른 축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재가 저소득 모·부와 모자보호시설 거주자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직업훈련 기간 중에는 가계보조수당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러나 모·부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동안의 낮은 생계비 지원으로 참여자가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취업알선은 직업훈련 이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운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지원책이다(「모·부자복지법」 제15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생업자금 및 복지자금융자 프로그램이 있다. 생업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데, 그 대상은 비취업대상자로 공동체 및 개인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된다.

「모·부자복지법」에 의거한 복지자금 융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1인당 2천만원 이내, 연리 3%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있다(여성가족부, 2005a).

복지자금은 모·부자가정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생활수준은 빈곤한 모·부자가정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액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 자녀지원

가. 자녀양육비 및 학비 지원

우리나라에서 이혼가족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에 의한 교육급여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자녀학비(입학금, 수업료)^{주18)} 및 양육비 지원(6세미만 아동, 월 5만원)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

주18)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여성가족부, 2005a).

상자 자녀는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교육급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하는데 있다.

모·부자복지 대상 가족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학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지된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현재 11,466명의 학비 75억 4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했으며, 2005년도에는 지원할 가구원 수를 14,126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123억원으로 증액하였다(여성가족부, 2005b).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한다. 2004년 현재 6세미만 아동 7,238명을 대상으로 12억 7200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에는 21,973명을 대상으로 9,88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b). 그러나 1인당 아동양육비로 지원되고 있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 자녀보육 및 학습지원

모·부자가정 중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 기거하는 학동기 전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는다(여성가족부, 2005a). 한편, 학동기 자녀들에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빈곤지역 공부방은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층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지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발달의 불균형, 학습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일탈 및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다(이용교, 2000).

최근의 공부방은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의 한 형태(주19)로, 실직가정 및 저

소득가정, 가정해체로 정상적 아동보육이 행해지지 않는 가정의 아동, 결식아동, 방임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 학습지도를 비롯하여 음악·미술·공동체놀이 등의 문화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빈민지역 청소년들의 인성적·지적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전국에 걸쳐 500여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다(장혜경 외, 2002).

이러한 공부방은 지역적 제한,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가용자원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아동보육 조례 제정을 통한 공부방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 「모·부자복지법」 상의 모·부자가족의 아동도 지원의 우선순위에 적용이 되며, 더욱 체계화된 아동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주거지원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시설보호가 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 실태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 규모별로 정액급여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합하여 현금급여로 지급되고 있다(이태진, 2005).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 3.3만원에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주 19)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는 ① 복지관에서의 방과후 아동학습 프로그램 ② 어린이집에서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③ ‘공부방’으로 불리우는 방과후 보육사업으로 분류된다(이태수, 2001).

〈표 4-6〉 2005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7,937	85,121	118,426	158,784	175,219	206,120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 (최저주거비)	70,937	118,121	160,426	200,784	230,219	261,120

주: 최저주거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임. 7인가구 이상의 경우, 6인가구의 1인당 금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고 반올림하여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5.

그런데 현행 주거급여제도는 주거급여가 법령규정과 운영 현황 간의 괴리가 있고, 급여체계가 한계가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태진, 2005). 즉, 주거급여제도는 첫째,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 기타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소도시 전세기준의 정액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임차의 대가는 임차한 금액의 기회비용(시장이자율)을 감안하여야 하나 전세금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능력 체고라는 주거급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이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주거급여제도의 주요 목적인 주거개선에 사용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입주는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일정량을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하는 지원책이다. 1995년까지는 3,000가구가 넘게 혜택을 받았으나 1996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0년 7월 현재 연간 입주한 가구는 1,056가구에 불과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절대적인 비중이 줄어들어 따라 모·부자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숫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주거는 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중단되었고, 2004년부터 건설교통부 산하 주택공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이혼가족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2년에 연장 2회(2년 단위)로 최장 6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서 저소득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서는 영속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임대 및 매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 이혼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임대보다는 영구임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은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모자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004년 12월 현재 전국의 모자보호시설은 40개소로 1,086세대가 보호받고 있으며, 모자자립시설은 전국 4개소 61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자보호시설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부자보호시설 신축안이 2005년 여성가족부 복지사업안에 포함되어 있다(표 4-7 참조).

〈표 4-7〉 모자복지 시설현황 (2004. 12. 31 현재)

구 분	시설 수(개소)	입소정원	운 영 주 체		
			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계	44	1,210세대	1	40	3
모자보호시설	40	1,149세대	-	37	3
모자자립시설	4	61세대	1	3	-

자료: 여성가족부, 『2005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5.

모자보호시설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미만 단위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 거주자에게는 생계비지원, 학비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복지자금 융자,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가 지

원되며, 통합관리운영비, 학용품비, 부교재, 교양도서비(중·고생), 아동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주20)} 등도 지급된다. 그러나 모자복지시설은 광역시나 지자체에 1~2개 정도에 불과하며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은 시설이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표 4-8 참조).

〈표 4-8〉 모자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 (2004. 12. 31 현재)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4	6	6	5	1	2	1	3	1	2	2	5	2	5	2	1
모자보호	40	6	6	5	1	1	1	2	1	1	2	4	2	5	2	1
모자자립	4					1		1		1		1				

자료: 여성가족부, 『2005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5.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과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시·도, 시·군·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주21)} 그러나 모자자립시설은 전국에 4개뿐이어서 모자보호시설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새롭게 해나가는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으로는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4. 법적·제도적 지원

민법의 이혼관련조항은 이혼유형, 재산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다.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의 절차, 재산관계로는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등이 주를 이루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친권과 면접교섭권을 다루고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이혼법과 관련된 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20) 아동 급식비는 미취학 유아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하루 600원 꼴이며, 중·고등학생의 자녀에게는 교통비가 하루 600원씩 한달 평균 24일치의 금액이 지급되고, 연중 학용품비(초등학생 16,000원, 중학생 27,000원, 고등학생 28,500원)가 지급되고 있다(서울시, 2001).

주21) 시설보호 모자가정이 제공받는 보호내용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 복지자금 융자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등이다.

가. 이혼의 절차^{주22)}

우리나라의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협의이혼이 대부분의 이혼을 차지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성립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당사자들과 성인 2인의 서명 날인한 이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이혼의 8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5).

이혼숙려기간이라든가 별거기간 같은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절차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부부갈등에 대해 적절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고,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회복이 가능한 부부도 이혼으로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주23)} 협의이혼제도는 회복이 가능한 부부와 회복이 불가능한 부부를 구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된다면 이혼율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김만웅, 2004).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구체적·개별적·절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6호는 추상적·상대적 이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1호에서 제4호는 유책주의 이혼원인이고, 제5호 및 제6호는 과탄주의 이혼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만웅, 2004).

주22) 이혼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김만웅, 「우리나라 이혼절차에서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를 주로 참조하였다.

주23) 이혼한 남녀 중 70%는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1년 9월 11일 보도: 김만웅, 2004에서 재인용)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이혼은 아직까지는 유책원인과 파탄원인이 공존하는 형태이며, 판례상 유책주의가 강하므로 파탄주의가 도입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협의이혼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에 비해 이혼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김만웅, 2004). 실제적으로 재판이혼의 원인 중 파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주24) 전면적인 파탄주의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상 전면적인 파탄주의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원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상담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재판 전 상담이나 협의의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파탄주의가 도입될 경우 재판이혼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제도의 보완과 함께 재판이혼에서의 조정기능과 이혼 후 급부문제 해결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판이혼제도를 재정비하고, 상담기관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증가하는 이혼을 막고, 불가피한 이혼에 대해서는 사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김만웅, 2004).

나.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주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3)에 의하면 2003년 한 해 동안 이혼관련 상담 건수 3,972건 중 45.8%가 파탄주의의 사유에 해당하고, 유책의 경우는 부당대우 25.5%, 부정행위 17.5%, 악의의 유기 9.6%의 순으로 나타났다(본고의 제3장 제1절 참조).

이러한 재산의 액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에 적용되는 법정재산제의 내용이 혼인 중에는 별산제의 형태를 취하지만, 이혼 시에는 공동재산제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는 부부가 협조해서 축적한 재산이 상호 복합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처가 협력한 잠재적 몫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그의 잠재적 지분을 공평히 분할해 주어야 함에 있다.

그러나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노동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능력 있는 자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관한 분할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법이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산분할의 인정비율이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주25)}

다. 자녀양육권

민법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당사자인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제837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주26)}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

주25) 자세한 내용은 조은희·전경근(2004)pp.35~50참조.

주26) 여기서 양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민법에 특히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체로 제9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의 작용으로서 그 내용을 친권자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로 파악하고 있다. 제837조의 양육의 내용에는 교육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양육자는 양육·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위 학설과 같이 민법 제913조의 보호·교양을 염두에 두고 양

정하고 있다(제837조 제2항). 이러한 규정으로 양육의 개념은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자는 법률사의 부 또는 모에 한정된다. 양육자 지정절차로는 협의나 조정, 심판 등에 의해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양육에 대한 감독자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양육비를 부담한다. 또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은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자의 양육에 관한 부적당한 사유가 발행할 때 양육자 변경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시작한 경우,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시조치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지급을 강제할 필요성과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라.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접·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면회, 단기간의 숙박과 여행, 편지교환, 전화통화, 사진과 선물교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1990년 개정시 면접교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가사소송법」에도 이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하였다.

협의이혼 관련 조문 중 민법 제837조의 2에 의하면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조문은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마류사건 3호에 의하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동법 제837조의 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이혼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육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윤덕경·장영아, 2002, pp27-35 참조)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는 자녀의 복지를 생각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단지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하여거나, 양육비 분담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한 부모는 면접교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교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부모 각자의 환경, 이혼에 이른 경위에 관한 갈등, 자녀의 사정 등의 영향은 면접이 실현되어도 양육자의 적절한 양육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며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조차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쉽다.

더욱이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어 심판으로 면접교섭이 인정된 경우는 원만한 면접교섭의 실현은 곤란한 경우가 많고 불이행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하여도 많은 경우 양육자를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만들 뿐 자녀의 이익에 반하게 되고 만다(윤덕경·장영아, 2002).

다. 호주제

민법 가운데 호주제 조항은 우리나라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의 근간으로 작용해 왔다. 호주제는 남성가장을 가족의 중심으로 하면서 가족원의 출생, 입양, 혼인, 이(재)혼, 사망에 이르는 생애사적 신분 변동이 기록·축적되는 제도이다. 호주의 승계는 남계중심 원칙에 입각하여 아들-손자-딸-손녀(단, 혼인한 딸·손녀는 제외됨)-처-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승계원리는 이혼 후 자녀를 어머니 가(家)에 입적 시킬 수 없다는 것과 재혼가족 자녀들은 형제들 간에 성(姓)씨가 달라 학교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등 고통을 겪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에 2005년 3월 대법원은 호주제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기존의 호주제에 가름하는 새로운 신분제로서 부성(父姓) 강제 조항의 완화와 개인사생활 보호 및 급변하는 가족현실이 반영된 양성평등적 가족부(家族簿)가 제안되었다. 다음 <표 4-9>는 기존 호주제와 새 신분기록부(혹은 “혼합형 1인1적제”) 내용을 요약·비교한 것이다.

〈표 4-9〉 호주제와 새 신분기록부의 비교

구분	호주제	새 신분기록부(“혼합형 1인 1적제”) (2008년 1.1시행)
호적	남편 또는 아버지 호적에 올라감	호주관련조항삭제 개인이 각각 신분등록부 가짐
호주	아들-손자-딸-아내-며느리 등 남성우선 승계	없어짐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호적에 올라있는 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성과 본	부성승계 강제	원칙적으로父성을 따른다. 단, 혼인시 부부합의 경우 母성과 본승계가가능
혼인한 여성	아버지의 家에서 남편家로 入籍	본인의 혼인 기재란에 남편 표시
이혼여성과 자녀	母는 자녀의 동거인으로서 법률적 혈연관계 인정 받지못함. 전남편 재혼시 그 부인이 자녀의 법률적 어머니가 됨.	자녀의 법률적 母 신분유지
이혼사실	본인 이혼사실 기재 부모 이혼사실 기재	본인 이혼사실 기재 부모 이혼사실 미기재
입양가정과 자녀	친양자 불가능 입양사실 기록	친생자로 기록 입양사실 미기록
재혼가정과 자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름 전혼 자녀 성씨 差異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 아버지성 승계가능, 자녀성 母의 姓으로 수정가능
혼외자녀	親父의 家에 入籍원칙 친부가 자녀존재 인지하면 母와의 관계는 소멸; 남편의 혼외자녀 아내동의 필요없음; 아내의 혼외자녀 남편동의 얻어야함	친부와 관계없이 親母가 자녀와의 관계유지 가능; 친생부모 협의에 따라 부모란 기재; 미혼모 자녀 미혼모 姓씨 승계가능

자료: 내일신문, 『미즈엔』 NO.218, 2005. 3. 13. p.23.

5. 사회·심리적 지원

가. 기관을 통한 지원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자립시설과 민간단체,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제31조에 이

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제35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혼가족(제31조)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한 이혼전 상담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하는 것(제1항), 이혼이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 제공(제2항),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제3항)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3개소를 시범운영한데 2005년 현재 총 16개소가 확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을 두어 총 25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다.

4곳의 모자자립시설 중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부모교육 특강, 심리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자립의지향상교육, 월1회 자조모임, 가족 사회복지자원 연결, 모자가정 자립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영락모자원>의 실습교육을 통한 부모역할교실 프로그램은 한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녀양육 방법이 개선되고 자녀들과의 문제회수가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표 4-10 참조).

〈표 4-10〉 영락모자원의 『부모역할 교실』 프로그램

회수	집단 활동 단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비고
1회	초기 단계	오리엔테이션	부모교육의 필요성 제시 교육기간 내 성실히 프로그램에 임할 것을 서약함	
2회	탐색 단계	성격유형 검사 가계도 그리기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방법 및 상호 관계 파악	과제: 일주일간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수용
3회	문제 제기	자녀와의 문제영역 파악	의견충돌에 부딪힐 때 현재 표현하는 의사소통 발표	역할극
4회		의사소통 걸림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시 의사소통의 걸림돌 사용 금지	과제: 자녀와의 대화시 걸림돌 사용을 억제
5회	문제 해결	경청	경청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공 감대를 형성	과제: 자녀와의 즐거운 시간 만들기
6회	단계	나-전달법 (I-message)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나의 감정을 전달	역할극
7회		타협	타협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배 려하는 마음 형성	자녀에게 편지 쓰기
8회	종결 단계	평가회	종합 평가 설문지를 통해 교육 내용 평가	

자료: 장혜경 외,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2001, 참조.

아울러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주27)}, 부산여성회 등이 이혼여성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집단, 법률상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표 4-11 참조).

주27)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는 2005년부터 성폭력전문상담소로 바뀌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04년 이전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표 4-11>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단체	프로그램	서비스
가정법률상담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법률강좌 • 뉴라이프 (구 기러기 교실) • 재혼준비교실 • 이혼 전 준비과정(강좌) • 이혼 후 삶과 적응(강좌) • 이혼 가정 여성 교육 프로그램 및 자녀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상담실 운영 (SOS 상담실, 실시간 상담실 등)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서로 돕기 모임 • 한부모 사업 정책 토론회 • 한부모 교실 • 한부모 가족 워크숍 • 한부모 가족 가을여행 • 한부모 힘내기 한마당 • 한부모 가족 갈등해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 한부모 관련 영상물 제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지역 순회 상담 • 한부모를 위한 홈페이지 오픈 (www.hanbumo.or.kr) • 한부모 월요 지원 전문가 상담
부산 여성회 (한부모가족자립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간담회 • 한부모 리더십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한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 카페 개설 및 운영 등 (http://caf.daum.net/hanbumostory)

주: 2005년 부모 가족과 성 상담소가 성폭력전문상담소로 바뀜에 따라 민우회 관련 내용은 2004년까지 진행했던 이혼가족 관련 사업을 정리하였음.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식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가족 행복찾기 모임터, 가족캠프, 그리고 이혼 관련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004년 3월부터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에 이혼 후의 새로운 삶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성상담소>에서는 2004년까지 한부모가족운동과 집단 프로그램(“새로 짓는 우리집”을 위한 한부모교실/여성주의 집단상담/자기성장집단상담/한부모자녀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한부모자조모임과 한부모지원상담 그리고 가족캠프 (어린이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부산여성회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는 한부모리더십 훈련 및 초기 한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348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모·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약 20여 곳이며 그 외 대다수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사업 혹은 가족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모·부자가족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등 요보호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가사, 간병, 정서, 의료, 학습지도, 결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도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사직종합사회복지관>의 부모역할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여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은 한부모 자녀교육(방과후 아동교실/저소득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아동상담/자존감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및 여성가구주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자아긍정성 강화 프로그램/대인관계 기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표 4-12 참조). 특히 등촌 9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여성한부모가정의 다시 사랑하기 프로그램’은 빈곤문제와 함께 고립감과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한부모여성의 자아긍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표 4-13 참조).

<표 4-12> 종합사회복지관의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	교육 및 보육	지역사회 연계 및 기타 프로그램
공릉종합사회복지관	• 가족문제 종합상담	• 위기가정지원사업(가족 단위 통합사례관리)	• 학습동아리 ‘새내기 아카데미’ 운영: 고교생 진로 관리 및 학습 그룹 운영	
광장종합사회복지관			• 저소득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저소득 아동 여가지도 • 저소득 아동 청소년 학습지도 • 방과후 교실 운영	•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 등마루 이혼상담센터		• Night Care : 한부모가정 아동 야간보호 서비스 • 집단활동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아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표 4-12〉 계속

	상담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	교육 및 보육	지역사회 연계 및 기타 프로그램
창포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장 지원 센터(가족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 후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자조모임지원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가정 지원 센터(온라인 상담, 이혼 관련 정보 제공, 카페 운영 등) • 무료법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이혼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여성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 성동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가족모임 (이혼/사별 후 정기적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실 (저소득 가정 대상) 	
부천 상동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마또래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 지도 등) 	
경남 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정 아동 대상 결연, 후원사업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밀양가곡 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정 나들이 지원 (월 4회)

〈표 4-13〉 등촌9동종합사회복지관: 여성한부모가정 프로그램

	주제	내 용
1주	오리엔테이션	개회식
2주	프로그램 시작	마음열기(이름외우기, 나의 장점과 단점 3가지, 소원3가지)
3주		통합프로그램: 동물가족화 그리기
4주	자아발견	감정표현(내 얼굴 찾기, 다양한 자세의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
5주		자기발견(남이 보는 내 모습과 내가 보는 내 모습, 내가 좋아하는 것)
6주		관계속의 나(내가 받은 선물과 고통)
7주		통합프로그램: MBTI(MMTIC) 성격유형검사
8주	자기표출	내 주변 탐색(내게 스트레스 주는 대상 총정리/내게 중요한 사람 그리기)
9주		나 버리기(자율이완기법/바꾸고 싶은 나의 성격)
10주		나 드러내기(가치관 경매/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11주		야유회
12주		통합 프로그램: 춤을 통한 치료I (Dance Movement Therapy)
13주	치료 및 문제해결, 대처기술 강화	경청 및 문제해결을 위한 5단계 사고과정 (경청체크리스트/공감표현하기/경청연습하기/A-Frog)
14주		대인관계 학습/통찰 활성화 I (잠재력 강화심상후년/수줍음 직면에서 부정적인 자기독백 해결)
15주		대인관계 학습/통찰 활성화 II (마음속의 쉼터 이완/효과적인 의견표현에서 지혜와 안식의 말들까지)
16주		통합 프로그램: 춤을 통한 치료II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한부모 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2004.

나. 인터넷을 통한 자조집단 모임

최근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뜻을 함께 하는 한부모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형성·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공동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한부모가족들의 모임인 경우가 많으며, 서로의 아픔과 다양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www.ssolo.com, www.divorcenet.co.kr의 한부모가정지원 클리닉 코너 등이 있고, 다음(Daum)과 네이버(Naver) 등 기존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혼 및 한부모 관련 카페를 찾아볼 수 있다. 부산여성회는

2003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의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마련된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카페는 다음 표 4-14와 같다.

〈표 4-14〉 온라인 공동체

공동체	주소	개요
부산여성회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	http://cafe.daum.net/hanbumo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수 :291명 • 개설일: 2003/05/21
한부모 가족이야기	http://caf.daum.net/OS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족들의 상호교제 • 회원수: 216명 • 개설일: 2001/01/03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daum.net/ihonjun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관련 상담 및 정보교환 • 회원수: 540명 • 개설일: 2004/12/30
꿈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	http://caf.daum.net/JUN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치유 프로젝트 (이혼한 가정을 돕고, 이혼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운영) • 회원수: 94명 • 개설일: 2002/10/21
열려라, 한부모세상	http://caf.daum.net/hanbumo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들의 네트워크 도모 • 회원수: 198명 • 개설일: 2004/09/15

6. 재혼 및 상담서비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를 매개체로 이혼 혹은 사별한 여성들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혼을 위한 만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새출발교회>의 “이혼자클럽”과 “가정상담선교센터”가 있다.

연구소로는 <한국가정상담교육연구소>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의 모자녀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표 4-15 참조). <한부모가정연구소>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응과 편견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외적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자조모임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성이혼자 대상 상담 및 재혼을 위한 <남성의 전화>가 있다. 남성의 전화에서는 <한부모가정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4-15〉 종교단체 및 연구소의 관련 프로그램

연구소	주소	개요
한국가정상담연구소	http://www.kofam.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재혼자 학교 운영 (이혼자들의 홀로서기 또는 재혼준비 지원, 재혼가족자 교육 프로그램 등)
한부모가정연구소	http://www.hanbumo.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상담실 •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이혼 및 사별에 대한 현실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한부모가정 인식개선 사업 • 한부모가정 자조모임(매월실시) •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도 동일한 지원 제공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http://www.consult.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준비된 재혼, 또 다른 행복) • 한부모 가정의 부모자녀관계 향상 교육프로그램
남성의 전화/한부모가정센터	http://www.manhotline.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남성, 여성을 위한 재혼 프로그램 • 이혼조정 상담 • 한부모교실 집단상담

제 2 절 외국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외국의 한부모가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과거에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사별보다는 이혼이나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외국의 정책들은 각 국가의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각국 정부와 노동시장이 한부모가정을 어떻게 취급하고 지원하는

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내에서 공적부조와 아동수당, 가족수당, 주거보장, 교육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영국, 스웨덴).

반면 잔여주의적 복지국가(미국, 일본)에서는 공적부조체계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숙식과 기타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박영란 외, 2001).

그러나 최근 한부모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고 공공부조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일찍이 발달해온 이들 복지 선진 국가들에서는 한부모를 위한 복지제도가 소득보장이나 공공부조제도 내에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자복지제도 속에서 이들에 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보편화된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네 국가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경제적 지원

미국의 사회복지지는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기초하고 잔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 강제적 건강보험, 질병보험, 가족수당, 출산급여, 모성연금 등이 없으며 상호부조와 재분배적 기능도 거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공부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조의 원리는 사회보장(OASDHI) 프로그램의 급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 받고 제공받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임금수준과 엄격하게 관련되어 있어 적절성의 가치보다는 공평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부조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층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근로를 통한 자활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켰지만, 일정기간 후에도 근로로 자활을 할 수 없는 빈곤층 한부모가족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하였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김미숙 외, 2000).

영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공공부조보다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과거 급여수급 중심에서 근로를 통한 자활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근로를 통한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노동유인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인상담자를 배정하여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정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보험 급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포괄적으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박영란 외, 2001). 여기에 어떠한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는 사회봉사개념이 포함된 다양한 사회복지가 주어지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하나의 합법적인 가족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여성과 자녀는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게는 복지급여에서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다(김미숙 외, 2000). 또한, 스웨덴은 근로를 통한 자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용정책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고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훈련기간의 기본적 생계보장 등이 선행되는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자복지제도를 법제화하여 소득보장이나 공공부조 제도 속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영국이나 스웨덴과는 달리, 지원체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실시

하고 있어 미국, 영국, 스웨덴보다 매우 소극적인 한부모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부모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공부조 개혁이 한부모가족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예를 통해서 볼 때, 빈곤층이 공공부조의 의존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근로를 통한 자활정책과 더불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0).

2. 자녀 지원

공공부조 및 사후적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스웨덴,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아동수당(급여)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일반아동에 대한 건전 육성 및 모자보건 등에 걸쳐 아동전반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어 아동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자녀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차원의 ‘아동관련 양육법’에서 소개하였다.

3. 법제도적 지원

가. 아동양육비 관련법

1) 미국

미국은 자의 부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부양강제법」(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Law, 1975)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로 상당히 높다.주28) 이들 한부모들은 복지제도의 주요 수혜층으로 전체 TANF 대상자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아이의 아버지(어머니)

주28) 전체 출산 중 비혼여성의 출산비중이 약 1/4에 해당한다. 특히 10대 임신율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높아서 한 해에 78,000명이라는 10대 출산은 영국이나 통일전 서독의 두 배에 해당하며,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10배나 많은 수치이다(Barnes, et al., 1998).

를 확인하여 부양비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TANF에 신청하고자 하는 한부모는 자녀부양강제기구에 협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성립에는 여성운동단체 등의 입법화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1993년에 마련된 “자녀부양강제”²⁹⁾ 제도는 자녀출생시 미리 아버지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강제정책을 기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부양금액은 점점 공식화된 비율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한 자녀에 대해서는(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 혹은 모의) 급여에서 17%, 두 자녀에 대해서는 25%, 세 자녀에 대해서는 29%가 설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³⁰⁾ 양육비에 관한 정부의 개입은 크게, 부모 찾아내기, 친권 확립, 양육비 명령 확립, 명령 검토 및 수정, 의료지원 증가, 양육비 집행, 다른 주 사이에 양육비 집행으로 나누어져 있다(표 4-16 참조).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 입법참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임금원천징수 방법이고, 나머지는 정기적인 청구, 체불통보, 재산압류, 실업수당으로 충당, 자산압류 및 매각, 신용기관에 체불사실 통보, 임금압류, 주 및 연방 세금 환급분 압류,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운전면허, 사업 면허, 직업 면허 등) 취소, 연방 구속, 벌금 등이 있다. 결국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한부모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부양비를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혹은 16주 동안 무급으로 지역사회 노동봉사를 하는 세 가지 중 하나이다.³¹⁾ 자녀 부양은

주29) 2001년 TANF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자녀부양강제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CSE)]’ 프로그램에 의해 2000년도에 거의 160만명의 부성을 확립 내지 인지했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180억을 거두어들였고, 이와 관련하여 연방 세금환급금만으로 거의 15억달러를 모았다고 한다.

주30)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cess(번역자료) (한국여성민우회, 2002 참조)

주31) 1996년의 PRWORA는 자녀부양비 징수를 강제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체계들이 도입되었는데, 예컨대 ‘전국신규고용 보고시스템’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컴퓨터에 데이터 베이스화시켜서 그들이 새로 취직할 때마다 고용보고체계에 자동으로 신고되게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률은 주별로 상이한데, 일부 주는 법원 명령서(지불이행요구서)의 10%만을 거두어들이는 데 그치기도 하며, 연방정부가 이 컴퓨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데 20억 달러를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개 주에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Barnes, et al., 1998).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표 4-16〉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1950년	주 사회복지과 직원이 자녀 부양 보조금을 지급한 후 관계기관에서 보조금 수혜자 및 양육의무자 신원을 통고할 것을 규정.
1965년	주 사회복지과 직원이 후생성장관으로부터 양육의무를 해태한 자의 주소,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법 개정
1975년	후생성장관 주관하에 새로운 업무 실행할 부서 신설. 이 부서는 부모소제 확인, 양육비 지급명령의 집행을 위해 연방법원 및 국세청에 송부할 사건의 승인 등을 시행.
1981년	국세청에 양육비연체자에 대한 연방소득세 정산금을 유보할 권한을 부여하고 주에 양도된 양육비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가 양육비연체자에 대해 지급할 실업급여 일부 지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
1984년	연방정부가 자녀부양보조금과 기타 보조금 관련 징수업무를 위해 주에 6%까지 실적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1988년	주는 자동추적 및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이유가 없을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급여를 공제하도록 함
1992년	부모가 양육비를 1년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제1회 기소시 5000달러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제2회 기소시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7년동안의 양육의무 불이행 사실을 소비자 신용조사기관에 통고할 것을 규정함.
1993년	「종합예산조정법」은 의료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 혹은 혼인 외 자에 관한 보험혜택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주에서 하도록 함.

자료: Clapp, G., *Divorce and New Beginnings*. John Wiley & Sons Inc., 2000.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라는 부처에서 아동 양육비 강제 집행을 위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제한적 지원 차원에서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양육비 전담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인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서 하고 있지만 재무부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세 환급이나 기타 연방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원할 일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양육비를 밀리고 있다면 그 돈을 안 주고 회수하여 양육비로 충당하는 등이다. 또한 정부 강제 집행과는 다소 다른 차원이지만 정부의 양육비 집행에 대한 보조 제도로 <Child Support Network>라는 민간 서비스 회사들이 있다. 법정 양육비 문서나 이혼 문서만 내면 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내

주며 전 배우자가 사는 주소를 몰라도 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돈을 받아 내며 받아낸 돈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아동보조청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등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영국의 기준양육비는 1991년 「아동부양법」의 도입 이후 변경되어오다가 2000년 제정된 「자녀양육비·연금·사회보장법」(CSPSSA 2000)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양육비가 양육부모 소득이나 자녀의 수용에 따른 필요 양육비나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해서 배제함으로써 비양육 부모의 주단위 순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간단하게 양육비 산정이 행해진다는 점이다(박복순, 2004).

양육비 집행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급여공제명령이 통상적으로 양육비 강제이행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압류될 고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이행강제 수단으로 양육비를 한 달 이상 연체하고 비고용을 이유로 급여공제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급여공제명령을 내려도 양육비 확보수단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불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불명령은 압류와 매각이라는 방법과 군법원을 통하여 제3자 채무명령이나 부담부과명령의 수단으로 이행강제 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인 제제수단으로 양육비 지불의무자를 구금하는 방법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혼으로 부인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이혼 후 재취업은 원하지만 상위직에 취업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계속 취업할 경우 연금혜택도 상실하게 된다(Glendon, 1982; 변화순 외, 2003에서 재인용). 따라서 모는 가정파탄으로 인한 자의 양육, 취업, 회복할 수 없는 경력의 손실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모의 희생을 감안하여 이혼 후에도 부모의 책임을 균분하여야 하며 생활수준은 부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3) 스웨덴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와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자녀양육의 책임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인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녀양육비는 부모간의 협의나 법원의 권고 중 하나의 방법으로서 정해진다. 만약 비부양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금액만을 지급한다면, 양육중인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정부기관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취급한다)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양중인 부모의 양육비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비부양 부모가 보험회사에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함께 정한다. 변상할 금액은 비부양 부모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4) 일본

일본은 기준양육비 사용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경·오사카 양육비 등 연구회에서 제안한 기준을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다(박복순, 2004). 아울러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자금, 수업자금 및 취학지도자금을 통한 대학등록금까지 지원을 하는 등 한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미숙 외, 2000).

나. 배우자 부양관련법주32)

1) 미국

미국에서는 이혼가정의 빈곤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혼피해자의 경제적 보

주32) 변화순 외(2003)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호를 위하여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부양강제징수법」(The International Support Enforcement Law)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형법상, 민법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양의 필요성, 생활수준, 재활원칙³³⁾, 기여도³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혼부양료 지급이나 재산분할시 과실자의 책임에서부터 이혼피해자(약자)의 구제로 전환하여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과 입법도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부양명령은 ① 일방배우자의 혼인재산 분할분, 자립능력, 자를 감호할 타방배우자와 자의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② 타방배우자가 적절한 취업을 하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교육연수시간, ③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생활수준, ④ 혼인기간, ⑤ 부양청구자의 연령, 육체, 정신적 상태, ⑥ 부양청구배우자의 요청과 자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배우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이혼부양료는 배우자의 재혼이나 동거 또는 취업으로(생활능력이 생겼을 때) 종료된다.

2) 영국

영국은 부부간의 협력원칙(Partnership Principle)이 도입되어 이를 맹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부양의무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혼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은 이혼명령시 배우자에게 부양정기급이나 부양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부양정기급 지급(Alimony, Periodical Payment)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양정기급은 권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며 비보증정기급은 지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³⁵⁾ 부양보증금은 자산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혜자의 생존시까지 존속되나 재혼시에는 종료된다.

법원은 또한 이혼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부에게서 학대를 받았거나 재산이 없는 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은 특정자산을 이전하라고 명할 수

주33)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활비용 부여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주34) 배우자가 기여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기초로 취득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주35) The Inheritance(Provision for Family and Dependents. Act 1975(변화순 외, 2003에서 재인용)

있고, 이혼부양의무는 부부상호간에 한시적으로 부여하되 혼인재산의 분할시에는 처의 가사노동을 역할 분담으로 인정하여 3분의 1을 분할해야 하는 동반자 원칙(Partnership Principle)을 채택하고 있다.^{주36)} 이혼부양료도 한정된 기간에 지불하거나 일시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1963년 이후 시행된 일시급지급명령은 이혼시 당사자의 자산을 조정하는데 사용해왔는데 일시급의 지급금액은 배우자의 지불능력과 타배우자와 자녀의 부양수요를 감안하여 책정하며 정기급보다 피부양자에게 유리할 경우에 적용하였다. 또한 이혼결정을 허용할 때 법원이 이혼피해자인 자녀와 그 배우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산을 책정하도록 명하거나 자산의 매각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이 빠르고 경제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그 기간 내에 내린 판결에 승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동의 명령(Consent Decree)은 가급적 당사자간의 재정적 결정을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장하여 이혼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가정파탄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주37)} 또한 이혼시 일방배우자가 타방배우자에게 지급할 부양료에 관한 협정은 법원명령이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법문서로서 6년간 유효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38)}

3)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이혼시 각 배우자는 각자가 스스로 부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양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였다. 이혼부양료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일시급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양료 지급청구권은 처음 부양료를 지급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

주36) Wachtel v. Wachtel, (1973) Fam72. (1973) 1 All ER 829, (1973) 2WLR.366, 117 Sol Jo124, court of Appeals. S.M.Cretney. Principles of Family Law. 2nd ed(London ; Sweet Max Well, 1987). p. 193(변화순 외, 2003에서 재인용)

주37) Minton v. Minton(1979), AC. 593 at 608, 1All ER 79 at 87, HL.(변화순 외, 2003에서 재인용)

주38)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70, s. 434.(변화순 외, 2003에서 재인용)

다.^{주39)}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재산(부부공동재산)에서 제비용을 제한 후 양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연금권도 분할대상이 된다. 이혼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타방에게 지급할 일시급 부양료로 부동산을 지급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혼시 혼인주택의 처분에 대하여 타방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혼인주택이나 가재도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배우자로 그 외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을 감소함으로써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부양료의 지급은 표준생계비의 60%를 책정하며 2명 이상의 자를 가진 자는 40%를 매년 확보해야 하며 부양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양료의 이행상황과 자의 감호에 대한 협정은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The Social Welfare Committee)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양료를 미지급시에는 정부가 지방보험회사를 통하여 선급하며 부양의무자에게 추후 구상하지만 그 구상액은 국가가 지급한 최고 선급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은 정부의 생활부조금(supplementary allowance)으로 충당되고 있다.^{주40)} 스웨덴 정부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 부양료제도에 대하여 그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4. 심리·사회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이 민간기관이나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은 용어의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범주가 크다. 부모훈련, 부모참여, 부모개입, 부모지지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장혜경 외(2001)에 의하면 미국은 민간의 지역사회기관에서 이혼가족에 대한 개인상담뿐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 가족치료 등이 포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결혼제도의 약화로 인해 잠재적인 복지수혜층의 규모가 성장

주39) Saldeen, op. cit. p. 411(변화순 외, 2003에서 재인용).

주40) A. Agell, "Social Security and Family Law in Swede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ne Parent Family", 4 United Kingdom Comparative Law Series, (A. Samuels Ed.) 1979, 참조. Saldeen, op. cit. pp. 414~415(변화순 2003에서 재인용).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표 4-17 참조)

〈표 4-17〉 미국의 이혼 후 부모역할 관련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주는 일명 IV-D 아동부양이라는 TANF를 활용한다. 주는 아버지가 아동의 삶에 더 결부되거나 어머니와 아버지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활동들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활동은 교육과 고용서비스, 부모역할교육, 커뮤니케이션과 갈등해결에 대한 훈련, 결혼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포함한다. • The Partner for Fragile Families Demonstration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아동부양 집행부서이다. 젊은 아버지가 자녀에 더 결부되도록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부모역할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신뢰에 기반을 둔) 배우자들간의 지역적 연합체이다.
-------------	--

자료: 장혜경 외,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영국은 노동을 위한 복지가 강조되면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노동과 연계하여 보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심리·정서적 지원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한부모가족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한부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양육서비스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절실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심리상담, 각종 자활지원정책을 통해서 한부모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0). 그러나 각종 시설들이 있지만, 그 시설수와 수용정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도 전근대적인 것이 많아 각종 시설의 확충과 내용 및 운영의 합리화와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혼 후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다. 특히 Clapp(2000)의 *Divorce and New Beginnings: A Complete Guide to Recovery, Solo Parenting, Co-Parenting, and Stepfamilies* 은 이혼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

는 다양한 부모역할들 즉 일상적인 것과 장기적인 문제들을 당면할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지침들은 수백명의 전문가들(experts)의 임상경험과 통찰력에 의한 전략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특히 이혼한 여성들이 자녀와 이혼 후의 성공적인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이혼가족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자녀와의 관계와 여성자신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절 요약 및 논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04년에 감소하였지만 결혼건수 대비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이혼건수는 14만 여건이 다다르고 있어 이혼가족의 가파른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혼가족은 경제적, 정서적, 자녀 양육 및 주거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호주제 폐지와 함께 이혼자녀 양육비와 관련하여 2004년 「양육비채권이행 확보에관한법률」 제정 움직임을 시작으로 제도적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양육으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배우자 부양관련 논의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공공부조 차원에서 유일하게 「모·부자복지법」을 통해 저소득 이혼가족이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 가족이 겪는 문제와 현실적 욕구에 대한 한계가 있어 동 법의 내용이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모색 중에 있다. 또한 이혼가족을 위한 관련기관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전문화, 특성화 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기관들의 역할도 기대된다.

외국의 사례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양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자녀의 부양비 및 배우자 부양에 대한 법의 강제력이 커서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법적 및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해 빈곤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이혼 후의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어 이혼가족의 사회심리적인 어려움을 경감해 주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혼관련 정책은 부계중심적인 호주제도와 양육비 지급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이혼 이후에 경험하는 제도적 불합리성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2005년에 법제도를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2005년 2월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왜곡시켜왔던 호주제의 부성강제조항(부분적으로나마)이 약화되고 2005년 6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혼가족 자녀의 낙인을 방지하고, 이혼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 시점에서 이혼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려는 시점에서 이혼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는 보다 정교해질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거나 양육비 지급 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 가족의 고통이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혼 가족을 곧 비정상 가족으로 낙인찍은 사회적 인식을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때, 개정 민법과 양육비 확보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화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제 5 장 재가이혼가족 실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혼가족 실태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혼전후의 소득변화 등의 경제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데이터」(1998~2003)를 재분석하였고, 재가이혼가족의 삶의 실태와 복지욕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조사」(이하 ‘전국출산력’ 조사)를 재분석하였고,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1 절 재가이혼가족의 이혼 전후 경제생활 변화

앞의 이혼에 대한 문헌고찰 부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심각하게 다가오는 난관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가정불화로 이혼을 생각하는 여성이 이혼 후 견뎌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가정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한결같이 이혼 후 여성이 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며, 많은 여성들이 이혼 후 경제적 추락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구에서 이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면 남성은 정서적인 위로를 첫 번째로 지적하나, 여성의 경우 첫 번째로 지적하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고통이다(Kitson, and Morgan, 1990). 경제적인 어려움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아동 양육과 자녀 교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 Lenore Weitzman이라는 사회학자는 이혼이 급격히 증가한 1970~80년대의 이혼의 결과를 Los Angeles시 주민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면서 여성의 경우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후에 가계 소득이 73%나 감소한다고 발표하여 사회적

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Weitzman, 1985). 그녀의 지적은 이후 여러 학자들의 보다 엄격한 연구를 통해서 지나친 과장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성에게 약 30%의 생활수준의 실질적인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Smock, 1994; Peterson, 1996; McKeever and Wolfinger, 2001). 반면 남성은 이혼 후 실질 소득에 변화가 없거나 혹은 일인당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Garfinkel and Oellerich, 1989).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정이 어떨까? 이혼 후의 결과에 대하여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외에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정현숙, 1993).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이혼의 원인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혼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연구의 초점은 원인 규명에 있었으나, 1980년대 들어와 점차 이혼을 예외적인 일탈 행위의 범주가 아닌 보편적인 사회 관행으로 받아들이면서 연구의 초점이 이혼의 결과로 옮겨간 것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이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혼가족의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혼 경험자들은 특별히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혼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매우 크며 조사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혼가족의 소득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제적 수준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 자료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주제보다도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경제적 생활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히 짐작했던 사실인 이혼 후에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본 절의 과제이다.

1. 자료와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 자료는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첫째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시차를 두어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만 이혼 전과 후의 상태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회상을 통해 과거의 소득 정보를 조사하여 현재의 것과 비교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 정보에 관련한 회상을 통한 과거의 소득 파악은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패널 조사 자료는 본 연구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둘째는 소득에 대해 상세하게 항목을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소득 조사에서 드러나는 정확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가족 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항목을 나누어 매년의 조사에서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의 소득을 한두 개의 항목으로 간단히 묻는 조사에서 발견되는 소득 정보의 낮은 신뢰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며, 패널 조사의 특성상 매년 조사하는 정보에 연속성이 있으므로 보고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는 일반적으로 가족조사에서 이혼관련 정보가 부정확하게 보고되는 문제도 매년 조사하는 패널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결혼과 이혼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인데다 이혼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회분위기에 이혼 사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데 이러한 가능성을 패널 조사에서는 낮출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소득의 변동을 연구하는 데 패널 조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거나 혹은 사별한 가족에 비하여 이혼이나 별거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한계에서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용한 유일한 소득관련 패널 조사 자료임으로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주41)}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회씩 조사를 하며, 2005년 현재 2003년 6차 조사 자료까지 가용하다. 가용한 자료의 마지막 회 조사인 2003년 6차 조사의 경우 4,592가구의 10,985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1차 조사 원표본 유지율은 77%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본 연구의 분석은 1차 조사에서 6차 조사 시점까지 사이에 이혼이나 별거로 혼인의 지위가 변동된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조사시점 이전에 이혼한 사람의 경우 이혼 이전의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별거를 이혼과 함께 묶어서 파악하였는데,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별거의 경우 이혼의 전단계로서 거의 대부분 이혼으로 귀결되는 가족 해체의 사례인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별거에 대한 별도의 연구는 없으나 조사에서 별거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부부갈등의 범주가 아니라 이혼에 이를 것을 예상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그렇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별거와 이혼을 큰 범주의 가족 해체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주42)}. 본 자료에서 이혼가족 대비 별거가족의 수는 연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5대 1의 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파악했을 때 1998년에서 2003년까지의 5년간 새로이 이혼 혹은 별거한 사례의 수는 161명이었다. 이중 자료의 결손이 심각한 1사례를 버리고 총 160사례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중 남성은 85명이며 여성은 75명으로 남녀간에 대체로 비슷한 사례수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의 인구 1,000명당 연간 이혼 사례인 2.9건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총 표본 수 11,000~13,000명에 대하여 이혼 건수가 이론적으로 매년 32~38건으로 5년 동안을 계산하면 160~190건에 달해야 하는데, 이 패널 조사

주41) 소득에 관한 또 다른 패널 조사 자료인 대우 소득패널 조사 자료가 있으나 이는 199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지 않았다.

주42) 이후 본 글에서는 별거가족과 이혼가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이혼가족으로 지칭한다.

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5). 단, 이 조사가 도시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이혼 건수를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혼자가 본 조사의 대상에서 조금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 자료의 경우에도 비 혼자에 비하여 이혼자의 경우 정보의 누락 항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혼자들은 조사에 불응한 집단에 집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주43)

개인의 경제생활의 최소 단위는 가구이므로 가구소득을 주요 생활수준의 지표로 파악하였다. 가구소득은 조사 자료에서 각각 임금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하여 파악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집계하였다. 이렇게 합산한 가구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1년간 가구 구성원 모두가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점의 마지막 해인 2003년에는 연간 가구소득의 항목 이외에 새로이 조사 항목에 들어간 문항인 조사 시점 직전 1달간 소득 구성요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된 금액을 합산하여 12배로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2003년의 연간 총소득을 계산하였다.주44)

이혼 전후의 소득 비교는 이혼 1~2년 전 이혼자가 속한 가족의 총소득과 이혼 1~2년 후 이혼자가 속한 새로운 가족의 총소득을 비교한다.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조사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의 가족소득과 조사 시점 1년 후의 가족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혼 전과 후의 가족소득의 비교에서는 2년간의 간격이 두어지는 셈이다.

소득 정보의 경우 분포의 상향 편기(upward skewness)가 매우 심하므로 일반

주43) 이것은 일회성 조사로는 이혼자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하기 힘든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혼자들은 특히 자신의 생활을 남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므로 체계적으로 표본 추출 과정에서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44) 연간 소득으로 파악한 금액과 월 소득을 12배한 금액 간에는 수평 비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월간 소득을 12배한 금액이 연간소득으로 파악한 금액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소득의 경우 이 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연간 소득으로 파악한 전년도 소득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하고, 2003년의 월간 소득의 배율로 구한 소득은 참고로만 사용하였다.

적으로 평균(mean)과 함께 중앙값(median)을 계산하여 둘을 동시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평균과 중앙값이 차이가 매우 큰 경우 평균과 함께 중앙값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2. 이혼 전후의 소득 평균 비교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해 이혼을 전후한 소득을 비교해 본 결과, 남녀 모두에게 이혼은 큰 폭의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혼가족 전체 소득의 변화를 보면 평균으로 볼 때 가족 연소득이 1,948.7만원에서 1,736.4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소득의 경우 분포의 편기가 매우 심하므로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데, 중앙값의 경우 이혼을 전후하여 연소득이 1,800만원에서 1,215만원으로 평균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이혼 가족의 이혼을 전후한 소득 변화에서 특기할 점은, 이혼 전의 소득분포보다 이혼 후의 소득분포가 훨씬 더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분포의 폭을 의미하는 표준편차를 보면 비교하는 두 시점 간에 평균은 감소하였음에도 표준편차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혼한 가족의 소득이 이혼하기 전의 가족에 비해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해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이혼을 전후한 소득을 비교한 결과, 남성과 여성 간에는 이혼 전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혼 후에 더 차이가 벌어져 있다. 이혼 전년도 소득을 보면 여성은 평균이 2,024.4만원으로 남성의 1,879.4만원보다 높지만 이혼 후에 여성의 가족소득은 남성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중앙값으로 남녀의 소득을 비교하면 이혼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간에 소득수준에 전혀 차이가 없으나, 이혼 후에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이혼 후 소득에서 남녀간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다. 남성의 경우 이혼 다음해의 소득이 1,400만원인데 비해 여성의 소득은 1,200만원이다.

두 집단간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이혼 전에도 이혼 여성이 속한 가족 소

득의 표준편차는 남성의 경우보다 높았는데, 이것이 이혼 이후에는 훨씬 더 높아져 이혼 여성가족 소득의 표준편차는 이혼 남성 가족의 표준편차보다 세 배를 넘어선다. 다른 말로 하면 여성 가족은 이혼 전에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남성보다 컸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이혼 여성들 간에 빈부 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혼 전 여성가족의 연 소득이 남성가족의 경우보다 높았던 것도 여성이 남성보다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부유한 이혼여성 때문에 소득 평균이 상향으로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5-1> 이혼 전후의 소득 평균 비교

(단위: 만원)

구 분		이혼 전년도 소득	이혼 다음해 소득
남성 이혼가족	평균	1,879.4	1,719.8
	중앙값	1,800.0	1,400.0
	표준편차	215.6	244.4
여성 이혼가족	평균	2,024.4	1,756.8
	중앙값	1,800.0	1,200.0
	표준편차	354.9	768.3
전체 이혼가족	평균	1,948.7	1,736.4
	중앙값	1,800.0	1,215.0
	표준편차	280.3	496.5

주: 소득은 가구 소득이며 1년간 소득 금액의 총계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98~2003.

이혼을 전후한 소득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이혼가족의 소득 변화가 전체 가족의 상황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5-2>에서 전체 가족은 1997년에 평균이 1,781만원을 기록했으며, 2000년에는 평균이 2,144.2만원으로 상승하였고, 2002년에는 다시 2,722만원으로 상승하였다. 중앙값으로 보아도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승은 조사기간 동안 물가상승과 함께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본 분석의 대상인 이혼

가족은 이혼을 전후한 2~3년 동안 주위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소득이 적지 않게 상승하였음에도 이들만은 상당한 폭의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보아 이혼이 소득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큼을 확인하게 된다.

<표 5-2>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혼가족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전체 가족보다 같거나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한 시기가 표본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단순 수평비교는 어려우나 조사 시점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2000년의 소득과 이혼가족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이혼하기 이전에 이혼 가족의 소득 평균은 전체 가족의 소득 평균보다 연 200만원 가까이 낮은 반면 중앙값은 1800만원으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 이것으로 볼 때 전체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혼을 덜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Lee, 2005; White, 1990).

<표 5-2> 표본가족 전체의 소득 평균

(단위: 만원)

구 분	1997년 소득 (1년차 자료)	2000년 소득 (4년차 자료)	2002년 소득 (6년차 자료)
평균	1,781.0	2,144.2	2,722.0
중앙값	1,440.0	1,800.0	2,208.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98~2003.

3. 이혼 전후의 소득차 비교

앞 절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족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다음 의문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집단의 평균 비교로부터 개개인의 이혼 전후 소득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계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이다. 예컨대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이혼을 전후하여 1000만원의 소득 감소를 경험한 반면, 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이 이혼을 전후하여 같은 1000만원의 소득감소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평균소득의

변화로써는 1000만원의 소득감소이나 소득 감소의 충격으로 보면 5000만원 소득자와 2000만원 소득자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보다 극단적인 경우는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이혼을 전후하여 1000만원의 소득 증가를 경험한 반면, 소득 2000만원인 사람 두 명이 각각 500만원씩의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하면 집단 평균의 비교로는 이혼 전후에 소득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자 각각에 대하여 이혼을 전후한 소득 변화량을 따로 계산해 보고, 또 개개인의 이혼을 전후한 소득의 변화율을 별도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표는 이혼자 각각이 속한 가족의 연소득이 이혼을 전후하여 변화한 양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면 남성의 경우 이혼을 전후하여 평균으로는 81.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중앙값으로는 이혼전과 비교하여 이혼 이후 오히려 3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혼을 전후하여 소득이 증가한 것은 이혼으로 인한 소득 증가이기보다는,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가족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소득 증가 경향이 남성의 소득 증가에도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전체 가족의 소득 증가분과 비교할 때 남성 이혼가족의 소득의 증가가 미미하다는 것은,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소득 감소는 없었다고 하여도 경제적인 충격이 없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이혼 이후 평균으로는 359.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중앙값으로는 200만원이 감소하였다(표 5-3 참조). 이것을 이혼전의 소득 수준을 분모로 하여 변화율로 계산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변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0.0%), 여성의 경우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이후 가족소득이 18.3%나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 남성은 이혼으로 인한 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여성은 이혼전과 비교하여 이혼 후에 가족소득에서 약 30%의 감소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mock, 1994; Peterson, 1996; McKeever and Wolfinger, 2001). 이 수치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여성의 소득감소 비율 18.3%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이혼 이후 미국의 여성들보다 경제적 충격이 덜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차이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혼 후에 부모나 기타 친척과 같이 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혼 여성이 속한 가족소득으로만 보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혼 후에 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사는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경제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이혼 후 18.3%라는 소득감소 비율은 미국 여성의 30%보다 반드시 작은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표 5-3> 이혼 전후의 소득차 비교

(단위: 만원)

구 분	남성이혼가족	여성이혼가족	전체
평균	-81.4	-359.4	-217.1
중앙값	+30.0	-200.0	-85.0
표준편차	1,168.4	1,064.5	1,118.2
소득감소비율	-0.0%	-18.3%	-5.6%

주: 1) 소득차는 이혼을 전후하여 연간 가족소득의 변화량임.

2) 소득감소비율 = (이혼 다음 해 소득 - 이혼 전년도 소득) ÷ 이혼전년도 소득 ×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98~2003.

4. 가족 소득의 구성요소별 이혼 전후의 변화

이혼을 전후하여 남녀간에 경제적 수준의 변화가 매우 대조적이라는 점을 앞 절에서 확인하였다. 다음에는 이렇게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극적으로 벌어지는 요인은 무엇일까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 소득의 구성요소별로 이혼을 전후하여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예상한 대로 이혼 이후에 남성과 여성 간에는 무엇보다 근로소득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다음의 <표 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주의할 점은 가족 소득의 구성 요소를 모두 합하여도 정확히 100%가 되지 않는다는 사

실이 다. 이는 이혼가족 전체의 소득 구성요소 별 금액을 일괄적으로 평균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이혼가족의 소득 구성 요소의 비율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다시 구성요소 별로 집단 평균을 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소득구성요소별 분포가 표본들 간에 균일할 경우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동일한 값을 얻게 되나, 소득 분포는 매우 편기되어 있으며 소득 구성요소별 분포 또한 심하게 상향 편기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각각의 가족에서 각 소득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소득 요소별로 합산하는 것이 분포의 외곡으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표 5-4>에서 보면 남녀 모두 이혼 이후에는 이혼전과 비교하여 가족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이혼전과 이혼 후의 가족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3.7%의 차이에 불과하나, 여성의 경우 이 차이는 18%에 달한다. 금융 및 부동산 소득의 경우에 남성은 이혼전과 비교하여 이혼 후에 점유율이 조금이지만 상승하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하강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전소득이나 기타 소득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증가는 두드러진다. 친척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돈인 이전소득이 전체 가족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의 경우 이혼 전에 3.3%에서 이혼 후에는 12.6%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이전소득은 제법 증가를 보이지만 여성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한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혼을 전후하여 남성은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 0.6%에서 6.3%로 현저히 증가했다. 기타 소득의 주요 항목이 보험금, 퇴직금, 증여나 상속, 및 기타 비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것으로 볼 때, 여성의 경우 이렇게 현저히 증가한 것은 분명 위자료나 양육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4〉 이혼 가족의 소득 구성요소별 이혼에 따른 소득 변화

(단위: %)

구 분		이혼전	이혼 후
남성 이혼가족	가족근로소득	84.0	80.3
	금융 및 부동산 소득	0.9	3.1
	이전소득	6.6	11.9
	기타소득	2.3	3.2
	총소득 평균	1879.4만원	1719.8만원
여성 이혼가족	가족근로소득	84.2	66.2
	금융 및 부동산 소득	5.7	3.7
	이전소득	3.3	12.6
	기타소득	0.6	6.3
	총소득 평균	2024.4만원	1756.8만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98~2003.

제 2 절 재가이혼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우리나라에서 이혼가족의 생활실태 및 가족가치관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대표성 있는 조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이혼가족의 삶을 일반가족의 삶과 비교한 실태조사 자료도 거의 없다. 이는 이혼가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이혼가족 전체로의 일반화가 가능한 모집단으로부터의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유의 표본추출을 통한 사례조사 및 눈덩이 표본추출을 통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여 왔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조사」에서는 15세 이상 5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출산력, 가족보건 및 복지에 관한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이혼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확률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유배우가족은 물론 이혼가족에 대해서도 대표성 있는 실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해서 유배우가족과 이혼 가족에 대한 항목별 비교를 하여 이혼가족의 삶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혼가족의 경우는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설문항목에 따라서는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특히 직업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유배우여성 응답자와 이혼여성가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항목에 따라서는 이혼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이혼가족의 삶의 실태와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 따라서 어떠한 상이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전국 출산력조사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이어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이혼 관련

가. 이혼연령 및 이혼기간

우선, 전국출산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혼가족만을 추출해서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주45). 우선, 이혼 연령은 이혼여성가구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은 19.7%이고, 그 다음은 20~30대로 28.3%이다(표 5-5 참조). 이혼남성가구도 40대가 가장 많은 53.1%이고, 그 다음은 50대로 30.4%, 20~30대 16.4%의 분포이다. 이혼여성가구의 평균 연령은 43.83세로 이혼남성가구 46.06세보다 약간 더 적었다.

주45) 전국 출산력 조사 중 기혼가족에 대한 사항을 응답한 대상자는 총 9,600명이다. 결혼상태 별로 보면 유배우자 88.6%, 사별 4.1%, 별거 4.55%, 이혼 5.3% 기타 1.3%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사별자와 별거자 및 기타는 제외하였다. 이혼자는 총 511명인데 이 중 여성은 304명이고 남성은 207명이다. 평균 연령은 유배우자가 41.33세이고, 이혼자가 44.73세이다.

〈표 5-5〉 이혼자 연령

(단위: 명, %)

구 분	이혼여성가구주 (평균: 43.83세)		이혼남성가구주 (평균: 46.06세)		전체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20~30대	86	28.3	34	16.4	23.5
40대	151	49.7	110	53.1	51.1
50대 이상	67	22.0	63	30.4	25.4
계	304	100.0	207	100.0	100.0(511)

주: $\chi^2=11.083^{***}$,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연령대별 이혼기간을 보면 20~30대는 이혼기간이 0~4년 이상이 가장 많은 55.1%이고, 5~9년이 그 다음으로 35.6%이다. 40대는 5~9년이 가장 많은 36.8%이었고, 그 다음이 0~4년으로 30.6%를 차지한다. 50대는 10~19년이 가장 많은 36.2%이고, 20년 이상이 그 다음으로 28.3%이다(표 5-6 참조).

〈표 5-6〉 이혼연령대 별 이혼기간

(단위: 명, %)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0~4년	55.1	30.6	11.8	31.6
5~9년	35.6	36.8	23.6	33.2
10~19년	9.3	27.9	36.2	25.6
20년 이상	-	4.7	28.3	9.5
계 (평균: 8.72년)	100.0 (118)	100.0 (258)	100.0 (127)	100.0 (503)

주: 1) $\chi^2=124.230^{***}$, $*** p < .001$
 2) 여성평균 이혼기간: 8.75년, 남성평균 이혼기간: 8.68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아울러 50대의 경우 이혼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11.8%, 5~9년인 경우는 23.6%나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연령일수록 이혼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50대의 경우 이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최근 10년 사이에 50대의 이혼도 상당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수치이다.

나. 동거기간

결혼 후 동거기간은 이혼여성가구는 13.64년, 이혼남성가구는 11.94년으로 여성이 약간 더 길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은 동거기간이 15~19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24.7%), 그 다음이 10~14년으로 나타났다(22.3%)(표 5-7 참조). 남성의 경우는 동거기간이 10~14년인 경우가 가장 많은 24.8%, 그 다음은 15~19년으로 24.3%를 차지한다. 4년 이하의 동거기간 후 이혼은 여성 12.0%, 남성 16.8%로 두 집단 모두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20년 이상 동거 후 이혼은 여성 20.7%, 남성 13.9%로 여성이 더 길었다.

〈표 5-7〉 동거기간

(단위: 명, %)

구 분	이혼여성가구주 (평균: 13.64년)		이혼남성가구주 (평균: 11.94년)		전체 (평균: 12.96년)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0~4년	36	12.0	34	16.8	13.9
5~9년	61	20.3	41	20.3	20.3
10~14년	67	22.3	50	24.8	23.3
15~19년	74	24.7	49	24.3	24.5
20년 이상	62	20.7	28	13.9	17.9
계	300	100.0	202	100.0	100.0 (502)

주: $\chi^2=5.4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다. 이혼사유 및 이혼제의자

이혼의 이유를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성격차이’로 32.6%가 지적하였다. 이는 기존의 통계청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부부불화 중 49.4% 차지: 2004년)(표 5-8 참조).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남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18.5%, ‘남편의 외도’ 13.1%의 순이고, ‘부인의 외도’는 8.0%를 차

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성격차이, 남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남편의 외도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는 성격차이, 부인의 외도, 남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의 순이었다.

〈표 5-8〉 이혼 사유

(단위: 명, %)

구분	이혼여성가구주	이혼남성가구주	전체
남편의 외도	21.2	1.0	13.1
부인의 외도	-	20.0	8.0
외도주체 무응답	-	0.5	0.2
남편의 학대 또는 폭력	8.8	0.5	5.47
부인의 학대 또는 폭력	-	0.5	0.2
기타 가족의 학대 또는 폭력	0.3	-	0.2
성격차이	27.3	40.5	32.6
남편의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9.4	-	5.6
부인의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	3.0	1.2
시댁식구, 처가식구로 인한 불화	6.1	2.5	4.6
친정식구, 본가식구로 인한 불화	0.3	1.0	0.6
남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21.2	14.5	18.5
부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1.0	9.5	4.4
시댁식구, 처가식구로 인한 경제적 문제	0.3	-	0.2
친정식구 본가로 인한 경제적 문제	-	0.5	0.2
남편의 건강상 이유로	0.7	1.0	0.8
부인의 건강상 이유로	1.7	0.5	1.2
건강상 이유 주체 무응답	-	0.5	0.2
기타의 이유로	1.7	4.0	2.6
계	100.0 (297)	100.0 (200)	100.0 (497)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자승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여기서 부인의 외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그 배경과 그로 인한 가족갈등 및 문제점, 가족해체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많아 이에 대한 연구는 누적되었으나, 부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연구가 미진한 편이 있다. 여성들은 중년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회피하고, 인간관계가 제한적이 된다. 특

히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 쉬우며 삶의 목표에 대한 불안감, 압박감마저 경험하게 된다. 이때 우울과 분노를 느끼고 삶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서 정서적 공허함, 생활의 외로움, 결혼불만족 등이 초래되고 이는 성적인 탈선과 가족해체로 이어지게 된다(박경혜, 2003).

이혼을 제의한 사람은 부인이 가장 많은 68.2%로 나왔고, 그 다음이 남편으로 29.2%이었다(표 5-9 참조).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이혼은 소수로 파악되었다.

〈표 5-9〉 이혼을 제의한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백분율
남편	146	29.2
부인	341	68.2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5	1.0
친정부모 또는 기타	4	0.8
기타	4	0.8
계	5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2. 경제생활

가. 소득관련

경제부문의 경우 가족의 소득원수는 유배우가족이 1.39명, 이혼가족이 1.34명으로 거의 비슷하다. 근로소득은 유배우가족은 월 269만원으로 이혼가족 123만원의 2배를 넘는 상황이다. 즉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집세)도 유배우가족 5.75만원, 이혼가족 2.76만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퇴직금 및 개인연금도 유배우가족 1.45만원, 이혼가족 0.22만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표 5-10 참조).

반면 비동거 자녀, 부모, 기타 친척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은 이혼가족이 6.78만원으로 유배우가족 3.61만원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아울러 사회보장

수혜액도 이혼가족이 3.52만원으로 유배우가족 2.05만원보다 더 많았다. 즉, 이혼가족은 저소득자가 많아 가족 및 친척이나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액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소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구소득액총액은 유배우가족이 273.76만원으로 이혼가족 137.45만원보다 약 136만원 가량이나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혼은 주수입원의 상실 및 반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경제적 상황이 두 성간에 별 차이 없이 유배우가족에 비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5-10〉 소득수 및 경제수준 비교

구분	유배우 가족	이혼가족			t값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소득수 (명)	1.39	1.34	1.30	1.39	1.746
근로소득 (만원)	260.79	122.74	117.33	130.75	26.453***
재산소득(만원)	5.75	2.76	2.03	3.83	2.779***
퇴직금, 개인연금(만원)	1.45	0.22	0.00	.055	4.388***
사적이전소득(만원)	3.64	6.78	8.46	4.33	-2.783**
사회보장수혜(만원)	2.05	3.52	2.47	5.06	-2.334*
기타(만원)	0.94	0.92	1.18	0.54	0.080
가구소득총액	273.76	137.45	132.17	145.18	26.697***
월평균저축액	52.80	15.97	15.62	16.49	16.688***
월평균 가구소비	217.39	125.28	121.48	130.85	26.468***
재산(동산+부동산)(백만원)	154.92	56.25	49.01	66.78	11.821***
부채액(백만원)	27.31	36.70	45.25	23.71	-0.514

주: 1) * p <.05, ** p <.00, *** p <.001

2)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월평균 저축액도 유배우가족이 평균 52.80만원으로 이혼가족 15.97만원에 비해 월등히 더 많았다. 가구소비도 유배우가족이 217.39만원으로 이혼가족 125.28만원에 비해 92만원 가량 많았다. 근로소득과 가구소비액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유배우가족은 근로소득이 더 많은 반면, 이혼가족은 가구소비액이 더 많아 가계에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도 유배우가족은 1억5만원으로 이혼가족 5천6백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반면 부채액은 유배우가족은 2천7백만원, 이혼가족은 3천6백만원인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생활의 경우 유배우가족에 비해 이혼가족의 생활 수준이 훨씬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혼기간별로 가족 경제실태를 파악하여 보았다(표 5-11 참조). 그 결과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소득총액, 월평균 가구소비에서 이혼기간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근로소득은 이혼 후 0~4년이 경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적이전소득도 이혼 후 0~4년의 경우가 많아 이혼한 지 5년 이내에는 주위의 지원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11〉 이혼기간별 소득수 및 경제수준 비교

구분	0-4년	5-9년	10-19년	20년 이상	F값
소득수 (명)	1.37	1.34	1.33	1.29	0.249
근로소득 (만원)	136.59	124.23	113.43	85.69	3.019**
재산소득(만원)	0.67	3.99	2.59	6.25	0.982
퇴직금, 개인연금(만원)	0	0	0.88	0	1.209
사적이전소득(만원)	11.51	4.02	5.81	4.69	2.707*
사회보장수혜(만원)	2.31	3.13	5.20	4.94	1.234
기타(만원)	0.96	0.41	1.11	2.21	0.975
가구소득총액	152.84	135.13	130.13	103.29	2.989*
월평균저축액	18.74	17.84	11.91	12.73	0.699
월평균 가구소비	135.35	125.66	122.85	87.21	5.828***
재산(동산+부동산)(백만원)	39.96	66.64	56.00	54.17	0.822
부채액(백만원)	78.41	20.58	16.35	11.54	0.792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가구소득총액 및 가구소비액에 있어서도 0~4년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의 항목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기간이 짧을수록 수입도 많은 반면 지출도 많고 아울러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 지원도 많이 받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재산소득과 월평균 가구소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12 참조). 재산소득은 50대가 71.4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소비액은 40대가 134.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5-12〉 연령대별 소득수 및 경제수준 비교

구분	20~30대	40대	50대	F값
소득수 (명)	1.38	1.35	1.28	0.830
근로소득 (만원)	124.57	130.47	105.78	2.197
재산소득(만원)	0.76	1.34	7.40	3.762*
퇴직금, 개인연금(만원)	0.00	0.00	0.87	1.837
사적이전소득(만원)	7.60	6.22	7.16	0.143
사회보장수혜(만원)	4.55	3.05	3.51	0.485
기타(만원)	0.34	1.23	0.82	0.775
가구소득총액	138.73	143.00	125.37	1.183
월평균저축액	13.68	15.10	19.93	0.661
월평균 가구소비액	125.99	134.17	106.85	6.220***
재산(동산+부동산)(백만원)	44.58	53.93	71.49	0.924
부채액(백만원)	101.78	17.77	14.07	1.998

주:* p < .05,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나. 부채의 원인

두 집단 간의 부채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 5-13 참조). 유배우 가족은 주거비 및 사업자금으로 인한 빚이 많음에 비해, 이혼가족은 사업자금 마련비나 생계비 등 생활수단의 마련을 위한 빚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도 이혼가족의 삶이 유배우가족에 비해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혼기간별 부채의 주요 원인은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를 상회하여서 카이제곱 값을 제시할 수는 없었으나, 0~4년과 5~9년은 생계비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10~19년은 사업자금, 20년 이상은 주거비로 인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체적으로 사업자금, 생계비, 주거비/주택마련비 충당을 위해 빚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3〉 부채의 주된 원인

(단위: %, 명)

구분	생계비	주거비/ 주택마련	교육비	사업 자금	의료비	관혼 상제비	기타	계(수)
가족형태								
유배우가족	8.2	37.5	5.8	39.1	1.4	1.1	6.9	100.0 (4450)
이혼가족	26.2	21.1	6.2	32.4	3.6	0.7	9.8	100.0 (275)
전체	9.3	36.5	5.8	38.7	1.5	1.1	7.1	100.0 (4725)
이혼기간								
0-4년	29.0	20.4	5.4	28.0	3.2	-	14.0	100.0 (93)
5-9년	27.4	15.8	6.3	35.8	3.2	2.1	9.5	100.0 (95)
10-19년	19.0	25.4	7.9	38.1	1.6	-	7.9	100.0 (63)
20년 이상	28.6	38.1	-	19.0	14.3	-	-	100.0 (21)
전체	26.1	21.3	5.9	32.4	3.7	0.7	9.9	100.0 (272)

주: 1) 가족형태: $\chi^2=123.932^{***}$, $*** p < .001$ 2) 이혼기간: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자승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을 파악한 결과 유배우가족의 경우는 자녀의 사교육비(23.6%)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혼가족은 자녀 양육 및 교육비(23.5%), 주거비(18.3%)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표 5-14 참조). 단, 두 집단 모두 자녀양육 및 교육비로 인해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유배우가족은 사교육비를, 이혼가족은 공교육비를 지적하여 이혼가족의 경우 기본적인 자녀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가족의 경우는 각종 공과금(15.8%)도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5-14〉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자녀양육 및 교육비	23.0	23.5	23.0
사교육비	23.6	7.9	22.7
의복 및 생활용품비	1.2	5.1	1.5
식료품비	4.9	9.2	5.2
각종 공과금	12.7	15.8	12.9
의료비	4.4	4.5	4.4
주거비	10.1	18.3	10.6
경조사비	3.5	0.6	3.4
자동차유지비 등 교통비	3.1	1.5	3.0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1.4	2.3	1.5
기타	11.9	11.3	11.8
계	100.0 (7,704)	100.0 (469)	100.0 (8,173)

주: $\chi^2=158.387^{***}$, *** p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기간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살펴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었으나, 0~4년과 5~9년의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 및 교육비로 인해 어렵다고 하였고, 10~19년은 주거비와 각종공과금,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이 되고, 20년 이상의 경우는 각종 공과금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표 5-15 참조). 즉, 이혼의 기간에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5〉 이혼기간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단위: %, 명)

구분	0~4년	5~9년	10~19년	20년 이상	전체
자녀양육 및 교육비	28.9	26.0	19.5	4.8	23.3
사교육비	10.7	9.7	4.2	-	7.8
의복 및 생활용품비	4.7	4.5	5.1	9.5	5.2
식료품비	7.4	9.1	11.9	9.5	9.3
각종 공과금	12.8	13.6	15.3	38.1	16.0
의료비	3.4	3.9	5.9	4.8	4.3
주거비	17.4	18.2	20.3	16.7	18.4
경조사비	-	-	2.5	-	0.6
자동차유지비 등 교통비	1.3	1.3	2.5	-	1.5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2.7	3.2	0.8	-	2.2
기타	10.7	10.4	11.9	16.7	11.4
계	100.0 (149)	100.0 (154)	100.0 (118)	100.0 (42)	100.0 (46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자승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가족가구주의 연령대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에 있어서는 20~30대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주거비, 사교육비를 많이 지적하였고, 40대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주거비, 각종 공과금 순으로 지적하였다. 50대는 각종공과금, 주거비, 식료품비의 순으로 지적하였다(표 5-16 참조). 즉, 연령대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에 있어서 이혼의 기간별 어려운 점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어려운 항목은 대체적으로 자녀양육비, 주거비, 공과금임을 알 수 있다. 다만 20~30대의 경우는 자녀양육비와 아울러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많다고 하여 젊은층은 자녀양육 및 교육상의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16〉 가구주의 연령대별 이혼가족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자녀양육 및 교육비	22.1	32.2	6.1	23.5
사교육비	17.7	6.2	1.8	7.9
의복 및 생활용품비	5.3	6.2	2.6	5.1
식료품비	6.2	8.7	13.2	9.2
각종 공과금	12.4	12.0	27.2	15.8
의료비	0.9	3.7	9.6	4.5
주거비	21.2	14.9	22.8	18.3
경조사비	-	0.8	0.9	0.6
자동차유지비 등 교통비	1.8	1.7	0.9	1.5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1.8	3.3	0.9	2.3
기타	10.6	10.3	14.0	11.3
계	100.0 (113)	100.0 (242)	100.0 (114)	100.0 (469)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자승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라. 주관적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자립정도

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이 이혼가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5-17 참조). 상층의 경우는 유배우가족 3.8%, 이혼가족 1.2%이고 중층은 유배우가족 73.8%, 이혼가족 37.4%이었다. 반면 하층은 유배우가족 22.6%, 이혼가족 61.4%로 이혼한 경우 생활이 더 어려움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이혼자 성별,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고 하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8, 표 5-19 참조).

〈표 5-17〉 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상	3.6	1.2	1.0	1.5	3.5
중	73.8	37.4	37.2	37.6	71.8
하	22.6	61.4	61.8	60.9	24.7
계	100.0 (8,448)	100.0 (503)	100.0 (301)	100.0 (202)	100.0 (8,915)

주: 1) $\chi^2=385.727^{***}$, $*** p < .001$

2) 이혼가족에 대한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자승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표 5-18〉 가구주 연령대별 이혼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상	-	1.6	1.6	1.2
중	42.9	35.3	36.5	37.4
하	57.1	63.2	61.9	61.4
계	100.0 (119)	100.0 (258)	100.0 (126)	100.0 (503)

주: $\chi^2=3.6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경제적 자립정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으나, 이혼가족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8.1%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표 5-19 참조). 아울러 약간 자립하고 있거나 상당히 자립하고 있는 비율도 유배우가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배우가족: 39.9%, 이혼가족 18.8%). 이혼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는 경제적 자립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없이 모두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5-19〉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5.2	23.1	23.0	23.2	6.2
별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21.6	35.0	36.2	33.3	22.4
보통이다	33.3	23.1	22.4	24.2	32.7
약간 자립하고 있다	21.2	13.9	12.5	15.9	20.8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18.7	4.9	5.9	3.4	17.9
계	100.0 (8,486)	100.0 (511)	100.0 (304)	100.0 (207)	100.0 (8,977)

주: 1) $\chi^2=363.637^{***}$, $*** p < .001$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2) $\chi^2=3.131$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의 기간별 경제적 자립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표 5-20 참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경제적으로 별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는 반면, 약간 혹은 상당히 자립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분의 1을 밑돌고 있다.

〈표 5-20〉 이혼기간별 이혼가족의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 명)

구분	0~4년	5~9년	10~19년	20년 이상	전체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24.5	19.2	27.9	20.8	23.3
별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37.7	37.1	31.0	35.4	35.6
보통이다	20.8	22.8	25.6	22.9	22.9
약간 자립하고 있다	13.8	14.4	12.4	12.5	13.5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3.1	6.6	3.1	8.3	4.8
계	100.0 (159)	100.0 (167)	100.0 (129)	100.0 (48)	100.0 (503)

주: $\chi^2=8.76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자의 연령대별 경제적 자립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5-21 참조).

〈표 5-21〉 가구주 연령대별 이혼가족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23.3	24.5	20.0	23.1
별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35.0	35.6	33.8	35.0
보통이다	25.0	19.2	29.2	23.1
약간 자립하고 있다	11.7	16.9	10.0	13.9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5.0	3.8	6.9	4.9
계	100.0 (120)	100.0 (261)	100.0 (130)	100.0 (511)

주: $\chi^2=10.1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마. 이혼가족의 가구소득 총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혼가족의 경제생활은 유배우가족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생활, 특히 가구소득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중요하다. 이에 여기서는 이혼가족의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인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이혼가족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이혼가족의 성별, 연령대별, 이혼기간대별 모델을 세분하여 나누어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이혼자의 성, 연령, 이혼기간대별 분석모델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리라고 판단되어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전체 모델에서는 가구소득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 연령, 18세 미만 자녀수,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을 선정하였다(표 5-22 참조)주46). 성별, 연령별, 이혼기간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 연령, 이혼기간을 각각의 모델에서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한계 상 가구

주46) 이는 수많은 소득모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선정한 것이다.

원수는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취업자의 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분석모델을 최대한 단순화(parsimonious) 하고자 제외시켰다.

〈표 5-22〉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다회귀분석 모델

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	가구소득총액	가구소득의 합(0~997만원, 평균: 137.45만원)
독립변수	가구주 성	남성가구주=1, 여성가구주=0
	연령	만연령(21~59세, 평균: 44.73세)
	18세 미만 자녀수	자녀수(0~4명, 평균: 0.77명)
	교육정도	높을수록 고학력(무학~대학원졸)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이혼기간	총 이혼년수 (0~35년, 평균: 13년)

우선, 전체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혼가족 가구주의 성, 18세 미만 자녀수,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 등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표 5-23 참조). 남성이혼가족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적을수록,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취업한 경우,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소득총액이 많았다. 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에서는 이혼남성가구주와 이혼여성가구주를 나누어서 어떠한 요인이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표 5-24 참조). 이혼남성의 경우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기간이 길수록, 취업을 한 경우,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 총소득이 많았다. 남성의 경우 연령과 18세 미만 자녀 유무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도 이혼남성 모델과 같이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이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우가,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소득총액이 더 많았다.

〈표 5-23〉 총가구소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β
성			
이혼남성가구주	20.887	9.569	0.097*
이혼여성가구주	0.000	0.000	0.000
연령	-1.664	0.889	-0.111
18세 미만 자녀수	-17.632	6.472	-0.147**
교육정도	1.644	0.424	0.169***
취업여부			
취업	82.162	11.013	0.322***
미취업	0.000	0.000	0.000
이혼기간	2.511	0.705	0.166***
상수	73.233		
R^2 (adjusted R^2)	.156(.145)***		

* p , .05 ** p < .01, *** p < .001

〈표 5-24〉 이혼자 성별 가구소득총액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이혼남성가구주 (b)	이혼여성가구주 (b)
연령	-2.675	-1.181
18세 미만 자녀수	-11.803	-24.316
교육정도	1.325*	2.000***
취업		
취업	93.002***	77.681***
미취업	0.000	0.000
이혼기간	2.696*	2.227*
상수	133.785	53.948
R^2 (adjusted R^2)	.198(.177)***	.140(.125)***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번에는 이혼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가구소득총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표 5-25 참조). 20~30대는 취업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취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구소득총액이 더 많았다. 40대의 경우는 모든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성이혼자가, 18세 미만 자녀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취업은 한 경우가, 이혼기

간이 길수록 가구 총소득이 많았다. 50대의 경우는 교육정도와 취업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한 50대 이혼자는 그렇지 않은 이혼자보다 가구소득총액이 더 많았다.

〈표 5-25〉 연령별 가구소득총액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20~30대 (b)	40대 (b)	50대 (b)
성			
이혼남성가구주	25.835	42.826***	-26.330
이혼여성가구주	0.000	0.000	0.000
18세 미만 자녀수	-25.487	-15.698*	-26.022
교육정도	0.315	2.020***	1.981*
취업			
취업	91.088***	104.621***	61.347**
미취업	0.000	0.000	0.000
이혼기간	1.958	2.621**	2.113
상수	66.029	-43.152	18.729
R ² (adjusted R ²)	.122(.082)*	.246(.231)***	.121(.084)**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은 가구주의 성, 이혼자의 연령, 18세 미만 자녀수, 취업여부, 이혼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남성이혼가족보다는 여성이혼가족과, 18세 미만 자녀가 많고, 취업을 하지 않은 이혼가족이면서 이혼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이혼가족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 18세미만 자녀로 인해서 가구소득총액이 적어진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40대를 위한 취업기회 제공과 자녀학비 지원 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혼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지원이 더 시급함을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3. 취업관련

가.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현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유배우자의 반인 54.7%가 취업하고 있는 반면, 이혼자는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인 78.3%가 취업하고 있었다(표 5-26 참조). 이는 이혼가족 가구주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가구 중 상당수는 생계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로는 이혼여성가구주의 77.3%가 취업하고 있고, 이혼남성은 79.7%가 취업하고 있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혼여성가구주는 51.9%가 기혼남성가구주는 87.5%가 취업하고 있어 유배우가족의 경우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표 5-26〉 현 취업 여부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계	기혼여성	기혼남성	계	이혼여성가구주	이혼남성가구주
취업	54.7	51.9	87.5	78.3	77.3	79.7
미취업	45.3	48.1	12.5	21.7	22.7	20.3
계	100.0 (8504)	100.0 (7848)	100.0 (656)	100.0 (511)	100.0 (304)	100.0 (207)

주: 1) $\chi^2=108.947^{***}$, $*** p < .001$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2) $\chi^2=308.975^{***}$, $*** p < .001$ (기혼여성과 남성)

3) $\chi^2=0.420$ (이혼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취업시 종사상의 지위는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유배우여성 응답자와 이혼여성가구주 모두 상용고가 가장 많은 68.5%와 58.0%이었으나, 임시고 일용고에 있어서는 유배우여성 응답자(20.7%)보다 이혼여성 가구주(31.9%)가 많았다. 자영업의 비율도 이혼여성가구주가 약간 더 높았다(표 5-27 참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유배우 여성이 더 높은

4.5%이었다(이혼여성가구주: 2.7%). 즉, 이혼여성가구주가 유배우여성 응답자에 비해 종사상의 지위가 약간 더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혼여성가구주는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종사상의 불안정에 대한 어려움은 기혼여성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5-27〉 종사상의 지위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여성	이혼여성가구주	전체
고용주	1.6	1.6	1.6
상용고	68.5	58.0	68.1
임시고, 일용고	20.7	31.9	21.0
자영업자	4.8	5.9	4.8
무급가족종사자	4.5	2.7	4.5
계	100.0 (5,661)	100.0 (188)	100.0 (5,849)

주: 1) $\chi^2=15.765^{**}$, $** p < .001$

2) 남성에 대한 정보는 설문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다음에는 두 집단에 있어서 일하는 이유를 파악하였더니, 두 집단 모두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이혼가구주의 경우는 절대 다수(94.8%)가 생활유지를 위해 취업하고 있었다(표 5-28 참조). 반면 유배우 여성은 자녀교육비 충당을 위해서 12.2%, 사회적인 성취 및 자아발견을 위해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자의 경우는 대부분 생활비를 위해서 취업하고 있었다.

〈표 5-28〉 일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여성	이혼여성가구주	전체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73.6	94.8	74.7
자녀교육비 충당을 위해	12.2	3.0	11.7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2.2	1.3	2.2
시간이 너무 많아 지루하므로	1.4	-	1.3
사회적 성취, 자아발전	10.4	0.9	9.9
기타	0.2	-	0.2
계	100.0 (4,066)	100.0 (233)	100.0 (4,299)

주: 1) $\chi^2=54.237^{***}$, $*** p < .001$

2) 남성에 대한 정보는 설문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나. 직업만족도 및 애로사항

직업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의 비율이 유배우가족 38% 이상으로 이혼가족 23%보다 더 높았다(표 5-29 참조). 임금은 유배우여성 응답자가 평균 80만원, 이혼여성가구주가 115만원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주47)}. 근무시간은 유배우여성 주당 74시간, 이혼여성가구주 주당 79시간으로 약간 더 길게 나타났다. 즉 이혼여성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유배우 여성보다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유배우여성 응답자는 주소득원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혼여성가구주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가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 등의 이유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47) 본문에서 임금, 근무시간 등은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5-29〉 직업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여성	이혼여성가구주	전체
매우 불만족	3.1	6.9	3.3
불만족	22.1	28.9	22.5
보통	36.8	41.4	37.1
만족	35.4	20.7	34.6
매우 만족	2.5	2.2	2.5
계	100.0 (4,063)	100.0 (232)	100.0 (4,295)

주: 1) $\chi^2=29.136^{***}$, $*** p < .001$
 2) 남성에 대한 정보는 설문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직업상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유배우자는 가사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하였는데 반해(49.2%), 이혼자는 가사(30.5%) 뿐 아니라 자녀양육(33.3%)도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녀양육비 조달 및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30 참조). 아울러 두 집단 모두 직업수행을 함에 있어서 자녀와 공유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유배우가족: 15.68%, 이혼여성가구주: 17.2%).

〈표 5-30〉 직업상의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여성	이혼여성가구주	전체
자녀양육부담	23.7	33.3	24.1
가사부담	49.2	30.5	48.3
부부간의 공유시간 부족	3.8	-	3.6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5.6	17.2	15.7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	2.2	1.7	2.2
노부모 부양	1.7	0.6	1.7
기혼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근로여건	0.9	5.2	1.1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0.6	6.9	0.9
기타	2.4	4.6	2.5
계	100.0 (3,607)	100.0 (174)	100.0 (3,781)

주: 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제곱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2) 남성에 대한 정보는 설문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표 5-31〉 이혼여성가구주의 연령별 직업상의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자녀양육부담	57.1	27.1	-	32.6
가사부담	12.5	35.4	54.5	32.1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6.1	20.8	4.5	16.7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	1.8	2.1	-	1.4
노부모 부양	-	1.0	-	0.5
기혼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근로여건	7.1	3.1	9.1	4.5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3.6	9.4	4.5	7.2
기타	1.8	1.0	27.3	5.0
계	100.0 (56)	100.0 (96)	100.0 (22)	100.0 (174)

주: 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자승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2) 남성에 대한 정보는 설문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자 연령대별 직업상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20~30대는 자녀양육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는 가사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에 있어서 자녀연령이 어려서 양육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31 참조).

다. 향후 취업의향 및 이유

향후 취업희망 여부에 있어서는 취업을 원한다는 응답이 이혼가족이 63.8%로 유배우가족 53.4%보다 더 많았다(표 5-32 참조). 연령대별로는 20~40대는 4분의 3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50대는 반수 정도만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표 5-33 참조).

향후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유배우여성과 이혼여성가구주 모두 ‘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라고 지적하였는데, 그 비율이 이혼가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은 93.2%가 되었다. 유배우자는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을 위해’ 향후 취업을 원한다는 비율도 25.1%로 상당수 있었다(표 5-34 참조).

〈표 5-32〉 향후취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여성	이혼여성가구주	전체
원한다	53.4	63.8	53.5
원하지 않는다	44.1	33.3	43.9
모르겠다	2.6	2.9	2.6
계	100.0 (3,767)	100.0 (69)	100.0 (3,836)

주: 1) $\chi^2=3.178$

2) 남성에 대한 정보는 설문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표 5-33〉 연령대별 여성이혼자 향후 취업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원한다	75.0	74.1	50.0	63.8
원하지 않는다	16.7	25.9	46.7	33.3
모르겠다	8.3	-	3.3	2.9
계	100.0 (12)	100.0 (27)	100.0 (30)	100.0 (69)

주: 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제곱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2) 남성에 대한 정보는 설문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표 5-34〉 향후 취업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유배우여성	이혼여성가구주	전체
가계에 경제적 도움	70.3	93.2	70.8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을 위해	25.1	2.3	24.6
경제적 독립을 위해	4.3	4.5	4.3
기타	0.3	-	0.3
계	100.0 (2,008)	100.0 (44)	100.0 (2,052)

주: 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0% 이상이므로 카이제곱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2) 남성에 대한 정보는 설문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4. 주거생활

다음에는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의 주거생활을 비교하여 보았다. 우선 주택 소유 형태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35 참조). 유배우가족의 경우는 '자가'가 가장 많은 64.1%인데 반해서, 이혼가족의 경우는 자가가 30.3%에 불과하고, '전월세'가 28.8%, 전세 22.9%로 나타났다. 즉, 이혼 후 주거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월세도 이혼가족이 10.0%로 유배우가족 1.9%에 비해 훨씬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이혼가족은 전월세가 가장 많은(33.9%)데 비해 남성이혼가족은 자가(39.6%)가 가장 많아 여성이혼가족의 주거가 더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표 5-35〉 주택 소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자가	64.1	30.3	24.0	39.6	62.2
전세	20.0	22.9	25.7	18.8	20.2
전월세	8.6	28.8	33.9	21.3	9.7
월세	1.9	10.0	8.9	11.6	2.3
기타	5.4	8.0	7.9	8.7	5.7
계	100.0 (8,499)	100.0 (511)	100.0 (304)	100.0 (207)	100.0 (9,010)

주: 1) $\chi^2=434.523^{***}$, $*** p < .001$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2) $\chi^2=20.308^{***}$, $*** p < .001$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연령대별 이혼자의 주택 소유 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36 참조). 20~30대는 전월세가 많은 반면, 40대는 자가, 전세, 전월세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50대는 자가가 월등히 많았다. 즉 연령이 상승할수록 주거가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가족의 경제수준은 저연령의 경우가 약간 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주거소유 형태에 있어서는 고연

령의 경우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주가 저연령인 이혼가족에게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더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5-36〉 가구주 연령대별 이혼가족의 주택 소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자가	19.2	29.5	42.3	30.3
전세	21.7	25.3	19.2	22.9
전월세	36.7	29.1	20.8	28.8
월세	10.0	8.8	12.3	10.0
기타	12.5	7.3	5.4	8.0
계	100.0 (120)	100.0 (261)	100.0(130)	100.0(511)

주: $\chi^2=23.504^{**}$, ** p < .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기간별로는 주택소유형태 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5-37 참조).

〈표 5-37〉 가구주 이혼기간별 이혼가족의 주택 소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0~4년	5~9년	10~19년	20년 이상	전체
자가	23.3	26.9	35.7	45.8	29.8
전세	25.2	24.6	21.7	16.7	23.3
전월세	34.6	32.3	20.9	18.8	28.8
월세	7.5	7.2	14.0	16.7	9.9
기타	9.4	9.0	7.8	2.1	8.2
계	100.0 (159)	100.0 (167)	100.0 (129)	100.0 (48)	100.0 (503)

주: $\chi^2=15.1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5. 자녀양육 관련

가. 자녀수 및 양육자

이혼시 18세 미만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5.4%이었고, 1명

은 29.6%이었다(표 5-38 참조). 즉, 이혼가족의 85% 정도는 이혼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이혼 후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준다.

〈표 5-38〉 이혼시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백분율
0명	80	15.9
1명	149	29.6
2명	229	45.4
3명	40	7.9
4명	5	1.0
6명	1	0.2
계	50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41.3%이고, 1명 28.5%, 2명 27.6%의 순이었다. 이는 이혼 후 여성이 자녀를 키우지 않았거나, 자녀가 성장하여 18세 이상이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표 5-39 참조). 이혼 후에도 이혼가족의 60%는 미성년자녀가 있다.

〈표 5-39〉 현재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백분율
0명	175	41.3
1명	121	28.5
2명	117	27.6
3명	10	2.4
4명	1	0.2
계	42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자녀와의 동거자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모와 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49.0%와 42.6%이었는데, 둘째 자녀의 경우는 자녀의 부가 53.1%로 자녀의 모 38.3%보다 훨씬 많다(표 5-40 참조). 소수의 첫째 자녀는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었다(4.8%). 혼자 사는 경우도 3명이 되고 있고, 기타 친척,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는 경우도 소수 있다.

〈표 5-40〉 자녀와의 동거자

(단위: 명, %)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자녀의 부	106	42.6	68	53.1
자녀의 모	122	49.0	49	38.3
조부모	11	4.8	6	4.7
기타친척	1	0.4	3	2.3
혼자 살고 있음	3	1.2	-	-
사회복지시설	1	0.4	-	-
기타	4	1.6	2	1.6
계	249	100.0	12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나. 자녀양육비 관련

자녀 양육비 제공자 수는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를 막론하고 1인이 가장 많았다(표 5-41 참조). 양육비 주 제공자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부와 모가 비슷한 수치로 각 49.0%와 45.0%를 보이고 있는데, 둘째 자녀는 국가가 49.2%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둘째자녀가 있다는 응답 중 모·부자가정의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 준다(표 5-42 참조).

〈표 5-41〉 자녀의 양육비 제공자 수

(단위: 명, %)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1명	186	74.7	97	75.8
2명	59	23.7	30	23.4
3명	4	1.6	1	0.8
계	249	100.0	12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표 5-42〉 자녀의 양육비 주제공자

(단위: 명, %)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자녀의 부	122	49.0	8	12.7
자녀의 모	112	45.0	12	19.0
조부모	8	3.2	9	14.3
기타친척	1	0.4	3	4.8
국가(모·부자가정)	5	2.0	31	49.2
사회복지시설	1	0.4	-	-
계	249	100.0	6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다.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의 만족도가 이혼가족보다 약간 더 높았다(표 5-43 참조). 반면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유배우가족 5.5%, 이혼가족 16.1%로 이혼가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자녀와의 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매우 불만족	0.4	3.4	2.4	3.8	0.6
불만족	5.1	12.7	10.9	15.9	5.5
보통	41.4	46.2	42.6	51.9	41.7
만족	50.1	34.4	39.3	26.4	49.1
매우 만족	3.0	3.4	4.7	1.9	3.1
계	100.0 (6,613)	100.0 (442)	100.0 (338)	100.0 (208)	100.0 (7,055)

주: 1) $\chi^2=124.631^{***}$, $*** p < .001$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2) $\chi^2=14.821^{***}$, $** p < .01$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자는 취업자가 많아 자녀와 갖는 절대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시간을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여성가구주와 이혼남성가구주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혼여성가구주가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6. 전반적인 가족생활 변화

1년 전과 비교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은 동일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9.1%이었는데 반해, 이혼가족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다(표 5-44 참조).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유배우가족 21.5%, 이혼가족 12.5%로 파악되었다. 이혼여성가구주와 이혼남성가구주는 유의한 차이없이 1년 전에 비해서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표 5-44〉 1년 전에 비한 가족생활 변화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더 나빠졌다	28.1	47.3	46.4	48.8	29.2
동일하다	49.1	39.4	38.1	41.4	48.6
더 좋아졌다	21.5	12.5	14.2	9.9	21.0
모르겠다	1.3	0.8	1.3	-	1.2
계	100.0 (8,461)	100.0 (505)	100.0 (302)	100.0 (203)	100.0 (8,966)

주: 1) $\chi^2=88.860^{***}$, $*** p < .001$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2) $\chi^2=5.045$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모두 80% 이상)(표 5-45 참조). 이 밖에 가족원의 건강상의 이유와 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이 부족함을 소수가 지적하였다. 이혼여성가구주와 이혼남성가구주 간에 차이 없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생활이 나빠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었다.

〈표 5-45〉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이유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 부족	3.4	5.1	3.6	7.1	3.4
문화생활이 거의 없음	1.1	0.4	-	1.0	1.0
경제적 어려움	89.2	84.4	87.1	80.6	88.8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	0.2	0.4	-	1.0	0.2
가족 밖에서 가족문제 해결	0.4	0.4	-	1.0	0.4
이웃, 친구와 교제가 거의 없음	0.1	0.8	1.4	-	0.2
가족원의 건강상의 이유	5.4	6.3	7.2	5.1	5.5
기타	0.3	2.1	0.7	4.1	0.5
계	100.0 (2,372)	100.0 (237)	100.0 (139)	100.0 (98)	100.0 (2,609)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제곱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전반적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의 만족하다는 응답은 42.8%이었는데 반해, 이혼가족은 19.4%로 나타나 이혼가족의 만족도가 훨씬 더 낮았다(표 5-46 참조). 보통이라는 응답은 두 집단 모두 46~47%를 차지하고 있고, 불만족의 경우는 유배우가족 10.2%, 이혼가족 35.0%로 이혼가족의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46〉 전반적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매우 불만족	0.7	6.9	7.9	5.4	1.1
불만족	9.5	28.1	25.8	31.5	10.6
보통	46.9	45.5	44.4	47.3	46.8
만족	40.8	18.0	20.2	14.8	39.5
매우 만족	2.0	1.4	1.7	1.0	2.0
계	100.0 (8,461)	100.0 (505)	100.0 (302)	100.0 (203)	100.0 (8,966)

주: 1) $\chi^2=385.955^{***}$, $*** p < .001$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2) $\chi^2=5.122$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이혼자 연령대별 가족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보통 및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이혼가족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47 참조).

〈표 5-47〉 가구주 연령대별 이혼가족의 전반적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매우 불만족	6.7	5.0	11.0	6.9
불만족	31.1	27.8	26.0	28.1
보통	45.4	46.3	44.1	45.5
만족	16.0	20.1	15.7	18.0
매우 만족	0.8	0.8	3.1	1.4
계	100.0 (119)	100.0 (259)	100.0 (127)	100.0 (505)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자승 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7. 복지욕구

가. 가족의 행복 1순위

가족 행복의 1순위로 지적된 것은 두 집단 모두 가족의 건강, 가정 안정의 순이었다(표 5-48 참조). 다만 이혼가족은 유배우가족에 비해 권력이나 재산소유, 자식이 사회구실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이혼가족과 남성 이혼가족도 가족의 건강과 가정안정을 가족 행복의 1순위로 보고 있었다. 단, 여성이혼가족은 배우자의 사회구실을 남성이혼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여성: 4.7%, 남성: 0.5%). 즉, 여성이혼가구주들이 이혼전 배우자가 제대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가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음을 시사한다.

〈표 5-48〉 가족 행복의 1순위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	1.7	2.8	2.0	3.9	1.8
가정 안정	30.8	37.1	35.2	39.9	31.2
권력이나 재산소유	4.1	6.5	7.0	5.9	4.2
배우자의 사회구실	2.2	3.0	4.7	0.5	2.3
자식이 사회구실	2.9	4.8	7.0	1.5	3.0
자녀의 효성	0.3	0.4	0.3	0.5	0.3
가족의 건강	57.7	45.2	43.5	47.8	57.0
기타	0.3	0.2	0.3	-	0.3
계	100.0 (8,458)	100.0 (504)	100.0 (301)	100.0 (203)	100.0 (8,962)

주: 1) $\chi^2=35.740^{***}$, $*** p < .001$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2) 이혼가족의 경우는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카이제곱값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나. 재혼에 대한 견해

재혼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 응답자와 이혼가족 가구주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5-49 참조). 가장 많은 응답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약 반을 차이하고 있고(46%~47% 내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0% 내외에 달하고 있다.

이혼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는 재혼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혼남성이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었다(반드시 해야 한다 + 하는 것이 좋다 = 여성: 12.3%, 남성: 30.4%).

이혼자의 연령대에 따른 재혼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재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표 5-50 참조).

〈표 5-49〉 재혼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계	이혼 여성가구주	이혼 남성가구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9	1.0	0.7	1.5	0.9
하는 것이 좋다	20.3	18.6	11.6	28.9	20.2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46.9	46.0	48.7	42.2	46.8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5	23.1	26.5	18.1	21.5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6.1	6.5	7.9	4.4	6.1
모르겠다	4.4	4.7	4.6	4.9	4.4
계	100.0 (8,455)	100.0 (506)	100.0 (302)	100.0 (204)	100.0 (8,961)

주: 1) $\chi^2=1.710$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2) $\chi^2=27.643^{***}$, *** $p < .001$ (이혼여성가구주와 이혼남성가구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표 5-50〉 이혼자 가구주 연령대별 재혼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	1.9	-	1.0
하는 것이 좋다	15.1	18.9	21.7	18.6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53.8	44.4	42.2	46.0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	24.3	23.4	23.1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5.0	6.6	7.8	6.5
모르겠다	5.9	3.9	5.5	4.7
계	100.0 (119)	100.0 (259)	100.0 (128)	100.0 (506)

주: $\chi^2=10.3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다.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으로 두 집단 모두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을 지적하였다(표 5-51 참조).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것은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모두 노인복지정책이었다. 세 번째는 유배우가족의 경우는 영유아 보육정책인데 반

해서, 이혼가족은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나타났다.

이혼자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혼여성가구주는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혼 남성의 경우는 중년기 남성을 위한 정책을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여 이혼가족들이 생활고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1〉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

(단위: %, 명)

구분	유배우가족	이혼가족			전체
		소계	여성 이혼가족	남성 이혼가족	
영유아 보육정책	12.4	5.6	6.0	5.0	12.0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	33.6	26.9	28.0	25.1	33.2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	7.8	18.0	29.3	1.0	8.3
중년기 남성을 위한 정책	12.0	13.0	4.3	26.1	12.0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7.4	10.8	10.0	12.1	7.6
노인복지정책	26.0	25.1	22.0	29.6	26.0
기타	0.8	0.6	0.3	1.0	0.8
계	100.0 (8,422)	100.0 (499)	100.0 (300)	100.0 (199)	100.0 (8,921)

주: 1) 유배우가족과 이혼가족 $\chi^2=92.226^{***}$, $*** p < .001$

2)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 $\chi^2=101.602^{***}$,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가족정책을 이혼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5-52 참조). 그런데 이혼한지 19년 이하인 경우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의 필요성을 많이 지적하였고, 이혼한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노인복지정책을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으로 지적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40대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과 노인복지정책,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비슷한 비율로 원하고 있었고, 50대는 노인복지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었다(표 5-53 참조). 다른 연령계층에서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이

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과 이혼기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고령인 경우도 이혼기간이 짧은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이혼가족 지원정책을 연령대와 이혼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52〉 가구주 이혼기간별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

(단위: %, 명)

구분	0~4년	5~9년	10~19년	20년 이상	전체
영유아 보육정책	12.1	3.0	3.2	-	5.7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	31.8	29.3	22.4	8.5	26.4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	16.6	19.5	16.0	23.4	18.1
중년기 남성을 위한 정책	11.5	15.2	15.2	6.4	13.2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9.6	11.6	9.6	17.0	11.0
노인복지정책	17.2	21.3	32.8	44.7	25.2
기타	1.3	-	0.8	-	0.6
계	100.0 (157)	100.0 (164)	100.0 (125)	100.0 (47)	100.0 (493)

주: $\chi^2=50.063^{***}$, *** p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표 5-53〉 가구주 연령대별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대	50대	전체
영유아 보육정책	11.9	4.3	2.4	5.6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	44.1	27.0	10.4	26.9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	11.9	21.1	17.6	18.0
중년기 남성을 위한 정책	11.0	13.7	13.6	13.0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9.3	10.9	12.0	10.8
노인복지정책	11.0	22.7	43.2	25.1
기타	0.8	0.4	0.8	0.6
계	100.0 (118)	100.0 (256)	100.0 (125)	100.0 (499)

주: $\chi^2=68.342^{***}$, *** p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제 3절 사례조사 결과

본 연구를 위해서 이혼가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앞의 이혼동기, 이혼과정상 어려운 점, 이혼전과 후의 생활변화,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가족으로 지원받는 서비스,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정부에 바라는 점, 희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파악하였다. 사례대상은 사회복지관과 이혼관련 상담소 및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았다. 여성 사례(7사례)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고, 남성의 경우(3사례)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였다.

사례조사는 훈련된 면접원과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2005년 11~12월중에 실시되었다. 이혼 사례에 대한 주요 질문사항은 다음의 <표 5-54>와 같고 인터뷰 대상의 특성은 <표 5-5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의 인터뷰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고, 앞의 재가 및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상태에서 이미 제시된 분석 부분(이혼동기, 경제생활, 자녀양육관련, 주거생활)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사례조사 분석 결과 중 전국 출산력조사와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자세한 설명이 안된 부분인 이혼과정상의 어려움, 사회심리 및 건강문제,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원하는 지원사항 등만을 제시하였다.

<표 5-54> 이혼 사례조사 질문 항목

항목	내용
개인사항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 결혼기간, 이혼기간, 자녀(연령)
이혼동기	주요 이혼 사유
이혼과정상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
이혼전과 후의 생활변화	경제생활, 자녀양육, 주거생활, 역할 문제 등
이혼 후 어려운 점	인간관계, 사회심리적 문제, 경제문제, 건강문제, 역할문제, 자녀양육문제, 자녀교육비 문제, 주거문제, 사회적 편견 등
이혼가족으로 지원받는 서비스	개선점, 요구사항
이혼숙려제도	필요성 및 효과성
정부에 바라는 점	필요한 지원 유형
희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희망 서비스 유형

〈표 5-55〉 이혼 사례 소개

사례	성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	결혼 기간	이혼 기간	이혼사유	자녀수
1	남성	39세	고졸	무직	퇴직금으로 충당	12년	1달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2남*
2	남성	45세	초대졸	출판업	불규칙	12년	1달	성격차이 부인외도	2녀*
3	남성	57세	대졸	퇴직	150만원	27년	3년	부인외도	1남1녀
4	여성	28세	고졸	주부 정부보조	17~ 20만원	5년	3년	경제적 어려움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1남
5	여성	36세	고졸	제과사	80만원	7년	6년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성도착	2남
6	여성	36세	고중퇴	정부보조 아르바이트	91만원	3년	7년	남편외도 성격차이	1남1녀
7	여성	42세	중졸	아르바이트	130만원	17년	8년	남편의 음주 가정폭력	2남1녀
8	여성	46세	고졸	주부 정부보조	60만원	11년	5년	남편의 음주 가정폭력	1남
9	여성	49세	대졸	교사	190만원	15년	12년	성격차이 시댁과의 갈등	2남
10	여성	51세	초대졸	조리사	100만원	20년	2년	경제문제(카드빚)	2남

주: * 비동거

1. 이혼과정 상의 어려움

이혼 과정에 있어서는 겪는 어려움은 별거 중의 자녀양육 문제(특히 남성의 경우), 사람에게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 이혼절차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음, 생활고(자녀양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심리적인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이혼과정에서 사람, 특히 여자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들었다. 이로 인해 재혼에 대한 의향도 없다. 아울러 부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고, 부인으로부터 전세비 4천만원만 받고 이혼에 합의하였다(사례 2).

이혼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없어서 힘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남성의 전화’를 알게 되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심리상담하고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한 법률 정보와 이혼수속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이 많지 않다는데 있고, 기관에 대한 정보 자체를 얻기 어렵다는데 있다(사례 3).

재판이혼을 했는데 이혼기간이 너무 길고 법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다(사례 8).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특히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 경험과 지식이 없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해야 하지만,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과정에서 부인이 집을 나가, 자녀를 혼자서 키워야 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출근 후 20분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자녀들을 챙겨야 했고, 퇴근 후에도 집에 와서 자녀를 돌보아야 했다. 결국, 자녀양육을 하기에는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사례 1).

아울러 자녀의 경우는 어린경우보다는 사춘기의 경우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받게 되는 충격이 크다.

사춘기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과 중학생이었던 작은 아들이 받는 충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사례 9).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도움과 시댁식구들의 지원을 통해서 사춘기 자녀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자라기도 한다.

자녀양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이혼의 초기에는 아버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지내고 시아버지와 시댁식구들의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사례 10).

2. 사회·심리적 문제 및 건강문제

사회·심리적으로 이혼자 사례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남성의 경우는 외로움, 동거하지 않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 전 배우자에 대한 상처와 그리움 등을 지적하였다.

이혼 후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과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다. 자녀들과 현재 전화 통화는 하고 있으나, 같이 있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사례 2).

이혼 후 가장 어려운 점은 외로움에 있다 자식이 있지만 외로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사례 3).

이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도 알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들이 무너져서 너무 힘들다(사례 4).

인간관계도 대폭축소 되었고 주변 친인척과도 이혼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이전과 같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다.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남편과 같이 나가던 친목회 같은 모임도 못 나가게 되어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특히 명절 때에는 친정에 가기도 미안하여 자녀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데 매우 쓸쓸하다는 생각이 든다(사례 8).

한편 이혼 후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혼 전의 삶이 워낙 힘들었을 경우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오히려 남편의 구타와 정서적인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이혼은 잘 결정한 것 같다. 현재 외로움이 크기는 하지만, 전 직장동료와 친구들을 만나고 등산도 가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있다(사례 3).

이혼 후 구속받지 않고 구타당하지 않으니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이혼하고 나서는 주위사람들하고 나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사례 7).

이혼 후 생활을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음주와 폭력이 없으니깐 마음은 편하고 안정된다(사례 8).

건강면에 있어서는 남성이혼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건강하다고 한 반면, 여성이혼자는 이혼 전부터 지병을 갖고 있거나 이혼 후 건강이 더 악화된 경우를 볼 수 있다.

건강은 결혼 후부터 쇠약해진 것 같다. 결혼 후 심장 떨리는 병이 생겨 한 약을 3재 먹고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놀라는 일이 있으면 심장이 떨린다. 요즈음 건강이 더 나빠졌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약도 못 먹는다. 숨이 차는 것도 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다(사례 8).

한편, 이혼 직후에는 건강의 문제가 있다가 오히려 이혼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건강도 회복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이혼 직후에는 모든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 혈압도 떨어지고 행동도 느려졌었으나, 현재는 많이 회복되었다(사례 5).

한동안 많이 아팠으나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다(사례 6).

3.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취업이나 자녀 및 가족의 결혼시 이혼가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혼가족은 구직시 불리하다. 기업주들은 이혼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사례 1).

자녀들이 연애 결혼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중매로 결혼할 때는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례 3).

회사에 입사할 때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담당부서 과장에게는 말을 해서 알고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많아서 이혼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렵다. 회사 동료들은 사례의 이혼을 알아차려서인지 사례가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런 저런 핑계를 내세워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사례 5).

이혼 후 인간관계가 어렵다. 여자 혼자 산다고 무시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점이 있고, 이혼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다(사례 8).

이혼 초에는 집안 동생들의 혼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애써 피하던 친척들이 있어 지금도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심리적으로는 이혼녀라고 밝히면 주위에서는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뭔가 호기심을 갖고 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 이혼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사례 9).

아울러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는 부조 신청시 담당 직원의 편견이나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수급신청할 때 직원의 의심하는 태도가 있다. 월수입을 낮추어서 보고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심하고,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구비가 어렵다(사례 6).

4.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이혼숙려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10사례 중 7사례는 찬성하였고, 1사례는 찬성하지만 개입시기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였고, 2사례만이 반대하였다. 즉, 이 제도는 이혼 전에 충분히 이혼에 대해 재고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감정에 의한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재의 협의이혼제도는 너무 쉽게 이혼을 하도록 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혼숙려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매우 쉽게 하도록 해서 오히려 이혼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이혼에 대해서 재고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제도가 활성화 되면 이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사례 3).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할 때는 서로가 대화를 해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사례 5).

이혼숙려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시간을 현재보다 연장해서 감정이 앞서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분히 대화기 될 수 있도록 제3자가 중재해 주는 것이 이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례 6).

반면, 이혼 숙려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례들은 부부가 이미 성인으로서 이혼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혼 전에 다시 이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숙려제도를 반대하고 있었다. 한 남성은 숙려제도를 반대하기보다는 상담의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이혼숙려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여, 이혼 훨씬 전에 부부갈등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혼숙려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미 마음이 떠난 부부를 이혼 전에 몇 주간의 시간을 두고 이혼에 대해 재고해 보게 하여도 소용이 없다(사례 2).

부부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혼을 결정했을 것인데, 이혼숙려기간을 둔다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사례 4)

5. 원하는 지원사항

희망하는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남성이혼자들은 법률적인 지식이나 상담, 가사지원서비스, 재혼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나 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희망하는 사례가 없다. 이는 사례대상 여성들이 이미 공공이나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본다.

아직 젊고 건강하기 하여 직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은 유지 할 수 있다. 가사노동도 할 수 있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사례 1).

이혼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례 2).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상에서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도 이혼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혼 기회를 국가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사례 3).

다만 남성이혼가족들은 이혼 후의 심리상담이나 자조집단 모임의 활성화와 가사지원 서비스, 재혼주선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혼자들, 특히 남성들이 이혼 후 방황하며 술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담소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인은 신앙으로 이혼 후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으나 신앙마저 없는 경우는 삶을 제대로 추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사례 1).

이혼한 남자의 경우 집안일을 하기 어려워 가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고, 재혼 기회를 국가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기관도 있기는 하지만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사례 3).

반면 여성들은 사회나 정부로부터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 대상 여성들은 주로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 많아서 이미 이에 대한 정보가 많고, 향후 더 많은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전남편으로부터의 자녀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의 강제성, 주거지원 등을 원하고 있었다.

주거면과 자녀양육상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한부모 가정 자녀 상담, 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창업교육이나 기술교육도 필요하다. 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 및 자료가 없다. 서비스의 확대와 활발한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사례 4).

월 8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모자가정에서 탈락되었다. 수입이 있어도 빚이 있고, 자녀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이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혼 남성이나 미혼 남성에게는 대출이 쉬운데, 이혼여성에게는 대출이 너무 어렵다.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주거와 관련된 대출을 원한다.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졌으면 한다(사례 5).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법의 강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복지관에서 나이트케어(야간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여성들이 일하려면 나이트케어는 물론 공휴일에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사례 6).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혼가족을 위한 자조모임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생계비도 인상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장애가 심한 가족이나 사정상 일을 할 수 없는 이혼가족은 생계비만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감면해 주었으면 한다.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관리비도 부담이 된다. 아울러 자녀가 자란 후에는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므로 아파트 크기를 넓혔으면 한다. 아울러 홀로된 여성이 노후에 지낼 수 있는 양로원 등이 있었으면 한다(사례 7).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았으면 한다(사례 8, 사례 10).

중년여성들이 재취업하는 것이 용이했으면 한다(사례 10).

아울러 이혼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학교나 생활 속에서 가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결혼한 사람들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교육과 가정내의 역할, 부부 관계 등 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례 5).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재가 이혼가족에 대한 이혼을 전후한 경제적 변화,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엄청나다. 가정상담 실무자의 막연한 지적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이나 소득의 노출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엄청나므로 이혼가족의 소득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지금까지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매년 반복하여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전국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 연구 시 부닥치는 자료의 한계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 전과 비교하면 연소득으로 평균 359.4만원 중앙값으로는 200만원의 소득감소를 이혼 이후에 기록하였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이혼 전과 대비하여 가구 소득이 18.3% 감소한 것으로 계산된다.

반면 이혼남성가구주의 경우 이혼 이후에 평균으로는 81.4만원의 소득 감소를 경험하나 중앙값으로는 오히려 3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율로 따지면 이혼을 전후하여 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라고 하여 이혼으로 인한 소득의 충격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조사기간 동안 전체 표본의 소득은 매년 6~8%의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이혼한 남성들은 소득 증가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이혼 후 경제적 충격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소득 감소율 면에서 상대적으로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미국과 달리 이혼 후 부모나 친척에 얹혀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 실제 이들이 독립해 생활해야 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이혼가족의 상황을 유배우가족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이혼가족은 주거 및 경제생활에 있어서 유배우가족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한편, 이혼가족의 이혼기간별 및 연령대별로도 경제상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혼가족의 가구소득총액은 중다회귀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이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기간이 길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취업하지 못한 40대 이하의 여성이혼가족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혼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들이 지척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이혼가족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는 물론이고 주거비(월세)와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혼자들의 연령대 및 이혼기간별로 상이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20~40대의 경우는 자녀와 관련된 양육비 및 교육비, 사교육비 상의 어려움을, 50대의 경우는 주거비, 각종 공과금 등의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20~40대는 취업을 원하고 있는 비율이 많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 다른 계층에 비해서 많았다. 반면 50대는 취업을 원하는 비율은 50% 정도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고, 노후생활에 대한 복지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혼자 성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혼남성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재혼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중년기 남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이혼여성가구주는 가사부담과 자녀양육문제와 취업부인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혼가족의 삶은 유배우가족의 삶에 비해서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면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혼의 결과이자 원인이기도 하다. 앞의 문헌고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보다 많다. 따라서 이혼의 예방을 위해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혼한 가족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이혼기간과 이혼자의 성 및 연령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혼숙려제도의 의무화를 통해서 이혼전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혼결정 혹은 이혼 예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시설거주 이혼가족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본 장에서는 시설이용자를 중심으로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실태와 시설에서 제공되는 이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저소득층으로 이혼 후 주거지가 없어서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모자보호시설(이하 ‘모자원’) 거주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거주 여성이혼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려 하였다.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때 시설이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가를 통해서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 1 절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

1. 조사개요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시설거주 여성이혼가족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함께 일부 대상자에게는 전화로 인터뷰하여 시설생활의 만족도, 문제점, 기타 이혼가족으로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설문내용을 보충하였다.

대상 시설은 이혼여성과 자녀를 일정기간(3년간, 연장 2년 가능, 최대 5년 보호) 보호하는 모자원이다. 총 배포 부수는 305(18개소)개 이었는데 회수된 것은 126개(11개소)로 설문 회수율은 41.31%에 이른다(표 6-1 참조).

표본추출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유의적으로 하였고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6-1〉 설문지 회수율

(단위: %)

구분	보낸 곳	보낸 부수	받은 곳	받은 부수	설문 회수율
모자원(모자보호시설)	18	305	11	126	41.31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의 <표 6-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혼자 관련 일반사항, 이혼관련사항, 자녀관련 사항, 경제생활, 이혼과정 사항, 상담프로그램관련, 복지욕구, 및 기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2〉 시설거주 이혼가족 대상 설문조사 항목

항 목	내 용
일반사항	거주지역, 학력, 연령, 종교, 수입
이혼과정 관련사항	이혼유형, 이혼원인, 전배우자 학력 및 만나는 빈도 관계
자녀관련	자녀수, 양육여부, 접촉빈도, 자녀와의 관계, 자녀양육 상의 어려운 점
경제생활	경제활동 여부, 무직이유, 경제활동 의망 여부, 일한 기간, 직업형태, 직업생활 상의 어려움, 직업 및 훈련교육 참여 여부/비참여 이유, 직업 및 훈련 교육 불만족 이유, 이혼 후 경제생활 변화,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자립정도
이혼 관련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 후 긍정적 변화, 이혼 후회여부, 재혼의향 및 이유,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정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이혼예방 프로그램 필요 여부, 상담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도움정도, 참여의향 이혼상담 프로그램 관련 건의 사항
복지욕구	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 이혼가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 사항(부록 2에 제시)
기타 (주관식 질문)	시설 만족정도, 시설 거주시 불편한 점, 건의사항

2.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표 6-3 참조) 우선,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가장 많은 61.1%이고, 군지역 23.0%, 중소도시 15.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고졸 및 중퇴가 가장 많은 63.2%이고, 종졸 및 중퇴는 16.8%, 전문대졸 13.6%의 순이다.

〈표 6-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거주지역	대도시	77	61.1
	중소도시	20	15.9
	군지역	29	23.0
	합계	126	100.0
학력	무학	2	1.6
	초등졸	2	1.6
	중졸/중퇴	21	16.8
	고졸/중퇴	79	63.2
	전문대졸/중퇴	17	13.6
	대졸/중퇴	4	3.2
	합계	125	100.0
연령 (평균: 38.11세)	20대	5	4.0
	30대	75	60.5
	40대	42	33.9
	50대	2	1.6
	합계	124	100.0
종교	불교	11	8.8
	천주교	8	6.4
	개신교	77	61.6
	기타	3	2.4
	무교	26	20.8
	합계	125	100.0
건강상태	매우 아프다	8	6.3
	아픈 편이다	43	34.1
	보 통	50	39.7
	건강한 편이다	24	19.0
	매우 건강하다	1	0.8
	합계	12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연령은 평균 38.11세이고, 30대가 가장 많은 60.5%, 그 다음은 40대로 33.9%를 차지하고 있다. 20대와 50대는 각 4.0%와 1.6%로 소수에 이른다. 종교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61.6%로 과반수를 넘고, 무교 20.8%이다. 나머지 종교는 소수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가장 많은 39.7%이고 아픈 편 및 매우 아프다가 합해서

40.4%나 되고 있어 이혼여성가구주들이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수입은 65.26만원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4 참조). 최대 월수입도 120만원에 불과해 응답자의 생활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월소득은 출산력 데이터 이혼가족의 월평균소득 137.45만원에 비해서 매우 낮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설 거주 이혼여성가족들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어 적게는 월 20여 만원에서 많게는 4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실질적인 가구 소득은 85만원 이상은 되는 셈이다. 일부 시설거주 여성들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들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시설 퇴소후의 주거비 마련과 자녀의 사교육비, 대학 학자금, 의료비 마련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표 6-4〉 월평균수입

(단위: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수입	126	0	120	65.26	19.767

참조: 출산력 자료의 경우 이혼가족 월평균소득: 137.86만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3. 이혼관련

이혼유형은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71.8%로 대부분이고 재판이혼은 25.0%를 차지하고 있다(표 6-5 참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이혼의 유형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혼 기간은 3년 이하가 가장 많은 64.7%를 차지하고 있고 3-5년 32.8%, 5년 이상 2.5%의 분포이다. 조사대상이 모자원에 기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혼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혼기간 평균도 3.52년에 불과하다.

〈표 6-5〉 이혼유형 및 이혼기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이혼 유형	협의이혼	89	71.8
	재판이혼	31	25.0
	기타	4	3.2
	합계	124	100.0
이혼 기간 (평균: 3.52)	3년 미만	77	64.7
	3~5년 미만	39	32.8
	5년 이상	3	2.5
	합계	11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이혼의 원인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58.7%가 지적하였다(표 6-6 참조).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것은 ‘성격차이’로 34.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조사결과와는 약간 다른 것이다. 통계청, 법원통계, 출산력 조사 등에서는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성격차이’로 나타났다. 본 시설거주 이혼여성가족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주로 많아 경제적인 이유가 주요 이혼사유가 된 것으로 본다. 이 밖에 배우자 부정 34.9%, 배우자 구타 22.2%로 나타났다.

〈표 6-6〉 이혼의 원인(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배우자 부정	44	34.9	82	65.1	126	100.0
배우자 구타	28	22.2	98	77.8	126	100.0
배우자 알코올중독	19	15.1	107	84.9	126	100.0
성격 차이	49	38.9	77	61.1	126	100.0
배우자 경제적 무능력	74	58.7	52	41.3	126	100.0
시택과의 갈등	22	17.5	104	82.5	126	100.0
친정과의 갈등	3	2.4	123	97.6	126	100.0
기타	23	18.3	103	81.7	126	100.0

참조: 전국출산력 조사결과에 의한 이혼의 원인: 1순위 - 성격차이, 2순위 - 남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3순위 - 남편의 외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전 배우자의 학력은 이혼자와 마찬가지로 고졸 및 중퇴가 가장 많은 54.0% 이었고, 그 다음이 대졸 및 중퇴로 26.2%를 이룬다(표 6-7 참조). 이혼여성가구 후보다는 전남편의 학력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전 남편과의 만나는 빈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78.9%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끔 만난다는 응답은 20.3%, 자주 만나는 편임은 0.8%에 불과하다.

〈표 6-7〉 전 배우자 학력 및 만나는 빈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전배우자 학력	무학	1	0.8
	초등졸	7	5.6
	중졸/중퇴	14	11.1
	고졸/중퇴	68	54.0
	대졸/중퇴	33	26.2
	대학원 이상	3	2.4
합계		126	100.0
전 배우자와 만나는 빈도	전혀 만나지 않음	97	78.9
	가끔 만남	25	20.3
	자주 만나는 편임	1	0.8
	합계	12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4. 경제생활

이혼 후 경제생활 변화에 있어서는 매우 나빠졌다고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을 합하면 58%가 되어 전체의 과반수가 넘었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22.4%에 달하고 있다(표 6-8 참조). 이혼 후 경제생활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예상외로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응답자가 이혼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우 이혼 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수준이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한국노동패널데이터」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결과인데, 저소득층의 경우(특히 여성)는 일반계층과는

달리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의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혼 후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문제(80% 이상)인 점에서도 나타난다.

경제생활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수입이 줄어서’가 가장 많은 50.7%로 지적되었고, 빛이 늘어나서 19.7%, 자녀양육비 증가가 15.5%를 차지하고 있다(표 6-9 참조).

〈표 6-8〉 이혼 후 경제생활 변화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매우 나빠졌다	52	41.6
약간 나빠졌다	20	16.0
변함없다	25	20.0
약간 좋아졌다	26	20.8
매우 좋아졌다	2	1.6
합계	12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표 6-9〉 이혼 후 경제생활이 나빠진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수입이 줄어서	36	50.7
자녀 양육비 증가로	11	15.5
빛이 늘어나서	14	19.7
기타	10	14.1
합계	7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월평균 생활비는 81.31만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들의 월평균 수입인 65.26만원보다 16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이혼가족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다(표 6-10 참조). 그러나 이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계비를 합하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10〉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월평균생활비

(단위: 명, 만원)

구 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수입	121	15	200	81.31	34.0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생활비 중 부담되는 항목은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로 55.3%가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은 부채 30.1%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표 6-11 참조).

〈표 6-11〉 생활비 중 부담되는 항목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식료품비	7	5.7
의료비	2	1.6
주거비	3	2.4
공과금	4	3.3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68	55.3
부채	37	30.1
기타	2	1.6
합계	12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경제적 자립 정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60%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립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한 상태이다(표 6-12 참조). 재가이혼가족의 경우는 18%만이 자립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된다. 즉, 비교의 준거집단을 어느 집단에 두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자립 정도가 다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가이혼가족은 유배우가족을 준거집단으로 삼아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면 시설거주 이혼가족들은 주변의 다른 시설 거주가족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게 보고 있다고 추측된다.

〈표 6-12〉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전혀 자립 못하고 있다	31	24.6
별로 자립 못하고 있다	44	34.9
보통이다	19	15.1
약간 자립하고 있다	30	23.8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2	1.6
합계	12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5. 취업관련

취업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 여부와 기술훈련 등을 살펴보았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79.8%로 대부분은 취업하고 있었다(표 6-13 참조). 이혼기간별 경제활동 여부에 있어서는 유의한 통계치는 제시할 수 없었으나, 이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혼 5년 이상 응답자의 경우는 100.0% 취업하고 있었다(표 6-14 참조).

〈표 6-13〉 경제활동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아니오	25	20.2
예	99	79.8
합계	12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표 6-14〉 이혼기간별 경제활동 여부

(단위: 명, %)

구 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백분율
아니오	26.0	10.5	-	21.7
예	74.0	89.5	100.0	78.3
합계	100.0 (77)	100.0 (38)	100.0 (3)	100.0 (138)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33.3%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각 33.3%이었다(표 6-15 참조). 이혼 여성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특히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취업이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자에 대한 건강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중고령 여성의 취업 활성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표 6-15〉 무직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8	33.3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2	8.3
건강이 좋지 않아서	8	33.3
기타	6	25.0
합계	2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취업자의 일한 기간은 1~5년 미만이 가장 많은 49.5%이고, 5~10년 미만 25.3%, 10년 이상도 22.2%나 되었다(표 6-16 참조).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혼자들은 이혼 전에도 취업한 상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저소득층 여성들은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이혼 전부터 맞벌이 하였거나 결혼전에 취업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16〉 일한 기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1년 미만	3	3.0
1~5년 미만	49	49.5
5~10년 미만	25	25.3
10년 이상	22	22.2
합계 (평균: 6.22년)	9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직업의 형태는 월급직이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용직 35.1%, 기타 16.5%의 순이다(표 6-17 참조). 즉, 과반수 이상이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표 6-17〉 직업 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일용직	34	35.1
월급직	42	44.3
자영업	4	4.1
기 타	16	16.5
합 계	9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원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전원이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표 6-18 참조). 이는 조사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고, 동시에 생산연령인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6-18〉 향후 경제활동 희망여부(무직자의 경우)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예	22	100.0
아니오	-	-
합계	2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직업생활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저임금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54.6%), 자녀 양육문제가 27.8%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표 6-19 참조). 특히 이혼여성가구주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표 6-19〉 직업생활 상의 어려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저임금	53	54.6
일자리가 일정치 않음	10	10.3
주위 사람의 편견	1	1.0
집안일	5	5.2
자녀양육 문제	27	27.8
기타	1	1.0
합계	9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직업훈련 이수 여부에 있어서는 이수했다는 46.3%, 아니오는 53.7%로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표 6-20 참조). 직업 훈련 및 기술교육의 참여자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66.7%이었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과 시간대가 좋지 않음이 각 12.5%로 나타났다(표 6-21 참조). 직업훈련 및 기술 교육기간 생계비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원하는 직업훈련의 유형은 컴퓨터 관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요리 및 제과 제빵 관련, 디자인, 운전, 자동차 정비, 봉제 등 다양한 직종을 원하고 있었다.

〈표 6-20〉 직업 및 훈련교육 이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예	57	46.3
아니오	66	53.7
합계	12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표 6-21〉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5	10.4
교육기간동안 생활비가 부족함	32	66.7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없음	1	2.1
시간대가 좋지 않음	6	12.5
교육시설 및 환경이 열악함	2	4.2
기타	2	4.2
합계	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불만족 이유와 마찬가지로 ‘훈련 및 교육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가 대부분인 73.0%로 나타났다(표 6-22 참조). 그 밖의 응답은 소수만이 지적하였다.

〈표 6-22〉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원하는 교육내용이 없어서	2	4.1
일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4	5.4
훈련·교육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49	73.0
훈련·교육 기간동안 자녀를 돌 볼 사람이 없어서	3	5.4
기타	5	12.2
합계	6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6. 자녀양육 관련

자녀와 관련해서는 자녀수와 자녀양육여부, 접촉빈도, 자녀와의 관계 등을 살펴 보았다.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은 55.6%이고 1명은 27.8%이었다(표 6-23 참조). 자녀는 모두 혹은 일부 응답자가 직접 양육하고 있었다(100.0%)(표 6-24 참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접촉 빈도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60.0%를 차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남 30.0%, 특별한 날에만 만남

10.0%의 순이었다(표 6-25 참조). 즉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와의 접촉은 과반수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6-23〉 자녀수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백 분 율
1 명	35	27.8
2 명	70	55.6
3 명	16	12.7
4 명	4	3.2
5 명	1	0.8
합 계	12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표 6-24〉 자녀양육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백 분 율
모두 양육함	114	90.5
일부 양육함	12	9.5
양육하지 않음	0	0.0
합계	12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표 6-25〉 자녀와의 접촉빈도(비양육시)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백 분 율
전혀 만나지 않음	6	60.0
특별한 날에만 만남	1	10.0
정기적으로 만남	3	30.0
합계	1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운 편이거나 매우 가깝다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6-26 참조). 자녀와는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녀와 관계가 멀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하다.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은 ‘교육비 부족’이 가장 많은 62.3%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습지도로 14.8%였다. 즉,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표 6-27 참조).

〈표 6-26〉 자녀와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매우 멀다	1	0.8
비교적 먼 편이다	2	1.7
보통	14	11.8
가까운 편이다	27	22.7
매우 가깝다	75	63.0
합계	11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표 6-27〉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교육비 부족	76	62.3
절대적 시간부족	11	9.0
주변환경불량, 비행	1	0.8
자녀의 반항	5	4.1
학습지도	18	14.8
자녀건강상의 문제	7	5.7
기타	4	3.3
합계	12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7. 전반적인 가족생활 변화

다음에서는 이혼후 전반적인 가족생활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우선 이혼 후의 어려운 점을 순위대로 두 가지 조사하였는데, 1순위는 ‘경제문제’(80.0%), 2순위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58.2%) 이었다(표 6-28 참조). 2순위

로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58.2%)와 주거문제(18.0%)가 지적되었다. 즉, 시설거주 이혼여성가구주들에게도 이혼으로 인해서 경제문제와 자녀양육문제, 주거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표 6-28〉 이혼 후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경제문제	100	80.0	10	8.2
정서문제	4	3.2	4	3.3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14	11.2	71	58.2
건강문제	4	3.2	11	9.0
주거문제	2	1.6	22	18.0
대인관계 소원	1	0.8	2	1.6
기타	-	-	2	1.6
합계	125	100.0	12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다음에서 이혼 후에 긍정적인 변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심리적 안정(81.5%)으로 나타나, 이혼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표 6-29 참조). 나머지 응답, 예를 들어 시가 친척으로부터의 해방은 9.2% 등으로 소수만이 지적하였다.

〈표 6-29〉 이혼 후 긍정적 변화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심리적 안정	97	81.5
가사일로부터 해방	3	2.5
시가 친척으로부터 해방	11	9.2
기타	8	6.7
합계	11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이혼에 대한 후회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91.1%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소수인 8.9%만이 후회한다고 하였다(표 6-30 참조). 연령별, 이혼기간별, 학력별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이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0〉 이혼 후회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균연령	이혼기간	학력	백분율
예	11	40.27	3.86	4.00	8.9
아니오	110	37.86	3.45	3.93	91.1
합계/평균	121	38.08	3.45	3.95	100.0

주: t값은 모두 유의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8.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정도에 있어서는 편견이 많다는 응답이 71.8%를 차지하고 있고, 편견이 적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하여 대부분은 사회가 이혼가족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31 참조).

〈표 6-31〉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정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매우 적음	1	0.8
적은 편임	34	27.4
많음	65	52.4
매우 많음	24	19.4
합계	12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9. 복지욕구

가. 상담프로그램 관련

이혼과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의 현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비참여가 대부분으로 97.5%를 차지하고 있고, 참여자 중 프로그램의 도움여부는 3분의 1정도만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6-32 참조). 향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인 52.7%가 찬성하고 있어 상담프로그램의 확대 및 홍보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상담참여 의향에 대한 연령별, 이혼기간별, 학력별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표 6-33 참조).

〈표 6-32〉 이혼 관련 상담참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예	3	2.5
아니오	116	97.5
합계	11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표 6-33〉 이혼관련 상담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균연령	이혼기간	학력	백분율
예	58	38.26	3.20	4.00	52.7
아니오	52	38.34	3.94	3.86	47.3
합계/평균	110	38.15	3.50	3.97	100.0

주: t값은 모두 유의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이혼가족 상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관식으로 건의사항을 파악한 결과 지적된 사항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자

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상담 프로그램 제공, 심리 치료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적하였다(부록 3 참조). 아울러 취미생활 프로그램 제공, 저렴한 비용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필요로 하였다.

나. 이혼예방 프로그램 관련

이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67.0%로 반대 33.0%보다 더 많았다(표 6-34 참조). 이혼 예방 프로그램 필요여부에 대한 연령별, 학력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저연령자와 고학력자가 이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6-34〉 이혼 예방 프로그램 필요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균연령	이혼기간	학력	백분율
예	71	37.41	3.34	4.10	67.0
아니오	35	39.74	3.87	3.71	33.0
합계/평균	106	38.18*	3.51	3.97*	100.0

주: * p <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이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 이유를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혼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많아서, 이혼 후에 자녀들의 심리적 문제 때문에, 이혼에 따르는 어려움(건강문제, 경제문제, 자녀양육 문제)이 많음으로 이를 막기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부부간의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격해진 감정으로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위의 도움으로 이혼을 심사숙고하기 위해 등이다(부록 3 참조). 즉 이혼은 자녀와 당사자에게 문제점을 줄 뿐만 아니라, 이혼 자체의 결정이 이성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상담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혼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소가 많지 않다. 남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 가정법률상담소 등이 기관이

대표적이겠으나, 그 수가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여서 상담을 통해 이혼이 예방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혼 예방 방안을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는데, 우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혼부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강의 제공, 결혼 전 부부 교육 실시, 건전가정 유지 프로그램 제공,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 남성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바꾸기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 이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이혼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혼결정에 대한 변화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서로 간에 잘 맞지 않으므로 등의 이유로 이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응답 등이 제시되었다.

다. 재혼에 대한 견해

재혼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반대하고 있었다(75.0%)(표 6-35 참조). 재혼의향에 대한 연령별, 이혼기간별, 학력별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설 이용 저소득층 이혼여성가구주들은 재가 이혼여성보다(전국 출산력 실태조사의 경우보다: 29.5%) 재혼을 더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5〉 재혼의향

(단위: 명, 세, 년, %)

구분	사례수	평균연령	이혼기간	학력	백분율
예	31	37.32	3.33	4.10	25.0
아니오	93	38.31	3.49	3.90	75.0
합계/평균	124	38.07	3.45	3.95	100.0

주: t값은 모두 유의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재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문제와 아울러 이성에 대한 신뢰상실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표 6-36 참조). 이러한 경향은 이혼남성의 경우와 다르다.

위기가정상담소(남성의 전화) 소장에 의하면 많은 남성들은 재혼을 원하고 있는데 반해, 현실적으로 재혼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상담소의 홈페이지에 무료 재혼알선 사이트를 개설 중에 있다고 한다.

〈표 6-36〉 재혼 안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자녀문제	9	31.0
이성에 대한 신뢰상실	4	13.8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4	13.8
재혼에 대한 두려움	6	20.7
경제적 문제	6	20.7
합계	2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시설 이용여성들 중 재혼을 원하나 아직 재혼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문제와 재혼에 대한 두려움, 경제문제 등으로 파악되었다(표 6-37 참조).

〈표 6-37〉 재혼 기피 이유(재혼 희망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자녀문제	49	51.6
이성에 대한 신뢰상실	19	20.0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1	1.1
재혼에 대한 두려움	14	14.7
경제적 문제	3	3.2
기타	9	9.5
합계	9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라. 원하는 지원사항

시설 이혼가족의 지원 희망사항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많

이 지적된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 58.4%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자녀양육비 지원’ 31.2%, ‘교육비 지원’ 30.4%의 순이었다(표 6-38 참조). 상담지원, 법률자문, 생활정보제공 등은 소수만이 지적하였다. 이는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경제적 지원 및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이 더 시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6-38〉 원하는 지원

(단위: 명, %)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경제적 지원	73	58.4	52	41.6	125	100.0
상담지원	7	5.6	118	94.4	125	100.0
교육비 지원	38	30.4	87	69.6	125	100.0
자녀양육비 지원	39	31.2	86	68.8	125	100.0
법률자문	3	2.4	122	97.6	125	100.0
생활정보제공	7	5.6	118	94.4	125	100.0
기타	10	8.0	115	92.0	12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2005.

각 프로그램 별 필요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필요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은 가장 많은 필요율을 보이고 있고, 이혼 가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의 필요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자녀의 생활지도,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도 높은 필요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혼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나 사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주관식으로 파악한 결과 객관식 질문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 일자리 마련, 탁아 및 방과후 교육지원, 사회편견 해소, 주거지원, 자립도대 마련,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학교에서 이혼 자녀들의 비밀보장, 방과후 정부 지원, 학원 프로그램 마련, 남성들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교육(이혼 예방 차원), 상담제도 확충 등을 지적하였다(부록 3 참조).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으로는 무담보 대출, 자녀들의 학원비 지원,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 도입, 생계비 상향 지급, 직업 훈련 과정 중 생활비 확대 지급, 전세자금을 원하는 수준으로 대출해 주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사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생계비 및 학비 면제 지원만으로는 필요한 학원비 등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확대, 직장알선, 일자리와 동시에 탁아문제 해결, 취업정보 제공,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제공 등을 지적하였다. 탁아 및 자녀들의 방과후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형 및 누나들과 자매결연 맺어 주기, 믿을 만한 탁아소 제공, 어린이집에 대한 수업료 면제, 유동적인 탁아소 시간제 등을 요구하였다.

사회편견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는데, 그만큼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고 일반인과 같이 평등하게 보고, 사회적 편견해소를 통해 이혼가정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교사의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불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규모 확장, 이혼가족을 위한 영구 주택 마련, 주거(전세)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자립토대 마련을 위해서 모자원에서 현재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최대 5년)을 더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전세자금 융자, 모자원의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10. 기타

마지막으로 시설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만족정도,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모자원 거주자들은 대부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지인을 통해서 모자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시설 거주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가 지원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학자녀

에 대한 학비 면제와 방과후 교실, 의료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자원의 입소기간이 최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경우 퇴소후 기거할 곳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건강문제가 많은데 모자원에서 나오게 되면 의료보호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퇴소후 병원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몇몇 이혼 여성은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학자금 등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취학자녀 이혼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구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모자원은 이혼여성가구주와 자녀들에게 많은 경제적, 심리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되고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여성이혼가족들은 사적 지원망이 없으면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이고 있다.

제 2 절 지원 프로그램

다음에서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서 이혼가족을 위한 현행 지원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필요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이혼가족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상담가 및 상담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화이 설문조사와 정책간담회를 병행해서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모자원, 사회복지관, 여성가장희망센터 등의 13개소에 배부하였는데, 수거된 조사표는 5부이다. 사회복지관에서 1부, 여성가장희망센터에서 2부, 모자원에서 2부가 수거되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및 전문가는 사회복지관 이혼여성 담당자, 여성가장희망센터 소장, 남성이혼자 상담소 소장, 이혼관련 변호사 등이다.

1. 프로그램 관련

가. 주요 진행 프로그램

이혼가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은 여성가구주를 위한 취업지원, 상담, 자조모임 운영, 사례관리, 자녀들을 위한 상담, 학원지원 및 장학금 연계사업, 집단상담, 음악치료, 원예치료, 공부방 운영, 수영강습, 체험학습 등 다양하다(표 6-39 참조). 특히 C여성가장희망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이혼여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소속 이혼여성에게는 40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직업훈련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돌봄노동을 통한 취업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사례발굴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6-39〉 주요 진행 프로그램

기관	내 용
C여성가장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구주 위주의 사업이지만 요청시 자녀들을 위한 상담 및 욕구(학원지원, 장학금 연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개별상담, 자조모임 운영, 사례관리사업(지역사회 지원연계, 정보제공), 교육훈련, 사례발굴
C모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상담, 음악치료, 원예치료,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전문직장 소개, 취업교육, 집단상담
S모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공부방 운영, 수영강습, 체험학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혼상담 전문가 델파이 조사』, 2005.

나.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혼여성의 삶의 의욕(자존감, 자아 효능감)이 강화되고, 이혼 후에도 이혼여성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사회·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을 지적하고 있었다(표 6-40 참조). 즉, 경제적인 자립도 프로그램의 주요 효과라고 할 수 있으나,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이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앞의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4명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반수만이 지적하여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6-40〉 프로그램의 성과

기관	내용
A여성가장 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실무 담당자의 유연성으로 제도나 법, 정책으로도 사례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례의 삶의 의욕-자존감, 효능감 강화-증진으로 스스로 강점 활용을 통한 적극적 태도 확대
C여성가장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혼 이후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 사회적 자립 지원 여성가구주의 삶에서 자녀를 따로 떼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음.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성가장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짐 내담자와 함께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볼 때, 여성가장으로 당당하게 자신을 삶의 주체로 생각할 때.
C모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상담을 통해 당당한 자아를 발견하여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열심히 삶. 전문적인 직장을 잡아 당당하게 살 때. 밝아지고 자신감을 얻었음.
S모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장에 취직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때 보람을 느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혼상담 전문가 텔파이 조사』, 2005.

다. 프로그램 진행시 애로사항

실무 담당시 애로사항은 대상자가 스스로 권한을 부여해서 의지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혼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결이 어려운 점,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 이혼가족을 위한 충분한 정책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여성을 위한 일자리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표 6-41 참조). 앞의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한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이혼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

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혼가족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가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가족에 대한 공급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소극적인 태도와 자신감의 부족도 문제라고 하고 있다.

〈표 6-41〉 프로그램 진행시 애로사항

기관	내 용
A여성가장 희망센터	•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발굴과 연계, 여성가장을 위한 제도·정책의 한계로 인한 여성가장 문제해결이 담보된 상태임.
C여성가장희망센터	• 내담자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권한부여) • 현실에 못 미치는 정부 생계지원, 높은 취업의 문, 직업능력 교육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경제난(실제 노동부 지원금으로 생계유지 불가)
C모자원	• 대상자의 소극적인 태도와 자신감 부족
S모자원	• 이혼과 관련된 전문기관과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혼상담 전문가 텔파이 조사』, 2005.

2. 연계기관

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연계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여성관련기관, 상담소, 동사무소, 여성회, 법률기관,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의료기관, 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의 기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42 참조).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보를 입수하여 대상자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계기관간의 협조 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 개소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아 관련기관의 지원이 저조하였으나,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는 이혼가족이나 여성가장 가족에 대한 기관간의 연계, 정보교환, 법률자문, 인적지원(자원봉사자) 등은 비교적 용이하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혼가족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현재는 모자원과 일부 사회복지관 여성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혼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표 6-42〉 연계기관

기관	내 용
A여성가장 희망센터	• 지역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실 외), 자활후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법무사, 노무사, 변호사), 공공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C여성가장희망센터	• 여성관련기관(1366,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상담소, 동사무소
C모자원	• 여성회, 가정법률 사무소
S모자원	• 여성종합상담센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혼상담 전문가 전화이 조사』, 2005.

3. 이혼가족 정책 개선방안

프로그램 상의 개선점은 저소득층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이혼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 원할 경우 전업주부로도 머물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등을 지적하고 있다(표 6-43 참조).

이혼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낙인감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어 이혼가족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기존의 이혼가족을 위한 법제도 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재산과 관련해서 법적인 이혼이 되지 않고 남편이 가출한 경우, 여성은 이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남긴 빚을 부당하게 청산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고, 법적 재산이 있게 되면 수급대상 저소득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중장년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이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6-43〉 이혼가족 정책 개선방안

기관	내 용
C여성가족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당사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보다 여성들을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후 막막함은 덜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 = 자신감) 이혼가족 자녀에게도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은 낙인감만 더할 부분이다.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 더 좋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부 또는 모가 있을 때 건강한 자녀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음.
C모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자신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혼상담 전문가 토크이 조사』, 2005.

제 3절 요약 및 시사점

저소득 시설거주 이혼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삶의 현황과 복지욕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혼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를 하지 않고 있고, 재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자가 많았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연령별, 이혼기간별, 학력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응답을 하고 있었다. 이는 본 실태조사의 대상 집단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시설거주 이혼가족의 실태와 욕구가 비슷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수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와 합하면 최저생활비 정도를 벌고 있었다. 직업훈련 및 교육은 훈련 및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벌 수 없어서 기피하고 있었다. 중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저조하나 향후 이에 대한 참여 의향은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앞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이는 이혼은 이혼자의 학력,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이혼가족에게 상당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

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설거주 이혼여성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은 시설 퇴소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이 없는 경우이다. 즉, 이혼여성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적 지원망의 유무에 따라서 퇴소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혼여성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퇴소 후 의료보호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비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혼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혼 전에 부부간의 갈등 조정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원하는 지원 정책은 주로 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비, 사교육비 지원을 지적하였다. 특히 자녀양육비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미비하여 양육비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혼여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최소화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퇴소후의 전세금 용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과 같은 주거지원도 원하고 있었다.

저소득 시설거주 이혼가족과 전국으로부터 추출한 이혼가족의 삶의 실태는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이혼여성들은 재가 이혼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고, 주거와 관련하여 시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 시설퇴소 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아파트의 분양 원활화, 임대주택 아파트의 소재 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를 갖고 있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개인차를 보여 경제력이 있는 경우는 퇴소 후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사례도 있었다.

재가 이혼가족들도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과반수임을 놓고 보았을 때, 이혼가족의 문제는 재가이혼가족이나 시설이혼가족을 막론하고 주거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혼여성은 저소득과 여성 가장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혼가족을 위한 시설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혼관련상담가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이혼자를 위한 자활, 심리상담, 자녀교육 및 심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도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혼여성들이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 및 자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 각 이혼관련 기관에서는 이혼여성과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행사성 위주이고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이혼가족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은 구조화된 것이 별로 없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이혼자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필요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혼가족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혼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혼자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혼상담가는 다른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혼 관련 상담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과 시청의 상담소에서는 공무원이 상담을 담당하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상담과정이 필요하고, 이혼상담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기관은 한시적인 로또기금 등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없고 프로그램 운영시 지속성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기 위한 민간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이혼자 대상 기관 간의 조정과 연계가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장희망센터, 구청, 민간기관 등의 역할이 조정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한 공공과 민간기구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전반적으로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주택이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많은 이혼 여성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

다섯째, 이혼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이혼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와 문구류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녀의 취미활동 등을 위해서 이혼가족 자녀들도 사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에 있어서도 일시불보다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의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이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혼여성과 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혼남성이 제외되어 있다. 남성이혼가족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남성을 위한 지원은 한 기관에서만 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1인이 상담을 전담하고 있고 기관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앞의 사례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남성이혼자들은 대부분 사적 연계망을 통해서 가사노동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은 자녀양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남성이혼가족을 위한 부자보호시설은 부재한 상태이다. 남성이혼자에게도 여성이혼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원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제 7 장 이혼가족 지원정책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핵가족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당연 눈에 띄는 것은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로서, 이로 인해 이혼가족 역시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 증가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이혼을 비롯한 가족해체를 더욱 가속화시켜 왔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이혼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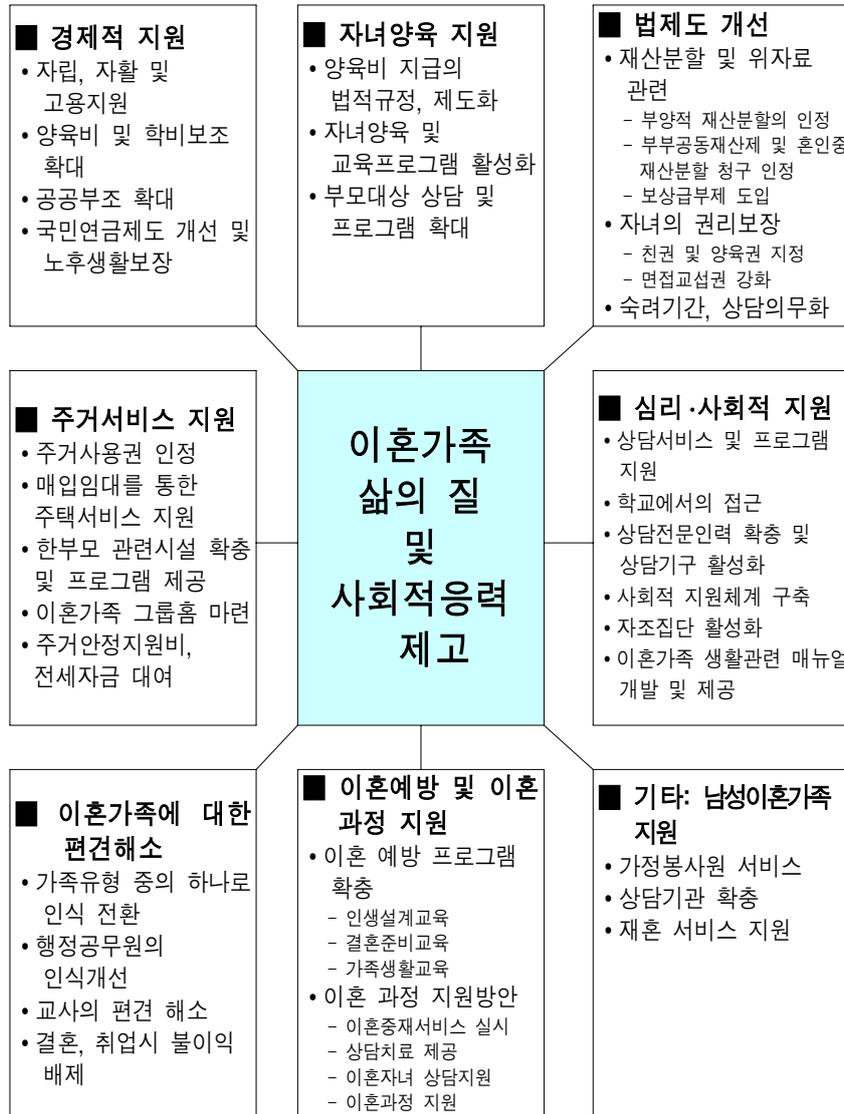
이혼가족은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생활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혼가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부정적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 주요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가족이 늘어남에 불구하고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이혼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 가족이 이혼 후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혼가족이 자립하여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 및 자녀교육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원조할 수 있는 상담, 치료, 교육 등 전문적 개입 등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나아가서는 이혼의 예방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지원, 법제도 개선, 주거지원, 사회·심리적 지원,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이혼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 기타(남성이혼가족 지원)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그림 7-1 참조).

[그림 7-1] 이혼가족 지원정책



제 1 절 경제적 지원 방안

이혼가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파악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다른 이차적인 가족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혼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가족해체 이전에 비해 현격히 낮아지는 편으로 특히 여성은 빈부를 막론하고 가족이 해체되면 주소득원자의 상실로 빈곤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앞의 실태조사와 사례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혼여성의 경우 여성이혼가족이면서, 이혼 후 기간이 나 연령대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혼가족의 경제적 지원방안으로 자립, 자활 및 고용지원을 비롯하여 양육비 및 학비의 보조 확대, 공공부조의 확대 실시, 이혼자 노후생활 지원 등이 대표적 예로 지적될 수 있다(표 7-1 참조).

1. 자립, 자활 및 고용지원

여성의 근로상태는 이혼 이후 여성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혼 이후 여성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저소득을 얻게 되므로 빈곤상태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혼 이후 이혼가구주에 대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이혼가족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립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혼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가. 직업교육 및 훈련 등 자립프로그램 실시

이혼가족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윤홍식, 2003). 현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주변직종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직

업훈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정도를 높일 수 없어 취업으로 연계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취업교육 및 훈련 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업교육 및 훈련기간 동안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한부모들이 교육훈련의 기회를 기피하는 편이다. 경제적 자립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기간 중 실제 생계보장이 가능한 정도로 훈련수당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 및 훈련 등 자립프로그램의 실시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다양화, 훈련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이혼여성들이 원하는 직업훈련 분야는 제과제빵 기술, 컴퓨터, 디자인, 운전, 봉제, 자동차 정비 등이었다. 한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훈련 중 탁아서비스의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된다(김연옥 외, 2005).

나. 실업가장의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실시 확대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알선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한 편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을 연계한 조직적인 취업알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취업 후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및 알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종 개발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연옥 외, 2005).

다. 복지자금 한도 증액 및 대상의 확대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족에 한하여 복지자금이 융자되고 있다. 복지자금은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에게 2,000만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과 연 3.0%의 저렴한 이자로 융자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a). 향후 시중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용자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용자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7-1〉 경제적 지원방안

자립, 자활 및 고용 지원	자립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필요 직업훈련시 훈련수당의 현실화가 필요 교육내용의 다양화, 훈련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
	실업가장 직업훈련 취업연계 실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훈련기관과 기업을 연계한 조직적인 취업알선 네트워크 구축 취업 후 사후관리 시행
	복지자금 증액 및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공제를 통하여 이혼여성 또는 이혼남성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함
양육비 및 학비 보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비의 현실화 및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자 확대 아동수당제도 도입 고려 	
공공부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생계급여의 대상자에 포함 이혼 등으로 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및 자립금 지원 수준을 개선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기준 마련 이혼가족에 대한 건강서비스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건강유지 지원 필요시 의료급여 확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노후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 실시, 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여성들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기간 등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소득 비례형 연금제도로의 전환 또는 현행의 급여구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편적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취약노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라.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에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원금 산정 방법이 세금 공제 방식과 같아 흔히 ‘마이너스 소득세’로도 불리운다. 근로소득공제의 특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달리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 준다는 점이다. 또한 지원금도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늘어나게 해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부추기는 효과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해체 이후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수급자의 복지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정망의 한 예로 인식된다(윤홍식, 2003).

이와 같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혼여성 또는 이혼남성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려면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는데,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제한성이 있다. 따라서 소요 예산은 각종 조세 감면을 축소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전면적 실시보다는 저소득 가구 중 근로소득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가구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일부 지역의 저임금 비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시범 실시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양육비 및 학비 보조의 확대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에도 이혼가족의 60%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재가 30~40대의 이혼가족은 자녀양육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고, 시설거주 한부모들도 자녀의 양육비와 사교육비 등이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한데, 이혼가족의 빈곤은 그 가정 내 아동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학비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혼 자녀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2005년 현재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양육비가 실제 아동양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대표적 접근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자녀양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3. 공공부조의 확대 실시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이를 통해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해 빈곤층에 편입된 이혼가정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나, 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혼가족 등 한부모 가족 중 많은 가구가 수급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여전히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어(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1; 한국여성민우회, 2001), 사회적 지원망에 걸리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긴급 생계급여 규정에서 수급조건이 주 소득원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발생

시에도 이들 역시 긴급 생계급여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주48)}

이 밖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및 자립금 지원 수준을 개선하여야 하며,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제도, 취업모를 위한 탁아수당제도,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료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이종한·이윤희, 2000).

또한, 연구 결과 이혼 등으로 인해 빈곤 여성가장이라는 상황은 건강상 문제를 야기시키고 직업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써 빈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혼가족에 대한 건강서비스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시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옥선화 외, 2003). 특히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은 월등히 나은 것도 아닌데, 의료급여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이혼가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료급여 제공시 이혼가족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융통성도 필요하다.

주48) 긴급급여는 2005년의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의 4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고 있고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참조표 7-1> 가구규모별 긴급급여액 (2005년 현재)

(단위: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	161,390	268,740	364,990	456,810	523,780	594,080

주: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70,300원 추가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5.

4.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노후생활 보장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의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분할제도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획득한 연금수급권을 이혼시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혼인기간(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사람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것이다(이정우, 2003).

국민연금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기여한 활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여성들은 연금 청구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금분할제도는 이혼여성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였던 남편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이정우, 2003).

즉, 연금분할제도는 이혼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60살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므로 이혼여성이 60살이 넘기 전에 남편이 재혼하거나 사망, 장애를 입으면 연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재혼자의 분할연금 지급정지'로 이는 전업 주부인 이혼여성이 재혼할 경우 전남편의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여성단체들로부터 '재혼을 가로막는 전근대적인 성차별적 제도'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이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여성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 별도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우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분할연금과의 병급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 실시, 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이정우, 2003).

최근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여성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되어 온 분할연금수급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혼여성

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또한, 자신의 노령 연금과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이혼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부부간 일 역할에 대한 동등한 법적, 경제적 가치 부여, 이혼 후 각자가 연금 수급자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 및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인정과 이를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여성의 가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여성이 1명의 아이를 낳을 때 3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들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등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제로서 완전히 소득 비례형 연금제도로의 전환 또는 현행의 급여 구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편적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아울러 이혼여성가구주들은 노후생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부재하고, 현재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연금이나 퇴직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가가 자신들의 노후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이혼여성을 위한 노후보장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수는 없겠으나, 독거노인이나 빈곤층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생활보장대책 등을 확충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절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방안

1.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및 제도화

2004년 국내 이혼건수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체 약 14만건 가운데 9만여건(65.5%)으로 이혼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활과 보육 및 교육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민법(제837조)에서는 이혼 당사자는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거하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실태 조사 결과 이혼가족은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족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행 이혼제도에 의하면 자녀양육비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하여, 사회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사례조사 결과 대부분의 이혼여성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특히 20~30대의 연령층에 많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정책 중의 하나로 꼽고 있었다.

따라서 양육비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부양의무·책임 강화에 대한 법규정 마련, 양육비 산정기준의 법제화, 양육비 지급이행 방안의 모색(양육비 사전 처분제도의 개선, 양육비 국가선급제의 도입,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제도의 강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국가의 조력 및 전담기구 설치) 등이 지적될 수 있다(표 7-2 참조).

가. 자녀 부양의무·책임 강화에 대한 법규정 마련

부모의 결혼상태와 부모와 아동의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무는 포기되거나 이전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적 명시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또는 부양책임에 관한 법적 내용을 가족법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로서 아동복지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아동부양법」을

별도로 만들어 부양의무에 관한 양육비 지급, 부양의무 수행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정영순, 1998).

〈표 7-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방안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및 제도화	자녀 부양의무강화에 대한 법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명시가 필요. -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또는 부양책임에 관한 법적 내용을 아동의 권리로서 아동복지법에 명시, 아동부양 법을 별도로 만들어 부양의무에 관한 양육비 지급, 부양의무 수행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함.
	양육비 산정기준의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 • 재판관의 재량이 아닌 행정적 절차로 양육비 지침에 근거하여 양육비 지급액 결정.
	양육비 지급 이행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처분제도의 개선. • 양육비 국가선급제의 도입.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제도의 강화.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국가의 조력 및 전담기구 설치.
자녀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보육관련 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특히 야간서비스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의 확충.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특기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부모대상 양육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관련 전문상담이 필요하고 부모자녀 간의 보다 효율적 의사소통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부모-자녀 상호간 지지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

나. 양육비 산정기준의 법제화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재판관의 재량이 아닌 행정적 절차로 양육비 지침에 근거하여 양육비 지급액이 결정되어야 한다(정영순, 1998). 현재는 양육비 산정 및 의무 강제를 법원에 청구하여 처리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 결정 금액이 현실에 비해 낮고 일관성이 있는 금액결정이 어려우며, 법원 청구절차의 복잡성과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다 충당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가계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양육비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양육비는 물가 상승이나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혼 이후 자녀가 만18세 이후 계속 취학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다. 양육비 지급이행 방안 모색

① 사전 처분제도의 개선

이혼소송 제기 후 부모 일방이 아이를 양육시 다른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활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혼 판결 이전이라도 자녀 양육비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법에서는 당사자 청구가 없이도 직권으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제도화하고 있다. 문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부양부담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미약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법의 강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② 양육비 국가선급제의 도입

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책임을 회피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비를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혼부모에게 국가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양육비 지급의 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국가선급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윤홍식, 2003; 이종한·이윤희, 2000).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면, 독일은 1979년 양육비 국가선급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은 자녀양육비 이행강제기관, 영국은 자녀양육비기관이 있어 양육비를 지

급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취소 등 이행 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부부가 국가에 일정액의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비 국가선급제를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49).

- ㄱ. 국가가 자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 심판 청구 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지급(선급)할 수 있도록 한다.
- ㄴ. 양육비를 대지급(선급)한 경우는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 ㄷ.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나 기타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공제도록 한다.
- ㄹ. 양육비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등 벌칙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통과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제도의 강화

양육비지급 의무자의 경우 양육비 불이행은 부모로서의 기본 의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 양육비를 일정 기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명시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주49) 이는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내용임

경제적 문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거나 자녀가 빈곤에 빠지는 경우를 예방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를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규정상 미비와 정책부재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에 대한 지급 거절에 대한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불이행의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0일이하의 감치처분 등 제도가 있으나 번거롭고 과도한 소요시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치 않는 경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입 가능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으로는 사전처분제 개선, 양육비 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채무 이행명령, 소득세법상의 양육비 공제 및 환급금제도, 부양의무자의 담보제공의무 등이 있다(전경근, 2005). 사전처분제 개선이란 사전처분에 따른 이행명령에 집행권한을 부여하여 이행명령만으로 양육의무자의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양육비 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 지급에 관한 당사자 합의서 첨부만으로 법원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지급의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한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양육비채무 이행명령이란 부양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양의무자의 채무자(부양의무자의 사용자인 회사)에 대해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부양권리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의 담보제공의무란 정기금으로 양육비 이행을 명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금전 이외의 담보제공시 이를 경매하여 경매대금을 공탁하도록 한다.

④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국가의 조력 및 전담기구 설치

이혼 후 양육비를 계속적으로 보장하도록 공공기관이 관여하여 양육비 지급의 이행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심판

청구를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대행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양육비 집행을 도와주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이 3개월 이상 실시되지 않는 경우 양육을 맡은 부모가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국가기관은 양육권자가 다니는 직장에 이를 통고하여 봉급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새로운 전담기구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전문 민간 단체나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양육비 청구 대행기관은 양육부모 일방이 도움을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기관에 대해 대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녀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혼은 한쪽 부모가 양쪽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양육권을 맡은 한쪽 부모는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됨으로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육관련 서비스의 제공,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사회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가. 보육관련 서비스의 제공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육시설 특히 야간서비스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몇 일간의 위탁탁아 등 다양한 형태의 탁아 및 보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보호서비스는 아동보호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자립 효과 등을 지니게 되어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시간대의 연장, 야간탁아소 운영, 비수용 그룹홈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대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양질의 급식 및 놀이 프로그

램의 제공을 통해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경제적 책임과 부모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혼부모들이 그들의 부모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장혜경·민가영, 2002). 그러나 대부분 경우 고가의 사교육비,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제활동 참여에의 선결과제인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후 교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혼가족의 취학 아동들은 학습 보충을 위한 기회가 적어, 방과 후 시간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초등학교 재학 이상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공부나 숙제를 도와주는 일 이외에 인성교육이나 레크리에이션, 기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및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부모대상 양육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의 확대

이혼가족들은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 부정적 관계 형성, 의사소통 단절 등 양육 부담이 큰 편이다. 이혼 후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며 또한 부와 모, 양육자와 비양육자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혼가족 내 부모대상 자녀양육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마련·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양육 관련 전문상담이 필요하고 부모-자녀 간 보다 효율적 의사소통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부모-자녀 상호간 지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는 이혼부모에게 개입하여 부모-자녀 간 관계증진은 물론, 자녀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경·강문희, 2005).

또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관련 갈등 중재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혼부모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 후 당사자 및 자녀들이 이혼가족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가족간 화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혼가족 대상 캠프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3 절 법제도 개선 방안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결정한 민법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최근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법상 호주제도가 2008년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공시하여 오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왜곡시켜왔던 호주제의 부성강제 조항이 약화됨으로써 부계중심적인 호주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혼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법개정의 시도 및 실현은 이혼가족 지원에 대한 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개정 민법과 양육비 확보에 실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이혼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가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가족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표 7-3>에 제시하였다.

1.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급부제도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이혼시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가 있다. 위자료 청구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된 경우 이혼하게 된 사람이 이혼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839조의 2).

〈표 7-3〉 법제도 개선방안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부양적 재산분할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한 배우자 중 한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청구를 요구토록 함.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당 기간 부양하도록 함.
	부부공동 재산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별산제의 대안으로 ‘부부공동재산제’의 도입이 고려됨. 이혼시 재산에서 혼인 시 재산을 감한 후 차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반을 나누는 제도인 ‘부가이익공동제’내지 독일의 잉여청산제 적용 필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균등하게 분할)
	보상급부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형성된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급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보상급부제도를 법제화하여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 연금, 수당을 받을 경우,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기여한 재산에 대해 배분하도록 하여야 함.
자녀의 권리보장 측면	친권 및 자녀양육권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시 자녀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 부모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대변자로서 아동발달 및 아동복지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특별대리인’ 선임제도 마련 검토.
	면접교섭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이나 조항 등이 신설되는 등 법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 - 불이행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혼숙려기간 및 상담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후 문제를 합의토록 시간을 갖도록 하여 성급하게 이혼하거나 감정적 판단 하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막도록 함. 이혼숙려기간에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등 이혼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보완 이혼의무 상담 제도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 확보

가. 부양적 재산분할의 인정

과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이어서 재산상 명의자가 재산을 갖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재산은 부(夫)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부인에게 불리한 제도였다. 이의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1990년 개정 가족법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재산분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대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평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찬식, 1997).

현재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인정함으로써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갖지 못한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잠재적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불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즉,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의 명의를 배우자 일방으로 된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재산이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처분 무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청산적’ 분할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부양적’ 성질의 분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⁵⁰⁾, 이는 가정 내 약자로서 생활해 왔던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배우자 부양 제도의 도입이 고려되는데, 배우자 부양은 이혼한 배우자 중 한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혼 후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당 기간 부양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변화순 외, 2003).

주50) 청산적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의미하며, 부양적 재산분할은 부양의 의미를 부가한 개념이다.

나. 부부공동재산제 및 혼인중 재산분할 청구 인정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에 있어서 재산소유자인 남편(간혹 아내)에 의해 사전에 재산도피를 하여 이혼시 아내에게 돌아가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적어질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 가압류(상대방 재산에 대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동산, 부동산에 대한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 또는 가처분(분쟁의 목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로 행한 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남편이 미리 재산을 도피하거나 명의를 변경시 현실적으로 이의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이 생활비를 중단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즉, 현재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할 때만 행사할 수 있어 이혼 전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분할 비율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민법 중 부부재산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적 재산분할 인정문제, 결혼시 부부의 재산권에 관해서 부부공유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주51), 보상급부제도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현행 부부별산제의 대안으로 ‘부부공동재산제’의 도입이 고려된다. 부부공동재산제는 이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 및 부부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제적

주51)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1) 가사노동의 가치와 경제활동노동의 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함으로 공동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1/2로 분할되어야 하는 것 2) 이혼 시에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별거 시 혹은 청산채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분할방법과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의존하기보다는 분할방법을 법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조은희·전경근, 2004).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20~30%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여성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는 효과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혼시 재산에서 혼인시 재산을 감한 후 차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반을 나누는 제도인 ‘부가이익공동제’(이화숙, 1990) 내지 독일의 잉여청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부가 공평히 재산분할이 가능토록 이혼시 각자의 종국 재산에서 당초 재산을 차감해서 잉여액을 비교한 뒤 잉여 차액을 계산하여 잉여가 적은 배우자가 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잉여 차액의 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문숙재 외, 2002).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도 함께 변제해야 하는 등 단점 또한 노출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보상금부제도 도입

이혼시 형성된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금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짐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금부제도에 대한 인정 및 이의 구체적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향후 보상금부제도를 법제화하여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 연금, 수당을 받을 경우,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기여한 재산에 대해 배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변화순, 1996).

보상금부 개념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 의미의 새로운 재산권(new property)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는데, 이는 이혼 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마

련에 대한 필요성에 근거한다. 새로운 재산권제도란 자격증 취득에 있어 일정 기간 수련을 요하는 직업, 즉, 이혼시 재산으로서 평가는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연금수혜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혜 등을 현재 획득한 자산들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제도이다(이종한·이윤희, 2000).

2. 자녀 권리 보장

이혼은 당사자만의 일이 아닌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이혼과정에 자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이종한·이윤희, 2000). 구체적으로 이혼가족에서 자녀와 관련된 여러 결정들, 친권, 양육권자의 선정, 면접교섭 등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친권 및 자녀양육권의 지정

과거 민법은 이혼 후 부만이 친권자가 되고, 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하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도 당사자간 결정이 없는 때에는 부가 양육의 책임지도록 하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여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이혼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친권에 대한 협의내용이 타당치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판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시 자녀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 부모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대변자로서 아동발달 및 아동복지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특별대리인’ 선임제도의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노명숙·김순옥, 2000).

나. 면접교섭권 강화

이혼은 자녀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결과이며, 또한 그로 인해 자녀들은 갑자기 양쪽 부모가 아닌 한쪽 부모와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양육권자 아닌 부모의 일방인 자녀와 전화, 문서왕래, 방문, 숙박 등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녀들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보장에 대한 적극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혼 이후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정기적이고 규칙적 만남을 통해 자녀들은 안전의 욕구에 대한 위협이나 유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우며 계속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 받아 이혼 이후 생활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녀와 아버지와의 접촉은 특히 사춘기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핵심적으로 유익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전부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접시간, 장소, 면접 시 주의해야 할 행동수칙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이나 조항 등이 신설되는 등 법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면접교섭권의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및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혼숙려기간 및 상담의 의무화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배우자 쌍방이나 가정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일시적 불화 등에 의해서 이혼을 결정하기 쉬운 단점이 지적된다(김성숙, 2002). 이와 같이 협의이혼은 절차의 간이성이 특징이나 부부재산 제도가 제대

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적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양육비 산정과 수급 절차가 미흡하여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부에게 이혼 전 상담을 통해 부부가 자녀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하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아동복지 전문가나 조사관 및 재판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필요시 부모들의 의견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숙려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범 실시해 오다가 법제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혼숙려제이란 이혼 신청자들이 일정 기간 이혼 여부를 유보하는 제도로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법원을 방문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고 일정 기간 이후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잡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혼숙려제도는 부부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후 문제를 합의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급하게 이혼을 하거나 감정적 판단 하에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김만웅, 2004). 사례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례들도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다.

2005년 11월 16일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52)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주52) 가. "상담"이라 함은 혼인생활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또는 이혼 후의 건강한 적응과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돕기 위하여 심리학·정신의학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하는 일체의 원조활동으로서 법원상담과 법원의상담을 말함(안 제2조).

나. 법원은 이혼절차개시일부터 3월의 숙려기간 후에 이혼의사확인 또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조정·화해·결정·판결을 하여야 함.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이혼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상담을 받은 증명서와 이혼 후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합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또는 모든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부의 쌍방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또는 재판상이혼 사건의 제1심을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지원장은 상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상담인을 위촉함(안 제7조).

바. 법원행정처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법률구조법원 등 상담

번에 법제화가 시도되는 '이혼숙려기간제'는 가정폭력이나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이혼절차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숙려기간을 거치며 이 시기 내 3시간 동안 상담을 받아야만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해주거나 조정·화해·결정 판결하는 것이다. 또한 협의이혼시 이혼 전 상담과 자녀양육 합의제도를 신설키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 전 상담을 불편한 또 하나의 절차로 간주하기 쉬우나 이혼 전 상담을 통해서 이혼 상대방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배나 자녀문제를 원만히 타결 짓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혼숙려제'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법안에서는 숙려기간의 상담 대체에 있어서 숙려기간이 3개월이지만 법안에는 3시간의 상담을 받은 것을 증명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숙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더군다나 상담이 유료로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한, 이미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숙려기간 중 접근금지 가처분' 대책을 마련하고 '숙려기간 중 생활비, 양육비 관련 규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숙려기간에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등 이혼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혼의무 상담 제도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
- 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상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개인 중에서 법원의상담인을 지정함(안 제8조).
- 사. 법원은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의 전제가 된 상담시간 및 기타 필요한 상담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담비용을 부부의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함(안 제9조).
- 아. 상담인 또는 상담인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의 내용을 누설한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

제 4절 주거서비스 지원 방안

이혼가족에게 있어 주거문제는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삶의 조건이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택 마련은 쉽지 않은 일로서 적지 않은 목돈이 있어야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방안이 모색되는데, 주거사용권 인정,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비롯한 주택서비스 지원, 한부모 관련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제공, 이혼가족 그룹홈 마련, 그리고 주거안정 지원비, 전세자금 대여 등이 지적될 수 있다(표 7-4 참조).

〈표 7-4〉 주거서비스 지원방안

주거사용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나 거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함.
매입임대를 통한 주택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대신 매입임대 제도가 도입됨.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시 대기시간, 공간의 협소 등의 문제점 개선. -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를 영구임대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주거안정을 도모함.
한부모 관련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관련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거주기간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배려. 예비 모자가정(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남편의 부재로 주거가 불안정한 한 부모)에게도 제공되는 주거시설 필요. 부자 이혼가정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가정 보호시설 확충.
이혼가족 그룹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마음이 맞는 소수의 이혼가족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식의 주거시설을 마련
주거안정 지원비, 전세자금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안정 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등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게 주거 안정 지원비, 저리의 전세자금 대여 등 제공

1. 주거사용권 인정

주거문제는 이혼 이후 실제적 생활문제나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하는데 겪는 큰 어려움의 하나이다. 특히 이혼 후 5년 미만의 경우나 여성이혼가족, 그리고

20~30대의 경우는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부분 주택은 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양육을 맡은 부모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주택을 옮겨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들은 부모들의 이혼과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집과 학교와 친구들까지도 바뀌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심리적, 물질적 안정을 위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주택의 소유권이나 거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소유권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주거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이화숙, 2000). 특히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법원은 현재의 거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사용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이는 '자녀의 복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매입임대를 통한 주택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이혼가족의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2004년부터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간 총 5만호를 매입하여 임대할 계획에 있다.

최근 들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중단되었고 대신 매입임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전에는 영구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이혼모가 모자 시설 퇴소 후 영구임대주택 선정에 있어서 직장 및 자녀의 학교와 너무 멀리 떨어져 배정되는 등 거리상 차이 및 임시주거시설에서 형성하였던 사회관계 차단으로 대상자가 영구임대주택을 반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시 대기시간, 공간의 협소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가족에 대한 임대 주택 배정시 이혼가족에 대한 거리상의

배려 및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현재 2년에 연장 2회(2년단위)로 최장 6년으로 되어 있다. 즉, 이 기간동안 거주자는 주거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는 영구임대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저소득 이혼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부모 관련 시설 확충 및 관련 프로그램 제공

우리나라의 이혼가족 등 시설 관련 서비스는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박영미, 2004).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이혼가족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모자시설 및 모자자립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현재 모자보호시설은 40개소, 모자자립시설은 전국에 4개소뿐으로, 이들 시설은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차와 낙인감으로 인해 시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모자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긴 편이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2년 범위 연장가능)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제한된 자원(인적, 물적)의 제약성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 상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보다 가족관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또는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 이혼가족의 일시 거주처로서 모자관련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거주기간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모자가정이 되기 직전 단계에 있는 예비 모자가정(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남편의 부재로 주거가 불안정한 한 부모)에게도 주거시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부자 이혼가정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가정 보호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동안 저소득 편부가구 자녀들을 위해 아동보육시설 입소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2차적 가족해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부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보호서비스가 요청된다 (변화순 외, 2000).

4. 이혼가족 그룹홈 마련

서로 마음이 맞는 소수의 이혼가족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 식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올해부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물량 중 10%를 보호아동과 미혼모, 노인,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의무적으로 배당하여 최소한 임대료만 주고 집을 빌려 살 수 있는 그룹홈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근거할 때 입주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가족이 이혼가족의 공동가정을 이루면서 주거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사회적인 지지망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생활가정도 임대 기간이 최대한 6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기간 만료시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한 가족의 경우는 또 다른 주거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공급이 영구임대 방식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위의 경우처럼 검토되어야 한다.

5. 주거안정 지원비, 전세자금 대여

이혼가족에게 있어 주거보호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치이지만 주거안정 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등은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는 이혼가족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집을 얻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배우자 내지 보증인이 필요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소득층 이혼가족의 주거 어려움을 실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비, 저리의 전세자금 대여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절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이혼가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혼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부모, 자녀 대상), 부모-자녀 프로그램, 학교를 매개로 한 교육적인 접근, 상담전문 인력의 확충 및 상담기구의 활성화, 사회적 지원의 연계체계 구축, 자조집단의 활성화, 이혼가족 생활관련 정보지침 매뉴얼 개발 및 제공 등이 모색될 수 있다(표 7-5 참조).

1.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가. 이혼부모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이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처나 실의를 주는 과정이므로 이혼 후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지원해 주는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표 7-5〉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상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이혼부모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서비스: 법적인 내용, 직업, 경제 관리,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 혹은 양육방법 등과 같은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함 • 이혼 후 적응 교육 프로그램: 이혼 전 1년간 경험한 생활사건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과정을 기본으로 함. •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혼 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권 같은 구체적 법률 정보 및 구직에 도움이 정보 제공 • 이혼부모 대상 프로그램: 이혼관련 정보를 얻고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혼가정의 아동을 위한 심리적인 개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시 아동의 개인적 특성 요인인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포함함. • 아동이 자기 효능감에 대해 인식하고 미래 목표에 대한 의식을 뚜렷하게 해줌. • 이혼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부재한 부모의 심리적인 지지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멘토 프로그램이나 big brother나 big sister 같은 제도를 도입

〈표 7-5〉 계속

상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부모-자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상담의 시행으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토록 하고 부모의 적응을 돕고, 양육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형성토록 함.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실시
학교를 매개로 한 교육적인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가정 환경조사서 등 학교서류양식에 있어 이혼가정에 대한 배려, 학교 내 학교사회사업가를 이용하는 방안 등
상담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상담기구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등 위기에 있는 가족 내지 이혼부부와 자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 사회적 차원에서 이혼관련 상담기구를 마련하여 상담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사회적 지원 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가족들을 위한 정보공유 및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들 간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
자조집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가족에게 있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조집단 형성 이혼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자조그룹 운영도 고려할 수 있음.
이혼가족 생활관련 정보지침 매뉴얼 개발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가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담기관, 복지관, 모자시설, 구청 등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이들 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반면, 이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의미 있는 타자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주53)} 한편, 이혼 후 정서 지원서비스로 재혼서비스가 지적되는데, 특히 이혼부의 경우 심리적 외로움을 비롯하여 생활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혼서비스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편이다.

이혼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이혼관련 주제들, 자녀행동 변화 및 적응, 미래문제, 심리적 혼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53)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혼부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편으로 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및 자조집단 형성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혼 당사자의 여성과 남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각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되어야 하고 이혼가족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이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도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 프로그램 개발 및 이의 실시가 요구된다.

하여야 한다.주54) 특히, 자녀훈육 방법, 취업, 주거문제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 하여 생활에 대한 자신감, 독립심 고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성정현, 1999). 이와 함께, 전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과정을 강화하여야 한다(옥선화·성미애, 2004).

나아가서는 이혼가족 관련 프로그램은 이혼을 정신적 결함이나 인격 장애로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과 동시에, 자기비하적인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이종한·이윤희, 2000).

나. 이혼가정의 아동을 위한 심리적인 개입방법

자녀의 경우 이혼과 관련해서 발생가능한 일반적 가족문제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한다.주55) 부모의 이혼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갈등, 가족 내 관계에 대한 재구성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혼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감

주54)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위해 참가자의 동질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연령이나 이혼 사유에 따라 교육대상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경우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문현숙·김득성, 2002).

주55) 아동을 위한 상담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있다.

- (1) 개인상담: 부모의 이혼과정이나 이혼 이후 자녀는 심리, 정서적 문제와 사회성 발달에 장애를 받게 될 위험성이 크다. 아동들은 이혼에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부모 앞에서 편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상담에서 이혼에 관련된 부모에 대한 감정, 불안, 우울감, 사회적응 문제 등을 다루어 줄 수 있도록 한다. 놀이치료, 그림 그리기, 일기쓰기, 이혼에 관련된 독서나 책을 읽고 감상문 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2) 집단상담: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조직화된 집단상담을 하면 효과적이다. 집단개입은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이라는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서로의 다른 경험과 문제들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단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혼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의 관계, 한 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감정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지지해 주는 집단을 운영하는 경우 효과적 이다(이삼연, 2002).

정을 표출해 낼 수 있고 이의 감정들을 공감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 요인인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이 자기 효능감에 대해 인식하고 미래 목표에 대한 의식을 뚜렷하게 해줌으로써 부모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돕는다(김경집, 2002).

이혼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부재한 부모의 심리적인 지지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멘토 프로그램이나 big brother나 big sister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부모-자녀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가족프로그램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개입 이외에 이혼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개입하는 가족상담 및 가족프로그램이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된다.

이혼가정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부적응적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이런 경우 무엇보다 전배우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이 필요하다.

가족상담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토록 하고 부모의 적응을 돕고, 양육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 양육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가족활동을 증대시키고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며 구성원의 의사를 경청하거나 혹은 토론을 활용하는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Wolchik, et al., 1993). 가족관계는 이혼부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의 결정적 요소로서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족상담, 가족치료와 가족활동 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풍, 캠프,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다(최해경, 1997).

2. 학교를 매개로 한 교육적인 접근

아동 및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학교와 같은 가

족 외적 지원체계를 통해 이혼자녀들의 지속감과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 학교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해 매개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학교중심의 적응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정서적 안정과 부모의 이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감정 변화와 상황 변화에 대처하도록 도움으로써 정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김경집, 2002). 특히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 연민은 아동에게 지지적인 편으로(Wallerstein & Kelly, 1980),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혼가정 환경조사서 등 학교서류양식에 있어 이혼가정에 대한 배려, 학교 내 학교사회사업가를 이용하는 방안 등 이혼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장혜경·민가영, 2002).

3. 상담 전문인력 확충 및 상담기구 활성화

이혼 등 위기에 있는 가족 내지 이혼부부와 자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양육, 친권 등에 관한 결정을 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차원에서 조언하고 결정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혼위기에 있는 가족들을 상담하는 전문 인력이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의 접근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혼관련 상담기구가 마련되어 이혼으로 인한 개인, 이혼자녀 자신의 특수한 문제의 상담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상담기구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등 여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 인터넷 상담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개발·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담인력 및 상담기구 확충에 기반하여 이혼가족원들이 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상담 관련 소요비용에 대해 보험서비스의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지원 연계체계 구축

이혼가족들을 위한 정보공유 및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들 간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내의 교육기관, 기업, 행정기관, 이혼상담기관, 종교기관, 법률관련 기관, 사회적 서비스 기관 등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망을 형성하여 이혼가족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앞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이나 혼선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에 규정된 것을 더욱 정교화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과정에 있는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이혼의 예방사업, 이혼가족을 위한 상담 뿐만 아니라 이혼 후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등 다각적인 사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5. 자조집단의 활성화

이혼가족에게 있어서 이혼 이후 직면할 수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조집단의 형성이 필요하다(성정현, 1999). 일반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이혼가족 지지망·관계망 확대를 위해 부모 혹은 자녀 자조집단의 형성과 훈련을 통해 상호지지가 가능토록 한다(최해경, 1997). 이혼가족 자조집단은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제공하고 상호 정보 및 원조를 제공하는 체계가 될 수 있다. 이혼가족의 사회지지망 강화를 통해 이혼가족의 자녀가 학대나 따돌림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문선화, 1999). 이외에도 이혼가족 자조집단을 구성하면 이의 관계망으로 서로 자녀를 돌봐주는 도구적 지원까지 가능하다(김연옥 외, 2005).

따라서 이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조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며, 자조집단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가족을 위한 모임을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마련되는 것

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인터넷 공동체를 통한 모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가정 자녀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조 프로그램 실시 및 이혼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자조그룹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 이혼에 대한 이해, 이혼으로 인한 분노 및 불안 수치심 등의 감정 조절, 사회적 적응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궁극적으로 부모의 이혼과 분리하여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명희, 2003).

6. 이혼가족 생활관련 정보지침 매뉴얼 개발 및 제공

이혼가족이 생활상 당면하는 양육, 부모역할, 법적 정보 등 여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가족 생활관련 정보지침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정보지침 매뉴얼은 이혼가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담기관, 복지관, 모자관련 시설, 구청 등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이들 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장혜경·민가영, 2002).

제 6 절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방안

우리 사회에서 이혼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통념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쉽다. 본 연구결과 이혼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견 내지 사회적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영역에서 친구와의 관계변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의 참여나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볼 수 있었다. 이혼자 및 이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직 부정적인 편으로 이혼가족이 비정상적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의 하나로 나름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표 7-6 참조).

따라서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완화내지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김연옥 외, 2005).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아존중감,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혼가족에 대한 외부적 편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중매체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이혼가족의 삶에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조명토록 하여야 한다(장혜경·민가영, 2002).

〈표 7-6〉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방안

-
- 이혼가족이 비정상적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의 하나로의 인식 전환
 - 행정공무원의 이혼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 사회, 가족 변화에 맞게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교사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 취업 및 결혼시 사회적 편견 배제
-

특히, 이혼가족을 접할 수 있는 관련 실무자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저소득층 이혼부모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경우 가장 먼저 일선에서 만나는 사람이 행정공무원들로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혼가족 대상자가 심리적 위축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학령기 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사회적 부모’로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교사들의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이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가족 변화에 맞게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교사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과과정 개발 및 이수가 필요하다.

이는 이혼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예방의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아동들의 이혼에 대한 인식을 명료하게 하고 미래에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이혼 가정의 아동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해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경집, 2002). 아울러 사례조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취업시에도 이혼자에 대한 편견없이 공정한 경쟁이 있도록 해야 하고, 자녀들의 결혼시에도 이혼가족 자녀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 7 절 이혼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

이혼가족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막을 수 있는 이혼은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표 7-7 참조). 이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양성평등 및 인생설계교육이 있고, 단기적으로 사회단체 등이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교육 및 혼인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표 7-7〉 이혼 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

이혼 예방 프로그램 확충	인생설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에 제도권에서 인생설계교육을 시킴 •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 부부대화와 이해의 중요성, 부부간 갈등 처리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
	결혼준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관련 느낌, 가치, 태도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솔직하게 논의
	가족생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
이혼 과정 지원 방안	이혼 중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전 조정제도를 강화하여 회복가능성이 남아있는 혼인 관계의 해소 방지 •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를 설득하여 갈등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협의 유도
	상담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태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예방을 위한 부부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실시
	이혼 자녀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과정 속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 지원 제공
	주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소송 등 이혼과정 중에 있는 가족을 위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아울러 이혼과정에 있는 가족에게는 이혼중재 서비스가 필요하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 주거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표 7-7 참조).

1. 이혼예방 프로그램 확충

가. 인생설계교육

이혼예방을 위해서는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에서 부부대화 와 이해의 중요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부부간 갈등 처리를 위해 대화와 타협 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변화순, 1996). 따라서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는 물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까지를 대상으 로 하여 이혼 예방 및 이혼과정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성인기 이전 청소년기에 제도권에서 인생설계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한데, 이는 앞으로 학교교육에 편입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삶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성립되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현대적 결혼관, 부부윤리관, 부부의 역할, 애정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정립시켜 일찍부터 이상적인 부부상에 관한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공정자 외, 2005)은 첫째, 자기 자신 알기, 꿈의 실 현을 위한 정보, 취업 등을 다루면서 인생을 설계해 보도록 돕는다. 둘째, 인 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에 관한 주제-예를 들어,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성에 관한 지식과 윤리, 임신과 부모 되기, 친구관계 등에 관계-를 다룬 다.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 맺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기술을 훈련-분명·솔직한 의사소통방법, 협상기술, 스트레스해소법 등을 훈련함으로써 성인기에 성공적 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

나. 결혼준비교육

결혼관련 느낌, 가치, 태도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 술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혼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가족 문제나 자녀문제를 예측하고 통찰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 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여부의 결정이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 좀더 신중하게

임하게 되며 결혼생활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통해 향후 예측가능한 가족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들이 강구될 수 있다(공정자 외, 2005).

다.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프로그램은 결혼불만 요인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보다 나은 부부관계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대인관계의 역동성, 가족 내 인간관계, 이성 간 관계 특성,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방법 등을 포함토록 한다. 이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가족의 발달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양상의 문제들을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부부관계가 갈등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형성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2. 이혼과정 지원방안

가. 이혼중재 서비스 실시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과정 동안 극심한 긴장과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합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포함한 중요한 과제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혼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혼당사자와 가족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혼 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김수정, 2003).

중재는 두 당사자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혼을 평화적으로 동의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하여 재고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혼 전 조정제도를 강화하여 회복가능성이 남아 있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방지해야 하며,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를 설득하여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이혼 결과에 대한 협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이혼하는 당사자와 자녀들 모두가 상처를 덜 받고 상호협조적인 이혼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상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물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결과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이 해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법원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위기상태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예방을 위한 부부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기의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상담 및 치료방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혼의 원인 즉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여러 유형의 상담 및 치료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음주, 도박, 거짓, 낭비, 불성실, 폭력 등의 개인적 행동문제의 경우 개인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도록 한다. 또한 상담 및 치료와는 별도로 이혼 후의 자신과 자녀의 생활 변화, 자녀와의 관계변화 등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도록 개인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기 상황에 있는 부부 및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갈등상황들을 잘 극복하여 이전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만일 이혼을 하게 된다 하여도 훨씬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 지원

이혼과정 속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혼을 받아들여야 할 경우 마음의 준비가 없어 더욱 큰 충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자녀 스스로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김수정·권신영, 2001). 또한 부모이혼 후 아동들의 적응을 위해 미리 이혼

을 준비시켜 주고 이혼 후 발생하게 될 다양한 변화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주 소희, 2003).

라. 이혼과정 중 주거지원 서비스

이혼소송 등 이혼과정 중에 있는 가족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규모시설 중심이 아닌 소규모의 실제 가정집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8 절 기타: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남성이혼가족을 위해서는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표 7-8 참조). 이혼남성 가족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와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재혼에 대해서 여성보다 더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모자가족에 비해 부자(父子)가족이 자녀양육은 물론 가사서비스 지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혼부모 뿐만 아니라 이혼가족 자녀 역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데, 실제 이혼부의 자녀가 딸일 경우 더 많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혼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7-8〉 남성이혼가족 지원방안

-
-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서비스 제공
 - 이혼남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확충
 - 이혼남성의 재혼 서비스 지원
-

이혼남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한 기관

에서만 무료로 이혼남성을 위한 상담과 재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남성들이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도록 하고,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관에 대한 지원은 복권기금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는 한시적인 지원으로써 인건비 지원을 물론 기관의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비가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성이혼자는 여성이혼자에 비하여 재혼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재까지 사립 기관이 대부분 재혼을 주선하고 있는데, 이혼남성의 재혼을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접근이 용이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혼 알선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 8 장 결론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기능 저하 등 가정생활의 모습이 바뀌었고 아울러 이혼, 가족구성원의 유기, 자녀양육의 방치 등 가족의 해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정의 해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혼은 이혼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혼여성가족의 경우 이혼 후의 소득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혼가족들은 유배우가족에 비해 주거생활, 직업생활, 자녀관련 등의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이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적 규모는 줄어드나, 주거생활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희망하는 욕구가 차등적으로 20~40대는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양육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취업보다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일부 사례조사 결과에서는 심리적 및 경제적인 안정, 갈등으로부터의 탈피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혼 후 이혼가족의 삶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혼가족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이혼가족의 가족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막을 수 있는 이혼은 예방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이혼, 그리고 후회 없는 이혼을 하도록 현명한 결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이혼의 결과에 대한 원만한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가족의 복리를 기하여야 할 것이

다. ‘건강한 이혼’을 위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를 떠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개발하고,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돌지라도 국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의 양육책임 이행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혼제도, 특히 협의이혼제도 보완으로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의 제도화, 부부재산제·양육비 등의 전면적인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상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이나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한 사안이다. 아울러 이혼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혼가족 지원방안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관점과 권한부여 측면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이혼가족 지원방안의 향후 정책방향은 통합적 시각이 반영됨으로써 이혼가족 및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의 향유 및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배희,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공선영,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양서원, 2000.
- 공정자·조성숙·구훈모, 「이혼의 현황과 대책: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중심으로」, 『21세기 한국가족: 문제와 대안』, 한국가족문화원, 2005.
- 권귀숙,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 분석」, 『가족과 문화』 10(1), 1998, pp.135~175.
- 권영미,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김경집, 「이혼가정 아동 적응 프로그램 고찰」, 『연세교육연구』, 15(1), 2002, pp.1~17.
- 김두현, 『한국가족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김만웅, 「우리나라 이혼절차에서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미숙·김종숙·김현주·김혜경·박옥희·원영희·이경아·이선미·이선이·이선주·이여봉·장화경·함인희,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 김병찬, 「한국가족의 이혼에 관한 일고찰」, 『경동전문대학 논문집』, 제6집, 1997, pp.557~575.

- 김상용, 「이혼율증가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0호, 1996, pp.203~236.
- 김성숙, 「약혼법과 이혼법 정비를 위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15권 1호, 2002, pp.23~72.
- 김수정, 「이혼협상의 실태와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2), 2003.
- 김수정·권신영,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한국가족복지학』, 8, 2001, pp.48~74.
- 김승경·강문희,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아동학회지』, 26(1), 2005, pp.261~278.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박세경·이건우,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23, 2004.
- 김승권·양옥경·조애저·김유경·박세경·김미희,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3, 2004.
- 김연옥 외, 『가족복지론』, 2005, 나남출판.
- 김정옥, 「이혼원인의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993, pp.41~56.
- 김찬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학주, 「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가족복지학』, 2004, 13호
- 김혜련,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_____,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또 하나의 문화』, 1995.
- 내일신문, 『미즈엔』, No.218, 2005. 3. 13.

- 노대명·문세경·최승아, 『자활사업 평가지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노명숙·김순옥, 「1990년 개정가족법 이후의 판례에 나타난 이혼효과: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5권 1호, 2000, pp.93-112.
- 모지환·박상하·안진·엄기욱·오근식·이용고·이형하·장현·조원탁, 『사회정책론』, 학지사, 2003.
- 문선화,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1), 1999, pp.213~233.
- 문숙재·윤소영·이운신,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액 산정과정에 대한 제안: 독일의 잉여청산제 적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6), 2002, pp.159~170.
- 문현숙·김득성,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0(6), 2002.
- 박경혜, 「중년여성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정체감이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박병금, 「이혼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개입의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부진, 「재판 이혼시 자녀 양육자 선정의 실태 및 문제점」, 『가족과 문화』, 11(2), 1999, pp.99~121.
- 박복순,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민사법연구』, 제12집 2호, 2004.
- 박영미,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한부모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4.

- 박영란 외,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 박한샘, 「이혼가족 의 자녀관련 상담분석: 사이버상담을 중심으로」, 『이혼 가족 지원사업 실무자 세미나 자료집』, 2003, pp.13~39.
- 방성수·장보임, 「이혼증가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한국복지행정논총』, 13권, 1호, 2003, pp.159~175.
- 방하남·장지연·황수경·김기현·김지경·박시내,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II』, 한국노동연구원, 2002.
- 법원행정처, 「내부자료, 2004.
- 변화순, 「가족해체와 재구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1995, pp.293~328.
- _____,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변화순·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변화순 외,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2000.
- 변화순 외, 『이혼 후 배우자 부양법에 관한 연구』, 국회여성위원회, 2003.
- 보건복지부,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1999.
- _____,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2003.
- _____,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4.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5.
- 서울시, 「내부자료, 2001.
- 성정현,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11, 1998, pp.53~78.
- _____,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 복지학』, 제4호, 1999, pp.93~115.

- 성정현·송다영·한정원, 「이혼가족 및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 11, 2003, pp.9~34.
- 성정현·여지영·우국희·최승희,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4.
- 송다영,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한부모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4.
- 송태정 외,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LG경제연구원, 2005.
- 안병철,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 양연순,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엄영진, 『사례중심 가족법』, 서울: 대왕사, 1998.
- 여성가족부, 『2005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5a.
- _____, 「내부자료」, 2005b.
- 유연정, 「복지 낙인(Stigma)이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여성가구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윤덕경·장영아,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옥선화·성미애,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생활만족도와 건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11), 2004, pp.167~187.
- 옥선화·성미애·이재림,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2), 2003, pp.165~92.
- 유경희·김기중,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별거)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2004, pp.103~119.

- 유희정, 「부모의 이혼과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2), 2001, pp.57~78.
- _____, 「이혼 후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가족학』, 15, 2005, pp.185~217.
- 윤홍식,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Vol.53, 2003, pp.51~73.
- 이근식,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가족법 개정의 제 문제 논집』, pp.67~72.
- 이동원 외,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2001.
- 이삼연,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2002, pp.37~65.
- 이여봉,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강남대학교·보건복지부, 2003.
- 이영숙·박경란·전귀연, 『가족문제』, 학지사, 1999.
- 이용교, 「지역센터로서 공부방 기관행정 및 지자체 연대방안」, 『빈곤지역 공부방 실무자교육자료집 I』, 사랑의 친구들, 2000.
- 이정숙,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 1994, pp.1~31.
- 이정우,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3, pp.63~95.
- 이종한·이윤희, 「이혼제도와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5, 2000, No.2. pp.59~83.
- 이태영, 『한국 이혼율연구 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1.
- 이태수, 「공부방 활동의 전망과 정책」, 『빈곤지역공부방 실무자 교육자료집』, 사랑의 친구들. 2001.

- 이태진, 「주거급여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 자료』, 2005.
- 이현송, 「이혼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제2집, 1997, pp.17~43.
- _____, 「주관적 이혼사유의 변화」, 『가족과 문화』, 11권 2호, 1999.
- _____, 「실직자 가족의 복지욕구와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 9집, 1999, pp.155~176.
- _____, 「여성의 개인주의 확대와 가족변화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5집 3호, 2003, pp.111~134.
- 이화숙,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여성연구』, 1990, 8(1), pp.149~180.
- 이화숙, 「'황혼이혼' 과 재판상 이혼원인, 그리고 별산제의 한계」, 『연세법학연구』, 7, 1, 2000, pp.1~37.
- 이훈구,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2004, pp.47~53.
- 임효용·김경신,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12), 2001, pp.189~203.
- 자활정보센터, 「전국자활후견기관 조직 일반현황」, 2004.
- 장현섭, 「이혼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을 위하여」, 『한국가족문제: 진단과 전망』, 하우, 1995.
- 장혜경·민가영,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장혜경 외,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2001.
- _____,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전명희, 「이혼가족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이혼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망: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혼」, 『이혼가족 지원사업 실무자 세미나 자료집』, 2003, pp.43~77.
- 전경근,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방안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2005.
- 전숙영·유안진,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지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 22, 1997, pp.55~64.
- 정문자·김은영, 「이혼가족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의 탐색」,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3, 1999, pp.108~119.
- 정순희·문숙재·최혜경, 「이혼 편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실태」, 『가족과 문화』, 제11집 1호, 1999, pp.103~132.
- 정영순, 「한국의 아동부양법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비교」, 『아동복지학』, 7, 1998, pp.53~95.
- 정진영, 「이혼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제2회 학술대회: 버려진 아이들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대안』, 1992, pp.41~74.
- _____,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정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 1993, pp.81~108.
- 정현숙, 「이혼과 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993, pp.131~153.
-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 주소희,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자녀의 심리·행동적응 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2003, pp.179~210.
- 최재석, 『한국가족의 해체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연구보고서, 1981.

- 최해경,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1997, pp.377~395.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여성·아동, 고령자, 1인가구부문)』, 2002.
- _____, 「2004년 혼인·이혼통계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5.
- 한경혜, 「한국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정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993.
- 한경혜·강유진·한민아,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제15집 1호, 2003, pp.77~96.
-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99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98~20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 한남제,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1997.
- 한수자, 「과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 법학 박사학위논문, 2000.
- 한국가족법률상담소, 「내부자료」, 2001.
- _____, 「2003년도 상담통계」, 2004.
- 한국가족학회 편, 『한국가족문제 - 진단과 전망』, 하우, 1995.
- 한국여성민우회, 「내부자료」, 2001.
- _____,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cess(번역자료), 2002.
- _____, 「한부모 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2004.

- Abelshon, D., & Saayman, G. S., "Adolescent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An inves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dimensions of structural family therapy theory," *Family Process*, 30, 1991, pp.177~191.
- Agell, A., "Social Security and Family Law in Swede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ne Parent Family", 4 *United Kingdom Comparative Law Series*, A. Samuels (ed.) 1979, in Saldeen, pp. 414~415.
- Ahrons, C., *The Good Divorce*. N.Y.: Harper Collins, 1994.
- Amato, P. R., "Psychological distress and recall of childhood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91, pp.1011~1020.
- _____,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993, pp.23~28.
- _____, "The consequence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2000, pp.1269~1287.
- Amato, P. R., & Booth, A.,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Well-Being," *Social Forces*, 69(3), 1991, pp.895~914.
- Amato, P. R., & DeBoer, D. D., "The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across generations: Relationship skill or commitment to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2001, pp.1038~1051.
- Amato, P. R., & Keith, B.,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1991, pp.126~46.
- Arendell, T. J. "Women and the economics of divorce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13, 1987, pp.121~135.
- Arditti, J. A., "Rethinking Relationships Between Divorc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Capitalizing on Family Strengths," *Family Relations*, 48, 1999,

pp.109~119.

- Barnes, Helen, P. Day, and N. Cronin, "Trial and Error: A Review of UK Child Support Policy," Occasional Paper 24, London: Family Policy Studies Centre, Clearinghouse, 1998.
- Becker, Gary S., Elisabeth M. Landes, and Robert T. Michael,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977, pp.1141~1187.
- Booth, A., & Amato, P. R.,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1991, pp.396~407.
- Cherlin, Andrew J.,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Cherlin, Andrew J., & Chase-Lansdale, P.L.,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Mental Health Throughout the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1998, pp.239~249.
- Clapp, Genevieve, *Divorce and New Beginnings*, John Wiley & Sons Inc., 2000.
- Collins, R., & Coltrane, S., *Soci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1.
- Demo, D. H., & Acock, A.,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988, pp.619~648.
- Emery, R. E., & Forehand, R.,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 interven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Garfinkel, Irwin, and Sara S. McLanahan., "Non-custodial fathers' ability to pay child support", *Demography*, 26, 1986, pp.219~233.
- Giudubaldi, J., & Perry, J. "Divorce and mental health sequence for children: A two year

- follow up of a nationwide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1985, pp. 531~537,
- _____, "Divorce,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cognitive-social competence at school ent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1984, pp.459~468.
- Glendon, Mary Ann, *Property Rights Upon Dissolution of Marriages and Informal Unions*, Cambridge Lectures, Publisher, 1982.
- Glick, I. D., Berman, E. M., & Clarkin, J. 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th Eds.), 1999.
- Goode, William, *Women in Divorce*,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 1956.
- Gove, W. R. "Sex,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1973, pp. 45~67.
- Greenstein, Theodore N., "Marital disruption and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pp.657~676.
- Hetherington, M., Stanley-Hogan, M., & Anderson, E., "Marital transition: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1989, pp.303~312.
- Jacobvitz, D. B., & Bush, N. F., "Reconstru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Parent-child alliances, personal distress, and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996, 732~743.
- Kitson, G. C. and Marvin B. Sussman, "Marital complai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of mental distress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982, (1);pp.87~101.
- Kogos, J. L., & Snarey, J. "Parental divorce and the mor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3), 1995, pp.177~186, 1995.

- Kurdek, L. A. & Berg, B., "Children'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987, pp.712~718.
- Kurdek, L. A., & Siesky, A. E.,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divorce," *Journal of Divorce*, 3, 1980, pp.339~379.
- Kurdek, L. A., & Sinclair, R. J., "Adjustment of young adolescents in two-parent nuclear, stepfather, and mother-custody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1), 1988, pp.91~96.
- Lee, Yean-Ju,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Marital disruption: the case of divorce or separation," paper presented in the 2005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Labor Income Panel Study, 2005.
- Lesthaeghe, Ron.,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dim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9(3), 1983, pp.411~435.
- Lillard, Lee A. and Linda J. Waite, "A Joint model of marital childbearing and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30(4), 1993, pp.653~681.
- Lorenz, F.O., Simons, R.L., Conger, R.D., Johnson, C., Chao, W., & Elder, G. H., "Married and recently divorced mothers' stressful events and distress: Tracing change across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1997, pp.219~233.
- Lowery, C. R. & Settle, S. A.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Differential impact of custody and visitation patterns," *Family Relations*, 34, 1985, pp.455~463.
- Mauldin, T. A., "Women who remain above the poverty level in divorce: implications for family policy," *Family Relations*, 39, 1990, pp.141~146.

- McKeever, Matthew and Nicholar H. Wolfinger, "Reexamining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82(1), 2001, pp.202~217.
- Martin, Teresa C. and Larry L. Bumpass,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Vol.26, 1989, (1):pp.37~51.
- Menaghan, Elizabeth. G. and Toby, L. Parcel, "Parent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Research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2, 1990, pp.1079~1098.
- Muhlolland, D., Watt, N., Philpott, A., & Sarlin, N., "Academic performance in children of divorce: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Psychiatry*, 54, 1991, pp.258~280.
- Muransky, J. M., & DeMarie-Dreblow, D., "Difference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3), 1995, pp.187~196.
- Oppenheimer, Valerie K., "Women's Employment and the F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 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1997, pp.431~53.
- Parkman, A. M., *No-Fault Divorce: What went wrong?* Westview Press, 1992.
- Peck, J. S.,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at various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Divorce*, 12(2/3), 1988~1989, pp.81~105.
- Peterson, Richard R.,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June), 1996, pp.528~536.
- Ponzetti, Jr., J. Zvonkovic, M. Cate, and L. Huston, "Reasons for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 17, 1992.

- Price, S. J., & McKenry, P. C., *Divorce*, Newbury Park: Sage, 1988.
- _____, *Divorce*, Thousand Oaks: Sage, 1998.
- Raschke, Helen J., "Divorce," pp.597~624 in Sussman &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lenum, 1987.
- Rogers, Stacy, "Dollars, Dependency, and Divorce: Four Perspectives on the Role of wives' Inc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 2004, pp.59~74.
- Ross, C. E., & Mirowsky, J., "Parental Divorce, Life-Course Disruption,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999, pp.1034~1045.
- Santrock, J. W., & Warshak, R. A. ,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4), 1979, pp.112~135.
- Sayer Liana C. and Suzanne M. Bianchi,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and the Probability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21(7), 2000, pp.906~943.
- Simons, R. L. J. Beaman, R.D. Conger & Chao,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993, pp.385~398.
- Simons, R. L., Whitebeck, L. B., Melby, J. N., & Wu, C., "Economic pressure and harsh parenting," in Conger, R. D., & Elder,, G. H., Jr.,(Eds.).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pp.207~222, NY: Aldine, 1994.
- Simons, R L., Lin, Kuei-Hsiu Seslie C. Conger, R. D., & Lorenz, F. O., "Explaining the Higher Incidence of Adjustment Problems Among Children of Divorce Compared with Those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999, pp.1020~1033.

- Smock, Pamela J., "Gender and the Short-run 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ruption," *Social Forces* 73(1), 1994, pp.234~62.
- South, Scott J., "Time-dependent effects of wives' employment on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2001, pp.226~245.
- South, Scott J. and Glenna Spitze, "Determinant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Aug.), 1986, pp.583~590.
- Stolberg, A. L., Camplair, K. C. & M. J. Wells, "Individu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1(9), 1987 pp.51~70.
- Thorton, Arland and Willard L. Rodger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historical time on marital dissolution," *Demography*, 24 (1), 1987, pp.1~22.
- Trent, Katherine and Scott J. South, "Structural determinants of the divorce rate: a cross-socie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May), 1989, pp.391~404.
- Wallerstein, J. S., & Kelly, J. B., *Surviving the breakup :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Y.: Basic Books, 1980.
- Wallerstein, J. S., Lewis, J. M., & Blakeslee, S.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A 25 year landmark study*. N.Y.: Hyperion, 2000.
- Weiner, J. L., Harlow, J. A., & Grebstein, L.,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from Families of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emarriage*, 23(3/4), 1995, pp.75~95.
- Weitzman, Lenore J., *The Divorce Revolution: The Unexpected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Women and Children in America*. New York: The Free, 1985.

White, Lynn K., "Determinants of divorce: a review of research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Nov.), 1990, pp.904~912.

Wolchik, S. A., West, S. G. Westover, S., Dandler, I. N., Martin, A., Lustig, J.,
Tein, J., & Fisher, J., "The Children of Divorce Parenting Intervention:
Outcome Evaluation of an Empirically Based Progra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93.

부 록

[부 록 1] 이혼사례 소개 / 319

[부 록 2] 사례조사 분석결과 / 363

[부 록 3] 시설거주 이혼자 대상 주관식 설문 결과 / 372

[부록 1] 이혼사례 소개

1. 사례 1

1) 개인적 배경

성명 : 주00

성별 : 남성

연령 : 39세

학력 : 고졸

직업 : 무직(전에는 영업사원이었음)

월수입 : 없음(현재는 퇴직금으로 살아감)

결혼기간 : 12년, 연애결혼(6~7개월 사귀)

이혼기간 : 1달

자녀(연령) : 2남(12세, 초등학교 5학년) 12세, 8세 초등학교 2학년),

2) 이혼의 동기

이혼 동기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로 인한 빈번한 갈등에 있었다. 둘 다 급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자녀양육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냈고, 본인은 부인을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부모없이 할머니와 큰어머니 아래서 자란 사례는 자녀양육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화를 내게 되고, 부인은 아이들을 왜 감싸주지 않느냐고 맞대응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싸움은 커져서 부부간에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부인은 처형집으로 몇일간 가 있기도 했다. 갈등

이 해결이 되기 전에 부인이 가출하곤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끈이 꺾이고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부인은 이혼 4년 전부터 미용실에서 일해 왔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싸움이 더 커졌다. 늦게 퇴근하는 부인에게 왜 늦는다는 전화도 하지 않느냐고 전화하면서 화를 내곤하였다. 자신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말로 하지 못하고, 대신 화를 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전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구속하고 배려해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 1년 전에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로 재결합을 원했으나 이혼으로 끝났다. 부인은 방이 딸린 미용실을 얻어서(남편으로 미리 받은 위자료로 충당)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인은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 더 이상 결혼생활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이혼과정에서 부인이 집을 나가, 자녀를 혼자서 키워야 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출근 후 20분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자녀들을 챙겨야 했고, 퇴근 후에도 집에 와서 자녀들을 돌보아야 했다. 결국,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았다. 그럼에도 남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 전 부인이 자녀를 키운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다.

본인이 이혼을 원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었으나, 이해와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는 것보다 헤어져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혼에 합의하였다.

4) 이혼전과 후의 생활변화

이혼 후 생활변화는 주거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었다. 전부인과 자녀들이 살 수 있게 집을 마련해 주느라고 빚을 내었다. 이혼 2달전부터는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도 그만둔 상태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다. 생활은 퇴직금으로

하고 있고, 현재 고용보험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한 빚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한다.

아울러 이혼과정에서 모든 가전제품(냉장고, 밥솥 등)을 자녀양육을 위해서 전부인에게 다 주 식사 준비 등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다니는 교회 집사님의 도움으로 식사 준비 등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받아서 하고 있다. 사례는 부모나 형제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 이혼 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이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는 있지만, 전 부인이 같이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본처와 자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자녀들과 사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 후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과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다. 자녀들과 현재 전화 통화는 하고 있으나 같이 있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혼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직시 이혼자가 불리함을 체감하고 있다. 기업주들이 이혼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탈선하거나 반항하지는 않고 있으나,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이혼을 인식하고 탈선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다.

6) 이혼가족으로써 지원받는 서비스 및 내용

사례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중재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혼 후 왕래를 하는 친인척도 별로 없었다. 다만 다니는 교회 신도의 도움으로 집안일 상의 도움을 받고 있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이혼숙려제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혼 바로 전에 이혼에 대해 재고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이혼하기 훨씬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상담 등을 통한 개입을 원하고 있었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이혼자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없다. 본인이 아직까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에 기대하거나 바라는 바는 별로 없다. 다만 이혼자들이, 특히 남성들이 이혼 후 방황하며 술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담소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필요하다. 본인은 신앙으로 이혼 후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으나, 신앙마저 없는 경우는 삶을 제대로 추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특별히 원하는 지원 서비스도 없다. 가사일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앞으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서인지 사회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10) 총평

사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부인의 완강한 요구로 인해서 이혼을 한 경우이다. 결혼기간 동안 부인에 대해서 적절한 애정표현과 관심, 배려하는 언어 등을 하지 못하고, 부인의 삶을 구속하고 간섭하려 했던 데서 부부간에 갈등이

누적되었다. 부부의 갈등은 심화되어 부인이 가출하였고, 경제력이 있는 부인은 미용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녀양육의 기반을 마련한 후 이혼하였다.

현재, 자녀와 부인이 없는 데에 대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부인에게 자녀를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였다. 전부인도 자녀들을 키우기 원하지 않았으나, 이혼을 하기 위해 자녀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심리적인 손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 부모들이 서로 자신들을 양육하기를 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노나 반항심 등이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표출될 소지가 많다고 본다.

사례는 정부로부터 특정한 지원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그동안 부인의 언행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뒤우치고 있었고, 자신의 배경 때문에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2. 사례 2

1) 개인적 배경

성명 : 정00

성별 : 남성

연령 : 45세

학력 : 초대졸

직업 : 프리랜서(출판업 등)

월수입 : 불규칙하나 생활할 수준은 됨

결혼기간 : 12년 (1993년~2005년), 연애결혼 (1년 사귀)

이혼기간 : 1달

자녀 : 2녀 (11세, 초등학교 4학교, 9세, 초등학교 2학년)

2) 이혼의 동기

사례의 이혼의 동기는 복합적으로 성격차이, 경제적인 불안정, 부인의 외도 등이다. 본인은 내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색형인데 비해, 부인은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면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서로 싸우지는 않았으나 불만이 (특히 부인의) 누적되었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혼을 촉발시켰다. 사례는 출판인쇄업을 했었는데 IMF 외환위기 시에 실적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사례는 공공근로, 장사, 출판업 프리랜서, 킥 서비스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은 남편이 일정한 일자리가 없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수치스러워 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했더니 부인이 살던 전셋집을 빼서 아이들과 다른 데로 이사간 적도 있었다. 수소문해서 부인과 아이들을 찾아 몇 달 후에 재결합은 하였으나, 부인의 남편에 대한 무시와 비난 등은 계속되었다.

결정적인 이혼 계기는 부인이 가게를 꾸려가기 위해서 일본어 관광가이드를 하게 되면서이다. 전부인은 3년간 학원을 다닌 후 관광가이드로 취업이 되었다. 부인이 거의 집에 없어서 사례가 자녀들을 돌보아야 했다. 전부인이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원을 다닌 3년 동안 남편은 당시 6세인 큰 딸은 직장예 데리고 갔고, 4세인 작은 딸은 유아원에 맡기는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취업후 부인은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와 성관계도 피했고, 더 나아가 한 집에서 각 방을 쓰면서 별거를 시작하였다. 별거의 계기는 전부인의 동료(36세 미혼 여성)가 유부남 및 다른 남자를 동시에 사귀는 것에 영향을 받은 부인이 봄(2005년)부터 남자(유부남)를 사귀면서이었다. 퇴근후 부인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해서 채팅도 하였다. 남편은 집안 청소를 하다가 부인이 상대방 남자에게 쓴 편지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례는 부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부인이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기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직장을 갖게 되면서 많은 ‘능력 있는’ 남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귀기도 하였고, 본인도 월평균 300~600

만원을 벌게 됨에 따라서 남편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남편과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았다.

3)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이혼과정에서 사례는 이혼하면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다. 특히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현재로써는 재혼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간에 마음이 떠났고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더 이상 같이 살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다. 이혼시 부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고, 부인으로부터 전세비 4천만원을 받고 이혼에 합의하였다.

4) 이혼전과 후의 생활변화

이혼 후에 주거지를 반지하로 옮겼다.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상생활도 흐트러지고 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 등 집안일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은 편이다. 사업계획도 많고 현재는 러시아로 진출해서 출판업을 할 계획에 있다. 생활은 퇴직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편은 아니나 일상생활은 유지하고 있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이혼 후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다. 전부인의 반대로 보고 싶은 자녀들과 통화도 못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이 사랑하였던 여자가 떠난 것에 대한 아픔과 미련이 남아있다.

6) 이혼가족으로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내용

현재 남성의 전화 자조모임에 나가서 도움을 받고 있다. 다양한 위기의 남자와 만나서 고통을 나누면서 서로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고 있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이혼숙려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난 부부를 이혼 전에 몇 주간의 시간을 두고 이혼을 재고해 보게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이혼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재혼을 주선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도 나이가 젊고 건강해서인지 사회에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나 정부로부터 원하는 사항이 별로 없었다.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과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타격이 크에도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10) 총평

사례는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외도한 부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리고 부인이 외도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부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놓지 않고 있다.

사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경우이다. IMF 외환위기로 실직 및 불안정한 취업이 되었고, 이는 부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가정의 경제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부인의 외도라는 다른 문제를 유발하였다. 가족이 외부의 변화에 노출되어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었고, 상대에 대한 기대감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못했다. 아울러 부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가장으로써의 경제력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다. 이는 부인의 외도로 이어졌고, 외도는 이혼을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여성은 순종적이라는 견해와는 달리 사례의 경우 부인에 대해 의존적이고 집착적인 성향마저 보이고 있다. 부인이 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만 돌아선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고, 재혼도 원하지 않고 있었다. 여성이 이혼의 피해자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되는 경우이다.

3. 사례 3

1) 개인적 배경

성명 : 박00

성별 : 남성

연령 : 57세

학력 : 대졸

직업 : 퇴직

월수입 : 150만원(퇴직연금, 집세 등)

결혼기간 : 27년 (1975년 ~ 2002년)

이혼기간 : 3년 (2002년 ~ 현재)

자녀 : 1남(30세, 직장인) 1녀(26세, 직장인)

2) 이혼의 동기

사례는 이혼 전 6년 전부터 부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다. 사례는 부인

이 외도하고 있는지 3년간 모른 채 지내다가, 부인이 매일 집안일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있는 것이 수상해서 뒷조사를 한 뒤 알게 되었다. 부인은 초기에는 외도를 숨기고 여자도 왜 밖에서 오래 있지 못하냐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자 남편은 사람을 사서 부인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었다.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사례가 장남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기 때문이다.

부모님들께 부인의 외도사실을 알리지 않고 3년간 부인을 설득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부인은 외도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였다. 부인이 외도한 상대방 남자도 유부남으로 상대방의 부인을 찾아가서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려주자마자 6개월 후에 먼저 이혼을 하였다.

현재 부인은 외도한 남자와 재혼해서 살고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관련법에 의거해서 부인에게 수원에 구입한 아파트 1채를 주었다(이는 자식을 키워준 보답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재산도 있었으나, 이는 분할하지 않았다.

3) 이혼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

이혼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이혼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남성의 전화’를 통해서 심리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률 정보와 이혼수속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관은 본인이 직접 알아봐서 찾아갔다고 한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회사생활과 가정생활을 같이 하기 어려웠다. 특히 부인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10시 이후에 돌아오는 생활을 3년간 하면서 집안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은 전혀 하지 않아, 사례가 스스로 식사를 챙겨먹거나 사먹었고 집안일도 해야 했다.

본인이 이혼에 대해서 책임은 없는 가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장일에 너무 충실하였고 부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가를 살펴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즉, 부인을 감시하지 못한 것이 본인의 불찰이었다고 한다.

사례는 이혼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혼 직 전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혼 후 갈등적인 상황이 사라져서 심적인 부담감이 덜어진 면도 있다. 사례는 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이혼 가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다.

4) 이혼 후 생활변화

이혼 후 사례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본인이 퇴직해서 연금과 집세, 주식 등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고, 자식들도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취업한 상태이어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담도 없다.

본인이 퇴직해서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세탁, 식사준비, 청소, 장보기 등)을 전부 맡아서 하고 있다. 워낙 부지런해서 집안청소도 부인보다 더 깨끗이 하고, 본인은 물론 자녀의 옷까지 세탁한다.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산책하고 자녀들에게 간단한 아침식사(생과일 쥬스)를 준비해 준다.

또한 이혼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여서 사례는 이혼 후의 생활변화와 함께 퇴직으로 인한 생활변화도 겪었다. 현재는 아침에는 간단한 운동을 하고 신문 을 보고, 오후 3시까지는 주식시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난다. 전 직장동료, 동창 등 많은 친구들이 있어 교제권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사례는 이혼 직후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고, 특히 증오심이 많아 힘들었다고 한다.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저주도 많이 하였고, 마음에 갈등이 많았다고 한다. 사례가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극복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음을 다스리고 조금씩 하지 않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일어서려고 하였

다는 것이다.

이혼 후 퇴근하면 집안에 아무도 없고 밥을 해먹기도 힘들었지만, 스스로 집안일을 하고 참으면서 살았다. 사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의 안정이 생겼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혼 1년 후에는 사례의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한 갈등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는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인데,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과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에 있다. 자식이 있으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한다. 자식이 아직까지 출가를 하고 있지 않으나, 출가한 후에는 외로움을 더욱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혼을 하기 위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재혼 대상자를 소개를 받고 있지만, 맞는 상대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인은 현재의 주택에서 오래 살았다. 이웃들은 이혼 후 이사하라고 권하고 있으나, 본인은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서 이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가 이혼가족에게 주는 편견이 너무 많아서 심리적으로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자녀의 결혼에 있다. 자녀들이 연애 결혼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중매로 결혼할 경우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 후 인간관계는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특히 전 사돈택하고는 전혀 왕래가 없다. 그렇지만 주위에 친구는 많은 편으로,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등산도 가고 노래방도 가며 삶을 즐기고 있다.

이혼당시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스스로 아버지와 살 것을 택했다. 자녀들은 엄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아들은 외도해서 집을 떠난 엄마를 용서하지 않고, 엄마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딸은 가끔씩 엄마를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오히려 큰 아들은 사례의 개인연금까지 내 주고 있는 등, 성인이 된 자녀들은 비교적 별 문제없이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

6) 이혼가족으로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내용

사례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는 없다. 이혼 당시 ‘남성의 전화’의 도움을 받아 법률자문과 심리상담을 받았을 뿐 현재 지원받는 것은 없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이혼숙려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례가 이혼할 당시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매우 쉽게 하도록 해서 오히려 이혼율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혼 전에 이혼에 대해서 재고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제도가 활성화 되면 이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가정이 사회의 근간이 되므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혼 판결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혼 판결을 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상에서 불이익이 되도록 하여 이혼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자녀보호 등)

이혼한 남자의 경우 집안일을 하기 어려워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고, 재혼 기회를 국가적으로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민간 기관도 있기는 하지만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 특히 사례는 재혼을 원하고 있어 맞는 상대방을 소개해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많기를 바라고 있다.

자녀가 어린 경우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나, 사례의 경우는 자녀들

이 성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10) 총평

사례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성장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집안일 등)을 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다. 이혼 후 한 1년간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았으나, 의지가 강해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없이 스스로 헤쳐 나올 수 있었다.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이혼자 및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외로움에 있다. 주위의 도움으로 재혼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본인도 적극적인 상황이다. 외로움과 함께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자녀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고, 퇴직 후이지만 소득도 있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어서 자녀양육의 부담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재혼을 위해 민간기관보다는 국가기관이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4. 사례 4

1) 개인적 배경

성명 : 임00

성별 : 여성

연령 : 만 28세

학력 : 고졸

직업 : 무 (주부)

월수입 : 정부보조금 17~20만원

결혼기간 : 5년

이혼기간 : 3년

자녀(연령) : 아들 1명(6세)

2) 이혼 동기

사례의 이혼사유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도 한몫 하였다. 사례와 남편과는 생활방식과 생각하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사례의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다.

사례의 친정은 도와줄 사람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서 사례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했고 병간호도 맡아서 했다. 남편은 이러한 부인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남편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여서 수입이 거의 없었다.

사례는 전남편, 시동생(남) 2명, 시아주버님과 함께 살았는데, 사례 혼자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서 매우 힘들었다. 당시 시동생 2명은 대학생이었고, 시아주버님은 대학원생이었는데 학비를 제외한 생활비 전부를 사례가 부담했고, 빨래, 밥, 청소 등 집안일도 모두 혼자서 감당했다. 남편은 시동생과 관계가 나빴고 동생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사례에게 모두 풀었다. 싸울 때 남편은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자, 사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2년간의 별거생활을 하였고, 그 후 이혼을 하게 되었다.

3) 이혼과정상 어려웠던 점

사례의 친정엄마가 입원하던 2002년 6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9월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사례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월세방을 얻어 살았다. 남편이 이혼해 주겠다고 하여 법원에 3차례 정도 갔으나, 매번 남편이 이혼을 기피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절차를 몰랐고 도와주는 곳이 없었다. 주위에서는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들 하였다. 별거 중에는 자녀 양육비와 월세 등의 생활고가 심해 정부 지원을 받으려 하

였으나,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남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자 이혼에 합의해 주었다.

4) 이혼 전과 후의 생활변화

사례는 이혼전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남편이 워낙 경제력이 없어서 지금이나 그때나 생활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이혼 전과 이혼 후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혼 전에도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자녀에 대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사례가 자녀양육까지 담당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주거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혼 전에는 시댁 명의로 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사례가 직장을 다녀도 월세로 나가는 돈이 많고, 지금까지도 주거문제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사례는 7월까지 모자원에서 살았으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안양에 일자리를 찾아 가면서 이사를 했으나, 그곳에서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모자원에 있었다면 주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있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현재 이혼 후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많이 도와주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일하는 곳에서도 사례의 이혼사실을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하고 있다.

단, 심리적 어려움은 많다. 무엇보다 알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들이 무너져서(안양에서의 일)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힘들다. 이사하면서 동사무소 가서 다시 수급대상 신청하는 것이나 자녀가 천식이어서 병원도 계속 다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등 때문이다. 요식업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일을 하고 싶은데 자격증도 없고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건강면에서는 허리가 좋지 않다. 임신시기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지속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다. 그런데, 사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이라고 했다. 아이가 어려서 지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이 낮아서(중졸) 일을 찾기 어렵다. 자녀가 안양으로 이사한 뒤부터 천식을 앓고 있어서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고 갑자기 심해질 경우 응급실을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일하는 것도 불안하다.

사례는 수급대상이어서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자녀와 함께 심리검사를 받고 싶고, 상담도 받고 싶다고 한다.

주거면에서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모자원에 그대로 있었으면 2년 반 정도는 기간이 남아서 그 시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6) 이혼가족으로서 지원받는 서비스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 이혼가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OO가정연구소 모임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와 수급대상 신청이나 모자원 입소 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사례는 이혼숙려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부부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혼을 결정했을 텐데, 이혼숙려기간을 둔다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아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과정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혼숙려기간이 오히려 이혼기간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정부로부터는 주거면과 자녀양육 상에서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한부모 가정으로써 자녀가 어릴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쉽지 않고 따라서 정

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혼 후 거주지 마련이 어려우므로 주거지원도 필요하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자녀보호 등)

한부모가정 자녀 상담, 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사례 개인적으로는 자녀상담과 치료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기반을 위한 창업교육이나 기술교육 등의 교육도 받고 싶다고 하였다.

해마다 이혼가정의 한부모와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정책 및 서비스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아울러 이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 찾기가 어렵다. 서비스의 확대 및 활발한 홍보를 통해 쉽게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10) 총평

사례는 일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거나 자녀양육을 경제활동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결정이 많은 것 같다. 안양으로 이사갈 당시 주변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계약했으며,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한 일이 잘 되지 않자 3개월만에 다시 돌아온 것 등에서 사례가 외향적으로는 삶에 대한 열성적인 부분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판단 미숙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는 직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천식이 자신 때문에 생긴 것 같아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못하고 있다.

5. 사례 5

1) 개인적 배경

성명 : 공00

성별 : 여성

연령 : 만 36세

학력 : 고졸

직업 : 제과사(대형 할인마트 제과팀에서 근무)

월수입 : 월 80만원(급여)

결혼기간 : 7년 (93년~99년)

이혼기간 : 6년 (99년~현재)

자녀(연령) : 아들 1명(12세, 초등학교 5학년)

2) 이혼 동기

외적인 이혼동기는 경제적 문제 때문인데 실제로는 남편의 성도착 문제(사례는 이를 성격차이로 봄)가 컸다. 남편은 성도착 증세가 심각하였는데, 컴퓨터로 음란 사이트, 동영상, 사진 등을 방문을 잠그고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처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음란물을 보기도 했다. 남편은 결혼 후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후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매일 컴퓨터 게임이나 음란물을 보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사례는 남편이 직업없이 집에 있는 것과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책임감 없는 모습을 참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싸움이 잦아졌고,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항상 이를 거부하여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사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하였다.

3) 이혼과정상 어려웠던 점

이혼과정상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4) 이혼 전과 후의 생활변화

이혼 후 실제 수입은 많이 줄었다. 결혼생활 동안에도 사례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였다. 사례가 이혼하기 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당시 연봉 2200~2300만원과 부수입으로 월 200~300만원을 벌었다. 그때는 수입은 많았어도 심리적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꼈다. 지금은 월 80만원을 받고 일도 많이 하고 빚도 있지만 오히려 풍족한 것 같다.

자녀양육면에서는 지금이 훨씬 낫다. 이혼 후 종교(기독교)를 갖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주거 상황은 이혼 전보다 열악하다. 이혼 전에는 방이 2개인 전셋집에서 살았고, 소위 ‘별집’이라는 방한칸짜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이혼한 언니와 조카들과 함께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 전세비는 언니가 1500만원 사례가 1000만원을 지불하여 충당하였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 후 특히 인간관계가 어렵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 때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담당부서 과장에게는 말을 해서 알고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많아서 이혼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렵다. 회사 동료들은 사례의 이혼을 알아차려서인지 사례가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내세워 사례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혼 후 남편은 한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한 번은 전남편은 사례에게 전화를 해서 남자를 데려와 스와핑을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거부하자 오히려 사례에게 성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친한 친구도 외도를 하고 있고, 주변에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게 되면서 성과 관련하여 혼란한 생각이 들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고 10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의 하락에 대한 상실감도 크다.

이혼 바로 직후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퇴직금도 꽤 있었고 생활비를 제외한 수입을 모두 저축했기 때문이다. 이혼 당시 사례는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혼 후 3년동안 사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썼고, 남편의 카드빚을 갚느라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현재는 1000만원 정도가 전 재산이며 빚이 1000만원 정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빚을 월 20만원씩 갚아 나가고 있다.

현재 80만원 벌어서 빚 갚고 자녀 학원보내면(태권도, 단소) 생활비도 모자란다. 그런데 아이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소비 욕구가 많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받고 싶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고 있다.

건강상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혼 직후에는 모든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었다.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행동도 느려졌었으나, 현재는 많이 회복되었다.

부모역할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나, 자녀에게 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자녀가 친구집에 가서 친구 아빠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이 무겁다. 아들은 약하고 내성적이어서 남자답고 힘이 센 모습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는 태권도 관장님을 매우 좋아하고 관장님을 닮고 싶어한다. 학교 담임선생님이 남자이고, 자녀를 잘 챙겨줘서 아이가 많이 밝아졌다. 또한 작년에 아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멘토했던 선생님(남자)을 좋아하고 가끔 연락도 한다. 아들 주위에 아버지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남자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심이다.

현재 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한집에 동거하고 있을 뿐 언니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례가 회사에서 야근할 경우 아이의 식사를 챙겨줄 사람도 없다. 토요일이면 아들이 친한 친구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사례는 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서 가끔 그 집에 빵이나 과일을 챙겨 보내기도 한다. 문제는 마음 편하게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데 있다.

주거에 있어서는 지금은 큰 불편은 없지만 내년 7월부터 언니와 따로 살 준비를 해야 한다. 내년에 독립하기 위해 1000만원만 가지고 전셋집을 얻어야 하는데 저축액이 적어서 걱정이고, 월세를 얻자니 비용에 부담이 된다.

6) 현재 이혼가족으로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내용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조모임을 나가고 있다. 모임을 통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도 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평소 보기 어려운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좋다. 이전의 자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도움이 된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정부에서 이혼 예방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든 이혼 전에 상담은 필요하다. 부부가 이혼을 생각할 때는 서로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학교나 생활 속에서 가정교육이다.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결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과 가정내의 역할, 부부관계 등 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자녀보호 등)

월 8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빚이 있음에도 모자가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다. 그로 인해 자녀 교육비와 학교 급식비 등의 부담이 컸었다. 지금은 담임선생님 추천서와 각종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급식비와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번거롭다. 수입이 있어도 갚아야 할

빛이 있고 월 80만원 가지고는 자녀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 남성이나 미혼 남성에게는 대출이 쉬운데 이혼여성에게는 대출도 너무 어렵다. 전세자금 대출 같이 주거와 관련된 대출을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혼자와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면 한다.

10) 총평

사례는 많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알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우 예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다가 사람들과 부딪치게 되면 관계회복이 어려워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관계를 회피하기보다 직접 부딪혀 해결하고자 하나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항상 힘들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종교에 의지하고 있고, 교회 목사님에게 밀착되어 있다. 아울러 교회 교인들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한다.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많이 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언니와 함께 살면서 언니는 물론 조카들 과도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 상담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 스스로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과 주변의 관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음은 편하다고 하지만 주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재혼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르다고 하고 재혼하고 싶은 대상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있다.

6. 사례 6

1) 개인적 배경

성명 : 전00

연령 : 만 36세

학력 : 고등학교 중퇴

직업 : 무 (주부, 아르바이트)

월수입 : 정부보조금 65만원 + 26만원(아르바이트) = 91만원

결혼기간 : 3년 (95년~98년 7월)

이혼기간 : 7년 (98년~2005년 현재)

자녀(연령) : 딸(10세, 초등학교 3학년), 아들(8세, 초등학교 1학년, 발달장애-자폐)

2) 이혼 동기

외적인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과 생활양식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였다. 첫 애 출산 후 산후 부작용이 심했는데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상처 소독 한번 해 준 적도 없고 상처 때문에 목욕을 거의 1년 동안 못했어도 물수건으로 한번 닦아 준 적도 없다. 병원가라는 말만 했고 가까이 사는 언니가 와서 닦아 주고 소독해주고 살림해주고 했다. 오히려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바람이 난 상대가 자녀 백일과 돌때 찾아오기까지 했다(사례는 그때는 외도 상대이었는지 몰랐다).

3) 이혼과정상 어려웠던 점

남편이 너무 제멋대로 살아서, 이전부터 이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외도해서 오히려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였으나, 사례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이혼에 합의해 주었다.

이혼하면서 전세금 외에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다른 것을 바라지도 않았

다), 특히 지금까지 양육비도 받은 적이 없다.

4) 이혼 전과 후의 생활변화

경제생활면에서는 오히려 이혼하고 안정이 된 것 같다. 남편은 씩씩이가 커서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힘들었다. 지금은 보조금과 부업으로부터 수입이 있다.

사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도 이혼하고 훨씬 안정적이다. 남편은 계속 거짓말만을 일삼아왔다. 이혼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니까 자녀들도 안정되고 있다.

주거면에서는 이혼 전에는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기도 했고, 분가해서는 전세이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살았다. 이혼 후에는 수중에 전세금밖에 없었고 자녀들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줄였고, 점점 작은집으로 옮겨 살았다. 거의 1년에 한번씩 이사를 하였다.

2004년 1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와서 주거면에서는 안정적이다. 주거비용도 적고 관리도 해주니까 안정이 된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 후에 힘들지만 밝게 사니까,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잘 챙겨주고 있다. 아직은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지만, 의논할 상대가 없을 때가 어렵다.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담임선생님들께 의논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자녀들이 어림에도 수입이 없어서 불안하다.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작은애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하므로, 기술(미싱)이 있어도 정규직으로 일을 못하고 보조역할만 하고 있어서 수입도 적다.

사례는 잡도 못하면서 부업을 하며 생활이 이어간다. 수입의 일부는 자녀 학비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불편한 마음도 갖고 있다. 국가의 세금을 चु내는 것 같아 달갑지 않다. 아이들한테는

너희들 나중에 잘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건강면에서 사례는 한동안 많이 아팠다고 한다.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특히,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다.

자녀들에게는 원하는 것(예: 학교급식)을 해 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큰아이는 이러한 엄마의 상황을 알고 다시는 엄마에게 학교에 와 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는다. 큰 애는 아빠를 많이 찾는다. 그럴 때 할 말 없고 서운한 마음도 든다. 남편은 큰애 생일은 꼬박 꼬박 챙겨준다. 몇 일 전에 큰애 생일이었는데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녀 교육비 면에서는 수급대상자가 되어서 감사하다. 전에 살던 곳에서는 작은애 어린이집 비용으로 18만원, 치료비로 20만원씩 지출하였다. 지금은 치료와 방과후 교실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어서 큰애가 두 달동안 OO대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있다.

주거면에서는 이혼 후 2003년까지 이사를 4번 정도 했다. 1년에 한번 정도 한 것인데, 보증금을 줄여가며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어차피 반지하라서 이사하거나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98년에 물난리 겪고 나서 비만 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이사도 안해도 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생겨서 좋다.

6) 현재 이혼가족으로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내용

정검다리 모임(이혼여성 자조모임) : 서로 얘기도 하고 언니도 생겼다. 아이들과 처음으로 캠프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다양한 공연도 보러가서 좋은 곳으로 이사 온 것 같다.

- 큰 아들 멘토링 프로그램 :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속상했는데 멘토 언니 만나고 하면서 아이가 좋아한다.
- 방과후 공부방 (큰 아들)
- 장애아동 방과후 공부방 : 작은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공부방인데 모자가정이어서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이혼숙려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시간을 현재보다(3시간) 연장해야 한다. 감정이 앞서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제 3자가 중재해주는 것이 이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동사무소에서 수급 신청할 때 직원의 의심하는 태도가 시정되어야 한다. 월 수입을 낮추어서 보고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심하고, 아울러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은 급여성제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주기 어렵다. 아울러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법의 강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자녀보호 등)

현재 복지관에서 나이트케어(야간 방과후)프로그램의 지원받고 있다. 여성들이 일하려면 나이트케어 같은 것도 필요하고 공휴일에도 아이들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원 등에 대한 지원이나 감면이 필요하다. 고등학교를 졸업 못해서 배우고 싶어도 학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검정고시라도 보고 싶은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고 교육받는 시간도 저녁 시간이어서 자녀들 때문에 교육받기 어렵다. 그리고 이혼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10) 총평

사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아이들과 즐겁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마음의 부

담을 크게 가지고 있으며,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배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뿌듯해 하며 스스로 담당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으며 기회가 되면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큰 아이가 할머니(사례의 시어머니)와 아빠를 좋아하고 찾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아직은 정서적으로 전남편과 분리가 되지 않았고, 재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노후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7. 사례 7

1) 개인적 배경

성명 : 김00

연령 : 만 42세

학력 : 중졸

직업 : 무 (주부, 아르바이트)

월수입 : 정부보조금 60만원 + 자판기 20만원 + 아르바이트 50만원(비정기적)

결혼기간 : 17년 (81년~97년)

이혼기간 : 8년 (97년~2005년 현재)

자녀(연령) : 큰아들(23세, 군 제대 후 복학 준비, 전남편과 동거)

작은아들(18세, 고등학생, 전남편과 동거)

딸 1(8세, 특수학교 1학년, 발달장애-다운증후군, 사례와 동거)

2) 이혼 동기

남편은 구타가 심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생활비를 타서 써야했다. 결혼도 서로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사례가 납치되다시피 해서 하게 되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 재판을 해서 하루 만에 이혼하였다.

3) 이혼과정상 어려웠던 점

이혼과정에서 특별하게 힘든 것은 없었다. 변호사는 고용하지 않고 서류로만 처리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12만원 정도 내었더니 접수까지 다 해주었다. 남편은 사례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양육권도 포기하고 위자료도 달라고 하지 않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니깐 이혼에 대해 쉽게 수락하였다.

4) 이혼 전과 후의 생활변화

이혼하고 경제생활이 훨씬 편해졌다. 이혼 전에는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비만 타서 썼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혼 후에는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 해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녀한테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하니깐 마음도 편하고 좋다.

이혼 전에는 충주에서 살았는데 시댁이 부동산이 많아서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건물세로 살았다. 경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다 알아서 했고,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혼 후에 딸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혼 전에는 애들에 대해서는 남편이 도맡아 했다. 모든 것을 남편 의사대로 했다. 이혼하고 나서는 사례의 의지대로 양육을 하니깐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하니깐 어려움이 있다.

주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했는데 이혼하고 바로 천안으로 가서 아는 사람 집에서 살다가, 돈을 빌려서 보증금 없는 사글세방을 얻어서 살았다. 그 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월세, 전세를 얻게 되었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 후에 구속받지 않고 구타당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부부간에는 동등하게 서로 대우해 주고 결혼했으면 남편이 아내를 좀 대우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는 주위사람들하고 동등한 대우 받는 것 같아 좋다.

이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사글세를 얻었고, 그 후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3년 전부터 아이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이혼 후 임신기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해서 생활했고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 주었다. 그 후 식당일, 봉제, 파출업, 노점 판매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지금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한다.

건강면에서는 지금 당장에 어디가 아프거나 큰 문제는 없으나 혈변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있다. 역할면에 있어서도 아직은 어려운 것이 없다. 딸이 다른 애들처럼 장애가 아주 심한 것이 아니라서 주변사람들이 봐주기도 하고, 아직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애들만큼 인지발달이 되지 않아서 아빠를 찾지 않는다. 자녀양육비는 정부에서 지원 해주고, 사회복지관에서 자녀 관련 교육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비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 주거면에서는 사글세부터 시작했지만 현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

6) 현재 이혼가족으로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내용

현재 이혼한 사람 모임에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 모임도 좋고 배울 수 있게 지원도 해 준다. 여기서 캠프도 가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한다. 그리고 모자가정이라서 지하철에 있는 커피 자판기를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자판기에서 한달에 2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 올해까지 3년이 되어서 얼마 전에 다시 신청한 상태이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사례는 이혼숙려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없다면 반대한다고 한다. 이혼숙려제도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시에만 필요하고, 다른 경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혼하는 기간만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정부에서 이혼자를 위한 자조모임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고, 생계비도 인상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장애가 심한 자녀를 둔 가족이나 집안 사정상 일을 할 수 없는 이혼가족들은 생계비만 가지고 살수가 없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살아도 관리비와 세금 등이 20만원정도 나온다. 빈곤한 사람들은 관리비 20만원도 부담이 되므로 이것도 감면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장애아들이 커서 서로 모여서 살거나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좋겠다. 임대아파트 평수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 자녀가 자란 후에는 현재(11평, 13평)보다는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자녀보호 등)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와 관련한 정보도 제공되어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본인이 고령이 되면 지낼 수 있는 양로원이 있었으면 한다.

10) 총평

사례는 전남편이나 이혼에 대해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모습이였다. 수급 대상 선정시기에는 장애아동 양육으로 사례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틈틈이 부수입으로 번 것과 이사 후 동생이 바로 옆에 살아 아이 양육을 도와줌으로써 사례가 일을 하여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수입이 넉넉한 것 같다. 혹시 수급대상 선정에 영향을 줄 것 같아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자동차를 좋은 것으로 바꾸고 먹고 사는 것에는 어려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재산과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고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 다만, 다운증후군의 아이가 단명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노후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재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8. 사례 8

1) 개인적 배경

성명 : 조00

성별 : 여성

연령 : 만 46세

학력 : 고졸

직업 : 무 (주부)

월수입 : 정부보조금 60만원

결혼기간 : 11년

이혼기간 : 5년

자녀(연령) : 아들(9세, 초등학교 2학년, 정신지체-다운증후군)

2) 이혼 동기

사례는 남편의 무능력과 알코올문제 때문에 이혼하였다. 그래도 남편의 무능력은 참을만 했는데, 음주후 폭력이 너무 심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주로 빗자루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살림을 부수는 등의 폭력을 했다.

남편과 성격차이도 심했는데 남편은 외아들이어서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키워서 의존적이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성격이 강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일을 못하고 대부분의 일처리를 부인에게 미루었다. 사례가 결정적

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하고, 그 강도가 갈수록 심해져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였다.

남편과는 중매결혼으로 6개월 정도 만나다가 결혼하였다. 사례는 음주가 심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족 내에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고 겁도 많아서 남편이 때리면 무서워서 친정으로 달러가곤 했다.

3) 이혼과정상 어려웠던 점

주위 사람들이 남편과 같은 사람들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례는 재판이혼을 했다. 폭력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경찰들은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아저씨가 좀 참아요’, ‘때리지 마세요’ 라는 말만 하고 갈 때가 많았다. 남편의 폭력시 신고해서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을 3번이나 받았다. 처음에는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도 몰랐는데, 접근금지명령 내려준 검사가 법률구조공단을 알려주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고 서류만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자녀를 데리고 나와 친정에 있으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혼은 6개월 가량 기간이 걸렸으며, 이혼 기간이 너무 길고 법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4) 이혼 전과 후의 생활변화

이혼 전에는 남편이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다. 매달 월급을 갖다 주지는 않았지만, 한번에 300~400만원씩 주어서 별 불편없이 살았다. 이혼하고 나서는 수급대상자 신청하는 것도 몰라서 수입이 없었고,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어서 생계를 이어갔다. 자녀가 정상 2학년이면 자기가 알아서 방과후 집에서 지낼 수 있지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주위 사람들이 국민기초대상 수급신청에 관해 알려주어, 현재는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혼 전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였다. 이혼 후에는 사례가 자녀양육을 혼자서 담당해야하니 힘들다고 한다. 아이가 버스타고 학교에 다녀야 해서 매일 통학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주거면에서는 결혼시 시어머니가 전세집을 얻어주었고 시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남편이 사업한다고 동산과 전세 보증금 등을 다 가져갔다. 이혼하고 살 집이 없어, 친정에서 월세를 얻어주었다. 그러나 수입이 없어서 월세를 내기 어려워 몇 달 후 친정으로 들어갔다. 친정에서 3년 정도 살다가 2004년 10월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현재 마음은 편하긴 해도, 아파트가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춥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 후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자 혼자 산다고 무시하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혼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다.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만나면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사례는 그럴 때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남편과 같이 나가던 친목회 같은 모임도 못나가게 되었다. 특히 명절 때는 친정에 가기도 미안하여 자녀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데 이때 매우 쓸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의 음주와 폭력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하고 안정된다. 사회적으로는 위축감 같은 것을 느낀다. 그리고 집안일에 남자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것들을 혼자서 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다. 밤에는 발자국 소리나 큰 소리가 나면 무섭다.

남편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사례를 때리고 힘들게 했지만 현재는 시어머니마저 남편 몰래 이사하고 연락을 끊은 상태이고 남편은 일도 안하고 노숙하고 있다.

사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 전에는 옷, 신발 등 좋은 것 입

고, 하고 싶은 것도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 아이한테도 좋은 것 해 주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다. 일정한 수입(보조금)에 맞춰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건강은 결혼 후부터 쇠약해진 것 같다. 결혼 후 심장 떨리는 병이 생겨 한 약 3재를 먹고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놀라는 일이 있으면 심장 떨린다. 요즘은 점점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약도 먹지 못한다. 숨이 차는 것도 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다.

역할면에서는 많은 부분 상에서 어려움 있다. 집안의 전자부품 교체 시 사례가 하지 못하고 부탁할 사람도 없어서 불편하고, 짐을 옮기거나 이사할 때 남편의 빈자리를 느낀다. 그리고 아이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아버지 못까지 해야 하므로 어려울 때가 많다. 예를 들면 공원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좋지 않고 사례가 아플 때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때도 있다. 특히 남자아이라서 목욕하는 것도 같이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

자녀교육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도 기관마다 나이가 정해져 있어서 더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설학원은 너무 비싸서 가지 못한다.

주거면에 있어서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친정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6) 현재 이혼가족으로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내용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와 복지관 징검다리(자조모임)를 통해 이혼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고, 공연관람, 나들이, 캠프 등을 간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유행처럼 이혼 너무 많은 것 같다. 음주나 폭력이 아닌 경우라면 이혼숙려제도를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 유익하다. 이를 통해 이혼 전에 충분한 재고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현재 수급대상으로 지원받으니까 정부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그나마 정부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아껴서 살지만 일반 저소득층은 생활이 더 어려운 상태이다. 더구나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자녀 양육과 직장일을 병행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일할 곳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 봐주는 것도 아니므로,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았으면 한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자녀보호 등)

예전보다는 이혼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많이 생겨서, 현재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으나,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지금으로써는 노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향후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10) 총평

사례는 이혼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으나 남편에 대한 동정심을 많이 갖고 있다. 최근 아는 사람을 통해 전남편이 망우리 근처에서 노숙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남편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데려가 달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걱정이라는 말과 함께 냉정한 마음이 들었지만 밥 먹으라고 2만원을 주고 그냥 왔다.

자녀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이다. 사례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커서

자녀양육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방법이 잘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올바른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자녀의 장애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9. 사례

1) 개인적 배경

성별 : 여성

연령 : 만49세

학력 : 대학 졸

직업 : 교사

월수입 : 1,900,000원

결혼기간 : 15년

이혼기간 : 12년

자녀 : 27세(남) 24세(남)

2) 이혼 동기

학창시절의 첫사랑으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전부이고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매사에 분명한 성격인 부인과 주위의 여건에 휩쓸리기를 좋아하고 부인보다는 친구, 친척을 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아울러 시부모님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사사건건 간섭하여 갈등이 많았다.

자라온 환경이 다른 이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보다는 각자의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더구나 결혼을 반대하셨던 시부모님(시어머니)이 며느리의 입장보다는 아들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게 했다. 이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3) 이혼과정상 어려웠던 점

직장 다닐 때의 사회 분위기는 여직원은 하나의 직업인으로 보기보다는 직장의 꽃이라는 개념으로 결혼 후에 전업주부를 당연시하였다. 이혼 후 아이들을 양육비를 벌기 위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두려웠다. 특히 이혼녀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이혼당시 사춘기에 접어든 큰아들과 중학생인 작은 아들이 받는 충격을 사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한 이혼이지만 혼자서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4) 이혼 전과 후의 생활변화

본인이 활동적인 성격으로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큰 힘이 되었다. 이혼 전 아이들에게 생활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다. 큰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남편의 친구여서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시아버지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여 도움을 받았다.

직장생활을 통해서 모아둔 목돈으로 이혼 후 아파트를 구매하여 주거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5) 이혼 후 어려운 점

이혼 전에는 시댁의 사회적 지위와 남편의 안정된 직장생활로 살았다가 이혼 후, 친정 쪽에선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여 친척들로부터 수년간 외면을 당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혼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 이혼 초에는 집안 동생들의 혼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피하는 친척들이 있어 지금도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사회·심리적으로는 이혼녀라고 밝히면 주위에서는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뭔가 호기심을 갖고 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 이혼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건강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역할에 있어서는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자녀양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이혼 초기에는 아버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보내었고, 시아버지와 시댁식구들의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 큰 아이는 대학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시댁의 도움과 장학금으로 교육비가 해결되었다. 주거 문제도 별 어려움이 없다. 이혼 전에 가지고 있던 집에서 살고 있다.

6) 현재 이혼가족으로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내용

없다.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이혼숙려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본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되어 온 우리 사회는 여성이 약자로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이 팽배하지만 상담을 하고 심사숙고하여 이혼 후 아이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고려하여 최선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여성평등은 여성들의 희망사항이지 사회에선 아직도 남성위주로 흘러가는 게 사실이다.

- ① 전업주부로 살다가 직업을 구할 때 좀 더 용이했으면 좋겠다(사회적 편견, 자영업이 아닌 정규직을 원함).
- ② 청소년 직업훈련소처럼 이혼 후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 ③ 부모교육은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 역할 관계가 정상적이니 삶의 일부분이지만, 이혼가족을 위해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내용들이 학교나 직장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9)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결혼생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혼인데 이혼상황이나 또한 이혼 후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많았으면 한다.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담기관을 알지 못하여 주로 법무사 사무실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필요한 정서적인 지원은 받지는 못하였다.

10) 총평

사례와 이혼 당시 자녀들이 사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충격을 비교적 많이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는 본인이 취업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자녀들과 전남편과의 정기적인 만남, 자녀 담임선생님의 도움, 시댁의 지원 등 다양한 사적 지원망과 함께 이혼남편 및 시댁식구들의 배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만 이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느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고, 아울러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직장생활과 친정식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이혼여성에 비해서 안정된 직장생활과 주변의 도움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후 삶에 적응할 수 있었다.

10. 사례 10

1) 개인적 배경

성별 : 여성

연령 : 51세
 학력 : 전문대 졸
 직업 : 조리사
 월수입 : 100만원
 결혼기간 : 20년
 이혼기간 : 2년
 자녀 : 2남 (20세, 17세)

2) 이혼동기

남편이 진실하지 않아 이혼하였다. 남편은 항상 경제문제를 의논없이 혼자 처리하였고, 사례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늘어나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다. 사례는 구체적인 경위를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더구나 당사자인 남편은 사건 발생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3) 이혼 과정상 어려웠던 점

이혼 과정상 어려웠던 점은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과 고3인 아들이 겪은 심리적인 충격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자녀들이 사례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혼 후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인정받아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남편 호적에 입적되어 있어서 대상에서 탈락되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남편을 호적에서 탈퇴시킬 수밖에 없었다. 온정상 남편을 동거인으로 호적에 남겨둔 것인데, 공무원들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

4) 이혼 전과 후의 생활변화

가족과 형제 이외에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달라진

점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창피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아이들이 아직은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후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5) 이혼 후의 어려운 점

우리 사회에서 이혼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요즘은 많이 변했으나, 아직까지도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하고 이혼은 여자가 기가 세서 한다는 등의 사회적 편견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여성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혼한 가정의 여성들은 자녀들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했다는 죄책감과 자신이 부인으로써 남편을 죽을 때까지 보필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자녀양육에 전념하며 살았던 전업 주부들은 이혼 후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스트레스 이외에 이혼 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경제문제이다. 결혼후 남편에게 경제권을 위임하고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았는데, 통장과 모든 카드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이혼 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 때조차 남편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산의 모든 것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 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혼 후 40~50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식당같은 서비스 업종밖에 없고 보수도 작고 일도 고되다.

결혼 후 일을 포기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자신의 발전은 없었으므로 이혼 후 나이 50에 다시 일자리에 뛰어 든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정신적인 충격과 가장으로써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건강도 나빠졌다.

역할 면에서는 남편이 해야 할 일과 부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일이 이제 혼자만의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되고 힘에 부친다.

두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해서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대로 잘

따라오고 있으며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라 아이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자녀 교육비는 친절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으며, 큰 아이는 학교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여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

주거면에서는 노후에 남편과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준비해 놓았던 집이 있어서 거기서 현재 아이들과 살고 있다.

6) 현재 이혼가족으로서 받는 서비스 및 내용

없음

7)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

오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이혼숙려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부들의 이혼 결정은 심사숙고 한 후 결정한 것이므로 이혼숙려제도의 의무화는 법의 지나친 간섭이 아닐까 생각된다.

8) 정부에 바라는 점

많은 부부들이 카드 빚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있다. 정부의 대처없는 카드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어지는 현재 정부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이혼 후 아버지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자녀들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남편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야 했다. 향후에는 정책상의 문제로 인해서 편부모 가정에게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 원하는 사회복지

이혼 가족들이 심리적,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

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 사업을 기반으로 이혼가족이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보장 받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상담기관들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혼자들이 기관에 쉽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한부모가정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10) 총평

사례는 결혼생활 중에도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부부 간 공유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 남편의 빚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이혼을 해야 하는 이중의 충격을 안게 되었다. 이혼 후 남편 명의로 모든 것이 되어 있어서 재산을 나누기 어려웠다. 특히 50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주거면에서는 이혼 전에 준비해 놓은 집이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다.

사례는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면, 심리적인 면 등을 위한 정책이 미흡함을 비판하고 있었다. 특히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남편을 호적에서 말소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다행히도 자녀들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거나 친정의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록 2] 사례조사 분석결과

1. 이혼의 동기

본 사례조사 결과 이혼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부인의 외도, 남편의 외도, 가정폭력, 시댁과의 갈등 등이다. 그런데 이혼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성격차이의 경우 부부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양육이나 일상생활에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서로 다른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기술의 부족과 중재자의 부재 등으로 부부불화가 심화되어 이혼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부인과 남편 모두 급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사례는 자녀양육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냈고, 부인을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부모없이 할머니와 큰어머니 아래서 자라서 자녀양육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화를 내게 되고, 부인은 아이들을 왜 감싸주지 않느냐고 맞대응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싸움은 커져서 부부간에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하였다. 갈등이 해결이 되기 전에 부인이 가출하곤 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골이 패이고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사례 1).

본인은 내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색형인데 비해, 부인은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면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서로 싸우지는 않았으나 불만이 (특히 부인의) 누적되었다. 이러한 불만의 누적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서 이혼이 초래되었다(사례 2).

그런데 성격차이란 부부간의 기대의 상충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남편의 무관심과 배려 없음으로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적인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과 생활양식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였다. 사례는 첫 애 출산 후 산후 부작용이 심했는데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바람이 난 상대가 자녀 백일때와 돌때 찾아오기까지 했다(그때는 외도 상대이었던지도 몰랐다)(사례 6).

자라온 환경이 다른 이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보다는 각자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으로 힘들었고 더구나 결혼을 반대하셨던 시부모님(시아머니)이 며느리의 입장보다는 아들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게 했다. 이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사례 9).

성격차이와 더불어 경제적 문제는 이혼의 또 다른 주요 사유가 된다. 사례 1, 사례 4, 사례 5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자체가 문제이지만, 이는 부부갈등, 음주, 외도, 폭력 등 다른 문제들도 야기시켜 이혼을 촉발시킴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카드 빚 때문에 배우자가 가족을 유기하면서 이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로 실직 및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해 부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가장으로써의 경제력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다. 이는 부인의 외도로 이어졌고, 외도는 이혼을 초래하였다(사례 1).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입원한 상태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병원비를 충당했고 병간호도 맡아서 했다. 남편은 이러한 부인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남편은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다. 사례는 전남편, 시동생(남) 2명, 시아주버님 1명과 함께 살았는데, 사례 혼자서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아울러 생활비도 부담해야 했다. 남편은 동생들과 갈등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부인에게 주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도 하였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2년간의 별거하였고, 그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사례 4).

남편은 결혼 후 2년정도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매일 컴퓨터 게임이나 음란물을 보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사례는 남편이 직업없이 집에 있는 것과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책임감 없는 모습을 참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졌고,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사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사례는 이를 거부하여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다(사례 5).

남편은 결혼 내내 경제적인 문제를 의논없이 혼자 처리하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늘어나서 받기로 되어 있었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모든 재산을 잃은데다가 재산을 잃는 데까지의 경위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남편마저 사건이 터진 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사례 10).

최근에는 부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부인은 남편이 일정한 일자리가 없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수치스러워 했고,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부인이 일본어 관광가이드를 하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부인은 관광가이드로 취업후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와 성관계도 피했고, 더 나아가 한 집에서 각 방을 쓰면서 별거를 시작하였다. 사례는 부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부인이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기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직장을 갖게 되면서 외도를 하였고, 본

인도 월평균 300-600만원을 벌게 됨에 따라서 남편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남편과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았다(사례 2).

부인이 이혼 전 6년 전부터 바람이 났는데, 이를 3년간 모르다가 부인이 매일 집안일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있는 것이 수상해서 뒷조사를 한 뒤 알게 되었다. 부인은 초기에는 외도를 숨기고 여자도 왜 밖에서 오래 있지 못하냐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부인과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3년간 부인을 설득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부인은 외도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였다(사례 3).

또한 가정폭력은 아울러 주요한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편의 구타가 심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의처증이 많았다. 아울러 생활비도 겨우 타서 써야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판을 해서 하루만에 이혼하였다(사례 7).

남편은 음주후 폭력이 너무 심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주로 빗자루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살림을 부수고 폭력을 했다.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하고, 그 강도가 갈수록 심해져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였다(사례 8).

아울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이혼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는 부인이 각각 미용업과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됨에 따라 이혼을 선택하게 된 사례들이다.

다양한 문제로 이혼이 발생되는데,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례들은 전문상담기관이나 친인척들의 중재를 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친인척들은 이혼을 권장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친인척이 없는 경우는 더욱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현재는 부부

가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로 이혼숙려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례들은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 이혼이 결정되고 난 후의 최종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직전에 중재를 하는 것보다는 부부간의 갈등과정에서 심리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생활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혼 후의 상황이 이혼전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변화(주로 하락)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이혼 후 실제 수입은 많이 줄었다. 이혼하기 전까지 본이도 직장생활을 하여 연 2200원~230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 부수입으로 월 200~300만원을 벌었다. 지금은 월 80만원을 받고 일도 많고, 빚도 있다(그러나 느낌은 오히려 느낌은 풍족한 것 같다(사례 5).

이혼 전에는 남편이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다. 이혼하고 나서는 수급대상자 신청하는 것도 몰라서 수입이 없었다(사례 8).

이혼 전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는 이혼 후에도 안정성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다. 현재 퇴직연금, 주식, 집세 등을 통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두 자녀도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사례 3).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생활의 어려움은 없다(사례 10).

이혼 전에 남편의 수입이 불규칙적이었거나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는 경

우, 이혼전후에 실직한 경우 등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

이혼전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남편이 워낙 경제력이 없어서 지금이나 그때나 생활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이 낮아서 일을 찾기 어렵다(사례 4).

반면, 이혼 후 정부의 지원이나 취업으로 인해 규칙적인 수입이 있게 됨에 따라 이혼 후가 이혼전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례도 볼 수 있었다(사례 6).

경제생활면에서는 오히려 이혼하고 안정이 된 것 같다. 남편은 씹씹이가 커서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정부보조금과 부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있다. 그럼에도 경제면에서는 넉넉하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수입이 줄어서 불안하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불편한 마음도 갖는다(사례 6).

이혼하고 경제생활이 훨씬 편해졌다. 이혼 전에는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비만 타서 썼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혼 후에는 도는 많이 모으지는 못해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녀한테 필요한 것을 해주니까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다. 이혼 직후에는 남편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아서 어려웠으나, 지금은 닥치는대로 일을 하고 3년전부터 정부보조금도 받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다(사례 7).

이혼 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적인 지원망(여성의 경우는 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주변을 통한 정보를 얻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 되거나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어 안정성이 생기게 된다.

이혼 후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

후 주위사람들이 국민기초대상 수급자 신청에 관해서 알려 주어서 현재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사례 8).

직장 경력이 있는 남성들은 이혼전후 실직했어도 퇴직금 등의 수입도 있고, 향후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사례 2).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특히 자녀가 저연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자녀가 어린데도 수입이 없어서 불안하다. 작은 애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일을 못하고 보조역할만 하고 있어서 수입이 적다(사례 6).

3. 자녀양육 관련

이혼 후의 어려움 중 자녀양육문제가 크다. 특히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어린 경우 항상 곁에 있어야 하고, 학자녀의 경우는 사교육비 등을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역할과중과 한부모로 인한 부담을 볼 수 있다. 역할 면에서는 여성의 경우 특히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도맡아서 하게 됨에 따라 오는 어려움이 있다.

이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에 있다. 아이가 어려서 지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낮아서 일을 찾기 어렵다. 또한 자녀가 천식을 앓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고, 급한 경우 응급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사례 4).

자녀에게 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되고, 자녀가 친구집에 가서 친구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이 무겁다(사례 5).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아버지 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남자가 아니라서 목욕하는 것도 같이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사례 8).

반면, 갈등적인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는 이혼 후의 갈등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혼자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었다.

자녀양육면에서는 지금이 훨씬 낫다. 이혼 후 종교를 갖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이혼 전에는 자녀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했으나, 현재는 신앙을 통해서 태도와 생각이 바뀌었다(사례 5).

자녀들도 이혼하고 훨씬 안정적이다. 남편은 계속 거짓말만을 일삼아왔다. 이혼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니까 자녀들도 안정되고 있다(사례 6).

자녀양육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복지관에서 자녀관련 교육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사례 7).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드물게는 전남편과 시댁으로부터의 도움 및 지원을 통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후 자녀들이 받을 충격이 완화되고 생활비의 과중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양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이혼 초기에는 아버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지내고 시아버지와 시댁식구들의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큰 아이는 대학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

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시택의 도움과 장학금으로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었다(사례 9).

4. 주거생활

이혼 후 주거생활이 매우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인 하층인 경우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거비가 과도하게 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혼 전에는 자택에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현재는 월세에 살고 있는데 수입이 있어도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모자원에서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사례 4).

이혼전에는 전세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혼한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내년 부터는 따로 살아야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1000만원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사례 5).

이혼 후 살 집이 없어 친정에서 월세를 얻어 주었다. 그러나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친정으로 들어갔다. 친정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사례 8).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서 주거면에서 안정이 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사례가 많지 않고, 영구임대주택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수년간 겪고 있다.

이혼 후(1998년) 2003년까지 4번 정도 이사를 했다. 이혼 후에 수중에 전세금 밖에 없었고 자녀들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줄였고, 점점 작은 집으로 옮겨 살아야 했다. 다행히 지금은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서 주거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사례 6).

[부록 3] 시설거주 이혼자 대상 주관식 설문 결과

● 이혼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사항

1) 경제적 지원

- 정부나 사회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자립할 수 있는 무담보 대출이나 기본적인 삶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자녀들이 일반 학원을 다닐 때 감면 혜택을 해주셨으면 한다.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카드 같은 것을 발행하여 할인혜택도 받았으면 한다. 학교에서 해주는 수업료 혜택이나 급식 지원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있었으면 한다.
- 경제적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고졸 수준으로는 전문직을 가질 수 없고, 관절염도 있어서 많이 아프다. 직업이 저임금이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하다.
- 경제적 지원(생계비)이 너무 작다. 직업훈련 과정 중 생활비가 너무 작다.
-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들의 바른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부탁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부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일 자리를 찾기보다 직업훈련, 국비지원이 되는 직업훈련소를 많이 찾는다. 이 보다는 수급자가 되면 3~5년간 생계비 지원을 아끼지 말고 보조해 주면 경제적 안정을 찾는 시기가 빨라질 것 같다. 생계비만 정상적으로 지원되면, 아르바이트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가 쉬워진다.
- 최저생계비를 올려 주기 바란다. 3인 가족이 77만원으로 1달 동안 살기 힘들다.
- 경제적 지원 및 100%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 경제적 지원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 건강, 보건, 법률 등 상담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 같고, 있다 하더라도 천만원 이상 필요하므로 부담이 크다.
-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저리의 용자 지원을 바란다.
- 건강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 아이들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엄마로서 직장구하기가 어렵고, 정부에선 정확한 가정환경 실태 조사를 거쳐 불균형한 지원이 아닌 필요한 지원이 시급하다. 월 70~80 만원으로 3인~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집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모자가정들에게 저금리 대출제도를 통해 주거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
- 경제적 지원 향상이 필요하다. 전세자금을 원하는 만큼 대출 해 주었으면 좋겠다.

2) 자녀 사교육비 지원

-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학원비 대책으로 자녀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엄마 혼자 키우다 보니, 아이 교육문제가 가장 신경이 쓰인다. 미술교육이나 영어교육의 지원 바란다.
-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환경을 건의하고 싶다.
-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 모자가정이다 보니 경제적인 수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녀 학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므로 경제적 지원(3년간만)을 받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계비 지원이 없다. 가장 문제가 되고 향후 어려운 점은 주거문제와 자녀학비(교육비)문제, 학원비 등이므로,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므로 경제와 양육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퇴근하고 돌아올 동안 아이들끼리 있어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 학원에 보낼 수가

없다. 학원(사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과 잘 클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 한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 힘들다. 자녀의 성격이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사교육을 시킬 엄두도 못 낸다.
- 이혼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녀교육이 가장 큰 과제이다.
- 이혼으로 인해 자녀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이민가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한다.
- 자녀 교육비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이 어렵다. 해주고 싶어도 여윌돈이 없다. 자녀들에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자립을 가능하도록 경제적 도움, 공식 학원비, 교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 아이들 학원비의 50%라도 지원되기 바란다.
-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 안돼서 좋은 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많다. 장학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모자가정 자녀들에게 빛을 준다면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아이들이 원하는 사교육을 보충하지 못해서 항상 어렵다.

3) 한부모가정에 적합한 시간대와 일자리 마련

- 저임금이나마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었으면 한다.
-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 운동이 필요하며, 이혼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 정부가 지원해주는 생계비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몸이라 아플 경우 병원 신세를 질 때면 생활비 걱정에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예전보다 여자가 엄마의 자격으로 애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교육이나 기타 현실에서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어려움이 많다. 더 실질적인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계비 지원도 좋지만 애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꼭 필요하다.

- 영구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기 바란다.
- 우선적으로 취업 알선을 부탁한다.
- 이혼은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정서 불안으로 이혼을 결정한 만큼 엄마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해 주시는 것이 자립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 한부모 가정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마음껏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없고, 시간대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대로 크면 큰대로 불안한 마음이 있다.
- 모자 가정의 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탁아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알맞은 곳에 취업하기가 힘들다(취업 사이트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이 부족하다. 취업분야를 넓혀 많은 한부모가 취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
-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에 비해 임금이 너무 작다.

4) 탁아 및 자녀들의 방과 후 교육 지원

-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뭉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을 포기 할 수밖에 없다. 자녀들과 놀아줄 형, 누나 자매결연 맺어주기 같은 어떤 대처 방안이 현실화 되었으면 한다.
- 이혼 후 경제적인 자립이 매우 힘들다. 아이들 육아 문제가 가장 힘겹고 믿을 만한 기관이나 주변 사람이 없어서 매우 심적 부담이 된다.

-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의 양육 문제와 교육 문제가 우선인데 정부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명칭이 좋지는 않게 들린다. 어쩔 수 없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길이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 기초수급자들의 자녀 방과 후 수업료 면제가 꼭 어린이집이라야 하는지,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교육 받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러한 지원이 합당한지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 경제적인 면을 극복해야 하는데 자녀 양육 문제로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다.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 여성 가정을 위한 탁아소를 증설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사회적 편견 해소

- 사회나 정부가 이혼자에 대한 편견을 벗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한부모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닌데, 다른 이들에게는 차가운 시선으로 보아진다는 것이 아쉽다. 임대아파트라도 주거시설이 지원되기 바라고, 상환기간이 길어서 안정되게 살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이혼한 죄로 너무 정부, 사회에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죄인처럼 보고 있으므로 평등하게 보았으면 한다.
- 사회적 편견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소외감 및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빨리 아이들만큼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 이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 이혼은 한 개인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므로 이혼자를 보는 사회의 편협한 시선이 고쳐지기 바란다.
- 이혼은 협의로도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로도 이루어지므로 이혼 당사자들보다는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상처 받는 것이 안타깝다. 이것을 복지사업이나 제도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

기 바란다.

- 사회복지사들의 의식과 반응에 너무 힘들다.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찾아 도움이 되게 해야지, 형식적인 지원이 힘들게 한다.
- 이혼가정에 편견을 버리고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이혼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기 바란다.
-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여성회 모임이 필요하다.
- 이혼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편견이 남아있어서 자녀들이 남에게 가족상황이나 환경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이 여러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친부모가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들이 학교에서 편견을 받지 않고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아이들은 학교생활, 본인은 사회생활에 자신이 없어 많이 힘이 든다.
- 학교 선생님과 주위에서 영세민으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6) 주거지원

- 가족 수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지고,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 이혼가족의 질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영구 주택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늘 부족하다. 우선적인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싶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 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작은 곳이나마 임대아파트가 많았으면 한다.
- 저임금 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주거 자금이 매우 필요하다. 한달 월세 20만원씩 내고 살기가 힘들고 벽차다. 전세 자금을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 아파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한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 경제적, 정신적 안정면에서 자립하는데 모자원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각 시도에 좀 더 많은 모자원이 설립되었으면 좋겠고, 모자원에서 모자원으로의 이사도 가능했으면 한다.

7) 자립 토대 마련

-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주었으면 한다.
- 모자원에서 3년 만에 자립은 힘들다.

8) 이혼 후 양육비 및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모자가정이 많다. 외국(미국)처럼 쫓아 다니며 법적으로 보호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최소 양육비나 교육비 정도는 꼭 받을 수 있는 정책 또 정부의 지원을 많이 마련했으면 한다.
- 아빠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했으면 한다.
- 양육비를 안심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해 주길 원한다(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이 힘들면 미리 국가에서 내 주고 그것을 후에 배우자에게 받는 형식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부채를 현재 모두 아내만 다 갚아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명의회자는 아내이지만 책임은 부부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법이 있으나 마나한 현실이다. 경제적인 것과 지원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고,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법도 미약하다. 아이들과 숨어 살면서 아빠가 찾아오면 또 다른 곳에 숨어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막막했다.
- 이혼을 했지만 전 남편 때문에 불안하다. 이혼 후 절대 찾지 못하도록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고 싶다.

- 전 남편이 찾아와 종종 행패를 부리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면,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라도 덜 힘들 것 같다.

9) 학교에서 이혼가족 자녀들의 비밀보장

- 학교의 신상명세서나 등본 상 ‘호적 신고에 의한 정리’라는 문구가 왜 꼭 필요한지 알 수 없다.
- 학교에서 이혼가정이나 여성 한부모가정 아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예: 급식이나 우유 무상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칠판에 붙여 놓는다. 가족사진이나 가족 구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다).
- 학교에서 급식 등 이혼가정 아이들에 대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
-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것을 비밀로 해주기 바란다.

10) 정부지원 학원 프로그램

- 생계유지를 위해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녁에 정부지원으로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요리, 미용 같은 직업 훈련원은 다니고 싶어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밤시간 학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11) 남자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교육

- 여자보다 남자의 책임의식이 결여 된 것이 큰 문제라고 본다. 학력이 높고 뚜렷한 직업이 있는 사람, 수입이 고정적이고 고수입이면 생활에 애로 사항은 없을 텐데 수입도 낮고 알코올 중독(수입이 낮으면 알코올에 의지해 현실을 잊어버림으로써 가족을 더 괴롭게 함)이 큰 문제이다. 알코올 중독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가족간의 불화, 애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문제이다. 이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 가정

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개인의 불행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

- 실업자가 많고, 일자리가 없고, 건강이 허락지 않아 술, 담배로 사는 남자들 교육시켜 주었으면 한다. 건강문제로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고,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12) 상담제도 마련

- 이혼 전에 이혼 후의 문제나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혼 후에는 심리치료와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담과 다시 사회인으로 설 수 있는 도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한다. 기존의 사회단체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이혼 가족이 스스로 삶을 바로 잡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 이혼가정의 부모나 자녀 문제를 늘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는 열린 상담실이 있었으면 한다.

13) 이혼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가족해체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물질적인 생계비 지원보다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주거문제 해결, 방과 후 학습지도, 의료혜택 등의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 자녀생활지도 프로그램 및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망한다.
- 현재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빠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다.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예: 영화 관람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든지,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함께 정보 교환의 장을 만들어도 좋을 듯하다. 보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싶고, 다 같이 사는 사회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형이나 누나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 이혼가족끼리의 연결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서로 어울리는 가정끼리 다시 합쳐지면 아이들 정서도 좋아지고, 서로의 경제적인 손실도 적어질 것으로 본다. 사설 기관(결혼상담소)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힘들다. 정부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많은 이혼가정들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

14) 기타

- 이혼가정은 곧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이며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적인 교육과 예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이혼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처벌한다는 약속과 함께 혼인 승낙을 했으면 한다.
- 병이 생겨 종합 병원에 갈 때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과마다 그리고 1년 마다 발급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에서 하루에 두 군데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불편하다.
- 주 5일 근무로 인해 자녀양육(어린이집)이나 관공서, 은행 업무 등은 너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자서 자녀 양육, 가사, 직장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일부 주 5일 근무로 더 많은 불편과 인내가 요구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직업훈련, 기술교육이 학원운영식보다 현장실습 식으로 바꾸고, 실습기간을 연장하여 실습이 끝나면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 이혼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관련 건의 사항

1)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프로그램 마련

- 이혼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이혼자임을 드러내게 되면 달라지는 태도에 더욱 힘들 때가 많다 (학교와 직장에서 상당히 심한 편이다).
-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회에서는 무조건 위축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혼자라는 것을 밝히는 용감한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 건전하고 명랑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도해 주기 바란다.

2) 자녀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이혼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 경제 활동과 자녀 양육을 모두 해야 하므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마음으로는 다짐을 하지만, 스트레스로 자녀를 험하게 다룰 때가 많다. 그러므로 엄마의 심리치료나 정서적 안정,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 자녀양육과 자신을 위한 보다 나은 긍정적인 정보와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공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자녀 교육,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과 대처방법에 대해 상담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기관에서 자녀상담 및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어주어 편하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면 좋겠다.
- 한부모로서의 역할,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대처방안, 자신의 장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자립력을 배양 상담프로그램 마련

- 정신적인 피해문제와 재활의욕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대인관계 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 재혼이나 재가에 대한 상담보다는 자활에 관한 상담이었으면 한다.
- 혼자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정신력을 키워주기 바란다.
-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을 원한다.
-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정보, 교육 등이 필요하다.
- 기술, 정보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4)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공

-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희망 프로그램에서 마음 나누기와 생애곡선 등을 지도 받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심리적인 치료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 상담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혼자의 어려움을 잘 아는 분이길 바라며 심리적인 조언도 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를 바란다.

5) 기타

- 아직 상담이 닿지가 않고 선풍 기관으로 가기가 어려워 상담 담당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상담을 해 주었으면 한다.
- 이혼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자녀양육의 좋은 방법과 직업 문제, 취미 같은 것을 공유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직업 훈련이 아닌 취미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예: 비즈공예, 꽃꽂이, 종이접기, 풍선아트, 십자수, 한지공예, 외국어 등.
-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상담하고 있는데 카메라 등 찍고 하는 것을 사양해 주었으면 한다.
- 가정의 위치에 있다보니 소요시간 또는 비용이 든다면 참여할 수가 없다.

● 이혼예방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필요 이유

1) 이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위협 때문에

- 너무 이혼이 많아지는 것 같다.
-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사회적으로 이혼이 심각할 정도로 퍼져 있다. 좋은 환경의 사회 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다.
- 이혼함으로써 자녀 정서문제가 심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서비스 업종을 선호하여 사회가 혼탁해지고 건전한 인간관계가 힘들어 지는 것 같다. 따라서 이혼한 후의 대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사회보장제도보다는 이혼자들에게 결혼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수료증을 받고 혼인 신고가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결혼 후에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부 적응 프로그램들이 전문가들의 교육과 더불어 성인 남녀간에 이해와 배려, 사랑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험자로서 이혼 전에는 반드시 정부 전문기관에 상담과 심의를 거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한다. 상담신청자와 기관들의 상담 내용들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면 이혼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협의 이혼)은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의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이혼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로 생기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자녀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 자녀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에 필요하다.
-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3위라고 한다. 쉽게 해체되는 가정으로 인해 죄 없는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기적인 부모들로 인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혼 예방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안정된 가정을 갖기 위해,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
- 이혼 후 자녀들의 문제가 심할 때가 많아 건강한 가족, 가정이 필요하다.
-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혼을 결정하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었으면 한다.
- 무엇보다 자식에게 부모 모두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대신 할 수 없다.
-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 자녀들에게 가는 정신적 피해 때문에 필요하다.
- 이혼 후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열악하고, 자녀 교육에는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좋지 않아 이혼예방이 필요하다.

3) 이혼 후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 이혼은 새로운 선택일수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절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이혼 후 건강,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더 힘들다.
- 가사 일만 하다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다.
-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혼을 하지만 이혼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자립이 필요하다.

4) 부부간의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 각자의 어려운 상황을 의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다.
-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문제해결 능력을 잃고, 문제에서 해방되려고만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대화 카운슬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서로의 생각 차이와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

기 때문이다.

-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서로의 믿음도 깨어진다. 부부간의 충분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 마음에 문을 열고 서로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서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충분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
- 믿음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 대화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5) 이혼의 심사숙고를 위해

- 감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저하되는 시기이기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서 판단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
- 이혼할 당시에는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위의 도움은 절대 필요하다.
- 자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필요하다.
-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
- 이혼이 부부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자녀들의 장래도 생각해야 하며 특히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에게 잠시 별거하거나 다른 휴식처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이혼 과정과 이혼 확정일이 길었으면 한다. 반면, 구타나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상황의 가정에게는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 이혼을 할 때 기간이 길면 그 동안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법원에서 제대로 상담을 해주면 이혼율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 이혼예방 방안

1) 이혼 예방교육 실시

- 이혼을 앞둔 부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강의를 필요하다.
- 결혼도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교육 후에 가정 파탄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어 결혼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 결혼이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잘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되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는 부부교육이 필요하다.
-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혼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률방안’ 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경우 이외는 이혼하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
- 이혼을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이혼예방을 위한 상담 복지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다.
- 이혼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
- 이혼 후의 프로그램보다 이혼 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결혼 전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문제 해결

- 이혼 전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혼을 안 할 것이다.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다.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가정도 가족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 주위에서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이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 이혼후 혼자 사는 가정을 보면 경제 등의 이유로 만나는 것도 보고 합치는

것도 본다. 헤어지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족해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3) 남편을 위한 교육 실시

- 남자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을 하면 여자를 자기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 알코올중독 또는 배우자나 아이들을 구타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육 내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기타

-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이 생기다보니 가정으로 까지 영향이 많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면 한다.
- 언어폭행과 시택의 잘못된 관습과 모순된 점, 여성이 경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결혼 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아이들 정서문제, 부부갈등 해소,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 이혼예방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1)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가능성이 안 보임

-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뚜렷이 좋아질 것 같진 않다.
-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성격은 교육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어떤 것도 이미 만들어진 인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부부사이의 갈등은 주위에서 정확히 잘 모르므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 본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참고 살아야 하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이나 다른 것들이 나아질 수 없음을 알았고 주위에서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혼만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방안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 프로그램을 통해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현실성이 없다.

2) 이혼전에 이미 충분히 생각했음

- 충분히 생각하고 힘들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 이혼을 결정하기 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서이다.
- 잘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이혼을 결정할 때 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3) 이혼은 사적인 문제임

- 각자의 사생활이므로 정부 프로그램이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 각자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 이혼은 개인적 사유로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다.

4) 서로 맞지 않음

- 서로 불필요한 사람들은 같이 살 필요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서로 맞지 않아서 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예방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굳이 대면 할 필요가 없다.

5) 기타

- 구타당하면 살 필요 없다.
- 중독에 빠져 이혼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참지 말아야 한다.
- 아이들때문이다.
- 개인의 생각과 견해 차이지만 이혼 후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서로의 아쉬운 점을 인식하면서 자기 길을 찾기 때문이다.
- 정신적 고통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 2005-13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Recent Divorce Trend in Korea and Policy Measures for the Divorced Families

발행일	2005년 12월 일	값 10,000원
저 자	김 미 숙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54-2 93330